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531호
2019. 7. 25.(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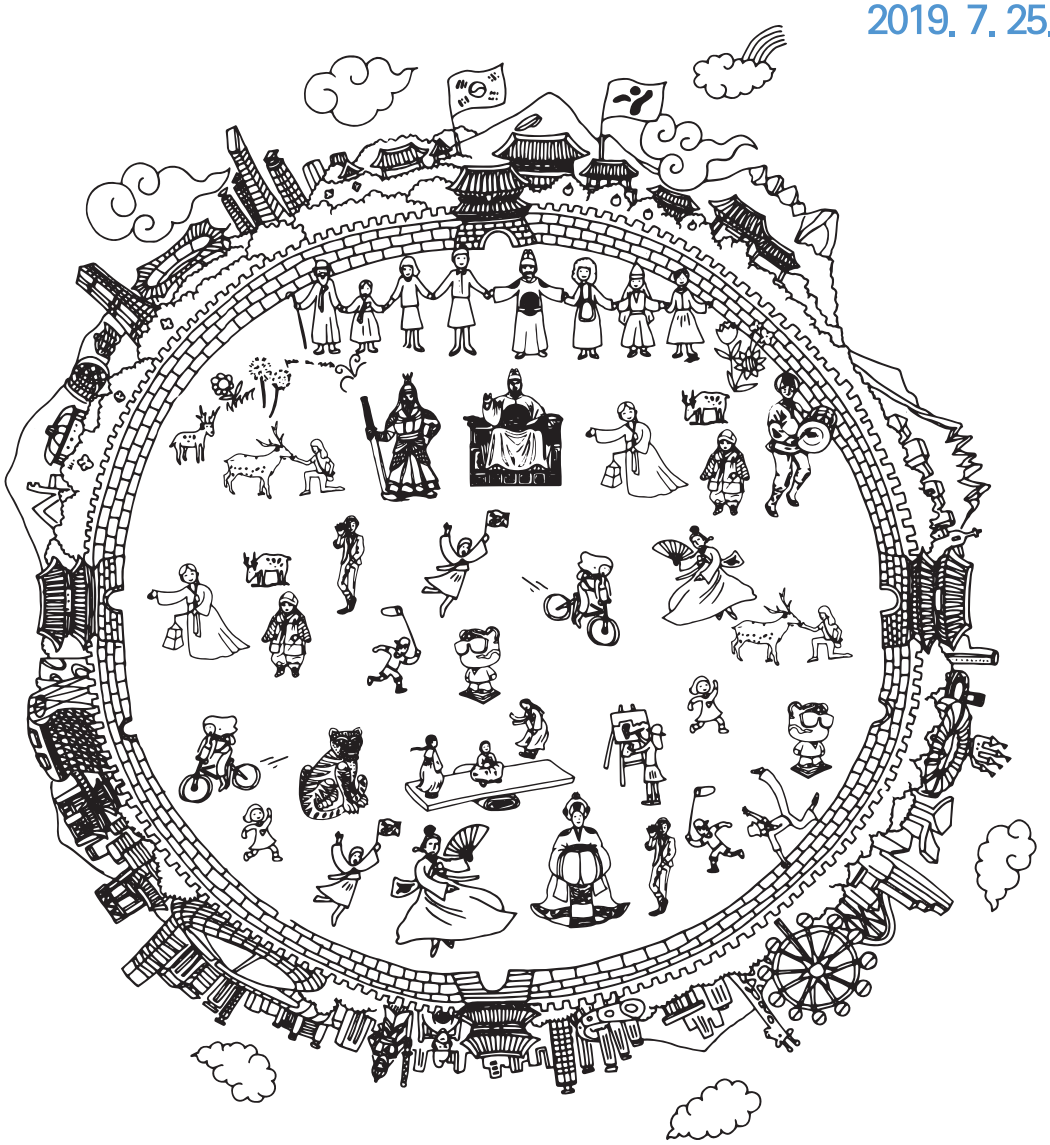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규 칙]

제4289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4
제4290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9

[입법예고]

제2019-1942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5
제2019-1996호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16
제2019-1997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9
제2019-2000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
제2019-2001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1
제2019-2002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2
제2019-2005호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23

◈ 고 시

제2019-237호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 독바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5
제2019-238호 신길5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54
제2019-239호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78
제2019-240호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01
제2019-241호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227
제2019-242호 서울특별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 ····· 244
제2019-243호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45

제2019-244호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 261
제2019-245호 낙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76

◈ 공 고

제2019-1915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 292
제2019-1919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 293
제2019-1932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4, 8, 14단지 아파트 미술작품 제작, 설치 공모 공고 ····· 295
제2019-193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 296
제2019-1935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297
제2019-1936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공고 ····· 298
제2019-1944호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1호) 운영자 선정 입찰 재공고 ····· 299
제2019-1945호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2호) 운영자 선정 입찰 재공고 ····· 316
제2019-1949호 2019년 보행환경개선 사업계획 수립(안) 열람 공고 (마 포 구) ····· 332
제2019-195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334
제2019-1952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335
제2019-1960호 설계·감리업 등록 공고 ····· 336
제2019-1963호 2019년도 제9차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 337
제2019-1969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341
제2019-1973호 2020년도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접수 공고 ····· 345
제2019-1998호 측량업 등록 공고 ····· 356

◈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19-5호 2019년 수시 재산등록사항 공고 ····· 357

◈ 구 고 시

제2019-9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인가 고시(용산구) ····· 359
제2019-10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용산구) ····· 361

제2019-101호 도시계획시설(새꿈어린이공원 조성사업)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폐지 고시(용산구) ····· 362
제2019-102호 도시계획시설(꿈나무소공원 조성사업)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폐지 고시(용산구) ····· 364
제2019-103호 도시계획시설(이촌소공원 조성사업)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폐지 고시 (용산구) ····· 365
제2019-5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양천구) ····· 367
제2019-104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주차장) 실시계획인가 고시(강남구) ····· 369
제2019-95호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송파구) ····· 370
제2019-96호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송파구) ····· 375
제2019-98호 도시계획시설(일자산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강동구) ····· 379

◈ 구 공 고

제2019-55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중구) ····· 383
제2019-712호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노원구) ····· 385
제2019-1161호 도시관리계획[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구로구) ····· 387
제2019-995호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안) 열람공고(금천구) ····· 388

◈ 사업소고시

제2019-17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389

◈ 기 타

제2019-209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 390

자치법규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289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민관협력, 지역공동체”를 “전환도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회혁신담당관·민관협력담당관·지역공동체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을 두고, 사회혁신담당관·민관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지역공동체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을 “사회혁신담당관·전환도시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을 두고, 사회혁신담당관·전환도시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갈등조정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공동체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을 “갈등조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혁신 정책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사회혁신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3.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 앵커조직 육성 및 협업

제5조제5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제5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회혁신 등 시정사업 민관공동협력사업 지원 및 운영
7. 서울창의상 운영

제5조제5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관협력담당관”을 “전환도시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환도시 정책 수립 및 구체화에 관한 사항
2. 전환도시 관련 국제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술기반 사회혁신과제 발굴 및 확산
4. 유휴 저활용 공간 시민 활용 및 공유 활성화
5.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협업

6. 공유도시 계획 수립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제6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6조제5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교통방송 운영의 지도·감독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균형발전담당관·시민참여예산담당관·공기업담당관"을 각각 "재정균형발전담당관·공기업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경제정책실에 두는 과)"를 "(경제정책실에 두는 국·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를 "지방부이사관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경제일자리기획관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2조의 제목 "(복지정책실에 두는 과)"를 "(복지정책실에 두는 국·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복지정책과"를 "복지기획관·복지정책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복지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복지기획관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통기획관"을 "교통기획관·보행친화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하여"를 "관하여, 보행친화기획관은 보행정책, 자전거정책, 교통운영, 교통지도, 교통정보 등에 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한다.

제17조의2제5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광화문광장추진단, 주거재생과, 주거환경개선과, 한옥건축자산과를"을 "주거재생과, 주거환경개선과, 한옥건축자산과, 광화문광장추진단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9호를 제2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광화문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7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10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9호로 한다.

제23조의2제3항에 제28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하수도사용료 조정 및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29. 하수도사용료 현계에 관한 사항
30.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및 세입관리
31. 하수도사용료 징수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23조의2제4항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하수도사용료 현계”를 “폐수배출시설 관리 및 기술지도”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배출업소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23조의2제4항제17호 중 “하수도사용료 징수제도 개선”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8호 중 “폐수배출시설 관리 및 기술지도”를 “분뇨수거 및 처리, 가축분뇨”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9조제7항 중 “공정관리과·경전철과·신교통과”를 “공정관리과·신림선과·동북선1과·동북선2과”로 한다.

제97조제4항제5호 중 “청계천박물관 및 동대문역사관”을 “청계천박물관, 동대문역사관 및 서울생활사박물관”으로 한다.

제141조제1항 중 “감사담당관·안전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을 두고, 감사담당관·안전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공공감사담당관·안전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을 두고, 감사담당관·공공감사담당관·안전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시비보조단체·시금고의 감사
제141조제2항제10호 중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과 시비보조단체·시금고”를 “시비보조단체·시금고”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일상감사·사전컨설팅에 관한 사항
제14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공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감사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2.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감사, 감사결과 처리
3.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 평가
4.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상임감사 성과평가
5.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비리신고센터
제141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제8호 중 “공직자비리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를 “공직자비리신고센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공무직, 공공안전관 비위사항 조사·처리

제5장제3절(제143조 및 제144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제143조(위원장) 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은 시민민주주의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제1항의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44조(하부조직) ①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서울민주주의담당관·시민숙의예산담당관·서울협치담당관·지역공동체담당관을 두고, 서울민주주의담당관·시민숙의예산담당관·서울협치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지역공동체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서울협치담당관 및 지역공동체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서울민주주의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민민주주의 종합계획 수립
3. 시민참여 제도적 기반 조성 및 숙의, 공론 과정의 종합적 기획
4. 민주주의서울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④ 시민숙의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숙의예산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3.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에 관한 사항
4. 예산학교 운영 등 시민협력에 관한 사항
5. 시민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신고에 관한 사항
⑤ 서울협치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 및 지역 협치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정책수립
2. 위원회 관리업무 총괄
3. 민간전문가제도 운영
4. 시민사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공모·지원에 관한 사항
6.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업무 총괄
7.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8. NPO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9. 협치 지원관 운영
⑥ 지역공동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실행계획 수립 시행

2. 마을공동체 사업 총괄·조정 및 평가
3.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4.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5. 자치구 마을 생태계 조성 계획 수립 및 지원
6.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운영
7.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활동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8. 동단위 주민주도 계획 수립 및 지원
9. 커뮤니티 거점공간 조성, 운영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제5항, 제97조제4항제5호 및 제144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제5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중 "감사위원장"을 "감사위원장, 서울민주주의위원장"으로, "안전총괄본부장"을 "안전총괄실장"으로 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대통령령)의 개정으로 행정기구 수 확대에 따른 조치사항을 반영하고, 시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개편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분장 정비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신설에 따라 소관부서별 사무분장 사항 등을 규정하고, 타 실·본부·국과의 업무를 조정·이관함
1)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협치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을 두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및 서울협치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함(안 제143조)
2) 실·본부·국별 부서 및 사무 이관(안 제5조, 제10조, 제17조의2)
▸ 민관협력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서울혁신기획관→서울민주주의위원회
▸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기획조정실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민주시민교육 업무 : 평생교육국 → 서울민주주의위원회(2019. 8. 1.부터)
나. 실·본부·국별 부서 신설(안 제5조 및 제141조)
1) 서울혁신기획관에 전환도시담당관 신설 : 전환도시 정책, 국제행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협업 등 분장
※ 전환도시 국제행사 관련 업무는 2019. 11. 1.부터 시행함(안 부칙)

2) 감사위원회에 공공감사담당관 신설 : 지방공사·공단,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등 분장

다. 보조기관·보좌기관 신설 및 직제 정비(안 제11조부터 제13조)

1) 보조기관 직제정비 : 경제일자리기획관(경제정책실),
복지기획관(복지정책실)

2) 보좌기관 신설 및 직제정비 : 보행친화기획관(도시교통실)

라. 그 밖에 실·본부·국 내의 직제 및 사무분장 등 정비

1) 교통방송 독립법인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도·감독부서 변경(안 제6조, 제13조)

▸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2) 도시재생실(안 제20조의2)

▸ 조직 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광화문광장추진단의 직제순 조정

▸ 광화문광장 운영·관리 업무 이관 : 광화문광장추진단 → 재생정책과

3) 물순환안전국(안 제23조의2)

▸ 조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 내 부서 간 업무 통합·조정 사항 반영

4) 도시기반시설본부(안 제69조)

▸ 동북선2과 신설 : 동북선 착공에 따른 직제 신설

▸ 과 단위 명칭 변경 : 경전철과 → 신림선과, 신교통과 → 동북선1과

5) 개관 예정인 서울생활사박물관 관련 업무를 서울역사박물관에 신설함(안 제97조)

▸ 개관시기를 고려하여 2019. 8. 1.부터 시행함(안 부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290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계	18,533	4,571	333	8,032	5,359	238

같은 표 일반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536	4,383	324	401	5,190	238

같은 표 2·3급 소계란, 이사관또는부이사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 3급 소계	24	18		1	3	2
이사관또는 부이사관	23	17		1	3	2

같은 표 3급 소계란, 부이사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급 소계	20	10		1	9	
부이사관	20	10		1	9	

같은 표 4급 소계란, 서기관란, 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급 소계	246	145	17	8	67	9
서기관	100	73	7	7	9	4
서기관또는 기술서기관	70	50			15	5

같은 표 4·5급 중 서기관또는행정사무관란, 서기관·기술서기관또는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서기관또는 행정사무관	4	4				
서기관 · 기술서기관또는 행정사무관 · 시설사무관	5	5				

같은 표 5급 소계란, 행정란, 시설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급 소계	1,394	895	45	54	352	48
행정	639	440	42	22	94	41
시설	188	115			72	1
행정 · 공업또는시설	85	74		1	8	2

같은 표 6급 소계란, 행정란, 세무란, 사회복지란, 전산란, 공업란, 환경란, 시설란, 행정또는 학예연구사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 행정·공업·시설·전산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급 소계	3,389	1,765	104	102	1,305	113
행정	1,262	806	80	40	257	79
세무	49	46	2			1
사회복지	22	19			3	
전산	86	61	3	3	16	3
공업	345	113	6	4	220	2
환경	42	23		13	6	
시설	546	294	2	2	230	18

행정또는 학예연구사	26	13			13	
행정 · 공업또는 시설	85	74			6	5
행정 · 공업 · 시설 · 전산	9	7			1	1

같은 표 7급 소계란, 행정란, 사회복지란, 전산란, 공업란, 환경란, 시설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급 소계	3,394	1,292	101	147	1,791	63
행정	1,278	669	71	59	433	46
사회복지	34	19	1		13	1
전산	128	76	5	9	37	1
공업	409	30	5	12	360	2
환경	41	9		19	13	
시설	500	206	1	5	280	8
행정 · 공업또는시설	41	36		1		4

같은 표 8급 소계란, 행정란, 사무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급 소계	1,691	203	48	79	1,358	3
행정	225	35	15	16	158	1

사무운영	186	49	13	17	105	2

같은 표 연구직 계란, 연구관 소계란, 학예연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직 계	387	25		193	169	
연구관 소계	62	2		35	25	
학예연구	21	2			19	

같은 표 연구사 소계란, 학예연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사 소계	325	23		158	144	
학예연구	98	18		2	7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본청에서 사업소로 정원 이체(11명 : 행정6급 1명, 시설6급 1명, 행정또는학예연구사6급 1명, 행정7급 2명, 공업7급 1명, 행정8급 1명, 학예연구관 1명, 학예 연구사3명)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총 정원을 18,472명에서 18,533명으로 61명을 증원한 사항과 행정기구 신설, 업무이관 및 효율적인 인력운용 등을 위한 직렬 조정 및 정원 이체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신설 및 시정 핵심사업 추진인력 증원 (+61명)

1)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등 3급 이상 행정기구 신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전담하는 '공공감사담당관' 신설 등 시정 핵심사업 추진인력 증원 (+56명)

2)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및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의정활동 지원인력 증원(+5명)

나. 행정기구 신설, 업무이관, 효율적인 인력운용 등을 위한 직렬 조정 및 정원 이체(71명)

1) 공공개발 기능 강화를 위한 직렬 조정(1명)

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신설에 따른 정원 이체(58명)
: 본청 4급 △3, 5급 이하 △55 → 합의제 4급 +3, 5급 이하 +55

3) 납세자보호관 업무 이관(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법무담당관)에 따른 정원 이체(1명)
: 합의제 5급 이하 △1 → 본청 5급 이하 +1

4) 서울생활사박물관 업무 이관(박물관과→서울역사박물관)에 따른 정원 이체(11명)
: 본청 5급 이하 △11 → 사업소 5급 이하 +11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942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의 개정('19. 7. 18.)으로 공채상환 안내가 의무화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증권 및 은행 계좌를 통한 원리금 상환 규정을 신설하고(안 16조), 매입신청서와 매입증서 양식에 이를 반영함(안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나. 상환일 이전 미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공채상환 안내 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18조)

다. 조례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공채상환 공고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철도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도시철도과(전화: 02)2133-4343, 팩스: 02-2133-1069, 이메일: ee3344@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996호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마곡광장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장의 사용허가 제한 사유를 규정함(안 제2조)
1) 사용일이 광장의 청소, 정비, 보수 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때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위치, 수량, 높이 등이 광장의 경관을 현저히 해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광장의 시설물을 파손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지체 또는 불이행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받은 경우
4)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고, 다른 행사와 중복될 경우
나. 질서·청결 유지, 영리목적의 광고 및 판매행위 금지 등 광장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광장의 사용료는 ㎡/시간 당 10원으로 하고,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함(안 제4조 및 별표)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서남권사업과,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4층)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남권사업과(전화 : 02)2133-1526, FAX : 02)2133-1015, E-mail : jakim@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table>
<tr><td rowspan="2">1. 규제사무명</td><td rowspan="2">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td><td colspan="8">2. 구 분</td></tr>
<tr><td>신설</td><td>○</td><td>강화</td><td></td><td>내용 심사</td><td></td><td>존속 기한 연장</td><td></td></tr>
<tr><td>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td><td colspan="9">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서남권사업과장 오희선, 정책지원팀장 신흥교, 담당 김정애</td></tr>
<tr><td>4. 근거법령명등</td><td colspan="4">해당없음</td><td colspan="2">관 련 규제수</td><td colspan="3">2</td></tr>
<tr><td>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9">시민</td></tr>
<tr><td>6. 규제존속기한</td><td colspan="9">해당없음</td></tr>
<tr><td>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td><td colspan="9">○ 제2조(사용허가의 제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장에 대한 청소, 정비, 보수 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때
2. 광장에 설치할 시설물의 위치, 수량, 높이 등이 경관을 현저히 해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광장의 시설물을 파손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지체 또는 불이행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조례 제10조에 의해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4.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고, 다른 행사와 중복될 경우
○ 제3조(준수사항)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td></tr>
</table>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사용허가의 제한 (시행규칙안 제2조)

- 광장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해 유지 보수 기간 중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
- 광장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최근 1년 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광장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광장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 허가를 제한 할 수 있음
- 시민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활동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는 등 특정 개인, 집단의 이익을 위한 장소로 광장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영리행위 금지 (시행규칙안 제3조제4호)

- 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등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공간으로 특정 개인, 집단을 위한 영리 목적의 장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마곡광장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운영관리를 위한 근거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 활동 활성화에 기여함

○ 사용허가의 제한과 준수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유사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있음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공공장소인 마곡광장을 특정 단체, 개인이 무분별하게 이용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사용허가 제한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편익을 증대할 수 있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해당없음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997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 되었고, 또한 특별교통수단 상위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도 개정('19. 7. 5.) 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 (안 제15조의1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택시물류과(전화 : 2133-2347, FAX : 2133-1050, E-mail : duck9326@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000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한시기구 정비를 통해 시정 핵심과제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한시기구인 남북협력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10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 02- 2133-6724, FAX : 02-2133-0822, E-mail : moonjh88@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001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강서소방서 마곡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소요인력을 적기에 배치하고자 서울시 총정원을 18,533명에서 18,561명으로 28명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마곡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소방공무원 증원(+28명)
※ 증원에 따른 연간 인건비 소요비용 : 2,045,896천원(2019년도 예산편성기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 6724, FAX: 02-2133-0822, E-mail: moonjh88@seoul.go.kr)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002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시정 안내 및 시민소통 창구 일원화를 통한 효과적인 시정 홍보를 위해 시 홈페이지 운영 업무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 홈페이지 운영 업무 이관
- 정보시스템담당관(스마트도시정책관) → 뉴미디어담당관(시민소통기획관)
나. 시정간행물 제작, 통합관리 및 총괄·조정부서 현행화
- 뉴미디어담당관(시민소통기획관) → 시민소통담당관(시민소통기획관)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 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 02-2133-6724, FAX : 02-2133-0822, E-mail : moonjh88@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005호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자격 및 권한,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업무 사무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납세자보호관의 자격요건, 업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1) 시장은 시세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부서에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납세자 보호 담당자를 둠
2) 납세자보호관은 4급 또는 5급(상당)으로 함
3) 자격요건은 지방세 관련 업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음
4) 납세자보호관은 시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등의 업무를 처리함
5) 납세자보호관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요구 등의 권한을 가지며,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음
나. 특정 금액 이상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와 납세자보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9조)
다. 고충민원의 대상,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1) 과세전적부심사 등 법령에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시세관련 고발·고소, 과태료의 부과·통고처분 등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함
2) 고충민원 제출 기한은지방세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로 함
3) 고충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되,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4) 고충민원을 처리할 때 고충민원을 신청하기 전 받은 처분보다 민원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음
5) 그 밖에 반복 제기된 고충민원 처리 절차, 고충민원의 취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규정

1) 세무부서장 또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하여야 함

3)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하여야 함

마. 권리보호요청의 대상,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1) 권리보호요청은 자료제출·세액 완납 등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를 지연하는 행위, 독촉없는 재산압류, 정당한 사유없는 당사자의 과세정보 열람 거부 등을 대상으로 함

2)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로 함

3) 권리보호요청은 7일 이내에 처리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처리함

바. 납세자권리헌장의 제·개정, 시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법무담당관(전화 02)2133-6688, FAX: 02)2133-0821, E-mail : tj208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37호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 독바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서울시 고시 제2016-247호, 2016.8.11.】에 의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대상 지역인 은평구 불광동 227-7번지 일대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독바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규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불광동 227-7번지 일대	-	증) 44,258.0	44,258.0	-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증)44,258.0	44,258.0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	증)8,519.0	8,519.0	19.3	-
	도 로		-	증)3,216.0	3,216.0	7.3	-
	공 원	소 계	-	증)5,303.0	5,303.0	12.0	-
		공원1	-	증)3,383.0	3,383.0	7.6	소공원
		공원2	-	증)1,715.0	1,715.0	3.9	소공원
		공원3	-	증)205.0	205.0	0.5	불광근린공원
획 지	소 계		-	증)35,739.0	35,739.0	80.7	-
	획 지1		-	증)34,435.0	34,435.0	77.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 지2		-	증)397.0	397.0	0.9	교육연구시설 (유치원)
	획 지3		-	증)331.0	331.0	0.7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구대)
	획 지4		-	증)576.0	576.0	1.3	문화 및 집회시설 (다문화박물관)

※ 획지2,3,4는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없음

4.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4,258	-	44,258	100.0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82	감) 177	205	0.5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9,910	감) 20,292	9,618	21.7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20,469	20,469	46.2	-
	준주거지역	13,966	-	13,966	31.6	-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 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	불광동 산 58-2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177㎡	•독바위역(6호선)으로부터 2차 역세권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역세권 활성화 및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불광동 634일대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	제3종일반 주거지역	20,292㎡	
	불광동 221-37일대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	준주거	8,187㎡	•독바위역(6호선)으로부터 1차 역세권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역세권 활성화 및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불광동 13-29 일대	준주거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	8,187㎡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공원 신설, 대체부지 확보 등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5.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1	12	집산 도로	1,820	불광동	불광동	일반도로	-	건고 제2493호 ('66.06.21)	구역내 구간 일부 확폭 (12m→20~23m)
변경	중로	1	1	20~23	집산 도로	1,820 (410)	불광동 (불광동 239-21)	불광동 (불광동 220-2)	〃	-	〃	
기정	소로	1	6	10	국지 도로	70	불광동 221-59	불광동 230-13	〃	-	서고 제468호 (2008.12.18)	-
변경	소로	1	6	6~10	〃	117 (79)	불광동 221-57	불광동 230-23	〃	-	〃	-
폐지	소로	3	2	6	국지 도로	307	불광동 221-23	불광동 220-1	〃	-	-	-
폐지	소로	3	-	6	국지 도로	33	불광동 230-45	불광동 230-46	-	-	-	-

※ ( )는 구역내 사항임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1	중로1-1	•구역내 구간 확폭 (12m→20~23m) 및 선형개선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한 구역내 구간 확폭 및 굴곡구간 선형개선
소로1-6	소로1-6	•일부구간 연장 - 폭원 : 6m→6~10m	•불광동 221-57번지(유치원) 진 · 출입도로 존치
소로3-2	-	•도로폐지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기능 상실
소로3-			

나. 철도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세분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2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6호선)	은평구 역촌동	중랑구 신내동	-	36,100 (490)	-	교통부고시 제1993-5호 (1993.4.13)	-

※ ( )는 구역내 연장임

다.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시설명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원1	소공원	불광동 13-33번지 일대	864	증) 2,519	3,383	건고 제1671호 (1965.7.8)	-
신설	공원2	소공원	불광동 238-16번지 일대	-	증) 1,715	1,715	-	-
기정	공원3	근린공원	불광동 산58-17번지 일대	130,705 (-)	-	130,705 (205)	건고 제138호 (1977.7.14)	-

※ ( )는 구역내 포함되는 공원면적임

■ 공원 변경 사유서

시설명	세분류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원1	소공원	•공원 면적 증가 - 면적 : 864㎡→3,383㎡	•독바위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와 인근주민의 휴식과 여가증진을 위한 면적 증가
공원2	소공원	•공원 신설 - 면적 : 1,715㎡	•인근주민의 휴식과 여가증진을 위한 공원 신설

6. 공동이용시설 및 커뮤니티지원시설 설치계획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동이용 시설	소 계	-	-	-	4,870	-
	경로당	획지1	-	증) 380	380	-
	주민공동시설		-	증) 480	480	-
	주민운동시설		-	증) 1,000	1,000	-
	어린이놀이터		-	증) 1,800	1,800	-
	관리사무소		-	증) 420	420	-
	어린이집		-	증) 580	580	-
	작은도서관		-	증) 210	210	-
커뮤니티 지원시설	소 계	-	-	-	3,750	-
	어린이집	획지1	-	증) 1,600	1,600	-
	휘트니스		-	증) 2,150	2,150	-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음

7.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신설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44,258	-	-	불광동 227-7번지 일대	164	-	-	164	-	-

나. 건축시설계획

<table>
<tr><th rowspan="2">결정 구분</th><th colspan="2">구역구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구분</th><th rowspan="2">위치</th><th rowspan="2">주된 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rowspan="2">용적률 (%)</th><th rowspan="2">높이(m) 최고층수</th><th rowspan="2">비고</th></tr>
<tr><th>명칭</th><th>면적(㎡)</th><th>명칭</th><th>면적(㎡)</th></tr>
<tr><td rowspan="4">신설</td><td rowspan="4">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td><td rowspan="4">44,258</td><td>획지1</td><td>34,435</td><td>불광동 227-7번지 일대</td><td>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td><td>40이하</td><td>350 이하</td><td>54m이하 (최고15층)</td><td>-</td></tr>
<tr><td>획지2</td><td>397</td><td>불광동 238-27번지 일대</td><td>교육연구시설 (유치원)</td><td colspan="4">관계법령에 따름</td></tr>
<tr><td>획지3</td><td>331</td><td>불광동 238-28번지 일대</td><td>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구대)</td><td colspan="4">관계법령에 따름</td></tr>
<tr><td>획지4</td><td>576</td><td>불광동 239-10번지 일대</td><td>문화및집회시설 (다문화박물관)</td><td colspan="4">관계법령에 따름</td></tr>
<tr><td colspan="2">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9">•총 세대수 : 공동주택 1,305세대(공공임대 374세대, 임대 148세대, 일반분양 783세대)
•85㎡이하 규모의 주택연면적이 전체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91.49%
<table>
<tr><th>구분(전용면적)</th><th>계</th><th>분양</th><th>공공임대주택</th><th>임대주택</th></tr>
<tr><td>계</td><td>1,305(100.0%)</td><td>783</td><td>374</td><td>148</td></tr>
<tr><td>60㎡이하</td><td>961(73.6%)</td><td>439</td><td>374</td><td>148</td></tr>
<tr><td>60㎡초과~85㎡이하</td><td>233(17.8%)</td><td>233</td><td>-</td><td>-</td></tr>
<tr><td>85㎡초과</td><td>111(8.6%)</td><td>111</td><td>-</td><td>-</td></tr>
</table></td></tr>
<tr><td colspan="2">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td><td colspan="9">•건축한계선 : 불광로변 3m
•공공보행통로
- 위치 : 공원1(소공원)~불광동 230-4번지
- 폭원 : 20m(공공보행통로 상부 개방)
•보차혼용통로
- 위치 : 획지3(불광동 239-8번지)
- 폭원 : 6m</td></tr>
<tr><td colspan="2">2차역세권 포함</td><td colspan="9">•「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2-1-4에 의거 2차역세권(1,403㎡, 3.2%)을 사업부지에 포함</td></tr>
</table>

※ 높이는 지반고를 제외한 건축물 높이를 의미함

■ 용적률 계획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5">내 용</th></tr>
<tr><td rowspan="2">토지이용계획</td><td>합계
(구역면적)</td><td>획지1
(공동주택)</td><td>계획정비기반시설
(도로, 공원)</td><td>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td><td>획지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td></tr>
<tr><td>44,258㎡</td><td>34,435㎡</td><td>8,519㎡</td><td>1,575㎡</td><td>2,213.4㎡</td></tr>
<tr><td>공공시설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5">•계획정비기반시설 –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내 용도폐지되는 정비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8,519㎡ – 1,575㎡ – 2,213.4㎡ = 4,730.6㎡
•순부담 면적 = 4,730.6㎡(종상향 면적(34,435㎡) 대비 13.7%)</td></tr>
<tr><td>패키지
허용용적률
계획</td><td colspan="5">•기준용적률 : 206.10%(용도지역별 면적에 따른 가중평균)
•허용용적률 : 338.15%(패키지 허용용적률 계획 적용)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건축계획(안)</th></tr>
<tr><td colspan="2">공공임대주택 공급</td><td>•완화되는 용적률의 50/100 이상 (66.02% 이상)
= 법정 : 22,734㎡(66.02%이상) 〈 계획 22,741.45㎡(66.04%)</td></tr>
<tr><td rowspan="4">필수
항목</td><td>리모델링이
쉬운구조</td><td>•「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3조 제5호의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에 적합할 것</td></tr>
<tr><td>커뮤니티
지원시설</td><td>•커뮤니티 지원시설(300세대 이상 : 공동주택 지상층 연면적의 3%이상)
⇒ 어린이집, 휘트니스센터(법정: 3,198.9㎡ 이상 〈 계획: 3,750㎡)</td></tr>
<tr><td>에너지 효율
건축물</td><td>•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의 평점합계 86점 이상,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인증</td></tr>
<tr><td>친환경 건축물</td><td>•건축법 제65조 및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주택사업은 최우수등급, 기타 건축·주택사업은 우수등급 이상</td></tr>
<tr><td>선택
항목</td><td>신재생에너지
사용</td><td>•「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은 표준건축공사비의 1% 이상, 일반건축물은 3%이상 설치</td></tr>
</table>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4-4-1에 의거하여 종전 기준 적용</td></tr>
<tr><td>상한용적률
산정</td><td colspan="5">•기준용적률 206.10%, 허용용적률 338.15%, 공공임대주택 건립 용적률 66.02%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주)×(1+1.3×가중치×α) +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 272.13%×(1+1.3×0.8484×0.1374) + {(338.15%-206.10%)/2}
= 313.36% + 66.02%
= 379.38% → 350%이하 적용(계획 : 347.55%)</td></tr>
<tr><td>가중치</td><td colspan="5">•공공시설부지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286.88% / 338.15% = 0.8484</td></tr>
<tr><td>a</td><td colspan="5">•공공시설 제공부지 면적 /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 4,730.6㎡ / 34,435㎡ = 0.1374</td></tr>
</table>

주) 허용용적률은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용적률 제외 : 272.13% = 338.15% – 66.02%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보전	• 자연환경: 빗물의 지하침투율이 최대가 되도록 조경면적 최대 반영 – 주변단지와 도로 Level에 맞게 계획 – 녹지면적증가, 지구내 녹지공간조성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 • 생활환경: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계획 – 청정연료(LNG) 사용, 환경정화수종 식재 – 시행후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포장면적의 축소 • 사업시행 중 예상되는 환경영향 저감 방안 – 장비 분산투입, 작업장내 차속제한, 저소음, 저진동 공사장비 투입, 야간작업 지양	–
재난방지	• 지반붕괴를 유발하거나 유수기능을 저해하는 무질서한 절성토의 규제 • 집중호우시를 대비하여 우·오수관로 개량 및 설치계획을 수립 • 공원의 녹음시설을 통한 수해예방효과를 기대(우수의 침투 및 보수효과) • 건축법 및 주택법의 방화, 소방, 피난 등의 설치 기준을 준수 • 재해시 소방도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단지내 동선체계 구축 • 비상시 보행자동선이 비상도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 • 단지내 도로의 노상주차를 지양하고 지하로 유도	–

9.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름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정비사업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현황 : 609세대 계획 : 1,305세대 증) 696세대	–

10.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비 고
•대상지 북동측 약 170m 지점에 수리초교, 대상지 남측 약 300m 지점에 불광초교 입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에 의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인가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 예정 •공사 시 발생하는 교육환경 저해요소에 대해서는 인근 교육시설에 대한 지장이 최대한 없도록 계획	–

11. 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가. 임대주택 건설 계획

건 립 위 치	세 대 수	세대규모 (전 용)	비 고
획 지1	90(39.2%)	40㎡이상~45㎡이하	–
	58(60.8%)	45㎡초과~60㎡이하	–
합 계	148(100.0%)	–	–

나.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

건 립 위 치	세 대 수	세대규모 (전 용)	비 고
획 지1	301(80.5%)	40㎡이상~45㎡이하	–
	73(19.5%)	45㎡초과~60㎡이하	–
합 계	374(100.0%)	–	–

※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함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불광동 227-7번지 일대	-	증) 44,258.0	44,258.0	100.0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위치	결정사유
신설	불광동 227-7번지 일대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 의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4,258	-	44,258	100.0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82	감) 177	205	0.5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9,910	감) 20,292	9,618	21.7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20,469	20,469	46.2	-
	준주거지역	13,966	-	13,966	31.6	-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 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	불광동 산 58-2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177㎡	•독바위역(6호선)으로부터 2차 역세권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역세권 활성화 및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불광동 634일대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	제3종일반 주거지역	20,292㎡	
	불광동 221-37일대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	준주거	8,187㎡	•독바위역(6호선)으로부터 1차 역세권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역세권 활성화 및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불광동 13-29 일대	준주거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	8,187㎡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공원 신설, 대체부지 확보 등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나.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1	12	집산 도로	1,820	불광동	불광동	일반도로	–	건고 제2493호 ('66.06.21)	구역내 구간 일부 확폭 (12m→20~23m)
변경	중로	1	1	20~23	집산 도로	1,820 (410)	불광동 (불광동 239-21)	불광동 (불광동 220-2)	〃	–	〃	
기정	소로	1	6	10	국지 도로	70	불광동 221-59	불광동 230-13	〃	–	서고 제468호 (2008.12.18)	–
변경	소로	1	6	6~10	〃	117 (79)	불광동 221-57	불광동 230-23	〃	–	〃	–
폐지	소로	3	2	6	국지 도로	307	불광동 221-23	불광동 220-1	〃	–	–	–
폐지	소로	3	–	6	국지 도로	33	불광동 230-45	불광동 230-46	–	–	–	–

※ ( )는 구역내 사항임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1	중로1-1	•구역내 구간 확폭 (12m→20~23m) 및 선형개선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한 구역내 구간 확폭 및 굴곡구간 선형개선
소로1-6	소로1-6	•일부구간 연장 - 폭원 : 6m→6~10m	•불광동 221-57번지(유치원) 진 · 출입도로 존치
소로3-2	–	•도로폐지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기능 상실
소로3-			

(2) 철도

■ 철도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세분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2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6호선)	은평구 역촌동	중랑구 신내동	–	36,100 (490)	–	교통부고시 제1993-5호 (1993.4.13)	–

※ ( )는 구역내 연장임

2)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시설명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원1	소공원	불광동 13-33번지 일대	864	증) 2,519	3,383	건고 제1671호 (1965.7.8)	-
신설	공원2	소공원	불광동 238-16번지 일대	-	증) 1,715	1,715	-	-
기정	공원3	근린공원	불광동 산58-17번지 일대	130,705 (-)	-	130,705 (205)	건고 제138호 (1977.7.14)	-

※ ( )는 구역내 포함되는 공원면적임

■ 공원 변경 사유서

시설명	세분류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원1	소공원	•공원 면적 증가 - 면적 : 864㎡→3,383㎡	•독바위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와 인근주민의 휴식과 여가증진을 위한 면적 증가
공원2	소공원	•공원 신설 - 면적 : 1,715㎡	•인근주민의 휴식과 여가증진을 위한 공원 신설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구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1	①	35,739	불광동 227-7번지 일대	34,43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불광동 238-27번지 일대	397	교육연구시설 (유치원)
3			불광동 238-28번지 일대	331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구대)
4			불광동 239-10번지 일대	576	문화 및 집회시설 (다문화박물관)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조서

위치		구분	계획내용
획지번호	면적(㎡)		
획지1	34,435	허용용도 (A)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의 제13호, 제14호 및 동법 제35조에 의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 이	• 54m 이하(최고 15층)
		공공보행통로	• 위치 : 공원1(소공원)~불광동 230-4번지 • 폭원 : 20m(공공보행통로 상부 개방)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 : 불광로변 3m
획지2	397	허용용도 (B)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연면적의 50% 이상 유치원 확보) • 그 외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용도
획지3	331	허용용도 (C)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 (연면적의 50% 이상 지구대 확보) • 그 외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용도
		보차혼용통로	• 위치 : 획지3(불광동 239-8번지) • 폭원 : 6m
획지4	576	허용용도 (D)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연면적의 50% 이상 박물관 확보) • 그 외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용도

Ⅲ. 독바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

1. 결정(변경)취지

○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따라 재개발정비구역에 해당하는 독바위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 제척 및 계획내용 폐지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독바위 지구단위계획구역	불광동 13-9번지 일대	31,010	감)13,966	17,044	100.0	서울시고시 제1996-149호 (1996.6.10)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되는 부분의 지구단위계획은 폐지 후 정비계획에 따름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구역제척 - 면적 31,010㎡ → 17,044㎡ (감 13,966㎡)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

3.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1,010	감) 13,966	17,044	100.0	-
준주거지역	31,010	감) 13,966	17,044	100.0	서울시고시 제1996-149호 (1996.6.10)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준주거지역 면적 변경 - 31,010㎡→17,044㎡ (감 13,966㎡)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함에 따라 준주거지역 면적 감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4	15	집산 도로	45	불광동 12	불광동 11-1	일반 도로	서고 제2002-60호 (2002.3.5)	-
기정	중로	1	1	12	집산 도로	1,820 (317)	불광동 (불광동 233-13)	불광동 (불광동 13-39)	일반 도로	건고 제2493호 (66.6.21)	-
변경	중로	1	1	20~23	집산 도로	1,820 (317)	불광동 (불광동 239-21)	불광동 (불광동 217-3)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150 (135)	불광동 17-350 (불광동 13-24)	불광동 17-684 (불광동 17-684)	일반 도로	서고 제2694호 (2006.4.6)	-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432 (53)	불광동 13-9 (불광동 13-9)	불광동 189 (불광동 13-6)	일반 도로	서고 제3호 (69.1.18)	-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438 (203)	불광동 11-17 (불광동 11-26)	불광동 17-9 (불광동 16-201)	일반 도로	서고 제3호 (69.1.18)	-

주)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1	〃	•도로확폭 - 폭:12m →20~23m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따라 도로 일부 확폭

2)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②	공원	불광1동 13-33,47,58,67,221-10	864	감) 864	-	건고 제1671호 (1965.7.8)	-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공원	•공원폐지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따라 공원 폐지

(2) 공공공지(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③	공공공지	불광1동 10	122	-	122	서고 제2002-60호 (2002.3.5)	-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최대개발규모(변경없음)

구 분		최대개발규모(㎡)	비 고
기정	계획대상지 전체	500	-

주) 단,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개발규모 적용 예외
-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한 공동개발 필지인 경우
- 토지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본 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 이전에 한함)
- 기 필지규모가 상기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2)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

구 분	계획기준	비 고
공동개발 (지정)	•필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기 공동개발되어 있는 경우 •맹지형 필지인 경우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필지로서 신축시 주변건물과 전면폭의 차이가 심하여 경관상 문제가 될 경우	-
공동개발 (권장)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부정형필지 및 과소필지와 인접한 경우	-

주) 계획기준 변경은 없으나 가구번호 A, E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으로 인하여 공동개발계획을 폐지함

■ 가구 및 획지조서

구분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공동개발면적(㎡)	비고
기정	A	2,592	불광1동 221-2	258		
			불광1동 221-1	197	212	공동개발(지정)
			불광1동 221-67	15		
			불광1동 13-69	1	434	공동개발(지정)
			불광1동 13-86	18		
			불광1동 13-27	415		
			불광1동 221-3	202		
			불광1동 221-7	261		
			불광1동 13-29	398	413	공동개발(지정)
			불광1동 13-72	15		
			불광1동 13-45	2	247	공동개발(지정)
			불광1동 13-31	245		
			불광1동 13-32	304		
			불광1동 221-75	131		
			불광1동 221-9	130		
변경(폐지)	A	2,592	불광1동 221-2	258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라 가구계획 및 공동개발계획 삭제
			불광1동 221-1	197	212 (공동개발 지정)	
			불광1동 221-67	15		
			불광1동 13-69	1	434 (공동개발 지정)	
			불광1동 13-86	18		
			불광1동 13-27	415		
			불광1동 221-3	202		
			불광1동 221-7	261		
			불광1동 13-29	398	413 (공동개발 지정)	
			불광1동 13-72	15		
			불광1동 13-45	2	247 (공동개발 지정)	
			불광1동 13-31	245		
			불광1동 13-32	304		
			불광1동 221-75	131		
			불광1동 221-9	130		
기정	B	2,156	불광1동 13-9	623		
			불광1동 13-7	301		
			불광1동 13-8	254		
			불광1동 13-11	370		
			불광1동 13-14	202		
			불광1동 13-15	251		
			불광1동 13-13	155		

주) 가구 B, C, D는 변경없음

구분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공동개발면적(㎡)	비고
기정	C	2,460	불광1동 13-96	1	235	공동개발(권장)
			불광1동 13-16	234		
			불광1동 13-18	283		
			불광1동 13-17	221		
			불광1동 13-20	251		
			불광1동 13-19	215		
			불광1동 13-22	271		
			불광1동 13-21	211		
			불광1동 13-23	224		
			불광1동 13-24	245		
			불광1동 13-25	304		
기정	D	3,505	불광1동 11-1	40	205	공동개발(권장)
			불광1동 11-19	165		
			불광1동 12	151		
			불광1동 11-45	13	455	공동개발(지정)
			불광1동 12-2	350		
			불광1동 16-308	14		
			불광1동 16-309	29		
			불광1동 16-317	4		
			불광1동 16-318	45		
			불광1동 11-7	367	440	공동개발(지정)
			불광1동 11-44	5		
			불광1동 16-310	57		
			불광1동 16-311	11		
			불광1동 11-8	251		
			불광1동 11-9	251		
			불광1동 11-13	248		
			불광1동 11-10	251		
			불광1동 11-11	245		
			불광1동 11-14	252		
			불광1동 11-15	469		
			불광1동 11-17	287		

주) 가구 B, C, D는 변경없음

구분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공동개발면적(㎡)	비고
기정	E	8,998	불광1동 238-28	238		
			불광1동 238-27	258		
			불광1동 239-7	364		
			불광1동 239-17	202	212	공동개발(지정)
			불광1동 239-71	10		
			불광1동 238-46	158		
			불광1동 239-4	275		
			불광1동 239-16	245		
			불광1동 238-17	336		
			불광1동 238-16	418		
			불광1동 222-10	235		
			불광1동 222-11	168		
			불광1동 222-22	136	297	공동개발(권장)
			불광1동 222-23	9		
			불광1동 222-9	152		
			불광1동 238-15	202		
			불광1동 221-56	268		
			불광1동 222-8	216		
			불광1동 221-55	218		
			불광1동 221-54	238		
			불광1동 222-6	208	446	공동개발(권장)
			불광1동 222-14	13		
			불광1동 222-7	225		
			불광1동 222-3	134		
			불광1동 222-2	180		
			불광1동 222-1	235		
			불광1동 221-53	261		
			불광1동 222-5	221		
			불광1동 221-52	268		
			불광1동 239-9	552		
			불광1동 239-2	257		
			불광1동 239-18	317	334	공동개발(권장)
			불광1동 13-63	17		
			불광1동 221-51	195		
			불광1동 221-50	188		
			불광1동 221-49	159		
			불광1동 239-1	254		
			불광1동 13-36	213		
			불광1동 13-35	218		
			불광1동 221-48	215		
			불광1동 13-34	89		
			불광1동 13-68	188		

구분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공동개발면적(㎡)	비고
변경 (폐지)	E	8,998	불광1동 238-28	238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라 가구계획 및 공동개발계획 삭제
			불광1동 238-27	258		
			불광1동 239-7	364		
			불광1동 239-17	202	212 (공동개발 지정)	
			불광1동 239-71	10		
			불광1동 238-46	158		
			불광1동 239-4	275		
			불광1동 239-16	245		
			불광1동 238-17	336		
			불광1동 238-16	418		
			불광1동 222-10	235		
			불광1동 222-11	168		
			불광1동 222-22	136	297 (공동개발 권장)	
			불광1동 222-23	9		
			불광1동 222-9	152		
			불광1동 238-15	202		
			불광1동 221-56	268		
			불광1동 222-8	216		
			불광1동 221-55	218		
			불광1동 221-54	238		
			불광1동 222-6	208	446 (공동개발 권장)	
			불광1동 222-14	13		
			불광1동 222-7	225		
			불광1동 222-3	134		
			불광1동 222-2	180		
			불광1동 222-1	235		
			불광1동 221-53	261		
			불광1동 222-5	221		
			불광1동 221-52	268		
			불광1동 239-9	552		
			불광1동 239-2	257		
			불광1동 239-18	317	334 (공동개발 권장)	
			불광1동 13-63	17		
			불광1동 221-51	195		
			불광1동 221-50	188		
			불광1동 221-49	159		
			불광1동 239-1	254		
			불광1동 13-36	213		
			불광1동 13-35	218		
			불광1동 221-48	215		
			불광1동 13-34	89		
			불광1동 13-68	188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위치	전층	특정층
기정	불허용도	A	간선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단, 기숙사 및 주거복합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
		B	이면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
기정	권장용도	1	간선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 및 노인복지시설	-
		2	이면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및 안마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 및 노인복지시설	-

주)권장용도의 면적구성은 건물 전체용도의 경우 당해용도가 전체 연면적(지하층 및 코아부분 제외)의 30%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수용된 것으로 본다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1) 건폐율 계획(변경없음)

구 분		건폐율(%)	비 고
기정	준주거지역	60%	-

(2) 용적률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정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불광동길변	300%	360%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이면부	250%	360%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주)상한용적률 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준수

(3) 높이계획(변경없음)

구 분			기준높이	최고높이	비 고
기정	준주거지역	간선부	20m	30m	
		이면부	-	20m	

주1) 최고높이는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높이완화 항목을 준수할 경우 최고높이 범위안에서 높이완화 가능

주2) 별도의 기부채납시 최고높이에서 1.2배까지 최고높이 추가 완화 가능. 단, 12이상 도로에 접하고 부지면적 500㎡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건축물 개발밀도 분류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SR1	불광동 239-9번지 일대	건폐율	60%
		용적률(기준/허용)	300%/360%
		높이(기준/최고)	20m/30m
SR2	불광동 11-19번지 일대	건폐율	60%
		용적률(기준/허용)	300%/360%
		높이(기준/최고)	20m/30m
SR3	불광동 238-16번지 일대	건폐율	60%
		용적률(기준/허용)	250%/360%
		높이(기준/최고)	-/20m

3) 건축물 건축선·배치·형태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배치	건축한계선	•간선도로변 : 1m •이면도로변, 블록내부 : 1~2m	
형태	1층부 형태	•개구부 통일성 유지 •투시형 셔터 권장	

다.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간선도로의 건축선 후퇴부분의 보행공간, 녹지조성	불광동길변
	공개공지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점 주변에 배치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변경	
보차혼용통로	•도로 중심선에서 당해 폭원 확보(4m)	폐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됨에 따라 폐지

3) 경관 및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건축물 외벽처리	•주변 경관과 조화된 형태 및 재료사용 권장	
옥외광고물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모든 옥외광고물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기준" 준수	
색채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 유도	
조명	•가로경관 수준 향상 및 야간 경관 증진 •건축물의 외벽 조명 설치 권장	
차양 설치	•불광동길변의 상가의 독특한 이미지 창출 •건축물의 1층 상단, 2층하단에 설치, 폭 1m이상	
자연지반보존	•저층부의 바닥, 비건폐지등을 자연재료로 조성하되 지하부 인공구조물 미 설치 권장	
옥상녹화	•"서울특별시 보급형 옥상녹화조성기법 (2001.10.24)"에 의한 설치 권장	
녹색주차장	•"서울특별시 녹색주차장 활성화계획" 에 따라 설치토록 권장	
중수도시설	•하수도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 권장	
빗물이용시설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에 따라 설치토록 권장	
신·재생에너지 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 법령"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산자부 고시 제2007-52)"의 기준에 따라 시설 설치 권장	

4) 인센티브 운용계획

(1)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기준(변경없음)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유형

구분	용도지역	공간특성	유형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계획방향
기정	준주거지역	간선부	A (SR1,2)	300%	360%	•건축물의 권장용도 수용을 통한 생활권중심성 유도 •공동개발로 대지내 공지 확보를 통한 휴식 및 보행공간 마련
		이면부	B (SR3)	250%	360%	•건축한계선, 보차혼용통로 확대와 공동개발을 통한 정연한 대지규모 확보 및 가로환경 조성

■ 인센티브 유형 : A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SR1,2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특성			간선부	
기준/허용용적률			300% / 360%	
중점계획목표			•건축물의 권장용도 수용을 통한 생활권중심성 유도 •공동개발로 대지내 공지 확보를 통한 휴식 및 보행공간 마련	
항□□ 목		세 분	완화기준(지침)	비 고
유도형	공동개발	공동개발 (권장/자율적)	기준용적률×0.04	2필지=0.02 3필지=0.03 4필지이상=0.04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0.65	
	건축물용도	용도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22	
규제형	획지계획	필지교환	기준용적률×0.05	
	공동개발	공동개발 (지정)	기준용적률×0.03	2필지=0.01 3필지=0.02 4필지이상=0.03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7	
	대지내통로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0.3	
의무형			인센티브량의 20%	

■ 인센티브 유형 : B

구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SR3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특성			이면부	
기준/허용용적률			250% / 360%	
중점계획목표			•건축한계선, 보차혼용통로 확대와 공동개발을 통한 정연한 대지규모 확보 및 가로환경 조성	
항 목		세 분	완화기준(지침)	비 고
유도형	공동개발	공동개발 (권장/자율적)	기준용적률×0.09	2필지=0.07 3필지=0.08 4필지이상=0.09
	건축물용도	용도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6	
규제형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3.0	
	대지내통로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3.0	
의무형			인센티브량의 20%	

(2) 높이 완화기준(변경없음)

구분	완화조건	산정방식
기준높이완화	권장용도	기준높이 × (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공개공지	기준높이 ×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공공시설제공(기부채납)	기준높이 × (제공면적/대지면적)
	공공기여시설	기준높이 × 0.1
최고높이완화	기부채납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최고높이 × (1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주1)기준높이 완화항목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과 용적률 완화(상한용적률)와 중복하여 완화 적용 가능
주2)공공기여시설은 300㎡이상으로 최상층 개방시설(근린생활시설(레스토랑, 카페 등), 문화시설(도서관, 미술관 등) 및 노유자시설)에 한함.
주3)최고높이 완화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적용 가능함(12m이상 도로에 접하고 대지면적 500㎡이상에 한하여 심의를 통하여 완화 가능)
주4)별도의 기부채납시 최고높이에서 1.2배까지 최고높이 추가 완화 가능
주5)최고높이 완화 적용시 추가 기부채납에 따른 완화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공된 부지면적은 용적률 완화(상한용적률) 및 기준높이 완화와 중복 적용할 수 없다

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Ⅳ.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지형도면 및 정비계획 결정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독바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Ⅴ.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2133-7071) 및 은평구 도시계획과(☎351-7412)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정비구역 결정도

■ 정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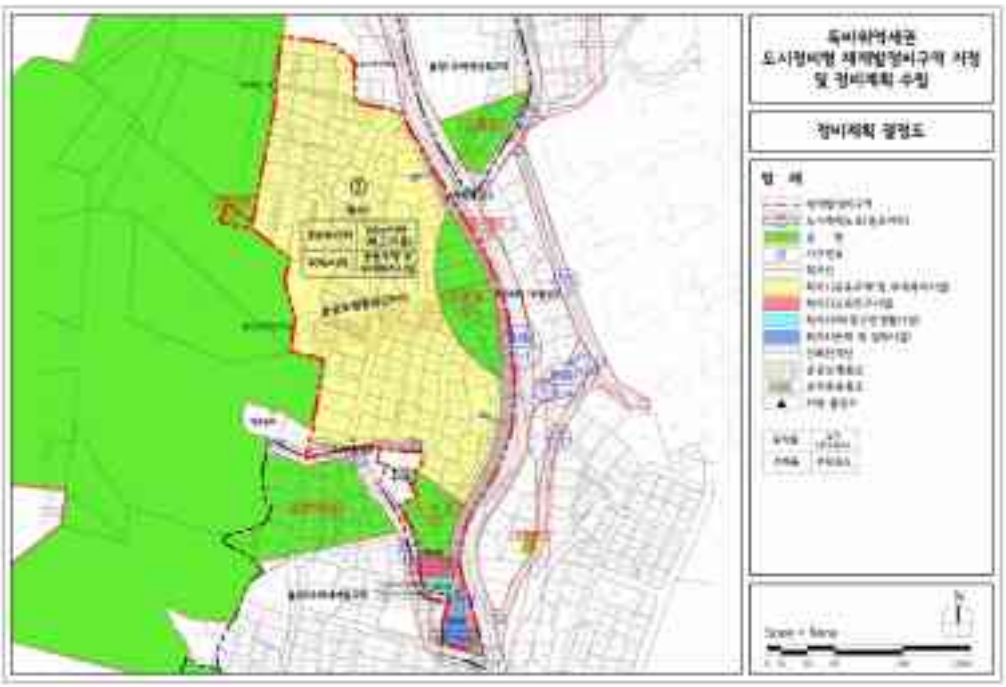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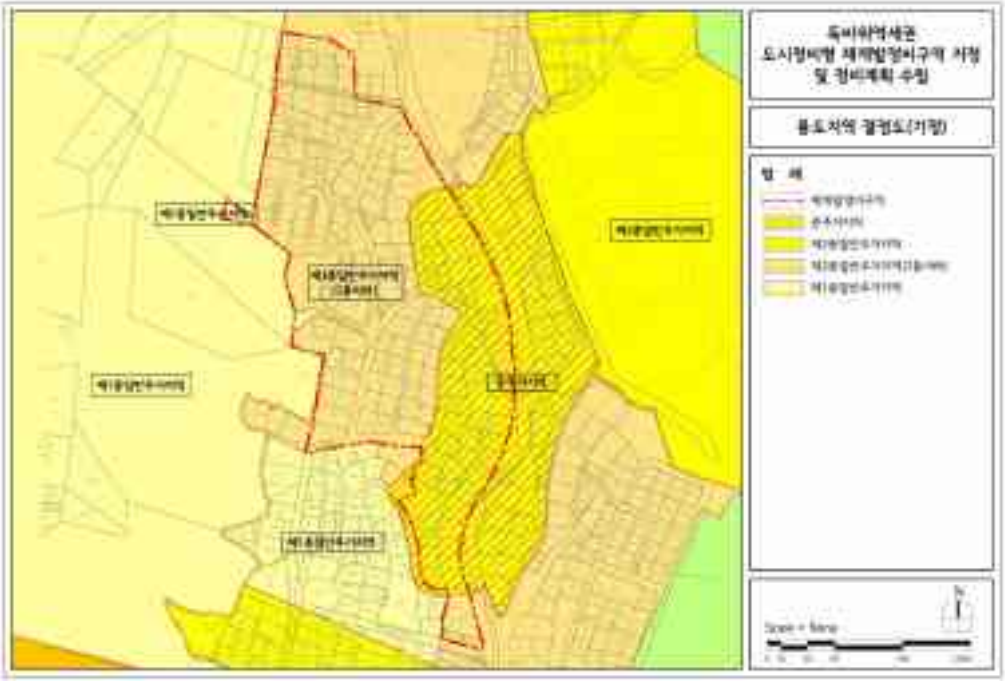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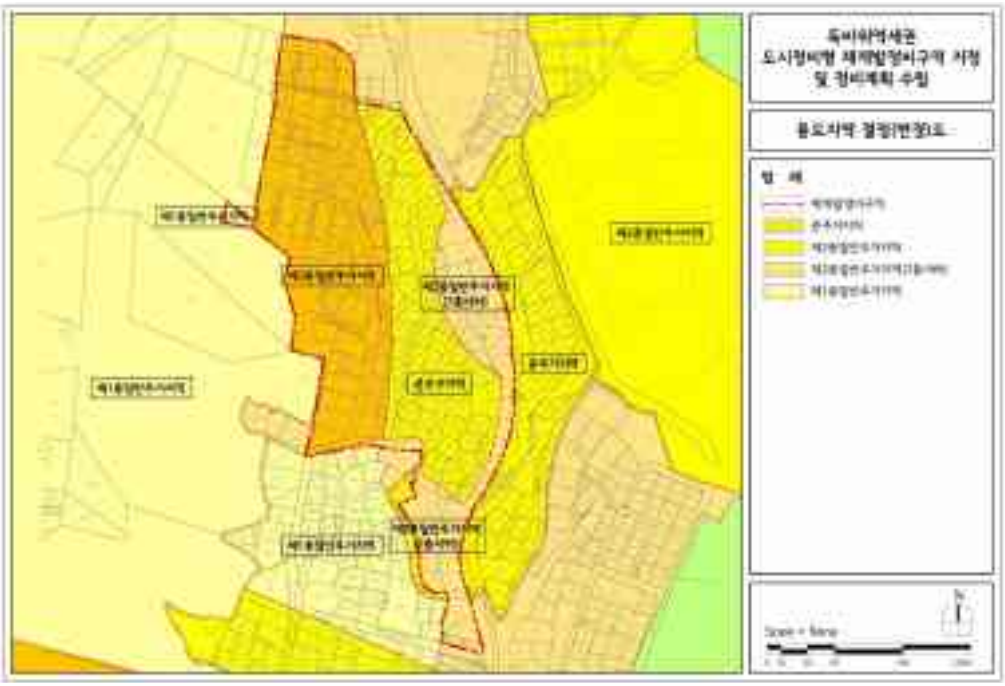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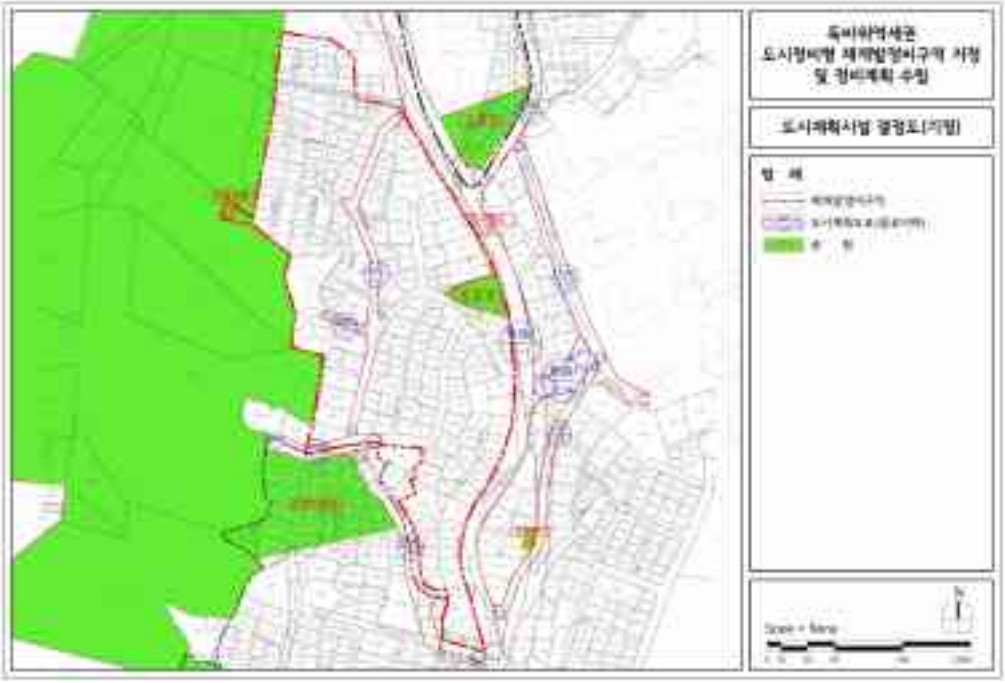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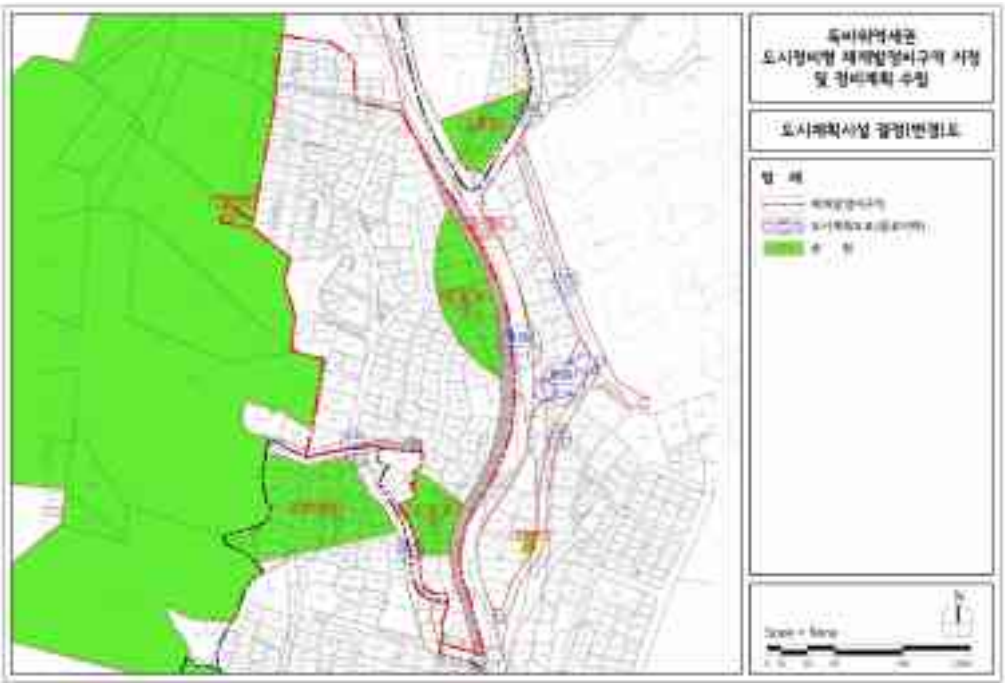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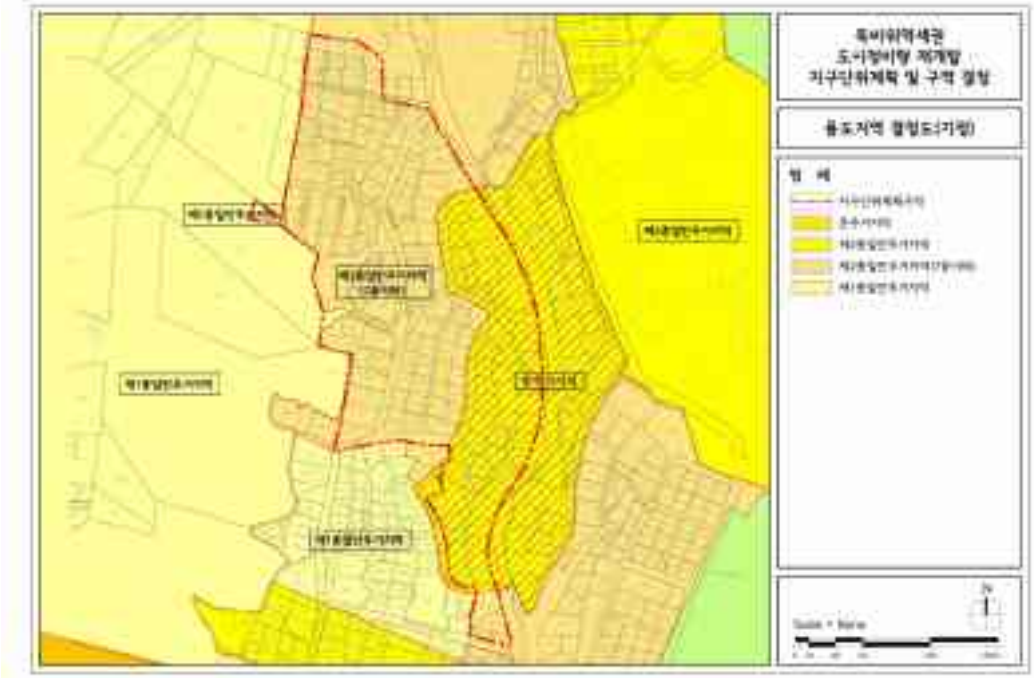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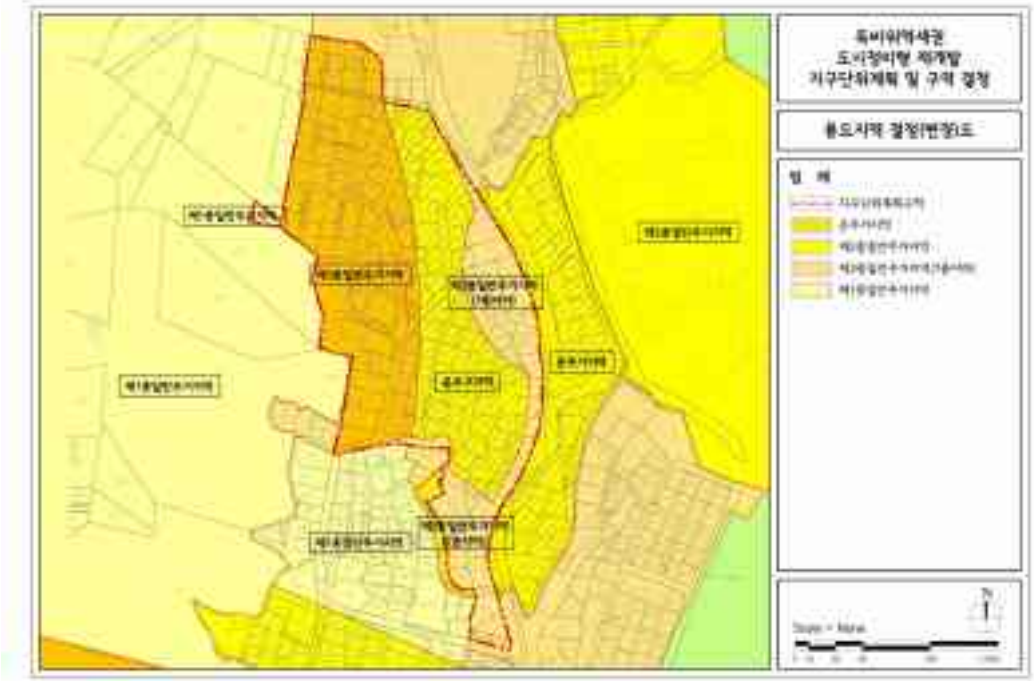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기정)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변경)

[독바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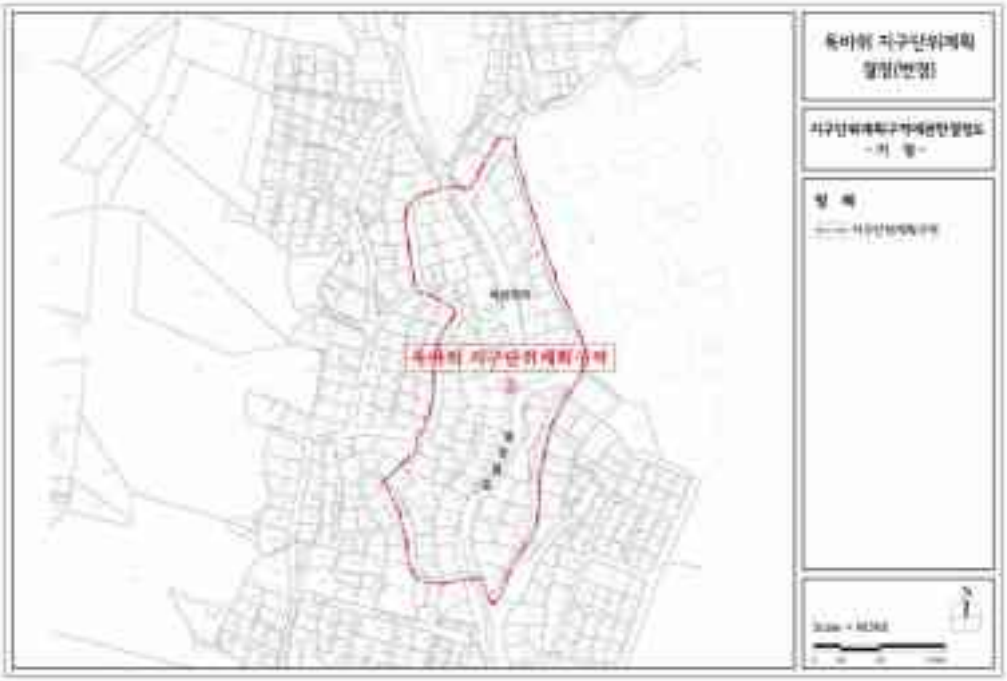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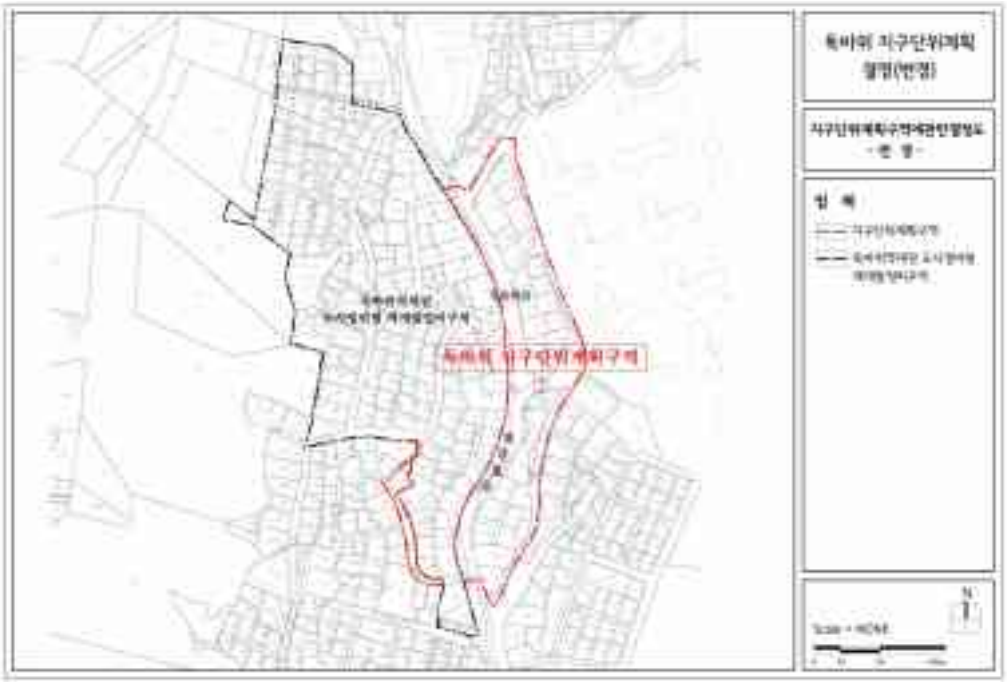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38호

신길5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2007.11.29.)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13호(2009. 8.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47호(2009.9.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56호(2010.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25호(2010.4.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69호(2010.7.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93호(2011.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58호(2011.9.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77호(2011.9.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2호(2011.10.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53호(2011.12.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6호(2012.1.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14호(2012.5.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7호(2013.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호(2013.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15호(2013.4.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43호(2013.5.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6호(2013.5.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7호(2013.6.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97호(2013.9.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37호(2013.10.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74호(2013.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1호(2013.11.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47호(2013.12.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2(2014.8.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13호(2014.9.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51호(2014.10.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55호.(2015.2.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4호(2015.8.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29호(2016.08.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9호(2017.0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7호(2017.07.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61호(2017.12.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69호(2018.08.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8호(2019.04.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54호(2019.05.2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신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개발기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준년도	목표년도
신길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영등포구 신길동 236번지 일대	675,096.6	-	675,096.6	2006	2023

2.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675,096.6	-	675,096.6	100.0
계획 기반 시설	소 계	242,793.1	-	242,793.1	36.0
	공공청사	275.2	-	275.2	0.0
	문화/복지	6,217.9	-	6,217.9	0.9
	학교시설	64,485.2	-	64,485.2	9.6
	공원녹지	82,292.3	감)39.7	82,252.6	12.2
	공공공지	605.5	-	605.5	0.1
	주 차 장	-	-	-	-
	도 로	88,884.0	증)39.7	88,923.7	13.2
	철 도	33.0	-	33.0	0.0
주거 용지	소 계	399,015.7	-	399,015.7	59.1
	공동주택	399,015.7	-	399,015.7	59.1
	주상복합	-	-	-	-
상업/업무		-	-	-	-
기타 종교시설 등		33,287.8	-	33,287.8	4.9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원녹지 면적은 신길3 촉진(정비)구역 남측 존치면적(공원 141.7㎡ / 녹지 1,613.3㎡) 포함
※ 변경 사유: 신길6구역의 해제로 현황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소공원(6) 및 연결녹지(15) 일부가 도로로 변경됨에 따른 면적 변경

나.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획세대			인구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존치지역	개별주택	-	-	-	-	-	-	
	공동주택	482	-	482	1,301	-	1,301	
촉진구역 (공동주택)	소계	9,827	-	9,827	26,532	-	26,532	
	40㎡이하	681	-	681	1,839	-	1,839	
	40㎡~60㎡	4,316	-	4,316	11,653	-	11,653	
	60㎡~85㎡	4,324	-	4,324	11,674	-	11,674	
	85㎡초과	506	-	506	1,366	-	1,366	
계		10,309	-	10,309	27,989	-	27,989	

다.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명 칭	개 소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8	70,703.1	-	70,703.1	
교육시설	소 계	5	64,485.2	-	64,485.2	
	초등학교	2	54,486.0	-	54,486.0	촉진지구 제척에 따른 변경 (대영중·고 면적 포함)
	중학교	2	9,999.2	-	9,999.2	1개소 신설, 1개소 기설치 (대영중은 대영초에 포함)
	고등학교	1	-	-	-	기설치 (대영고는 대영초에 포함)
문화·복지시설	소 계	3	6,217.9	-	6,217.9	
	문화시설	1	1,027.6	-	1,027.6	1개소 신설
	도서관	1	2,300.3	-	2,300.3	1개소 신설
	사회복지시설	1	2,890.0	-	2,890.0	1개소 신설

라.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구 분	명 칭	개 소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공원녹지시설	소 계	35	35	80,535.3	감)39.7	80,495.6	
	근린공원	3	3	39,977.1	-	39,977.1	기 설치 2개소, 1개소 신설
	어린이공원	2	2	3,614.0	-	3,614.0	기 설치 1개소, 1개소 신설
	소공원	9	9	18,168.7	감)5.9	18,162.8	9개소 신설
	녹 지	21	21	19,777.5	감)33.8	19,743.7	21개소 신설

※ 변경 사유: 신길6구역의 해제로 현황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소공원(6) 및 연결녹지(15)의 일부가 도로로 변경됨에 따른 면적 변경

마. 교통계획(변경없음)

○ 해제구역과 사업추진 구역간 연계성을 고려한 효율적 교통계획 변경 수립

바. 경관계획(변경없음)

○ 주변 지역과의 스카이라인 조화 및 자연경관·인공경관의 영향과 특성을 고려한 경관계획 변경 수립

사. 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역명	위 치	면 적(㎡)			사업의 종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0개 구역)		493,328.2	-	493,328.2	-	-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145-40일대	38,502.9	-	38,502.9	재개발사업	-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1583-1일대	76,602.0	-	76,602.0	재개발사업	-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2039일대	93,728.6	-	93,728.6	재개발사업	-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163일대	32,287.3	-	32,287.3	재개발사업	-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240-16일대	74,091.1	-	74,091.1	재개발사업	-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590일대	32,234.0	-	32,234.0	재건축사업	-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29-94일대	50,759.3	-	50,759.3	재개발사업	-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37-246일대	52,159.0	-	52,159.0	재개발사업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40-1일대	15,120.0	-	15,120.0	재건축사업	-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47-50일대	27,844.0	-	27,844.0	재개발사업	-

※ 신길1 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2호('17.3.30.)
※ 신길2,4 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22호('14.12.11.)
※ 신길6 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88호('17.8.3.)
※ 신길15 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33호('15.5.21.)
※ 신길16 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8호('14.7.3.)

아. 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없음)

자. 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없음)

구 역 명	주용도	상한용적률 (%)	건폐율 (%)	높이계획		비고
				공동주택 (평균/최고)	최고높이 (m)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1/32	112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2/29	94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2/27	97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2/27	91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2/29	103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50%이하	-/29	103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232%이하	60%이하	19/25	91	

구 역 명	주용도	상한용적률 (%)	건폐율 (%)	높이계획		비고
				공동주택 (평균/최고)	최고높이 (m)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0/29	103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사업)	공동주택	250%이하	50%이하	-/22	82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2/28	94	

※ 신길 3, 5, 7, 8, 9, 12, 14구역의 상한용적률은 소형주택을 추가로 건립하는 경우임.
(서울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가이드라인'(2010.6.)에 따름)

차.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없음)

구 분	구역면적 (㎡)	기반시설면적(㎡)					비고
		계획 기반시설 ①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②	기존기반 시설내 국공유지③	유상매입 시설 ④	순부담면적(㎡) (①-②-③-④)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38,502.9	7,723.0	1,070.4	1,313.04	-	5,339.56 (13.9%)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76,602.0	17,136.4	207.9	1,576.0	-	15,352.5 (20.0%)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93,728.6	21,524.0	-	3,830.0	4,199.7	13,494.3 (14.4%)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32,287.3	6,655.3	44.0	909.6	-	5,701.7 (17.7%)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74,091.1	20,308.2	4,348.9	7,110.1	-	8,849.2 (11.9%)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32,234.0	6,129.4	14.0	3,172.0	-	2,943.4 (9.1%)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50,759.3	10,996.7	1,493.0	2,564.0	-	6,939.7 (13.7%)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52,159.0	14,656.4	644.2	4,273.4	-	9,738.8 (18.7%)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15,120.0	2,569.0	247.0	547.0	-	1,775.0 (11.7%)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27,844.0	5,002.2	52.0	1,071.0	-	3,879.2 (13.9%)	
계	493,328.2	112,700.6	8,121.4	26,366.14	4,199.7	74,013.36 (15.0%)	

카.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없음)

구 분	구역명	계획세대수(세대)	분양주택(세대)	임대주택(세대)	비 고
기정	합계	9,835	8,231	1,604	-
기정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799	649	150	-
기정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1,546	1,260	286	-
기정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1,722	1,533	189	-
기정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641	522	119	-
기정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1,476	1,210	266	-
기정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816	738	78	-
기정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949	777	172	-
기정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1,008	824	184	-
기정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266	217	49	-
기정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612	501	111	-

타.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 (변경없음)

파.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 분	사업기간			대 상 지 역
	추진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1단계 사업구역	2007~2023			신길3,5,7,8,9,11,12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신길10,13 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사업)
2단계 사업구역	2009~2020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 단계별 추진계획은 각 단계의 총량의 범위 및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에 따라 조정이 가능
※ 단계별 사업추진에 대한 세부적 운용방안은 영등포구에서 수립한 운용기준을 따름(4,000세대가 넘지 않는 범위 내)

하.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거.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1) 구역별 정비계획(변경없음)

구 분	구역면적 (㎡)	대지면적 (㎡)	기준(계획) 용적률(%)	상한 용적률(%)	건폐율 (%)	계획 용적률(%)	평균층수/최고층수	비고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38,502.9	30,779.9	210	300	25이하	251.52이하	21/32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76,602.0	59,073.6	210	300	25이하	265이하	22/29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93,728.6	70,569.1	210	300	25이하	253.40이하	22/27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32,287.3	24,914.2	210	300	25이하	255.44이하	22/27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74,091.1	51,714.6	210	300	25이하	253.38이하	22/29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사업)	32,234.0	26,104.6	210	300	29.46	298.56	-/29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50,759.3	39,762.6	190	232	25이하	232이하	19/25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52,159.0	35,921.6	210	300	25이하	263.12이하	20/29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사업)	15,120.0	12,551.0	210	250	20.84	248.61	-/22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27,844.0	22,841.8	210	300	25이하	256.3이하	22/28	

※ 신길 3, 5, 7, 8, 9, 12, 14 재정비촉진구역의 기준용적률 및 상한용적률은 소형주택을 추가로 건립하는 경우임. (서울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가이드라인'(2010.6.)에 따름)

2) 구역별 주택규모별 배분계획(변경없음)

구 분	합계	일반분양(전용면적)				임대주택(전용면적)				비고
		소계	85㎡ 초과	60~85㎡	60㎡ 이하	소계	40㎡ 이하	40~50㎡	50~60㎡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799	649	28	333	288	150	72	62	16	

구 분	합계	일반분양(전용면적)				임대주택(전용면적)				비고
		소계	85㎡ 초과	60~85㎡	60㎡ 이하	소계	40㎡ 이하	40~50㎡	50~60㎡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1,546	1,260	107	789	364	286	132	119	35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1,722	1,533	207	833	493	189	85	76	28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641	522	14	363	145	119	57	50	12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1,476	1,210	24	424	762	266	124	115	27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사업)	816	738	-	307	431	78	-	78	-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949	777	17	535	225	172	82	72	18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1,008	824	5	395	424	184	84	76	24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사업)	266	217	104	87	26	49	-	-	49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612	501	-	240	261	111	45	48	18	
합 계	9,835	8,231	506	4,306	3,419	1,604	681	696	227	
비 율	100.0	83.7	5.1	43.8	34.8	16.3	6.9	7.1	2.3	

3) 정비계획

가)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69호(2018.8.30)로 변경

나)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택재개발사업	신길동 1583-1번지 일대	76,602.0	-	76,602.0	-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76,602.0	-	76,602.0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3,735.8	-	13,735.8	17.9	-
	도 로	6,634.8	증) 39.7	6,674.5	8.7	무상귀속 (구)
	공 원	3,606.1	감) 5.9	3,600.2	4.7	
	녹 지	2,832.6	감) 33.8	2,798.8	3.6	
	보행자도로	662.3	-	662.3	0.9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택 지 (획 지)	소 계	62,866.2	-	62,866.2	82.1	-
	5-1	45,490.2	-	45,490.2	59.4	공동주택
	5-2	13,583.4	-	13,583.4	17.7	공동주택
	5-3	1,777.2	-	1,777.2	2.3	학교시설 (무상귀속: 교육청, 대토392㎡)
	5-4	958.7	-	958.7	1.3	
	5-5	29.1	-	29.1	0.0	
	5-6	1,027.6	-	1,027.6	1.4	문화시설 (무상귀속: 구)

※ 변경 사유: 신길6구역의 해제로 현황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소공원(6) 및 연결녹지(15) 일부를 중로2-2호선으로 변경됨에 따른 면적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①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3	134	25~30	간선도로	1,000 (591)	신길동382 (신길동 740)	신길동 235-2	일반도로	-	서고378 (78.7.31)	가마산길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180	신길동 1190	신길동 2093	일반도로	-	서고445 (07.11.29)	
변경	중로	2	2	9~22	집산도로	180 (173)	신길동 1190	신길동 2093	일반도로	-	서고445 (07.11.29)	
기정	중로	2	5	15	집산도로	263	신길동 518	신길동 1673	일반도로	-	서고445 (07.11.29)	
기정	중로	2	34	13.5~15	보조간선	1,650 (390)	신길동 115-1	신길동 2363	일반도로		건고2493 (66.6.21)	존치지역
기정	소로	3	5	4	특수도로	165	신길동 542	신길동 1637	보행자전용도로		서고445 (07.11.29)	

※ 연장 및 위치내 (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수치임. 세부적인 구역편입현황은 도시관리계획결정도 참조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2-2호선	중로 2-2호선	•도로 선형 및 폭원 변경 폭 : 15m → 9~22m	•신길6구역의 해제로 현황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소공원(6) 및 연결녹지(15) 일부가 중로2-2호선으로 변경됨에 따른 선형 및 폭원 변경

②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2	-	어린이 공원	신길동 541 일대	1,981.0	-	1,981.0	서고445 (07.11.29)	-
기정	5	-	소공원	신길동 2296 일대	1,479.9	-	1,479.9	서고445 (07.11.29)	-
변경	6	-	소공원	신길동 2306 일대	145.2	감)5.9	139.3	서고445 (07.11.29)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6	소공원	•소공원 변경	•신길6구역 해제로 현황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소공원 일부를 연접한 중로2-2호선으로 변경

③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12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964 일대	2,585.4	-	2,585.4	서고445 (07.11.29)	
기정	14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577 일대	29.0	-	29.0	서고445 (07.11.29)	
변경	15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560 일대	218.2	감)33.8	184.4	서고445 (07.11.29)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5	연결녹지	•연결녹지 변경	•신길6구역 해제로 현황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연결녹지 일부를 연접한 중로2-2호선으로 변경

④ 학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2	학교	초등학교	신길7동 550 일대	21,598.0	-	21,598.0	서교위76 (88.12.21)	대방

⑤ 문화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시설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2	문화시설	-	신길동 549일대	1,027.6	-	1,027.6	서고445 (07.11.29)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공동 이용 시설	관리사무소	신길동 1583-1번지 일대	460 이상	-	460 이상	법적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함
	주민공동시설		1,350 이상	-	1,350 이상	
	문고		200 이상	-	200 이상	
	보육시설		200.34 이상	-	200.34 이상	
	경로당		200 이상	-	200 이상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①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 계획(변경없음)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신길5 재정비촉진구역	76,602.0	-	-	신길동1583-1번지 일대	476	-	-	476	-	

② 건축시설계획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1)연면적(㎡)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평균 층수/ 최고 층수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기정	신길5 재정비 촉진구역	76,602.0	5-1	45,490.2	영등포구 신길동 1583-1번지 일대	156,019.28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이하	265이하	22/29
			5-2	13,583.4	영등포구 신길동 766-3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6	1,027.6	영등포구 신길동 549번지 일대	2,055.20 이하	문화 및 집회시설	60이하	200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 분	합 계	분 양(전용면적, ㎡)				임 대(전용면적, ㎡)			
		소 계	85㎡ 초과	60~ 85㎡	60㎡ 이하	소 계	40㎡ 이하	40~ 50㎡	50~ 60㎡
세대수	1,546	1,260	107	789	364	286	132	119	35
비율	100.00	81.50	6.92	51.04	23.54	18.50	8.54	7.70	2.26

-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65% 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25% 이상
- 임대주택 건립비율

평 형	전용면적 40㎡이하	전용면적 40~50㎡이하	전용면적 50~60㎡이하
배분비	40~50%	40~50%	10~20%

- 전체 세대수의 18%이상 확보

※ 법적으로 17%이상이지만 7구역의 학교시설 확보에 따른 임대주택 1/2감면으로 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 균등 배분

<table>
<tr><th rowspan="2">결 정
구 분</th><th colspan="2">구 역 구 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 치</th><th rowspan="2">주1)연면적(㎡)</th><th rowspan="2">주 된
용 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rowspan="2">용적률
(%)</th><th rowspan="2">평균
층수/
최고
층수</th></tr>
<tr><th>명 칭</th><th>면 적
(㎡)</th><th>명 칭</th><th>면 적
(㎡)</th></tr>
<tr><td rowspan="4">변경</td><td rowspan="3">신길5
재정비
촉진구역</td><td rowspan="3">76,602.0</td><td>5-1</td><td>45,490.2</td><td>영등포구 신길동
1583-1번지 일대</td><td rowspan="2">156,254.15
이하</td><td>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td><td rowspan="2">25이하</td><td rowspan="2">265이하</td><td rowspan="2">22/29</td></tr>
<tr><td>5-2</td><td>13,583.4</td><td>영등포구 신길동
766-3번지 일대</td><td>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td></tr>
<tr><td>5-6</td><td>1,027.6</td><td>영등포구 신길동
549번지 일대</td><td>2,055.20 이하</td><td>문화 및
집회시설</td><td>60이하</td><td>200이하</td><td>-</td></tr>
<tr><td>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9">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합 계</th><th colspan="4">분 양(전용면적, ㎡)</th><th colspan="4">임 대(전용면적, ㎡)</th></tr>
<tr><th>소 계</th><th>85㎡
초과</th><th>60~
85㎡</th><th>60㎡
이하</th><th>소 계</th><th>40㎡
이하</th><th>40~
50㎡</th><th>50~
60㎡</th></tr>
<tr><td>세대수</td><td>1,546</td><td>1,260</td><td>107</td><td>789</td><td>364</td><td>286</td><td>132</td><td>119</td><td>35</td></tr>
<tr><td>비율</td><td>100.00</td><td>81.50</td><td>6.92</td><td>51.04</td><td>23.54</td><td>18.50</td><td>8.54</td><td>7.70</td><td>2.26</td></tr>
</table>
•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65% 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25% 이상
• 임대주택 건립비율
<table>
<tr><th>평 형</th><th>전용면적 40㎡이하</th><th>전용면적 40~50㎡이하</th><th>전용면적 50~60㎡이하</th></tr>
<tr><td>배분비</td><td>40~50%</td><td>40~50%</td><td>10~20%</td></tr>
</table>
- 전체 세대수의 18%이상 확보
※ 법적으로 17%이상이지만 7구역의 학교시설 확보에 따른 임대주택 1/2감면으로 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 균등 배분
</td></tr>
<tr><td colspan="2">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9">•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신길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td></tr>
</table>

주1)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기준용적률 20%상향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 해당부분은 주택규모 60㎡(전용면적) 이하로 건설 (서울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에 따름)

※ 변경 사유: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어린이집 면적 증가 등(용적률 범위 내)

마)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시경관	• 기본방향 - 도시적 맥락에 따라 주변 지역과의 스카이라인 조화를 고려한 계획 - 간선가로변, 커뮤니티가로변, 학교변 등 입지특성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 도시경관계획 - 간선가로변 : 초고층타워형 주동배치로 단지외부 도시가로에 대응 단지 진입부에 랜드마크적 경관을 조성 - 커뮤니티 가로변 : 연결녹지에 인접한 저층연도형 주동배치 단지내외부로의 개방감을 고려한 빗각배치 및 휴먼스케일의 가로조성 - 학교변 : 학교변 직각배치 및 타워형 주동배치로 개방감을 확보	-
환경보전	• 우수유출량 감소를 위해 녹지율을 향상시키고, 투수성 포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공원 및 녹지를 계획	-
재난방지	• 긴급재난구조차량 접근 및 소방차등의 접근로 배려 • 자연재해에 대비한 방재시스템 및 단지내 상하수도시설의 합리적인 설계 반영	-

바)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 고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개발조합	-	-	-

사)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본 사업지는 주거밀집지역으로서 자연성이 매우 낮고 식물상이 매우 빈약하나, 양호한 수목은 사업시 이식 후 재식토록 함

아)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구 분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 경 후	
5	62,866.2	5-1	신길동 1583-1번지 일대	45,490.2	-	45,490.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2	신길동 766-3번지 일대	13,583.4	-	13,583.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3	신길동 1588번지 일대	1,777.2	-	1,777.2	학교편입
		5-4	신길동 531번지 일대	958.7	-	958.7	학교편입
		5-5	신길동 1190번지 일대	29.1	-	29.1	학교편입
		5-6	신길동 549번지 일대	1,027.6	-	1,027.6	문화시설

자)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연면적(㎡)	세 대 수	세대규모(전용)	비 고
-	-	-	19,583.84 이상	286세대	40㎡이하, 40~50㎡, 50㎡~60㎡	기정

※ 임대주택 건립비율 : 전체 세대수의 18%이상 확보

- 법적으로 17%이상이지만 7구역의 학교시설 확보에 따른 임대주택 1/2감면으로 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 균등 배분

※ 임대주택 평형배분 계획

평 형	전용면적 40㎡이하	전용면적 40~50㎡이하	전용면적 50~60㎡이하
배분비	40~50%	40~50%	10~20%

다)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87호(2013.6.20)로 변경

라)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55호(2015.2.26)로 변경

마)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54호(2019.5.23)로 변경
바)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건축사업)(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28호(2019.4.18)로 변경
사)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2호(2013.2.7)로 변경
아)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49호(2017.4.27)로 변경
자)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건축사업)(변경없음)
차)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82호(2014.8.7.)로 변경

너.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675,096.6	-	675,096.6	100.0
주거지역	소 계	671,581.8	-	671,581.8	99.5
	제1종일반주거지역	42,668.8	-	42,668.8	6.4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93,868.4	-	93,868.4	13.9
	제2종일반주거지역	452,065.3	-	452,065.3	66.9
	제3종일반주거지역	82,564.6	-	82,564.6	12.2
	준주거지역	414.7	-	414.7	0.1
근린상업지역		3,514.8	-	3,514.8	0.5

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 도 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위치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1	53	35	간선도로	1,550 (459)	문래동 광장 (신길동 397-2)	신길동 광장 (신길동 426)	일반도로	-	건고393 (78.12.7)	도림로
기정	대로	2	54	30	간선도로	3,050 (710)	신길동 대로3-28	구로공단 (신길동 347-65)	일반도로	-	건고393 (78.12.7)	가마산로
기정	대로	3	23	25	보조간선	4,250 (282)	신길동 (대1-6)	구로동 (중1-220)	일반도로	-	건고542 (71.9.13)	도신로
기정	대로	3	28	25~30	주간선로	2,780 (786)	영등포동 (신길동 233-71)	신도림동 (신길동 3599-3)	일반도로	-	건고177 (62.12.8)	신길로
기정	대로	3	134	25~30	간선도로	1,000 (591)	신길동382 (신길동 740)	신길동 235-2	일반도로	-	서고378 (78.7.31)	신길9재촉구역 내 완화차로 확보

구분	규모				기능	연장	위치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314	신길동 337-390	신길동 335-17	일반도로	-	-	신길5주택 건설사업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180	신길동 1190	신길동 2093	일반도로	-	서고445 (07.11.29)	5구역
변경	중로	2	2	9~22	집산도로	180 (173)	신길동 1190	신길동 2093	일반도로	-	서고445 (07.11.29)	
기정	중로	2	4	15~18	집산도로	110	신길동 335-23	신길동 325-49	일반도로	-	서고445 (07.11.29)	11구역
기정	중로	2	5	15	집산도로	263	신길동 518	신길동 1673	일반도로	-	서고445 (07.11.29)	5구역
기정	중로	2	34	13.5~15	보조간선	1,650 (390)	신길동 115-1	신길동 2363	일반도로	-	건고2493 (66.6.21)	존치지역
기정	중로	2	151	15~17	집산도로	571 (63)	신길동 2099 (신길동 3002)	신길동 3517	일반도로	-	서고156 (91.5.31)	구역내 완화차로 확보
기정	중로	3	3	12~16	집산도로	280 (257)	신길동 2857 (신길동 2862)	신길동 3187	일반도로	-	서고445 (07.11.29)	7구역 10구역
기정	중로	3	63	12~20	집산도로	268	신길동 335-17	신길동 342-88	일반도로	-	서고683 (87.9.24)	11구역 14구역
기정	중로	3	71	12	집산도로	472	신길동 426-3	신길동 336-2	일반도로	-	-	12구역 13구역
기정	중로	3	152	12	집산도로	299	신길동 3183-28	신길동 242-14	일반도로	-	서고156 (91.5.31)	8구역 9구역
기정	소로	1	4	10	집산도로	269	신길동 329-57	신길동 263-5	일반도로	-	서고105 (83.2.24)	11구역
기정	소로	1	65	10	집산도로	28	신길동 252-9	신길동 252-11	일반도로	-	서고105 (83.2.24)	11구역
기정	소로	2	2	8	집산도로	321	신길동 253-318	신길동 337-255	일반도로	-	-	신길5주택 건설사업 (존치지역)
기정	소로	2	6	8~10	집산도로	128	신길동 2372	신길동 2340	일반도로	-	서고445 (07.11.29)	7구역
기정	소로	2	7	8~10	집산도로	243	신길동 337-209	신길동 253-330	일반도로	-	-	12구역
기정	소로	2	8	8	집산도로	155	신길동 424-3	신길동 340-1	일반도로	-	서고445 (07.11.29)	13구역
기정	소로	2	12	8	집산도로	180	신길동 237	신길동 242	일반도로	-	서고51 (82.2.4)	9구역
기정	소로	2	69	8~9.5	집산도로	114	신길동 253-69	신길동 329-57	일반도로	-	서고105 (83.2.24)	11구역
기정	소로	2	108	8~10	집산도로	670 (172)	신길동 209-102	신길동 135	일반도로	-	건고768 (64.1.24)	3구역
기정	소로	2	153	8	집산도로	162 (130)	신길동 341-1	신길동 400-16	일반도로	-	서고331 (90.9.28)	존치지역
기정	소로	3	5	4	특수도로	165	신길동 541	신길동 1637	보행자전용도로	-	서고445 (07.11.29)	보행자 전용도로 반영

※ ( )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나) 철 도(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철도	고속철도 (신풍역)	신길동 3599 일대	6,623.5	-	6,623.5	서고77 (93.3.18)	신풍역

다) 공 원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1	메낙골	근린공원	신길동 895 일대	57,703.6 (4,029.6)	-	57,703.6 (4,029.6)	건고138 (77.7.9)	3구역
기정	2	신길공원	근린공원	신길동 426-3	19,642.9 (57.0)	-	19,642.9 (57.0)	건고258 (82.7.12)	13구역
기정	4	-	근린공원	신길동 243-58 일대	13,776.7 (12,906.7)	-	13,776.7 (12,906.7)	서고445 (07.11.29)	8구역 9구역
기정	1	제1호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신길동 337-88	1,633.0	-	1,633.0	-	
기정	2	-	어린이 공원	신길동 541 일대	1,981.0		1,981.0	서고445 (07.11.29)	
기정	5	-	소공원	신길동 2296 일대	1,479.9	-	1,479.9	서고445 (07.11.29)	
변경	6	-	소공원	신길동 2306 일대	145.2	감)5.9	139.3	서고445 (07.11.29)	5구역
기정	7	-	소공원	신길동 2135 일대	1,024.1	-	1,024.1	서고445 (07.11.29)	
기정	8	-	소공원	신길동 3584 일대	4,046.3	-	4,046.3	서고445 (07.11.29)	7구역: 199.3㎡
기정	9	-	소공원	신길동 3126 일대	2,348.5	-	2,348.5	서고445 (07.11.29)	
기정	10	-	소공원	신길동 3403 일대	2,133.8	-	2,133.8	서고445 (07.11.29)	
기정	12	-	소공원	신길동 336-317 일대	2,523.2	-	2,523.2	서고445 (07.11.29)	
기정	13	-	소공원	신길동 335-10 일대	1,661.4	-	1,661.4	서고445 (07.11.29)	
기정	14	-	소공원	신길동 335-34 일대	2,001.3	-	2,001.3	서고445 (07.11.29)	

※ 신길6 촉진구역 해제됨에 따라 중첩하여 결정된 신길5구역내 소공원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 소공원 폐지

※ ( )는 촉진(정비)구역 내 면적임

라) 녹 지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7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02-109 일대	726.3	-	726.3	서고445 (07.11.29)	
기정	8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46-18 일대	709.8	-	709.8	서고445 (07.11.29)	
기정	9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40-6 일대	1,274.3	-	1,274.3	서고445 (07.11.29)	
기정	10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42-9 일대	735.3	-	735.3	서고445 (07.11.29)	
기정	12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964 일대	2,585.4	-	2,585.4	서고445 (07.11.29)	
기정	14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577 일대	29.0	-	29.0	서고445 (07.11.29)	5구역
변경	15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560 일대	218.2	감)33.8	184.4	서고445 (07.11.29)	5구역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17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121 일대	1,226.6	-	1,226.6	서고445 (07.11.29)	
기정	18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241 일대	1,621.0	-	1,621.0	서고445 (07.11.29)	
기정	19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888 일대	1,210.7	-	1,210.7	서고445 (07.11.29)	7구역: 1,100.7㎡
기정	20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835 일대	314.5	-	314.5	서고445 (07.11.29)	
기정	21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183-156 일대	811.2	-	811.2	서고445 (07.11.29)	
기정	22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516 일대	1,912.4	-	1,912.4	서고445 (07.11.29)	
기정	25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40-1 일대	1,602.0	-	1,602.0	서고445 (07.11.29)	
기정	26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37-6 일대	298.1	-	298.1	서고445 (07.11.29)	
기정	27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36-204 일대	1,425.9	-	1,425.9	서고445 (07.11.29)	
기정	28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36-257 일대	771.7	-	771.7	서고445 (07.11.29)	
기정	29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37-400 일대	622.1	-	622.1	서고445 (07.11.29)	
기정	30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26-6 일대	170.7	-	170.7	서고445 (07.11.29)	
기정	31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25-43 일대	250.0	-	250.0	서고445 (07.11.29)	
기정	32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26-9 일대	1,250.4	-	1,250.4	서고445 (07.11.29)	

※ 신길6 촉진구역 해제됨에 따라 중첩하여 결정된 신길5구역내 연결녹지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 연결녹지 폐지

마) 공공공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3	공공공지	신길동 253-312 일대	153.0	-	153.0	-	신길5 주택건설사업
기정	17	공공공지	신길동 425-28	62.9	-	62.9	서고445 (07.11.29)	
기정	18	공공공지	신길동 243-26	389.6	-	389.6	서고154 (19.5.23)	신길9구역

바) 공공청사(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4	공공청사	-	신길동 340-4 일대	118.0	-	118.0	서고445 (07.11.29)	파출소
기정	5	공공청사	-	신길동 349-3 일대	157.2	-	157.2	서고445 (07.11.29)	파출소

사) 학 교(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	학교	초등학교	신길7동 550 일대	21,598.0	-	21,598.0	서교위76 (88.12.21)	대방
기정	3	학교	초등학교	신길5동 341-1	32,888.0	-	32,888.0	서고683 (87.7.10)	대영
	4	학교	중학교	신길5동 342-29	대영초에 포함	-	대영초에 포함	서고4546 (85.7.10)	대영
	5	학교	고등학교	신길5동 342	대영초에 포함	-	대영초에 포함	서고4546 (85.7.10)	대영
기정	7	학교	중학교	신길동 2064 일대	9,999.2	-	9,999.2	서고445 (07.11.29)	

아) 문화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	문화시설	-	신길동 549 일대	1,027.6	-	1,027.6	서고445 (07.11.29)	

자) 도 서 관(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도서관	신길동 252-11 일대	2,300.3	-	2,300.3	서고445 (07.11.29)	구립 도서관

차)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사회복지시설	신길동 339-34 일대	2,890.0	-	2,890.0	서고445 (07.11.29)	

더. 광고물관리계획(변경없음)
러.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머. 방재계획(변경없음)
버. 정보화계획(변경없음)
서. 에너지순환계획(변경없음)
어. 특성화계획(변경없음)
저. 기타(변경없음)

3. 관계 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지형도면(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 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23) 및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02)2670-3527)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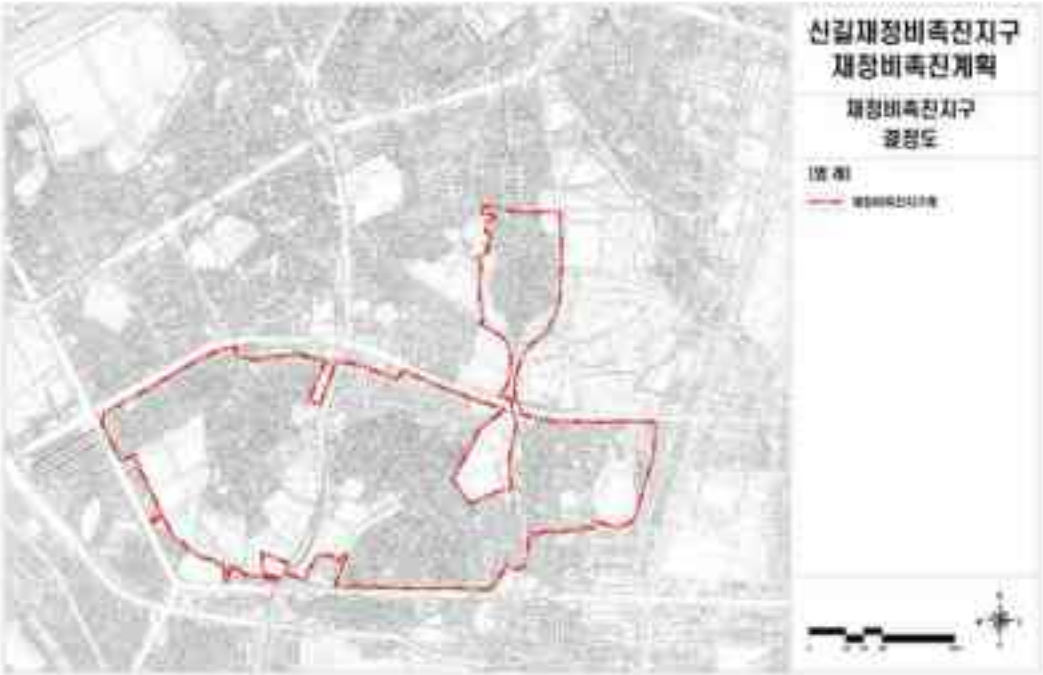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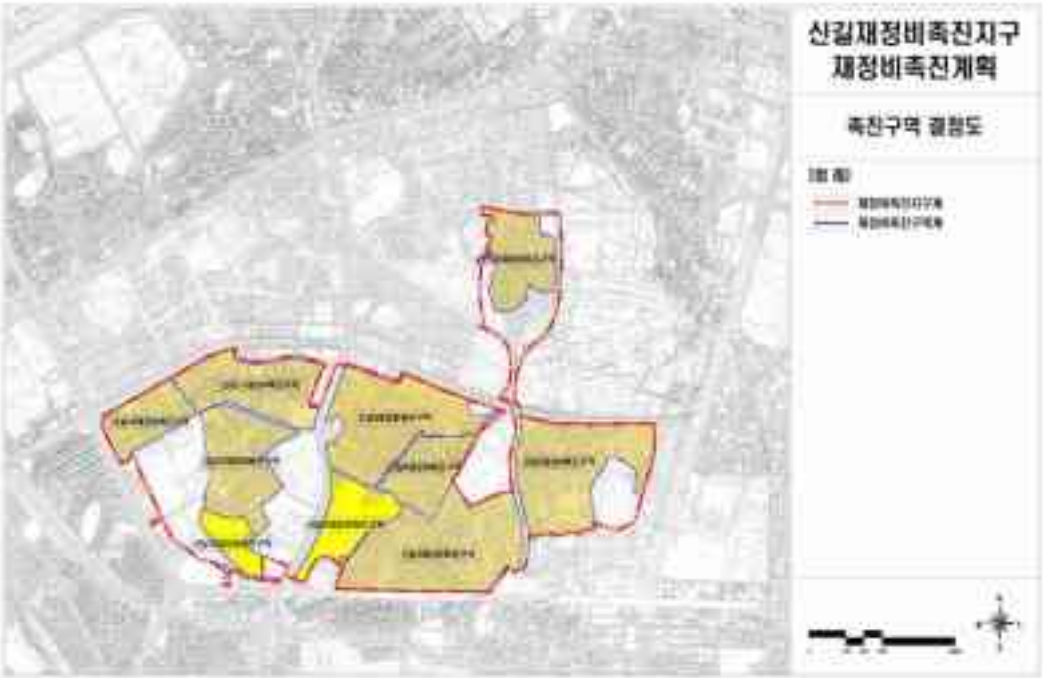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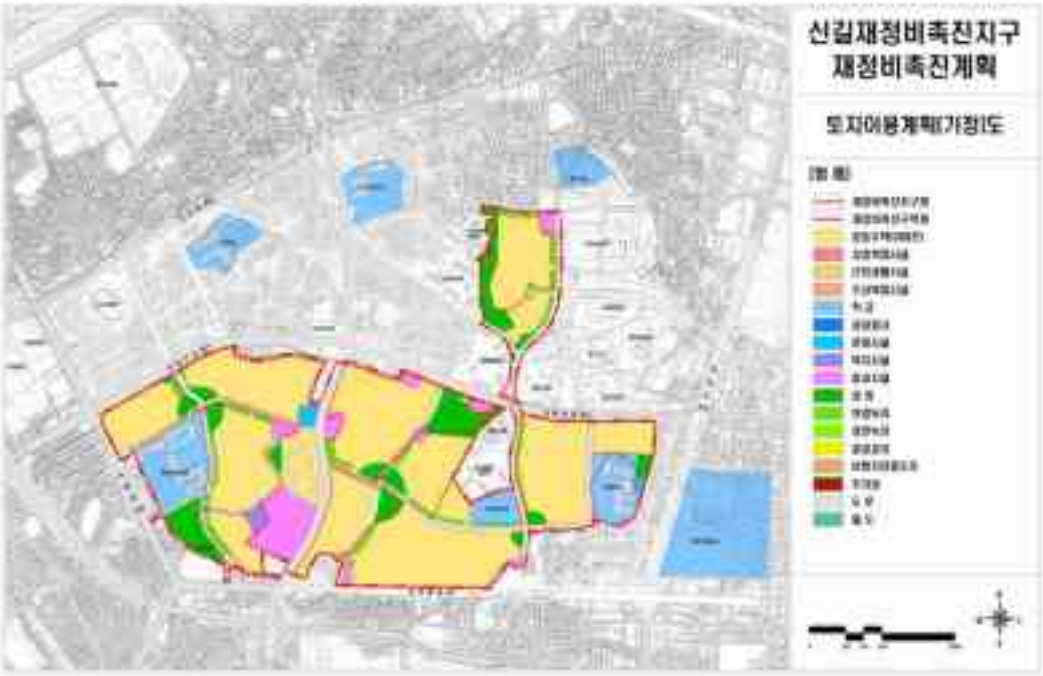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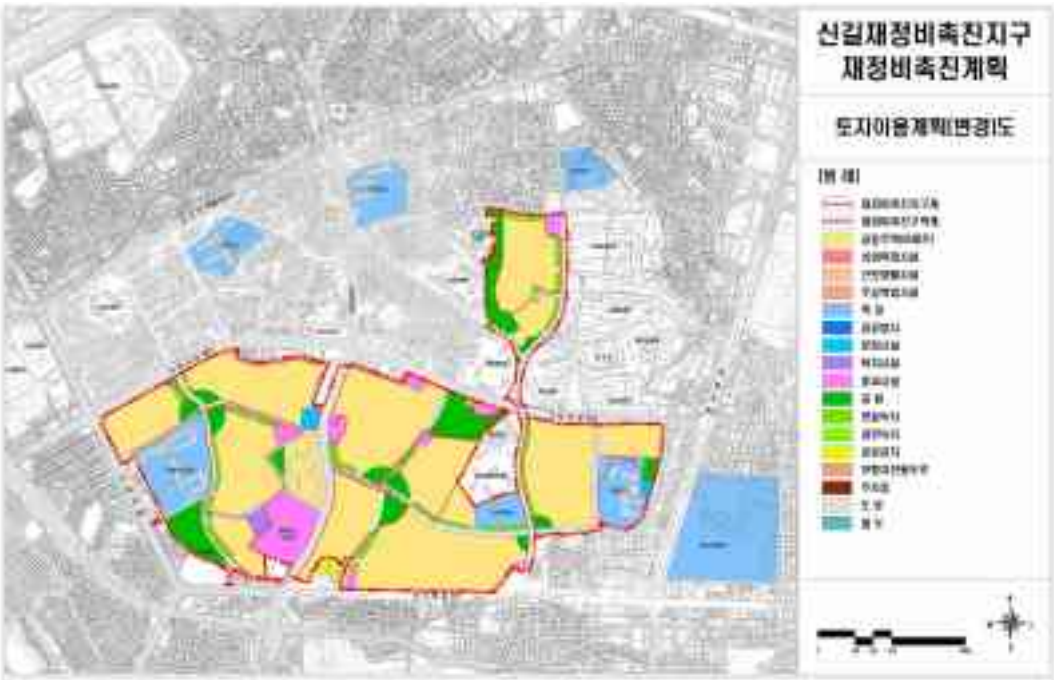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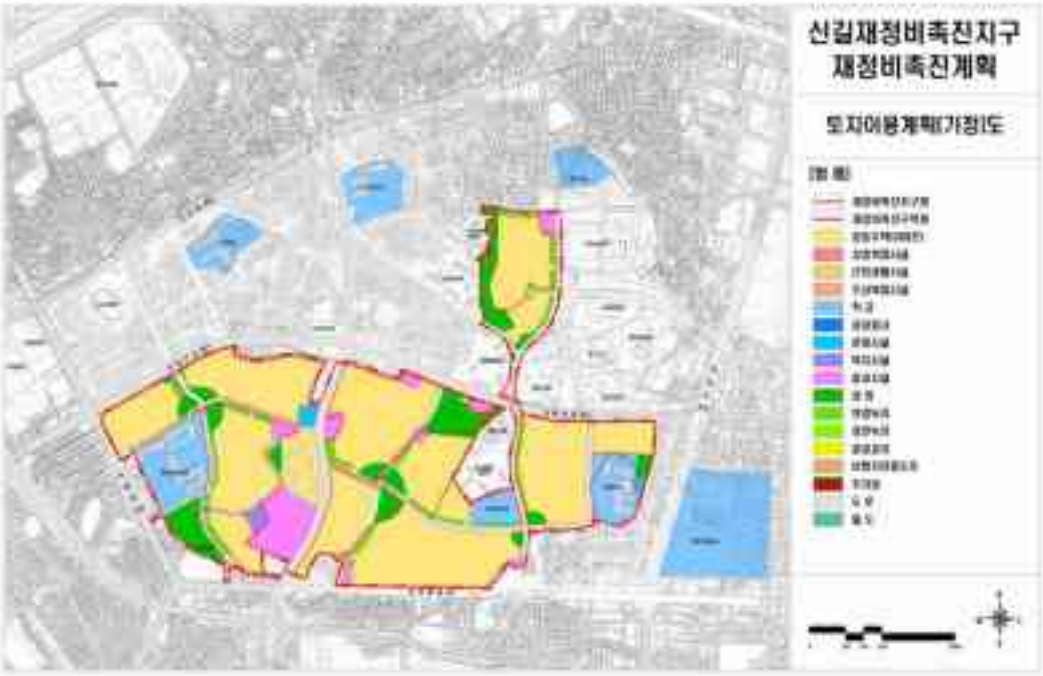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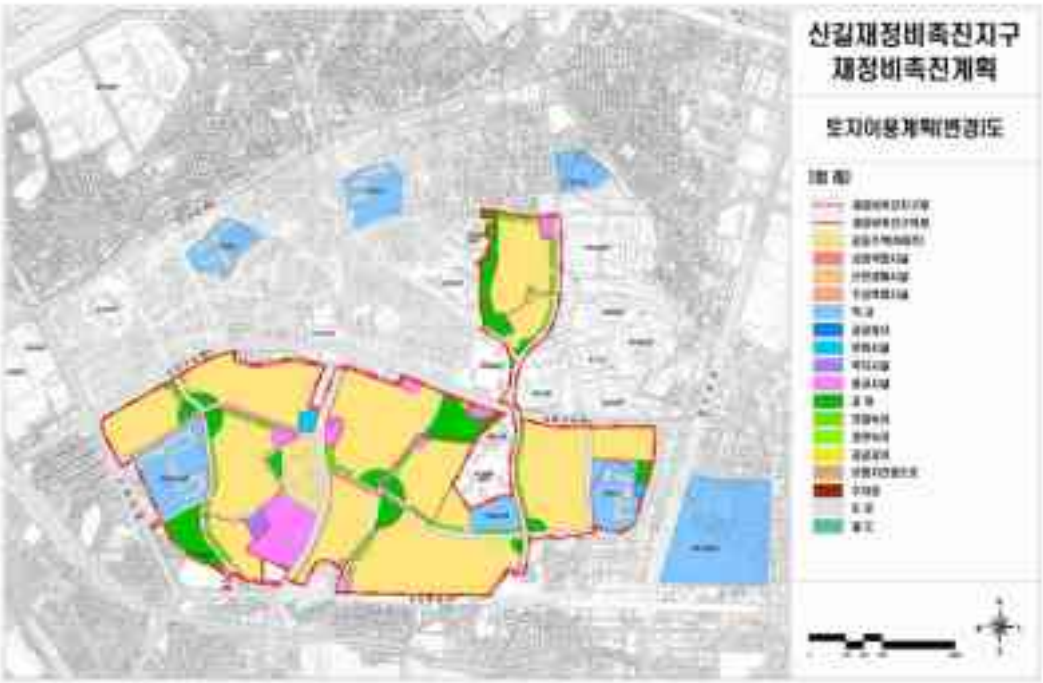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기정)도]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변경)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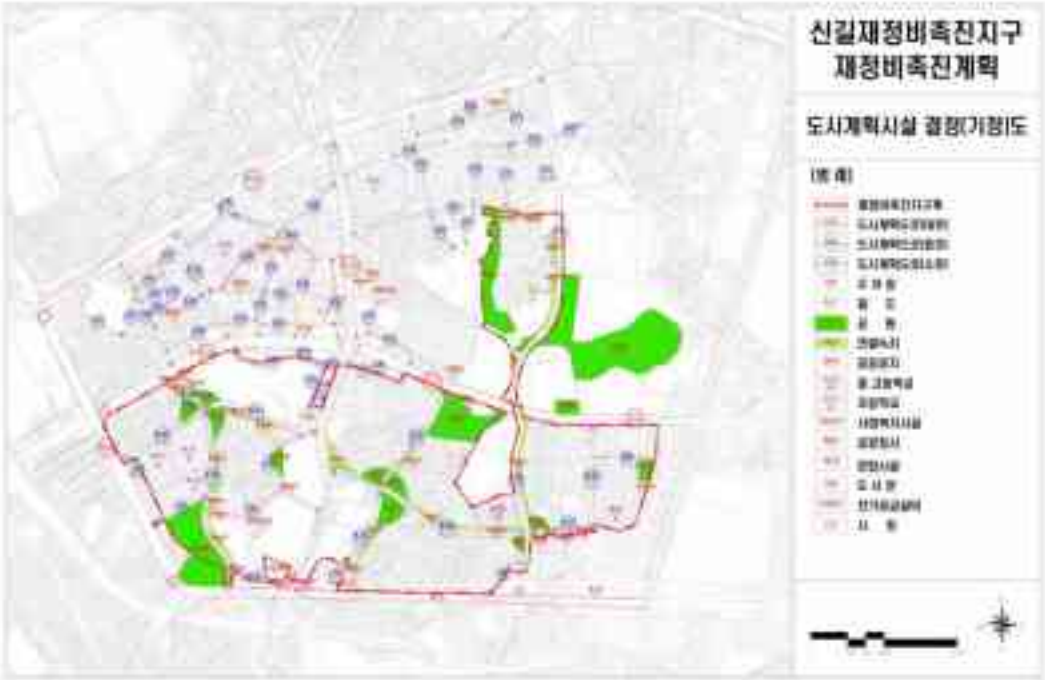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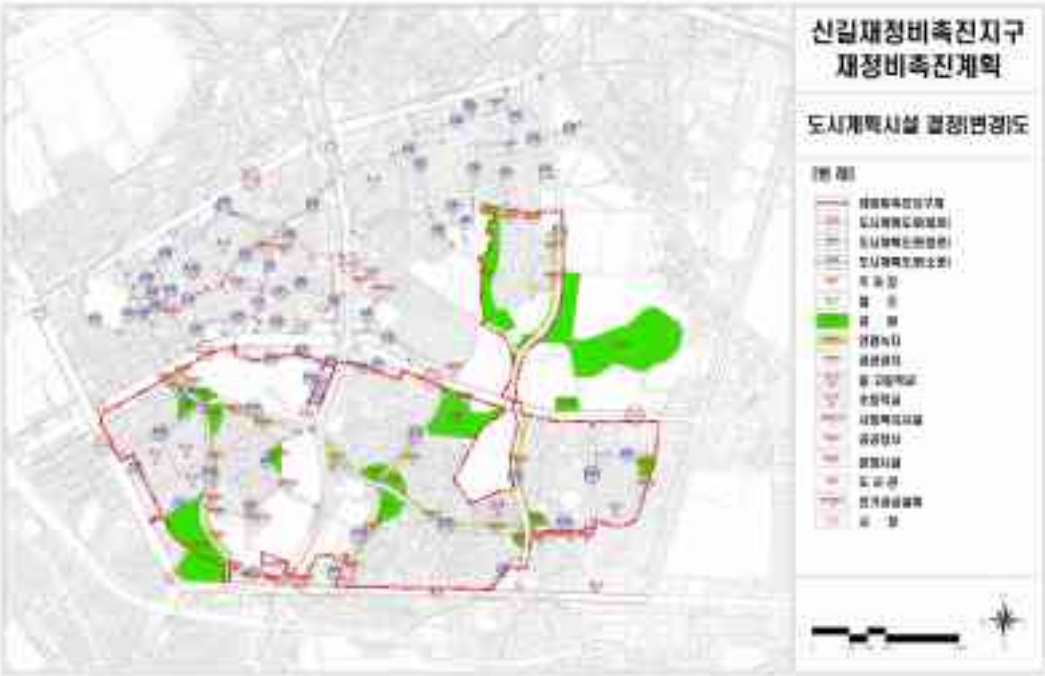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지형도면고시도(총괄)]

[지형도면고시도 5]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39호

거여 · 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거여·마천 뉴타운지구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94호(2008.08.28.)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되어, 송파구고시 제2008-54호(2008.9.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90호(2011.04.07), 제2011-98호(2011.04.21), 제2011-112호(2011.05.06.), 제2011-259호(2011.09.08), 제2011-420호(2011.12.29), 제2012-7호(2012.1.12), 제2012-115호(2012.05.10), 제2012-191호(2012.07.26), 제2013-190호(2013.06.20), 제2013-446호(2013.12.26.), 제2014-378호(2014.11.06.), 제2014-422호(2014.12.11.), 제2017-55호(2017.02.23.), 제2017-196호(2017.06.01.) 및 제2018-403호(2018.12.13.)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 규정에 의거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

명 칭	유형	위 치	면 적(㎡)			지 정 목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거여 · 마천 재정비촉진 지구	주거 지형	송파구 거여1 · 2동, 마천1 · 2동 일원	1,043,843.2	감) 15.1	1,043,828.1	노후 · 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 · 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거여 · 마천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등을 통한 종합적 · 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주) 지적현황측량성과를 반영한 면적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없음
   ○ 기준년도 : 2009년
   ○ 목표연도 : 2029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면 적(㎡)			비율(%)
			기 정	증 감	변 경	
촉진지구	합 계		1,043,843.2	감) 15.1	1,043,828.1	100.0
	주거용지	소 계	695,125.2	감) 15.1	695,110.1	66.59
		공동주택 (연도형주거)	365,042.6 (27,964.0)	감) 15.1 -	365,027.5 (27,964.0)	37.97 (2.68)
		준주거	9,699.0	-	9,699.0	0.93
		종교용지	7,274.9	-	7,274.9	0.70
		택시차고지	3,060.0	-	3,060.0	0.29
		대 지	-	-	-	-
		존치관리	310,048.7	-	310,048.7	29.70
	정비기반시설용지	소 계	348,718.0	-	348,718.0	33.41
		도 로	217,490.4	-	217,490.4	20.84
		공 원	41,181.7	-	41,181.7	3.94
		녹 지	7,569.7	-	7,569.7	0.73
		광 장	2,635.8	-	2,635.8	0.25
		하 천	25,811.9	-	25,811.9	2.47
		학 교	22,448.4	-	22,448.4	2.15
		문화체육시설	-	-	-	-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15,530.3	-	15,530.3	1.49
		공공공지	7,289.9	-	7,289.9	0.70
		주차장	2,041.9	-	2,041.9	0.20
		공용버스차고지	5,218.0	-	5,218.0	0.50
		유치원	300.0	-	300.0	0.03
		보육시설	1,200.0	-	1,200.0	0.11

주1) 지적현황측량성과를 반영한 단순면적 변경

주2)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건축물 배치계획 변경으로 인해 저층부 연도형 상가 배치구간이 변경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결정도 상 반영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유

- 거여2-1구역 공동주택 부지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
- 마천4구역 건축물 배치계획 변경에 따른 건축물 밀도 및 세대수 등 변경(건축위원회 심의 및 자문 내용 반영)

2)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 46,020인 / 12,785호

○ 총괄현황

주택유형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2,791	감) 6	12,785	46,042	감) 16	46,020	2.69인적용
사업구역	소 계	9,876	감) 6	9,870	26,566	감) 16	26,550	
	60㎡이하	4,563	증) 17	4,580	12,274	증) 46	12,320	
	60~85㎡이하	4,405	감) 24	4,381	11,849	감) 64	11,785	
	85㎡초과	908	증) 1	909	2,443	증) 2	2,445	
존치지역		2,915	-	2,915	19,476	-	19,476	2.56인 적용

주) 마천4구역 건축물 배치계획 변경에 따른 규모별 세대수 변경

○ 구역별 현황

구 분			현황(호)	기 정(호)				변 경(호)			
				분 양	임 대	존 치	계	분 양	임 대	존 치	계
합 계			8,885	8,073	1,843	2,915	12,791	8,067	1,803	2,915	12,785
재정비 촉진 구역	거여2	1지구	1,096	1,577	368	-	1,945	1,577	368	-	1,945
		2지구	809	972	227	-	1,199	972	227	-	1,199
	마천시장		13	185	-	-	185	185	-	-	185
	마천1		1,381	2,205	480	-	2,685	2,205	480	-	2,685
	마천3		1,698	2,052	421	-	2,473	2,052	421	-	2,473
	마천4		573	1,082	307	-	1,389	1,076	307	-	1,383
존치관리구역			1,036	-	-	2,915	2,915	-	-	2,915	2,915
지구편입 (거여새마을, 마천성당)			1,136	-	-			-	-		
마천2구역			743	-	-			-	-		

주) 마천4구역 건축물 배치계획 변경에 따른 세대수 변경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 교육시설

학 교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3,214.4	-	23,214.4	
마천초등학교	마천동 183-4일대	10,921.0	-	10,921.0	
남천초등학교	마천동 67일대	11,993.4	-	11,993.4	
유치원	마천동 363-6일대	300	-	300	마천3구역(신설)

○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2,820.2	-	22,820.2	
공공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거여동 195-1일대	3,254.3	-	3,254.3	•기정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시설 복합화 - 거여2동주민센터 존치 - 치안센터, 아동보육, 노인, 여성복지 복합화
공공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거여동 128-18일대	4,386.0	-	4,386.0	•마천2동주민센터, 우체국, 치안센터, 소방파출소 - 아동보육, 노인, 여성복지 복합화
공공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마천동 211-45일대	2,788.0	-	2,788.0	•인성장애인복지관, 보훈회관 시설 복합화 -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시설
공공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마천동 361-16일대	5,102.0	-	5,102.0	•청소년활동시설 및 여성취업센터, 아동보육 등 여성복지시설
공공공지	거여동 198-17 (거여2구역)	1,467.0	-	1,467.0	•공공공지
공공공지 (미래공공용지)	거여동 41-4 (거여2구역)	5,639.9	-	5,639.9	•공공공지 → 개발수요 발생시 공공시설로 개발
공공공지	마천동 156-312일대 (마천1구역)	183.0	-	183.0	•공공공지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 공원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1,181.7	-	41,181.7	12개소
근린공원	소 계		20,611.0	-	20,611.0	2개소
	향유근린공원	거여동 200-4일대	10,569.0	-	10,569.0	
	솔향근린공원	마천동 199-3일대	10,042.0	-	10,042.0	
어린이공원	소 계		3,625.0	-	3,625.0	4개소
	두레어린이공원	마천동 364-5일대	75.0	-	75.0	
	용마공원	마천동 45	1,500.0	-	1,500.0	현황공원
	개미공원	거여동 29	1,500.0	-	1,500.0	현황공원
	-	거여동 28-7	550.0	-	550.0	현황공원
소공원	소 계		16,945.7	-	16,945.7	6개소
	1	거여동 181-143일대	1,139.7	-	1,139.7	
	2	마천동 327-7일대	1,501.0	-	1,501.0	
	3	마천동 363-2일대	591.0	-	591.0	
	4	마천동 364-8일대	5,420.0	-	5,420.0	
	5	마천동 276일대	7,682.0	-	7,682.0	
	6	마천동 586일대	612.0	-	612.0	

○ 녹지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7,569.7	-	7,569.7	6개소
경관녹지	마천동 162-17일대	3,236.0	-	3,236.0	
경관녹지	마천동 199-9일대	651.0	-	651.0	
경관녹지	마천동 207-2일대	1,025.0	-	1,025.0	
경관녹지	마천동 329-22일대	113.0	-	113.0	
경관녹지	마천동 376-13일대	2,108.0	-	2,108.0	
연결녹지	거여동 35-7일대	436.7	-	436.7	

5) 교통계획 : 변경없음

6) 경관계획 : 변경없음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변경없음

○ 주택재개발사업

구분	구역 번호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유형	비고
기정	거여2	C	거여동	202	16.0ha	230%	-	60%	1	주택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마천1	C	마천동	194-1	17.2ha	210%	-	60%	2	주택재개발	전면개발	구역취소
기정	마천3	C	마천동	283	13.4ha	210%	-	60%	3	주택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마천4	C	마천동	323	6.1ha	210%	-	50%	3	주택재개발	전면개발	

주1) 1단계 : 2008년부터, 2단계 : 2010년부터, 3단계 : 2012년부터
주2) 용적률, 건폐율, 층수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름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

구 분			위치	면적(㎡)			구성비(%)	사업방식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촉진지구			-	1,043,843.2	감) 15.1	1,043,828.1	100.0	-	-
촉진구역	소 계			536,341.8	감) 15.1	536,326.7	51.4	-	5개소
	거여2 구역	1지구	거여동 180일대	98,453.7	감) 15.1	98,438.6	9.4	주택재개발	-
		2지구	거여동 234일대	61,850.1	-	61,850.1	5.9	주택재개발	-
	마천시장구역		마천동 140-3일대	9,757.0	-	9,757.0	0.9	시장재건축	-
	마천1구역		마천동 194-1일대	171,798.0	-	171,798.0	16.5	주택재개발	취소
	마천3구역		마천동 283일대	133,830.0	-	133,830.0	12.8	주택재개발	-
	마천4구역		마천동 323일대	60,653.0	-	60,653.0	5.8	주택재개발	-
존치관리구역	소 계			507,501.4	-	507,501.4	48.6	-	5개소
	존치시설		-	118,739.4	-	118,739.4	11.4	-	-
	마천성당		마천동 93-5일대	163,480.0	-	163,480.0	15.7	-	-
	거여새마을		거여동 549일대	123,282.0	-	123,282.0	11.8	-	-
	마천2구역 (마천지구단위계획)		마천동 183일대 (마천동 307-43일대)	84,728.0 (12,485.0)	-	84,728.0 (12,485.0)	8.1 (1.2)	-	-
	거여2지구단위계획		거여동 37일대	17,272.0	-	17,272.0	1.7	-	-

주) 지적현황측량성과를 반영한 면적 변경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변경

용도지역		면 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1,043,843.2	감) 15.1	1,043,828.1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87,262.0	-	87,262.0	8.4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207,283.0	-	207,283.0	19.9
	제2종일반주거지역	455,791.6	-	455,791.6	43.6
	제3종일반주거지역	260,398.6	감) 15.1	260,383.5	24.9
	준주거지역	33,108.0	-	33,108.0	3.2

주) 지적현황측량성과를 반영한 면적 변경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구 변경계획 : 변경없음

11)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변경없음

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계획		비고
				기준(%)	상한(%)	평균/최고층수	최고높이 (m)	
거여 2구역	1지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30.0	275.0이하	26이하/33이하	123이하	재정비촉진구역
	2지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30.0	277.1이하	26이하/33이하	123이하	재정비촉진구역
마천시장구역		복합용도	60이하	-	400.0이하	15이하/15이하	60이하	재정비촉진구역
마천1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0	236.4이하	22이하/28이하	106이하	존치정비구역 (구역취소)
마천3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0	270.5이하	22이하/25이하	119이하	재정비촉진구역
마천4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210.0	300.0이하	30이하/33이하	123이하	재정비촉진구역

주) 최고높이는 건축물 높이임

12)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가) 촉진지구 기반시설 : 변경

구 분		면 적 (㎡)			비율(%)
		기 정	증 감	변 경	
재정비촉진지구		1,043,843.2	감) 15.1	1,043,828.1	100.0
기반시설	소 계	348,718.0	-	348,718.0	33.41
	도 로	217,490.4	-	217,490.4	20.84
	공 원	41,181.7	-	41,181.7	3.94
	녹 지	7,569.7	-	7,569.7	0.73
	광 장	2,635.8	-	2,635.8	0.25
	하 천	25,811.9	-	25,811.9	2.47
	학 교	22,448.4	-	22,448.4	2.15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15,530.3	-	15,530.3	1.49
	공공공지(미래공공용지)	7,289.9	-	7,289.9	0.70
	주차장	2,041.9	-	2,041.9	0.20
	보육시설	1,200.0	-	1,200.0	0.11
	유치원	300.0	-	300.0	0.03
	자동차정류장	5,218.0	-	5,218.0	0.50

주) 지적현황측량성과를 반영한 면적 변경

나) 구역별 기반시설 분담 : 변경없음

구분	거여2	마천시장	마천1	마천3	마천4	존치지역	지구전체	
							면적	구성비
면 적	160,303.8	9,757.0	171,798.0	133,830.0	60,653.0	507,501.4	1,043,843.2	100.0
합 계	46,992.3	2,588.0	56,107.0	42,845.0	15,167.0	185,018.7	348,718.0	33.41
도 로	23,666.9	2,588.0	36,294.0	17,332.0	10,033.0	127,576.5	217,490.4	20.84
공 원	11,708.7	-	9,881.0	13,693.0	1,501.0	4,398.0	41,181.7	3.94
녹 지	436.7	-	2,134.0	-	2,108.0	2,891.0	7,569.7	0.73
광 장	2,123.8	-	512.0	-	-	-	2,635.8	0.25
하 천	-	-	613.0	-	-	25,198.9	25,811.9	2.47
학 교	-	-	2,104.0	-	-	20,344.4	22,448.4	2.15
문화체육	-	-	-	-	-	-	-	-
공공시설	1,949.3	-	4,386.0	5,102.0	1,525.0	2,568.0	15,530.3	1.49
공공용지 (미래공공용지)	7,106.9 (5,639.9)	- (-)	183.0 (-)	- (-)	- (-)	- (-)	7,289.9 (5,639.9)	0.70 (0.54)
주차장	-	-	-	-	-	2,041.9	2,041.9	0.20
보육시설	-	-	-	1,200.0	-	-	1,200.0	0.11
유치원	-	-	-	300.0	-	-	300.0	0.03
자동차정류장	-	-	-	5,218.0	-	-	5,218.0	0.50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변경없음

구분	도정법에 의한 임대주택건설				도촉법에 의한 추가임대주택건설									심의기준에 의한 추가임대주택건설				합 계				
					임대주택건설				장기전세(shift) 건설													
	소계	40㎡ 이하	40~50㎡	50~60㎡	소계	40㎡ 이하	40~50㎡	50~60㎡	소계	40㎡ 이하	40~50㎡	50~60㎡	60~85㎡	소계	40㎡ 이하	40~50㎡	50~60㎡	소계	40㎡ 이하	40~50㎡	50~60㎡	60~85㎡
거여 2	474	238	180	56	63	29	27	7	-	-	-	-	-	58	35	15	8	595 (19%)	302 (51%)	222 (37%)	71 (12%)	- (0%)
마천 1	451	224	181	46	19	9	8	2	-	-	-	-	-	10	4	4	2	480 (17%)	237 (50%)	193 (40%)	50 (10%)	- (0%)
마천 3	315	315	-	-	69	69	-	-	-	-	-	-	-	37	37	-	-	421 (17%)	421 (100%)	- (0%)	- (0%)	- (0%)
마천 4	158	70	74	14	-	-	-	-	132	26	61	9	36	17	8	7	2	307 (22%)	104 (34%)	142 (46%)	25 (8%)	36 (12%)
합계	1,398	847	435	116	151	107	35	9	132	26	61	9	36	122	84	26	12	1,803	1,064	557	146	36

주 1) 도정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 도촉법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 심의기준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가이드라인 (서울시)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

구 분		사업기간			해 당 구 역	비 고
		추진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1단계	기정	2008	2010. 12이후	2014. 6	거여2구역, 마천시장구역	재정비촉진구역
3단계	기정	2011	2021년 경	2024년 경	마천3구역	
	기정	2011	2018. 12이후	2021. 6	마천4구역	
	변경	2011	2019. 12이후	2022. 6	마천4구역	

주1) 일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청장이 각 단계의 총량 범위내에서 관리하고 이에 따른 사업기간의 변경 또는 해당구역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함

주2) 총량의 범위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별도 운용기준을 정함 (예 : 4,000세대가 넘지 않는 범위내)

15)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 : 변경없음

16)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17)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8) 친환경 건축물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9) 기타계획(특성화계획, 기타계획) : 변경없음

20)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 변경

가) 거여2구역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촉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거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송파구 거여동 202번지 일대	160,303.8	감) 15.1	160,288.7	

주) 지적현황측량성과를 반영한 면적 변경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60,303.8	감) 15.1	160,288.7	100.0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46,992.3	-	46,992.3	29.3	
	도 로	23,666.9	-	23,666.9	14.8	
	공 원	11,708.7	-	11,708.7	7.3	
	녹 지	436.7	-	436.7	0.3	
	공공청사	1,949.3	-	1,949.3	1.2	
	공공공지 (미래공공부지)	7,106.9 (5,639.9)	-	7,106.9 (5,639.9)	4.4 (3.5)	
	광 장	2,123.8	-	2,123.8	1.3	
택지(획지)	소 계	113,311.5	감) 15.1	113,296.4	70.7	
	1-1-1	68,347.3	감) 15.1	68,332.2	42.6	공동주택
	1-1-2	1,406.9	-	1,406.9	0.9	종교용지
	1-1-3	198.0	-	198.0	0.1	대 지
	1-2	43,359.3	-	43,359.3	27.1	공동주택

주) 지적현황측량성과를 반영한 면적 변경

○ 1지구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8,453.7	감) 15.1	98,438.6	100.0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28,501.5	-	28,501.5	29.0	
	도 로	11,885.3	-	11,885.3	12.1	
	공 원	6,238.7	-	6,238.7	6.3	
	공공청사	1,949.3	-	1,949.3	2.0	
	공공공지 (미래공공부지)	7,106.9 (5,639.9)	-	7,106.9 (5,639.9)	7.2	
	광 장	1,321.3	-	1,321.3	1.4	
택지(획지)	소 계	69,952.2	감) 15.1	69,937.1	71.0	
	1-1-1	68,347.3	감) 15.1	68,332.2	69.4	공동주택
	1-1-2	1,406.9	-	1,406.9	1.4	종교용지
	1-1-3	198	-	198	0.2	대 지

주) 지적현황측량성과를 반영한 면적 변경

○ 2지구 :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1,850.1	-	61,850.1	100.0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18,490.8	-	18,490.8	29.9	
	도 로	11,781.6	-	11,781.6	19.1	
	공 원	5,470.0	-	5,470.0	8.8	
	녹 지	436.7	-	436.7	0.7	
	광 장	802.5	-	802.5	1.3	
택지(획지)	소 계	43,359.3	-	43,359.3	70.1	
	1-2	43,359.3	-	43,359.3	70.1	공동주택

(나) 용도지역 변경계획

용도지역		면 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60,303.8	감) 15.1	160,288.7	100.0
주거지역	2종(12층)일반주거지역	18,611.2	-	18,611.2	11.6
	3종일반주거지역	141,692.6	감) 15.1	141,677.5	88.4

주) 지적현황측량성과를 반영한 면적 변경

○ 1지구

용도지역		면 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98,453.7	감) 15.1	98,438.6	100.0
주거 지역	2종(12층)일반주거지역	16,998.6	-	16,998.6	17.3
	3종일반주거지역	81,455.1	감) 15.1	81,440.0	82.7

주) 지적현황측량성과를 반영한 면적 변경

○ 2지구 : 변경없음

용도지역		면 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61,850.1	-	61,850.1	100.0
주거지역	2종(12층)일반주거지역	1,612.6	-	1,612.6	2.6
	3종일반주거지역	60,237.5	-	60,237.5	97.4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 도 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	25	보조 간선도로	334	거여동 213-50	거여동 35-7	일반도로		서고574호	
기정	중로	1	220	20~27	보조 간선도로	571 (172)	거여동 31-17	거여동 31-17	일반도로		서고714호	
기정	중로	1	1	24	보조 간선도로	750	마천동 115-2	거여동 222-16	일반도로		서고48호 (74.3.15)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280 (135)	거여동 43-9	거여동 224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242 (193)	거여동 43-9	거여동 235-1	일반도로		건고364호 (81.9.26)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69	거여동 224	거여동 224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87	거여동 41-22	거여동 43-9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66	거여동 43-9	거여동 43-9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구역외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거여2구역내 연장을 의미함

□ 철 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m)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철도	도시철도 (5호선)	강서구 방화동	마천동 370, 226	L=52,300 (227)	-	L=52,300 (227)	건고151호 (91.3.25)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거여2구역내 연장을 의미함.

○ 광 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교통 광장	교차점광장	거여동 183-11일대	1,321.3	-	1,321.3	서고294호 (08.8.28)	
기정	②	교통 광장	교차점광장	거여동 222-3일대	802.5	-	802.5	서고294호 (08.8.28)	

○ 공 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원	근린공원	거여동 200-4일대	10,569.0	-	10,569.0	서고294호 (08.8.28)	향유 근린공원
기정	①	공원	소공원	거여동 181-143일대	1,139.7	-	1,139.7	서고294호 (08.8.28)	

○ 녹 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연결녹지	거여동 35-7일대	436.7	-	436.7	서고259호 (11.9.8)	

○ 공공공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 공지	-	거여동 198-17일대	1,467.0	-	1,467.0	서고294호 (08.8.28)	
기정	②	공공 공지	-	거여동 41-4일대	5,639.9	-	5,639.9	서고294호 (08.8.28)	미래공공 용지

○ 공공청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 청사	-	거여동 195-1일대	3,254.3 (1,949.3)	-	3,254.3 (1,949.3)	송고24호 (03.6.10)	거여2동사무소(기정), 사회복지시설 복합화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변경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거여2 재정비 촉진 구역		기정	160,303.8	-	113,311.5	송파구 거여동 202번지 일대	1,300	-	-	1,300	-	
		변경	160,288.7	-	113,296.4							
	거여 2-1지구	기정	98,453.7	1-1	69,952.2	송파구 거여동 180번지 일대	1,004	-	-	1,004	-	
		변경	98,438.6	1-1	69,937.1							
	거여 2-2지구		61,850.1	1-2	43,359.3	송파구 거여동 234번지 일대	296	-	-	296		

주) 지적현황측량성과를 반영한 면적 변경

○ 건축시설계획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평균 층수	최고층수 (m)
거여2 재정비 촉진 구역	기정	160,303.8	-	113,311.5	송파구 거여동 202번지 일대	307,608.7	공동 주택	50 이하	277.1 이하	26 이하	33이하 (123이하)
	변경	160,288.7	-	113,296.4	송파구 거여동 202번지 일대	307,994.2	공동 주택	50 이하	277.1 이하	26 이하	33이하 (123이하)

주) 지적현황측량성과를 반영한 면적 변경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평균층수	최고층수 (m)
거여2-1지구	기정	98,453.7	1-1-1	68,347.3	송파구 거여동 180번지 일대	187,460.1	공동주택	30 이하	275 이하	26 이하	33이하 (123이하)
			1-1-2	1,406.9	송파구 거여동 205번지 일대	-	종교시설	60 이하	200 이하	10층이하	
			1-1-3	198.0	송파구 거여동 235번지 일대	-	주택, 근생시설	60 이하	200 이하	-	
	변경	98,438.6	1-1-1	68,332.2	송파구 거여동 180번지 일대	187,845.6	공동주택	30 이하	275 이하	26 이하	33이하 (123이하)
			1-1-2	1,406.9	송파구 거여동 205번지 일대	-	종교시설	60 이하	200 이하	10층이하	
			1-1-3	198.0	송파구 거여동 235번지 일대	-	주택, 근생시설	60 이하	200 이하	-	
거여2-2 지구		61,850.1	1-2	43,359.3	송파구 거여동 234번지 일대	120,148.6	공동주택	30 이하	277.1 이하	26 이하	33이하 (123이하)
주택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거여2 재정비 촉진구역		•총 호수 : 3,144호 (임대 595호) - 전용면적 60㎡이하 : 1,452호 - 전용면적 60~85㎡이하 : 1,531호 - 전용면적 85㎡초과 : 161호						
			2-1지구		•총 호수 : 1,945호 (임대 368호) - 전용면적 60㎡이하 : 920호 - 전용면적 60~85㎡이하 : 987호 - 전용면적 85㎡초과 : 38호						
			2-2지구		•총 호수 : 1,199호 (임대 227호) - 전용면적 60㎡이하 : 532호 - 전용면적 60~85㎡이하 : 544호 - 전용면적 85㎡초과 : 123호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걷고싶은거리변, 남북연결로 : 10m •거마로변과 현대아파트2차 도로변, 공원변 : 6m								

주1) 거여2구역의 사업시행지구 분할에 따른 지구별 대비표
주2) 지구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법정 기준 내에서 사업시행단계에서 확정
주3) 거여2-1구역 사업시행인가고시('19.02.07)에 따른 용적률산정용연면적 변경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시행방법	시행 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 고
주택재개발사업	2008	주택재개발조합	-	-	

(바)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결정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연면적(㎡)	세대규모(전용면적)	호수	비고
기정	거여2 재정비 촉진구역	13,415	38,005.9	40㎡이하	302호	
				40~50㎡이하	222호	
				50~60㎡이하	71호	
				소 계	595호(18.9%)	
	거여 2-1 지구	8,169	23,366.2	40㎡이하	192호	
				40~50㎡이하	128호	
				50~60㎡이하	48호	
				소 계	368호(18.9%)	
	거여 2-2 지구	5,246	14,639.7	40㎡이하	110호	
				40~50㎡이하	94호	
				50~60㎡이하	23호	
				소 계	227호(18.9%)	

나) 마천시장구역 : 변경없음

다) 마천1구역 : 변경없음

라) 마천3구역 : 변경없음

마) 마천4구역 : 변경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구분	촉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송파구 마천동 323번지 일대	60,653.0	-	60,653.0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0,653.0	-	60,653.0	100.0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15,167.0	-	15,167.0	27.4	
	도 로	10,033.0	-	10,033.0	16.4	
	공 원	1,501.0	-	1,501.0	2.6	
	녹 지	2,108.0	-	2,108.0	3.6	
	공공시설	1,525.0	-	1,525.0	2.5	
택지(획지)	소 계	45,486.0	-	45,486.0	74.9	
	6-1	44,185.0	-	44,185.0	72.8	공동주택
	6-3	1,301.0	-	1,301.0	2.1	택시차고지

주)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건축물 배치계획 변경으로 인해 저층부 연도형 상가 배치구간이 변경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결정도 상 반영

(나) 용도지역 변경계획 : 변경없음

용도지역		면 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0,653.0	-	60,653.0	100.0
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657.0	-	657.0	1.1
	2종(7층)일반주거지역	10,972.0	-	10,972.0	18.1
	2종일반주거지역	4,839.0	-	4,839.0	8.0
	3종일반주거지역	44,185.0	-	44,185.0	72.8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 도 로

구분	규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2	25	보조 간선도로	1,768 (72)	마천동 산15-1	마천동 323-200	일반도로		서고98호 (11.4.21)	
기정	대로	3	3	27	보조 간선도로	500	마천동 산71-23	거여동 586	일반도로		서고719호 (84.12.3)	
기정	중로	1	221	20	보조 간선도로	485 (289)	거여동 308-35	마천동 267-19	일반도로		서고98호 (11.4.21)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48	마천동 325-2	마천동 324	일반도로		서고191호 (12.7.26)	
기정	소로	3	53	6	국지도로	30	마천동 311-156	마천동 311-156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마천4구역 내 연장을 의미함.

○ 공 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	공원	소공원	마천동 323-219일대	1,501.0	-	1,501.0	서고55호 (17.2.23)	

○ 녹 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⑨	녹지	경관녹지	마천동 309-55일대	2,108.0	-	2,108.0	서고55호 (17.2.23)	

○ 공공청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③	공공 청사	-	마천동 211-45일대	2,788.0 (1,525.0)	-	2,788.0 (1,525.0)	송고31호 (094.6.28)	

주) 괄호 내용은 마천4구역 내 면적을 의미함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동이용시설	관리사무소	마천4재정비 촉진구역	170.00	증) 86.28	256.28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조정기준」 적용
	커뮤니티지원시설		3,900.00	증) 252.26	4,152.26	
	작은도서관		210.00	증) 194.14	404.14	
	어린이집		580.00	증) 127.82	707.82	
	경비실		80.00	증) 8.56	88.56	
	노인정		375.00	증) 4.85	379.85	
	어린이놀이터		1,500.00	증) 3.64	1,503.64	
	주민운동시설		1,000.00	증) 62.24	1,062.24	
	휴게시설		3개소	증) 3개소	6개소	

주) 주택재개발사업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변경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마천4 재정비 촉진 구역	기정	60,653.0	6-1	44,185.0	송파구 마천동 323번지 일대	261	-	-	261	-	
			6-3	1,301.0	송파구 마천동 331-66번지 일대						

○ 건축시설계획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평균 층수	최고 층수
마천 4구역	기정	60,653.0	6-1	44,185.0	송파구 마천동 323번지 일대	132,509.0	공동 주택	30 이하	300 이하	30 이하	33 이하
			6-3	1,301.0	송파구 마천동 331-66번지 일대	2,602.0	택시 차고지	-	-	-	-
	변경	60,653.0	6-1	44,185.0	송파구 마천동 323번지 일대	132,492.1	공동 주택	30 이하	300 이하	30 이하	33 이하
			6-3	1,301.0	송파구 마천동 331-66번지 일대	2,602.0	택시 차고지	-	-	-	-
주택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총 호수 : 1,389호 (임대 307호) → 1,383호 (임대 307호) - 전용면적 60㎡이하 : 704호 → 721호 - 전용면적 60~85㎡이하 : 654호 → 630호 - 전용면적 85㎡초과 : 31호 → 32호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마천동길변 : 10m(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구간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관리청에 권한 위임) - 지상권 설정 구간 : 폭원 = 3m, 길이 = 235.0m, 면적 = 663.5㎡ •인성복지관길변, 성내천대체도로변, 이면도로변 및 성내천변 : 6m •존치시설변 : 3m								

주1) 건축물 배치계획 변경에 따른 세대수 변경

주2) 지구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법정 기준 내에서 사업시행단계에서 확정

주3) 마천동길변 지상권이 설정되는 부분은 재정비위원회 심의('16.11.08)시 나온 의견(대지내 공지에 가감속차로 설치)을 반영하는 사항이고,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로설계, 측량 결과 등에 따라 길이, 면적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지상권이 설정된 구간 내에 필요시 도로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음

(바)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시행방법	시행 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 고
주택재개발사업	2017	주택재개발조합	-	-	

(사)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결정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세대규모(전용면적)	호수	비고
기정	마천4 재정비 촉진구역	44,185.0	40㎡이하	104호	
			40~50㎡이하	142호	
			50~60㎡이하	25호	
			60㎡초과	36호	
			소 계	307호	

21) 존치지역의 관리계획 : 변경없음

22)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중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결정·변경과 도시계획시설(신설,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은 재정비촉진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하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권자가 별도 결정·고시한다.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에 명시

6. 지형도면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및 송파구 주거사업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7.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22) 및 송파구 주거사업과(☎ 02-2147-2897, 02-2147-2903)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마천1재정비촉진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소송 일부 패소('14.03.13)된 구역이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를 현재 진행(송파구)중이므로, 본 고시 조서에는 해당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붙임 : 관계도면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 촉진구역 및 존치지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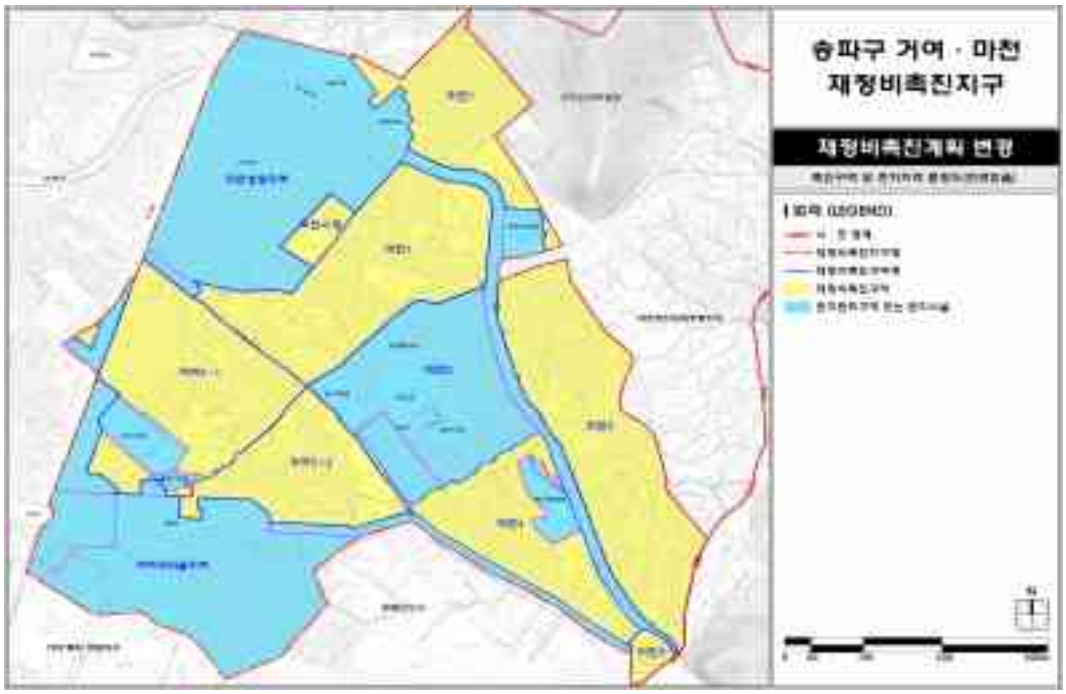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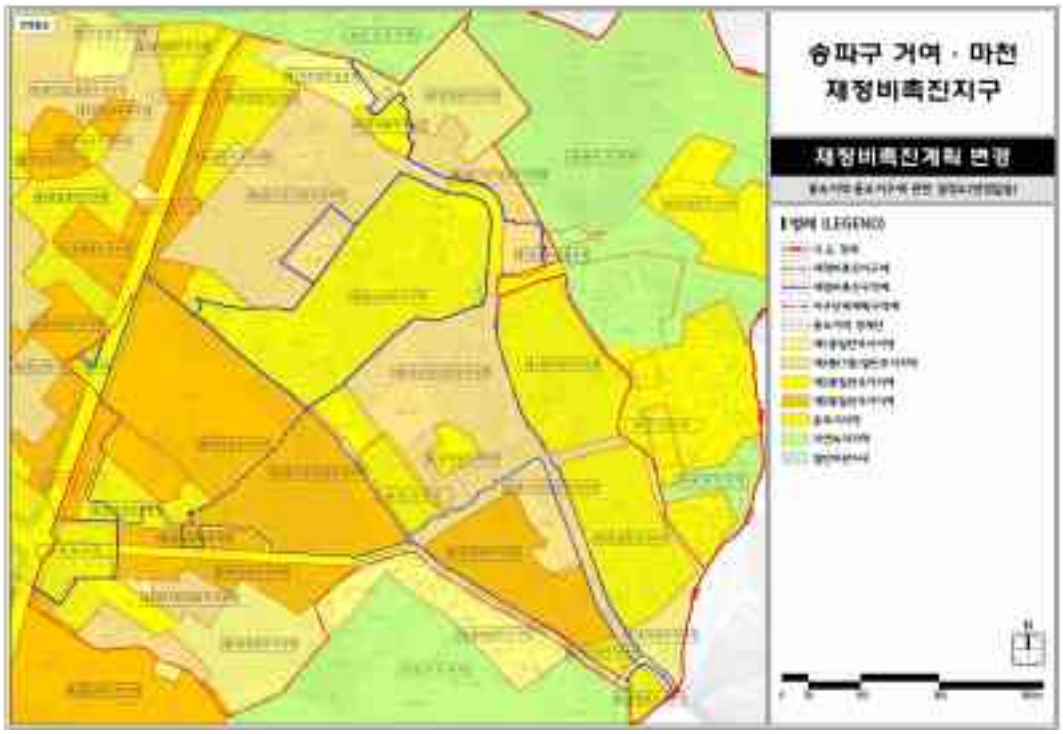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도(기정)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40호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96호(2007.06.2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1호(2008.04.03.)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45호(2009.04.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2호(2010.04.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1호(2010.09.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14호(2011.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17호(2011.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2호(2011.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31호(2011.08.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44호(2011.08.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90호(2011.09.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4호(2012.02.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38호(2012.05.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69호(2012.06.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0호 (2013.0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05호(2013.04.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61호 (2013.05.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01호(2013.09.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73호(2014.07.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27호(2014.09.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06호(2014.11.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08호(2015.04.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32호 (2015.05.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20호(2015,10.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73호 (2016.03.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19호(2016.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82호(2017.10.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7호(2019.0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88호(2019.03.0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변경)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장 위 재정비촉진지구	주거 지형	성북구 장위동 일원	1,872,072.5	감) 953,171.0	918,901.5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 제척으로 면적 변경

주) 장위8,9,11,12,13,15구역 해제에 따라 지구에서 제척 / 토지이용계획 재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변경)

구분	기준년도	목표연도	비고
기정	2006년	2020년	
변경	2006년	2025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 적(㎡)				비 율(%)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총 계		1,872,072.5	감)	953,171.0	918,901.5	100.00	
주거	소 계	1,175,682.1	감)	608,564.7	567,117.4	61.71	
	공동주택	1,083,320.9	감)	558,150.3	525,170.6	57.15	
	복합용지	92,361.2	감)	50,414.4	41,946.8	4.56	
정비기반시설등	소 계	660,162.9	감)	324,226.7	335,936.2	36.57	
	도 로	275,823.4	감)	87,157.4	188,666.0	20.55	
	공 원	209,288.0	감)	129,380.7	79,907.3	8.70	
	녹 지	53,779.8	감)	34,447.9	19,331.9	2.10	
	학 교	50,595.2	감)	17,422.0	33,173.2	3.61	
	공공공지	43,243.7	감)	38,985.7	4,258.0	0.46	
	공공청사	14,153.4	감)	7,334.0	6,819.4	0.74	
	문화시설	5,034.0	감)	5,034.0	-	-	
	사회복지시설	2,861.0	감)	1,861.0	1,000.0	0.11	
	연구시설	2,604.0	감)	2,604.0	-	-	
	청소년수련시설	2,780.4		-	2,780.4	0.30	
기타	소 계	36,227.5	감)	20,379.6	15,847.9	1.72	
	종교시설	27,462.7	감)	17,592.7	9,870.0	1.07	
	근린생활시설	8,666.8	감)	3,230.9	5,435.9	0.59	
	의료시설	98.0	감)	98.0	-	-	
	우체국	-	증)	542.0	542.0	0.06	

주) 장위8,9,11,12,13,15구역 해제에 따라 지구에서 제척

주) 장위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면적변경 및 토지이용계획 재정비

나.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 : 39,418인 / 14,599세대

구분	기 정	증 감	변 경	비고
인구(인)	83,738	감) 44,320	39,418	-
세대수(세대)	27,253	감) 12,654	14,599	-

주) 변경 인구(인): 세대당 2.7인 적용

주) 장위8,9,11,12,13,15구역 해제에 따라 지구에서 제척

○ 구역별 주택공급계획(변경)

구분	구역별	합계				임대				분양			
		세대수 (비율%)	60㎡ 미만	60 ~85㎡	85㎡ 초과	소계	40㎡	40 ~50㎡	50 ~60㎡	소계	60㎡ 미만	60 ~85㎡	85㎡ 초과
계		14,599 (100%)	6,629 (45.4%)	7,046 (48.3%)	924 (6.3%)	2,519 (17.3%)	1,094	1,080	345	12,080 (82.7%)	4,110	7,046	924
기정	1구역	939	356	556	27	162	71	69	22	777	194	556	27
기정	2구역	513	242	268	3	92	40	37	15	421	150	268	3
기정	3구역	1,078	216	432	430	184	84	79	21	894	32	432	430
기정	4구역	2,840	1,309	1,438	93	484	194	200	90	2,356	825	1,438	93
기정	5구역	1,562	660	756	146	276	123	117	36	1,286	384	756	146
기정	6구역	1,637	758	818	61	285	129	126	30	1,352	473	818	61
기정	7구역	1,711	844	825	42	295	125	137	33	1,416	549	825	42
기정	10구역	1,968	882	1,063	23	336	152	142	42	1,632	546	1,063	23
변경		2,025	943	1,056	26	345	160	149	36	1,680	598	1,056	26
기정	14구역	2,294	1,301	897	96	396	168	166	62	1,898	905	897	96

주) 전용85㎡ 초과 주택수 924세대 6.3%로 기준 20%미만 충족
주) 임대주택(2,519)은 세대 17.3%로 기준 15%이상 충족
주) 장위1구역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 40㎡이하 173세대(임대30세대) 미포함
주) 장위8,9,11,12,13,15구역 해제에 따라 지구에서 제척

다.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 교육시설(변경)

학교명	위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장곡초등학교	장위동 235	8,734.0	감) 1,552.0	7,182.0	장위13구역 해제에 따른 기존현황 존치
장위초등학교	장위동 68-8	16,760.0	감) 950.0	15,810.0	장위15구역 해제 및 10구역 변경사항 반영
광운초등학교	장위동 124	17,519.2	감) 156.0	17,363.2	기존하천 359㎡ 중복결정
남대문중학교	장위동 124-1				
월곡중학교	장위동 35-1	7,582.0	감) 989.0	6,593.0	장위15구역 해제에 따른 기존현황 존치

주) 광운초·남대문중의 경우 장위1구역과 광운학원과의 대토협의
주) 장위8,9,11,12,13,15구역 해제에 따라 지구에서 제척

○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변경)

구분	현황			계획			비고
	시설명	위치	면적(㎡)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	공공청사(장위1주민센터)	장위동 225-100	662	공공청사(장위1동 주민센터)	장위동 219-315	2,019	장위13구역 ◦ 장위1동주민센터 ◦ 주민커뮤니티센터 (지상3/지하1) - 생활체육관, 주민센터, 취미교실, 도서실, 경로당, 유치원 ◦ 연면적: 2,500.0㎡
	복지시설(장위1동 어린이집)	장위동 218-27	307				
	복지시설(장수경로당)	장위동 218-27	307				
	복지시설(장위1동경로당)	장위동 산3-101	165				
변경	공공청사(장위1주민센터)	장위동 225-100	662	공공청사(장위1주민센터)	장위동 225-100	662	◦ 장위13구역해제에 따른 시설환원(현황존치)
	복지시설(장위1동 어린이집)	장위동 218-27	307	복지시설(장위1동 어린이집)	장위동 218-27	307	
	복지시설(장수경로당)	장위동 218-27	307	복지시설(장위경로당)	장위동 218-27	307	
	복지시설(장위1동경로당)	장위동 산3-101	165	-	-	-	◦ 장위13구역해제에 따른 장위14구역내 대체확보 예정
기정	공공청사(장위1치안센터)	장위동 233-250	65.36	공공청사(장위1동 치안서비스센터)	장위동 230-44	892	장위13구역 ◦ 치안서비스센터
변경	공공청사(장위1치안센터)	장위동 233-250	65.36	-	-	-	◦ 장위13구역해제에 따른 장위14구역 내 대체확보 예정
기정	공공청사(장위2동 주민센터)	장위동 69-54	798	공공청사(장위2동 주민센터)	장위동 68-263	2,454	장위11구역 ◦ 장위2동주민센터 ◦ 주민커뮤니티센터 (지상3/지하1) - 생활체육관, 주민센터, 취미교실, 도서실, 경로당, 유치원 ◦ 연면적: 2,500.0㎡
	복지시설(장위2동경로당)	장위동 68-1055	165				
변경	공공청사(장위2동 주민센터)	장위동 69-54	798	공공청사(장위2동 주민센터)	장위동 68-255일대	1,000	장위11구역해제에 따라 장위10구역 내 대체확보 ◦ 장위2동주민센터 ◦ 주민커뮤니티센터 - 생활체육관, 주민센터, 취미교실, 경로당, 유치원(어린이집) ◦ 연면적:1,800.0㎡
	복지시설(장위2동경로당)	장위동 68-1055	165				
기정	공공청사(장위지구대)	장위동 272-74	59.4	공공청사(장위2동 치안서비스센터)	장위동 68-225	928	장위11구역 ◦ 치안서비스센터
변경	공공청사(장위지구대)	장위동 272-74	59.4	공공청사(장위지구대)	장위동 272-74	59.4	◦ 장위11구역해제에 따른 시설환원(현황존치)

구분	현황			계획			비고
	시설명	위치	면적(㎡)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	공공청사(석관우체국)	장위동 69-176	506	공공청사(장위우체국)	장위동 65-159	2,100	장위11구역 ◦ 장위우체국 (지상4/지하1)
	공공청사(장위우체국)	장위동 69-4	427				
변경	공공청사(석관우체국)	장위동 69-176	506	공공청사(석관우체국)	장위동 69-176	506	◦ 장위11구역해제에 따른 시설환원(현황존치)
	공공청사(장위우체국)	장위동 69-4	427	장위우체국	장위동 110-26	542	◦ 4구역 내 대체확보
기정	공공청사(성북벤처창업지원센터)	장위동 65-154	1,825	공공청사(성북벤처창업지원센터)	장위동 65-154	2,604	장위11구역 ◦ 성북벤처창업지원센터
변경	공공청사(성북벤처창업지원센터)	장위동 65-154	1,825	공공청사(성북벤처창업지원센터)	장위동 65-154	1,825	◦ 장위11구역해제에 따른 시설환원(현황존치)
기정	복지시설(장위3동어린이집)	장위동 77-64	978.0	복지시설(장위3동어린이집)	장위동 77-64	1,114	장위8구역 ◦ 장위3동어린이집 (지상2/지하1) - 보육정원 115명
변경	복지시설(장위3동어린이집)	장위동 77-64	978.0	복지시설(장위3동어린이집)	장위동 77-64	978.0	◦ 장위8구역해제에 따른 시설환원(현황존치)
기정	청소년수련시설(성북청소년수련관)	장위동 135-2	2,696.0	청소년수련시설(성북청소년수련관)	장위동 135-2	2,780.4	장위1구역 ◦ 성북청소년수련관 (지상4/지하2)
기정	공공청사(장위3동주민센터)	장위동 117-5	508	공공청사(장위3동주민센터)	장위동 98-1	2,399	장위4구역 ◦ 장위3동주민센터 ◦ 주민커뮤니티센터 (지상3/지하1) - 생활체육관, 주민센터, 취미교실, 도서실, 경로당, 유치원 ◦ 연면적: 2,500.0㎡
	복지시설(장위3동경로당)	장위동 135-5	165				
변경	공공청사(장위3동주민센터)	장위동 117-5	508	공공청사(장위3동주민센터)	장위동 94-4	2,050	장위4구역 ◦ 장위3동주민센터 ◦ 주민커뮤니티센터 (지상3/지하1) - 생활체육관, 주민센터, 취미교실, 도서실, 경로당, 유치원(어린이집) ◦ 연면적: 2,500.0㎡ ※ 장위종합사회복지관 (연면적1,500㎡), 건강생활지원센터 (연면적 600㎡) 4구역 공공청사 대체 확보예정
	복지시설(장위3동경로당)	장위동 135-5	165				

구분	현황			계획			비고
	시설명	위치	면적(㎡)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	공공청사(장위소방치안센터)	장위동 34	419	공공청사(소방치안센터)	장위동 270-172	1,009.9	장위6구역 ◦ 장위동 소방치안센터(지상3/지하1)
기정	-	-	-	공공청사(장위3치안센터)	장위동 270-388	754.8	장위6구역
기정	-	-	-	공공청사(주민커뮤니티센터)	장위동 176-33	1,297.2	장위5구역 ◦ 주민커뮤니티센터 - 생활체육관, 취미교실, 도서실, 경로당, 유치원, 복지센터(실버센터) ◦ 연면적: 1,500.0㎡
기정	-	-	-	사회복지시설	장위동 176-23	1,000	장위3구역 ◦ 복지센터 ◦ 연면적: 2,000.0㎡ ※ 시설용도 변경 검토중
기정	-	-	-	공공청사(치안센터)	장위동 155-1	299.5	◦ 장위1구역 치안센터
기정	-	-	-	도서관	장위동 233-209	3,460	장위14구역 ◦ 공동주택용지 내 결정 ◦ 연면적 : 3,460.0 ◦ 대지지분: 1,503.9㎡ (기부채납)
신설	-	-	-	공공청사	장위동 68-942	408	장위10구역 ◦ 해제구역주민들을 위한 공공청사 신설
폐지	복지시설(장위종합사회복지관)	장위동 112-1	454.0	문화시설(종합문화복지센터)	장위동 76-299	3,084	◦ 장위9구역해제에 따른 시설 폐지 ※ 추후 장위종합사회복지관(연면적1,500㎡), 건강생활지원센터(연면적 600㎡) 추가확보예정
폐지	-	-	-	사회복지시설	장위동 238-249	747	◦ 장위10구역해제에 따른 시설 폐지
폐지	-	-	-	문화시설	장위동 246-300	1,950	◦ 장위15구역해제에 따른 시설 폐지

주)장위14재정비촉진구역 내 시설(도서관) 누락 정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19-88호)
주)장위우체국 현황 면적 오류 정정, 그 외 현황 면적 기정 고시 내용 반영(서울특별시고시 제2019-88호)
주)장위8,9,11,12,13,15구역은 해제에 따라 지구에서 제척

라.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

구분		시설번호	명칭	면 적(㎡) 기 정	증 감		변 경	명칭의 유래
합 계				263,067.8	감)	163,828.6	99,239.2	
생활권공원	소 계			209,288.0	감)	129,380.7	79,907.3	
	주제공원		4개소	45,627.0	감)	41,545.7	4,081.3	
		410	남령역사공원	15,726.0	감)	15,726.0	–	남령위 윤의선을 주제로 한 공원
		412	장시문화공원	21,910.0	감)	21,910.0	–	시장터였던 장소의 맥락을 따름
		415	상길례문화공원	4,077.0	증)	4.3	4,081.3	덕온공주의 하가의식인 '길례'에서 공원명칭 부여
		416	하길례문화공원	3,914.0	감)	3,914.0	–	
	근린공원		4개소	144,186.0	감)	93,402.0	50,784.0	
		411	아랫말공원	22,782.0	감)	24.0	22,758.0	옛 장위동을 이루는 마을이름
		413	푸석공원	31,400.0	감)	20,303.0	11,097.0	옛 명칭인 푸석산(푸르름)에서 유래
		414	명덕공원	18,041.0	감)	18,041.0	–	옛 장위동을 이루는 마을이름
		140	오동근린공원	71,963.0	감)	55,034.0	16,929.0	대상지의 남북축을 연결하는 공원
	어린이공원		3개소	18,258.0	증)	6,784.0	25,042.0	
		417	석촌공원	8,321.0	–		8,321.0	석촌 윤용구 선생을 주제로 한 공원
		418	간대공원	4,916.0	–		4,916.0	옛 장위동을 이루는 마을이름
		419	장석공원	5,021.0	증)	628.0	5,649.0	장석시장의 지역적 맥락에서 유래
		A	–	–	증)	6,156.0	6,156.0	
	소공원		1개소	1,217.0	감)	1,217.0	–	
		420	마른대미공원	1,217.0	감)	1,217.0	–	옛날 이 지역의 고개이름에서 유래
녹지	소 계			53,779.8	감)	34,447.9	19,331.9	
	연결녹지		17개소	53,779.8	감)	41,349.6	12,430.2	
		20~23	장위산내길(중앙연결녹지)	18,187.8	감)	14,837.5	3,350.3	장위동 + 산 + 내
		24~33	푸른에움길(수계연결녹지)	28,077.6	감)	21,259.1	6,818.5	푸른 녹지와 물로 둘러싸인 길
		34~36	보행연결녹지	6,760.4	감)	5,553.0	1,207.4	생활 속의 환경생태녹지로 조성
		37	연결녹지	754.0	증)	300.0	1,054.0	
	경관녹지		5개소	–	증)	6,901.7	6,901.7	
		a	경관녹지	–	증)	2,232.5	2,232.5	
		b	경관녹지	–	증)	379.3	379.3	
		c	경관녹지	–	증)	1,258.0	1,258.0	
		d	경관녹지	–	증)	2,715.9	2,715.9	
		e	경관녹지	–	증)	316.0	316.0	

주) 장위8,9,11,12,13,15구역은 해제에 따라 지구에서 제척

주) 장위10구역 : 연결녹지㉚,㉟ 폐지에 따른 공원·녹지기준 충족 및 장위초와 연계하는 공원계획으로 어린이공원A 신설

주) 장위1구역 : 연결녹지㉓ 폐지 → 경관녹지a 신설, 연결녹지 ㉔폐지 → 경관녹지b 신설

장위5구역 : 연결녹지㉘ 폐지 → 경관녹지d 신설

장위6구역 : 연결녹지㉙ 폐지 → 경관녹지b 신설, 연결녹지㉝ 폐지 → 경관녹지e 신설

※ 우이천변 경관향상을 위하여 연결녹지를 경관녹지로 변경

장위4구역 : 경관녹지c 신설

※ 공원·녹지 확보기준 충족을 위한 경관녹지 신설

마. 교통계획(변경)

○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2 5.교통계획)에 명시

바. 경관계획(변경)

○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2 6.경관계획)에 명시

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주택재개발사업(변경)

구분	구역 번호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	층수	건폐율 (%)	추진 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유형	비고
기정	장위1	–	장위동	144-24	8.0	–	–	–	1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장위2	–	장위동	290-9	2.5	–	–	–	2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장위3	–	장위동	305	6.6	–	–	–	6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장위4	–	장위동	62-1	15.4	–	–	–	3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장위5	–	장위동	173-114	9.0	–	–	–	3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장위6	–	장위동	25-55	10.5	–	–	–	5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장위7	–	장위동	189-3	8.7	–	–	–	2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해제	장위8	–	장위동	85	11.9	–	–	–	5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제척
해제	장위9	–	장위동	238-83	8.6	–	–	–	4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제척
기정	장위10	–	장위동	68-37	9.4	–	–	–	3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해제	장위11	–	장위동	68-141	16.0	–	–	–	5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제척
해제	장위12	–	장위동	231-233	4.9	–	–	–	4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제척
해제	장위13	–	장위동	232-17	31.8	–	–	–	6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제척
기정	장위14	–	장위동	233-552	14.4	–	–	–	4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해제	장위15	–	장위동	233-42	19.0	–	–	–	6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제척

주) 1단계(2009년부터), 2단계(2011년부터), 3단계(2012년부터), 4단계(2013년부터), 5단계(2014년부터), 6단계(2015년부터)
용적률, 건폐율, 층수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름

주) 장위8,9,11,12,13,15구역 해제에 따라 지구에서 제척

○ 주택재건축사업 : 해당없음

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기 정	면 적(㎡) 증 감	면 적(㎡) 변 경	사업방식	비고
총 계				1,872,072.5	감) 953,171.0	918,901.5	–	
촉진구역	소 계 (15개 구역)			1,765,575.7	감) 921,102.0	844,473.7	–	
촉진구역	장위1구역	성북구 장위동 144-24 일원		80,265.6	–	80,265.6	주거정비형재개발	
촉진구역	장위2구역	성북구 장위동 290-9 일원		25,194.0	증) 150.0	25,344.0	주거정비형재개발	
촉진구역	장위3구역	성북구 장위동 305 일원		66,011.0	–	66,011.0	주거정비형재개발	
촉진구역	장위4구역	성북구 장위동 62-1 일원		153,501.0	–	153,501.0	주거정비형재개발	
촉진구역	장위5구역	성북구 장위동 173-114 일원		88,763.5	–	88,763.5	주거정비형재개발	
촉진구역	장위6구역	성북구 장위동 25-55 일원		105,163.9	–	105,163.9	주거정비형재개발	
촉진구역	장위7구역	성북구 장위동 189-3 일원		87,151.7	–	87,151.7	주거정비형재개발	
촉진구역	장위8구역	성북구 장위동 85 일원		119,371.0	감) 119,371.0	–	주거정비형재개발	제척
촉진구역	장위9구역	성북구 장위동 238-83 일원		85,878.0	감) 85,878.0	–	주거정비형재개발	제척
촉진구역	장위10구역	성북구 장위동 68-37 일원		94,245.0	감) 173.0	94,072.0	주거정비형재개발	
촉진구역	장위11구역	성북구 장위동 68-141 일원		159,451.0	감) 159,451.0	–	주거정비형재개발	제척
촉진구역	장위12구역	성북구 장위동 231-233 일원		48,514.0	감) 48,514.0	–	주거정비형재개발	제척
촉진구역	장위13구역	성북구 장위동 232-17 일원		318,415.0	감) 318,415.0	–	주거정비형재개발	제척
촉진구역	장위14구역	성북구 장위동 233-552 일원		144,201.0	–	144,201.0	주거정비형재개발	
촉진구역	장위15구역	성북구 장위동 233-42 일원		189,450.0	감) 189,450.0	–	주거정비형재개발	제척
존치지역	존치관리구역	소 계		106,496.8	감) 32,069.0	74,427.8	–	
존치지역	존치관리구역	존치구역	존치시설	106,496.8	감) 32,069.0	74,427.8	–	

주) 장위2구역 :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변경
주) 장위10구역 : 구역경계 조정에 인한 면적 변경
주) 존치관리구역 : 장위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관리구역 제척에 대한 면적변경(12개 → 7개 (감 5개))
주) 장위8,9,11,12,13,15구역 해제에 따라 지구에서 제척

자.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

(1) 장위1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

구 분		면 적(㎡)			비 율(%)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80,265.6	-	80,265.6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0,704.8	감) 936.0	19,768.8	24.6
	제2종일반주거지역	59,560.8	증) 936.0	60,496.8	75.4

주) 공공공지 → 획지(1-3) 변경에 의한 면적변경

(2) 장위2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

구 분		면 적(㎡)			비 율(%)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25,194.0	증) 150.0	25,344.0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69.0	-	369.0	1.5
	제3종일반주거지역	19,951.8	증) 145.7	20,097.5	79.3
자연녹지지역		4,873.2	증) 4.3	4,877.5	19.2

주) 측량성과 반영에 의한 면적변경

(3) 장위3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66,011	-	66,011	100.0
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66,011	-	66,011	100.0

(4) 장위4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53,501.0	-	153,501.0	100.0
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	-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3,501.0	-	153,501.0	100.0

(5) 장위5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88,763.5	-	88,763.5	100.0
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	-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88,763.5	-	88,763.5	100.0

(6) 장위6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

구 분		면 적(㎡)			비 율(%)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05,163.9	-	105,163.9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6,304.9	감) 1,815.9	24,489.0	23.3
	제2종일반주거지역	57,622.3	증) 1,815.9	59,438.2	56.5
	제3종일반주거지역	21,236.7	-	21,236.7	20.2

주) 토지이용계획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7) 장위7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87,151.7	-	87,151.7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87,151.7	-	87,151.7	100.0

(8) 장위8,9구역(주택재개발사업) : 해제에 따라 지구에서 제척
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2호)

(9) 장위10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

구 분		면 적(㎡)			비 율(%)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94,245.0	감) 173.0	94,072.0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94,245.0	감) 173.0	94,072.0	100.0

주) 구역경계 조정에 인한 면적 변경

(10) 장위11구역(주택재개발사업) : 해제에 따라 지구에서 제척
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2호)

(11) 장위12,13구역(주택재개발사업) : 해제에 따라 지구에서 제척
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75호)

(12) 장위14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44,201.0	-	144,201.0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9,102.0	-	39,102.0	27.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44,012.0	-	44,012.0	30.5
	제2종일반주거지역	61,087.0	-	61,087.0	42.4

(13) 장위15구역(주택재개발사업) : 해제에 따라 지구에서 제척
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63호)

차.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비고
		명칭	면적(㎡)			기준	상한	평균/최고층수	최고높이(m)	
기정	장위1구역	1-1	36,01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10.0	265이하 (적용259.51)	22층이하	29층이하 (88m이하)	
		1-2	4,479.2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관련법령에 의함	230%이하		관련법령에 의함		
변경		1-1	36,01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10.0	265이하 (적용259.51)	22층이하	29층이하 (88m이하)	
		1-2	4,635.2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관련법령에 의함	230%이하		관련법령에 의함		
		1-3	1,090.1	근린생활시설	관련법령에 의함					
기정	장위2구역	2-1	17,868.0	복합용지	30이하	197.9	281.6 이하	-	30층이하 (103m이하)	
변경		2-1	17,862.6	복합용지	30이하	197.9	281.6 이하	-	30층이하 (103m이하)	
기정	장위3구역	3-1	52,68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190.0	230 이하	22.3층이하	29층이하 (88m이하)	
기정	장위4구역	4-1	37,35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10.0	269이하	22층이하	33층이하 (117m이하)	
		4-2	30,994							
		4-3	17,786							
		4-4	19,859							
		4-12	773	근린생활시설	관련법령에 의함					
		4-13	468							
변경		4-1	37,71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10.0	269이하	22층이하	33층이하 (117m이하)	
		4-2	31,066							
		4-3	17,786							
		4-4	19,859							
		4-12	309	근린생활시설	관련법령에 의함					
		4-13	187							
기정	장위5구역	5-1	57,02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10.0	275.65이하	22.4층이하	32층이하 (99m이하)	
		5-2	666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관련법령에 의함					
변경		5-1	57,02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10.0	275.65이하	22.4층이하	32층이하 (99m이하)	
		5-2	666	근린생활시설 및 종교집회장	관련법령에 의함					
기정	장위6구역	6-1	41,501.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10.0	260.3이하	25층이하	22층이하 (100m이하)	
		6-2	19,449	복합용지	30이하	210.0	280.3이하	-/33층이하		
기정	장위7구역	7-1	62,50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10.0	267이하	22층이하	29층이하 (88m이하)	
기정	장위10구역	10-1	70,15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10.0	264.32이하	22.3층이하	32층이하 (97m이하)	
변경		10-1	73,33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11.0	263.39이하	22.3층이하	32층이하 (97m이하)	
기정	장위14구역	14-1	71,95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150.0 210.0	225이하	19층이하	·2종:26층 (78m이하) ·2종(7층):22층(65m이하)	
		14-2	23,709							

주) 장위8,9,11,12,13,15구역 해제에 따라 지구에서 제척

카.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1) 촉진지구 기반시설(변경)

구 분		면 적 (㎡)			비 율 (%)
		기 정	증 감	변 경	
정비 기반 시설 등	계	660,162.9	감) 324,226.7	335,936.2	100.0
	도 로	275,823.4	감) 87,157.4	188,666.0	56.2
	공 원	209,288.0	감) 129,380.7	79,907.3	23.8
	녹 지	53,779.8	감) 34,447.9	19,331.9	5.8
	학 교	50,595.2	감) 17,422.0	33,173.2	9.9
	공 공 공 지	43,243.7	감) 38,985.7	4,258.0	1.2
	공 공 청 사	14,153.4	감) 7,334.0	6,819.4	2.0
	문 화 시 설	5,034.0	감) 5,034.0	-	-
	사회복지시설	2,861.0	감) 1,861.0	1,000.0	0.3
	연 구 시 설	2,604.0	감) 2,604.0	-	-
	청소년수련시설	2,780.4	-	2,780.4	0.8

주) 장위8,9,11,12,13,15구역 해제에 따라 지구에서 제척

(2) 구역별 기반시설 분담(변경)

구분	계		구역별 (㎡)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기정	변경
계	271,660.9	267,100.2	39,768.4	38,522.3	7,326.0	7,481.4	13,330.0	44,425.0	44,312.0
도 로	132,873.4	137,587.0	16,394.1	16,394.1	2,683.0	2,827.7	4,009.0	29,254.0	30,498.0
공 원	73,143.0	79,907.3	-	-	4,077.0	4,081.3	8,321.0	5,021.0	5,649.0
녹 지	32,812.8	19,331.9	4,039.5	4,039.5	-	-	-	5,500.0	3,864.0
학 교	18,393.2	17,869.2	17,519.2	17,363.2	-	-	-	-	-
공 공 공 지	6,450.7	4,258.0	1,188.7	98.6	566.0	572.4	-	2,251.0	2,251.0
공 공 청 사	5,913.4	6,819.4	299.5	299.5	-	-	-	2,399.0	2,050.0
사회복지시설	1,747.0	1,000.0	-	-	-	-	1,000.0	-	-
청소년수련시설	327.4	327.4	327.4	327.4	-	-	-	-	-
건축물 연면적	10,960.0	16,260	-	-	-	-	사회복지시설 2,000.0	공공청사 2,500.0	공공청사 2,500.0
구역외 기반시설	-	-	-	한천로개설 (연장130m 면적1,460㎡ 대지환산면적 1543㎡)	-	-	-	-	-

구분	구역별 (㎡)							
	5구역	6구역		7구역		10구역		14구역
	기정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계	31,069.5	43,741.3	43,741.3	22,849.7	22,849.7	20,876.0	17,519.0	48,275.0
도 로	24,435.9	16,611.7	17,677.6	13,375.7	13,951.7	7,766.0	9,449.0	18,344.0
공 원	–	22,782.0	22,758.0	4,916.0	4,916.0	–	6,156.0	28,026.0
녹 지	5,336.4	2,582.9	1,541.0	3,222.0	2,646.0	10,227.0	–	1,905.0
학 교	–	–	–	–	–	874.0	506.0	–
공 공 공 지	–	–	–	1,336.0	1,336.0	1,109.0	–	–
공 공 청 사	1,297.2	1,764.7	1,764.7	–	–	153.0	1,408.0	–
사회복지시설	–	–	–	–	–	747.0	–	–
청소년수련시설	–	–	–	–	–	–	–	–
건축물 연면적	공공청사 1,500.0	–	–	–	–	사회복지시설 1,500.0	공공청사 1,800 (공원하부 지하주차장 5,000)	도서관3,460.0 (대지지분 1,503.9)
구역외 기반시설	–	–	–	–	–	–	–	–

주) 장위8,9,11,12,13,15구역 해제에 따라 지구에서 제척

타.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구분	구 역 명	전용면적 40㎡ 이하	전용면적 40~50㎡ 이하	전용면적 50~60㎡ 이하	계
기정	장위 1구역	71(30)	69	22	162(30)
기정	장위 2구역	40	37	15	92
기정	장위 3구역	84	79	21	184
기정	장위 4구역	194	200	90	484
기정	장위 5구역	123	117	36	276
기정	장위 6구역	129	126	30	285
기정	장위 7구역	125	137	33	295
제척	장위 8구역	–	–	–	–
제척	장위 9구역	–	–	–	–
기정	장위10구역	152	142	42	336
변경		160	149	36	345
제척	장위11구역	–	–	–	–
제척	장위12구역	–	–	–	–
제척	장위13구역	–	–	–	–
기정	장위14구역	168	166	62	396
제척	장위15구역	–	–	–	–
계		1,094(30)	1,080	345	2,519(30)
비율		43.4%	42.9%	13.7%	100.00%

주) 장위8,9,11,12,13,15구역 해제에 따라 지구에서 제척
주) 장위1구역 ( )는 도시형생활주택내 임대주택임

파.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사업기간	해 당 구 역
기정	1단계	2009년	• 장위 1구역
	2단계	2011년	• 장위 2, 7구역
	3단계	2012년	• 장위 4, 5, 10구역
	4단계	2013년	• 장위 9, 12, 14구역
	5단계	2014년	• 장위 6, 8, 11구역
	6단계	2015년	• 장위 3, 13, 15구역
변경	1단계	2009년	• 장위 1구역
	2단계	2011년	• 장위 2, 7구역
	3단계	2012년	• 장위 4, 5, 10구역
	4단계	2013년	• 장위 14구역
	5단계	2014년	• 장위 6구역
	6단계	2015년	• 장위 3구역

주) 장위8,9,11,12,13,15구역 해제에 따라 지구에서 제척되므로 사업추진계획에서 제외함

하. 기타 계획(에너지순환계획, 방재계획, 정보화계획, 특성화계획, 친환경건축물 가이드라인) :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도서에 명시

거. 광고물 관리계획 :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도서에 명시

너.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도서에 명시

더. 친환경 건축물에 관한 계획 :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도서에 명시

러.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촉진지구		1,872,072.5	감)	953,171.0	918,901.5	100.0	
존치관리구역	소계	106,496.8	감)	32,069.0	74,427.8	8.1	
	①	6,785.0	감)	6,785.0	-	-	장곡초등학교
	②	15,747.0	감)	443.0	15,304.0	1.7	장위초등학교
	③	2,408.0	-		2,408.0	0.3	장위동교회
	④	2,460.0	감)	2,460.0	-	-	김진흥가
	⑤	4,253.0	감)	4,253.0	-	-	공공공지
	⑥	2,453.0	-		2,453.0	0.3	성북청소년수련관
	⑦	3,183.8	-		3,183.8	0.4	장석시장
	⑧	4,072.0	감)	4,072.0	-	-	우방아파트
	⑨	1,563.0	감)	1,563.0	-	-	성북벤처 창업지원센터
	⑩	4,407.0	감)	4,407.0	-	-	석계역근처 병원 및 상업시설
	⑪	11,874.0	감)	11,874.0	-	-	오동근린공원
	⑫	47,291.0	증)	3,788.0	51,079.0	5.4	도로

주) 장위8,9,11,12,13,15구역 해제에 따라 지구에서 제척 / 토지이용계획변경에 따른 존치관리구역 면적 변경
주) 기정 면적 오류 정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19-88호)

머.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1) 장위1구역(변경)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구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장위1구역	성북구 장위동 144-24일대	80,265.6	-	80,265.6	

나) 정비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명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계		80,265.6	-	80,265.6	100.0	
정비 기반 시설 등	소계	39,768.4	감) 1,246.1	38,522.3	47.9	
	도로	16,394.1	-	16,394.1	20.4	
	녹지	4,039.5	-	4,039.5	5.0	
	학교	17,519.2	감) 156.0	17,363.2	21.6	
	공공공지	1,188.7	감) 1,090.1	98.6	0.1	
	공공청사	299.5	-	299.5	0.4	치안센터
	청소년수련시설	327.4	-	327.4	0.4	존치시설
택지 (획지)	소계	40,497.2	증) 1,246.1	41,743.3	52.1	
	1-1	36,018.0	-	36,018.0	44.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2	4,479.2	증) 156.0	4,635.2	5.8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1-3	-	증) 1,090.1	1,090.1	1.4	근린생활시설

주) 공공공지 → 획지(1-3)변경 및 장위1구역과 광운학원과의 대토협의에 따른 면적 변경

(2)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가) 도로(변경)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40	25 ~31	간선 도로	11,530 (1,310)	군자동 (광로5호)	수유동	일반 도로	장위동	총고시722 (36.12.27)	한천로
기정	중로	1	510	20	집산 도로	489	장위동 153-9	장위동 237-90	일반 도로		-	장월로
기정	중로	1	512	20	집산 도로	55	장위동 158-43	장위동 157-22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1	516	20	집산 도로	93	장위동 135-4	장위동 122-1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장위로
기정	중로	1	523	20 (14~19)	집산 도로	427	장위동 143-38	장위동 89-9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순환도로 연장축소
변경	중로	1	523	14~19	집산 도로	145	장위동 143-38	장위동 270-46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A	10		30	장위동 270-164	장위동 127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501	8	국지 도로	153	장위동 270-58	장위동 270-58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소로	3	B	6		133	장위동 136-53	장위동 133	일반 도로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523	중로1-523	연장축소	• 장위8구역해제에 따른 순환도로 연장축소

(나) 녹지(변경)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22	녹지	연결녹지	장위동 140-20일대	2,269.3 (1,445.3)	감) 824.0	1,445.3 (1,445.3)	서고시111 (08.04.03)	
신설	a	녹지	경관녹지	장위동 134-35일대	-	증) 2,232.5	2,232.5		
신설	b	녹지	경관녹지	장위동 135-1일대	-	증) 361.7	379.3 (361.7)		
폐지	23	녹지	연결녹지	장위동 134-35일대	2,232.5	감) 2,232.5	-	서고시111 (08.04.03)	
폐지	29	녹지	연결녹지	장위동 135-1일대	379.3 (361.7)	감) 361.7	-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장위1구역 내 면적을 의미함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a	녹지	경관녹지	경관녹지 신설 (증 2,232.5㎡)	• 연결녹지23 → 경관녹지a변경 ※우이천변 경관향상을 위하여 연결녹지를 경관녹지로 변경
b	녹지	경관녹지	경관녹지 신설 (증 379.3㎡(361.7㎡))	• 연결녹지29 → 경관녹지b변경 ※우이천변 경관향상을 위하여 연결녹지를 경관녹지로 변경
22	녹지	연결녹지	면적변경 (2,269.3㎡(1,445.3㎡) → 1,445.3㎡(1,445.3㎡)) (감 824.0㎡)	• 장위8구역해제에 따른 면적변경
23	녹지	연결녹지	폐지 (감 2,232.5㎡)	• 연결녹지23 → 경관녹지a변경 ※우이천변 경관향상을 위하여 연결녹지를 경관녹지로 변경
29	녹지	연결녹지	폐지 (감 379.3㎡(361.7㎡))	• 연결녹지29 → 경관녹지b변경 ※우이천변 경관향상을 위하여 연결녹지를 경관녹지로 변경

(다) 학교(변경)

■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	광운초	학교	장위동124	17,519.2	감) 156.0	17,363.2	시교위고5 (87.02.17)	기존하천 359㎡ 중복결정
		남대문중	학교	장위동 124-1					

■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	광운초	학교	면적변경 (17,519.2㎡ → 17,363.2㎡) (감 156.0㎡)	• 장위1구역과 광운학원과의 대토 협의에 따른 면적 변경
	남대문중	학교		

(라)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70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79-16	3,449.6 (98.6)	감) 62.0	3,387.6 (98.6)	서고시111 (08.04.03)	
폐지	88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156일대	1,090.1	감) 1,090.1	–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장위1구역 내 면적을 의미함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70	공공공지	공공공지	면적변경 (3,449.6㎡(98.6㎡) → 3,387.6㎡(98.6㎡)) (감 62.0㎡)	• 장위8구역 해제에 따른 면적 변경
88	공공공지	공공공지	폐지 (감 1,090.1㎡)	• 공공공지 → 획지(1-3) 변경 • 한천로 개설비용분담

(마) 공공청사 : 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59	치안센터	공공청사	장위동 155-1일대	299.5	-	299.5	서고시111 (08.04.03)	

(바) 청소년수련시설 : 변경없음

■ 청소년수련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	성북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시설	장위동 135-2일대	2,780.4 (327.4)	-	2,780.4 (327.4)	서고시338 (97.10.28)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장위1구역 내 면적을 의미함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구분		위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계			3,794.72	-	3,794.72	
공동이용시설	관리사무소	장위동 144-24 일대	225.29	-	225.29	
	주민운동시설		671.40	-	671.40	
	어린이놀이터		1,147.90	-	1,147.90	
	주민공동시설		1,095.96	-	1,095.96	
	문 고		285.17	-	285.17	
	경로당		123.08	-	123.08	
	어린이집		245.92	-	245.92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없음

결정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기정	장위 1구역	80,265.6	장위동 144-24일대	364	4	-	360	-	

(2)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평균	최고
기정	장위 1구역	80,265.6	1-1	36,018.0	장위동 144-24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65이하 (적용 259.51)	22층 이하	29층이하 (88m이하)
			1-2	4,479.2	장위동 124-3일대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법령에 의함	230이하	관련 법령에 의함	
			학교	17,519.2	장위동 133일대	학교	관련 법령에 의함			
			청소년 수련시설	327.4	장위동 135-1일대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법령에 의함			
변경		80,265.6	1-1	36,018.0	장위동 144-24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65이하 (적용 259.51)	22층 이하	29층이하 (88m이하)
			1-2	4,635.2	장위동 124-3일대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법령에 의함	230이하	관련 법령에 의함	
			1-3	1,090.1	장위동 158-63일대	근린생활시설	관련 법령에 의함			
			학교	17,363.2	장위동 133일대	학교	관련 법령에 의함			
			청소년 수련시설	327.4	장위동 135-1일대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법령에 의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예정세대수 : 939세대 (임대주택 : 162세대) - 전용면적 40㎡이하 : 71세대(7.56%) [임대 : 71세대] - 전용면적 40~50㎡ : 69세대(7.35%) [임대 : 69세대] - 전용면적 50~60㎡ : 216세대(23.00%) [임대 : 22세대] - 전용면적 60~85㎡ : 556세대(59.21%) - 전용면적 85㎡이상 : 27세대(2.88%) 도시형생활주택 • 건립예정세대수 : 173세대 (임대주택:30세대) -전용면적40㎡이하 : 173세대(100%) [임대:30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한천로 : 8m, 화랑로 : 10m(단, 지하부는 6m 완화적용) • 월계로, 장위로, 장월로, 순환도로, 국지도로변 : 6m • 학교와 획지1-2 사이에 경관녹지 ⓐ ~ 우이천 연결을 위한 공공보행통로(7m) 확보									

(3)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변경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고
재개발	1단계 (2009년부터)	주택재개발조합	–	–	–

(4)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결정 구분	건립 위치	부지면적(㎡)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기정	장위 1구역	–	–	15,887.55	• 71세대(30세대)(7.56%)	• 40㎡이하	괄호안의 세대수는 도시형 생활주택임.
					• 69세대(7.56%)	• 40~50㎡이하	
					• 22세대(2.34%)	• 50~60㎡이하	
					• 전체 : 162세대(30세대)(17.25%)	–	

주) 세대수 항목의 괄호는 전체 건립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주) 구역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혼재배치하여 별도의 부지 구획하지 않음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2) 장위2구역(변경)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장위2구역	성북구 장위동 290-9일대	25,194.0	증) 150.0	25,344.0	측량성과에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나) 정비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명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계		25,194.0	증) 150.0	25,344.0	100.0	
정비 기반 시설 등	소계	7,326.0	증) 155.4	7,481.4	29.5	
	도로	2,683.0	증) 144.7	2,827.7	11.2	
	공원	4,077.0	증) 4.3	4,081.3	16.1	
	공공공지	566.0	증) 6.4	572.4	2.2	
택지 (획지)	소계	17,868.0	감) 5.4	17,862.6	70.5	
	2-1	17,868.0	감) 5.4	17,862.6	70.5	

주) 측량성과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가) 도로(변경)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40	30	보조 간선	1,348	장위동 64-95	장위동 311-22	일반 도로			돌곶이길 폭원축소
변경	중로	1	A	20~25	보조 간선	1,348	장위동 64-95	장위동 311-22	일반 도로			
기정	대로	3	39	25~30	간선 도로	5,110 (1,120)	미아동 42-13	하계동 184-1	일반 도로			월계로
기정	중로	1	517	20	집산 도로	570	장위동 165-3	장위동 291	일반 도로			순환도로
기정	중로	2	510	15	집산 도로	251	장위동 293-9	장위동 186-28	일반 도로			샘터길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2-40	중로1-A	폭원축소	• 장위8,9,11,13구역 해제에 따른 폭원축소

(나) 공원(변경)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415	상길례공원	문화공원	장위동 289-29일대	4,077.0	증) 4.3	4,081.3	서고시111 (08.04.03)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415	상길례공원	문화공원	면적변경 (4,077.0㎡ → 4,081.3㎡) (증 4.3㎡)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다)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72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290-11일대	566.0	증) 6.4	572.4	서고시111 (08.04.03)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72	공공공지	공공공지	면적변경 (566.0㎡ → 572.4㎡) (증 6.4㎡)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기정	장위 2구역	25,194.0	장위동 290-9대	83	-	-	83	-	
변경		25,344.0							

(2)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평균	최고
기정	장위 2구역	25,194.0	2-1	17,868.0	장위동 290-9일대	복합용지	30이하	281.6 이하	-	30층이하 (103m이하)
변경		25,344.0	2-1	17,862.6	장위동 290-9일대	복합용지	30이하	281.6 이하	-	30층이하 (103m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예정세대수 : 513세대 (임대주택 : 92세대) - 전용면적 40㎡이하 : 40세대(7.77%) [임대 : 40세대] - 전용면적 40~50㎡ : 37세대(7.18%) [임대 : 37세대] - 전용면적 50~60㎡ : 165세대(32.43%) [임대 : 15세대] - 전용면적 60~85㎡ : 268세대(52.04%) - 전용면적 85㎡이상 : 3세대(0.58%)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한천로 : 8m, 화랑로 : 10m(단, 지하부는 6m 완화적용) • 월계로, 장위로, 장월로, 순환도로, 국지도로변 : 6m							

(3)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변경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고
재개발	2단계 (2011년부터)	주택재개발조합	-	-	-

(4)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건립 위치	부지면적 (㎡)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기정	장위 2구역	17,868.0	-	5,414.0	• 40세대(7.77%)	• 40㎡이하	
					• 37세대(7.18%)	• 40~50㎡이하	
					• 15세대(2.91%)	• 50~60㎡이하	
					• 전체 : 92세대(17.89%)	-	
변경		17,862.6	-	5,414.0	• 40세대(7.77%)	• 40㎡이하	
					• 37세대(7.18%)	• 40~50㎡이하	
					• 15세대(2.91%)	• 50~60㎡이하	
					• 전체 : 92세대(17.89%)	-	

주) 세대수 항목의 괄호는 전체 건립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주) 구역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혼재배치하여 별도의 부지 구획하지 않음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3) 장위3구역 : 변경없음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구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장위3구역	성북구 장위동 305일대	66,011.0	-	66,011.0	

나) 정비계획 : 변경없음

(1)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구분	명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계		66,011	-	66,011	100.0	
정비 기반 시설 등	소계	13,330	-	13,330	20.2	
	도로	4,009	-	4,009	6.1	
	공원	8,321	-	8,321	12.6	
	사회복지시설	1,000	-	1,000	1.5	
택지 (획지)	소계	52,681	-	52,681	79.8	
	3-1	52,681	-	52,681	79.8	

(2)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가) 도로 : 변경없음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40	25 ~31	간선 도로	11,530 (1,310)	군자동 (광로5호)	수유동	일반 도로	장위동	총고시722 (36.12.27)	한천로
기정	중로	1	517	20	집산 도로	570	장위동 165-3	장위동 291	일반 도로		건고시123 (73.04.04)	순환도로
기정	중로	2	511	15	집산 도로	371	장위동 307-106	장위동 296-19	일반 도로		건고시123 (73.04.04)	
기정	중로	3	526	13	집산 도로	197	장위동 300	장위동 182-34	일반 도로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나) 공원 : 변경없음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417	석촌 공원	어린이 공원	장위동 180-1일대	8,321.0	-	8,321.0		

(다)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21	장위실버 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장위동 176-30일대	1,000.0	-	1,000.0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변경없음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치						비고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장위 3구역	66,011.0	장위동 305일대	309	-	-	309	-	

(2) 건축시설계획 : 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평균	최고
기정	장위 3구역	66,011.0	3-1	52,681	장위동 305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30 이하	22.3층 이하	29층 이하 (88m 이하)
			사회복지 시설	1,000	장위동 176-11일대	사회복지시설	관련법령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예정세대수 : 1,078세대 (임대주택 : 184세대) - 전용면적 40㎡이하 : 84세대(7.79%) [임대 : 84세대] - 전용면적 40~50㎡ : 79세대(7.33) [임대 : 79세대] - 전용면적 50~60㎡ : 53세대(4.92%) [임대 : 21세대] - 전용면적 60~85㎡ : 432세대(40.07%) - 전용면적 85㎡이상 : 430세대(39.89%)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한천로 : 8m, 화랑로 : 10m • 월계로, 장위로, 장월로, 순환도로, 국지도로변 : 6m							

(3)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변경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고
재개발	6단계 (2015년부터)	주택재개발조합	-	-	

(4)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기정	장위3구역	52,681.0	-	7,729.0	• 84세대(7.79%)	• 40㎡이하	
					• 79세대(7.33%)	• 40~50㎡이하	
					• 21세대(1.95%)	• 50~60㎡이하	
					• 전체:184세대(17.07%)	-	

주) 세대수 항목의 괄호는 전체 건립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주) 구역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혼재배치하여 별도의 부지 구획하지 않음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4) 장위4구역(변경)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구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장위4구역	성북구 장위동 62-1일대	153,501.0	-	153,501.0	

나) 정비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명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계		153,501.0	-	153,501.0	100	
정비기반시설등	소계	44,425.0	감) 113.0	44,312.0	28.9	
	도로	29,254.0	증) 1,244	30,498.0	19.9	
	공원	5,021.0	증) 628.0	5,649.0	3.7	
	녹지	5,500.0	감) 1,636.0	3,864.0	2.5	
	공공공지	2,251.0	-	2,251.0	1.5	
	공공청사	2,399.0	감) 349.0	2,050.0	1.3	
택지(획지)	소계	109,076.0	증) 113.0	109,189.0	71.1	
	4-1	37,358.0	증) 359.0	37,717.0	24.6	공동주택용지
	4-2	30,994.0	증) 72.0	31,066.0	20.2	
	4-3	17,786.0	-	17,786.0	11.6	
	4-4	19,859.0	-	19,859.0	12.9	
	4-8	579.0	-	579.0	0.4	종교시설용지
	4-9	505.0	-	505.0	0.3	
	4-10	754.0	감) 115.0	639.0	0.4	
	4-12	773.0	감) 464.0	309.0	0.2	근린생활시설
	4-13	468.0	감) 281.0	187.0	0.1	
	4-14	-	증) 542.0	542.0	0.4	우체국

주) 장위8구역 해제에 따른 장위로 선형변경 / 공원·녹지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

주) 우체국부지 대토협의에 따른 장위우체국 장위4구역 내 반영

(2)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가) 도로(변경)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40	30	보조간선	1,348	장위동 64-95	장위동 311-22	일반도로		총고시722 (36.12.26)	돌곶이길 폭원축소
변경	중로	1	A	20 ~25	보조간선	1,348	장위동 64-95	장위동 311-22	일반도로		총고시722 (36.12.26)	
기정	대로	3	40	25 ~31	간선도로	11,530 (1,310)	군자동 (광로5호)	수유동	일반도로	장위동	총고시722 (36.12.27)	한천로 선형변경
변경	대로	3	40	25 ~31	간선도로	11,530 (1,310)	군자동 (광로5호)	수유동	일반도로	장위동	총고시722 (36.12.27)	
기정	중로	1	513	20	집산도로	356	장위동 74-140	장위동 119-1	일반도로		서고시23 (74.03.02)	장위로 선형변경
변경	중로	1	513	20	집산도로	356	장위동 74-140	장위동 119-1	일반도로		서고시23 (74.03.02)	
기정	중로	1	521	20	집산도로	367	장위동 69-48	장위동 36-9	일반도로		서고시111 (08.04.03)	순환도로 폭원축소
변경	중로	1	521	18 ~20	집산도로	367	장위동 69-48	장위동 36-9	일반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1	524	20	집산도로	232	장위동 93-4	장위동 62-1	일반도로		서고시111 (08.04.03)	순환도로 폭원축소
변경	중로	1	524	18 ~23	집산도로	232	장위동 93-4	장위동 62-1	일반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2	512	15	집산도로	167	장위동 60-2	장위동 50-27	일반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3	521	12	국지도로	365	장위동 63-75	장위동 43-6	일반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3	524	12	집산도로	26	장위동 55-25	장위동 55-21	일반도로		서고시111 (08.04.03)	석관지구단위계획구역
기정	중로	3	527	12	국지도로	43	장위동 110-28	장위동 110-21	일반도로		서고시231 (11.08.11)	
기정	소로	3	524	6	국지도로	142	장위동 37-31	장위동 56	일반도로		서고시231 (11.08.11)	
신설	소로	2	A	8	국지도로	50	장위동 272-122	장위동 272-122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A	4		38	장위동 272-112	장위동 272-122	일반도로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2-40	중로1-A	폭원축소	• 장위8,9,11,13구역해제에 따른 폭원축소
대로3-40	대로3-40	선형변경	• 장위8구역해제에 따른 선형변경
중로1-513	중로1-513	선형변경	• 장위8,9,12,13,15구역해제에 따른 선형변경
중로1-521	중로1-521	폭원축소	• 경관녹지 신설에 따른 폭원축소
중로1-524	중로1-524	폭원축소	• 경관녹지 신설에 따른 폭원축소
-	소로2-A	신설	• 삼익아파트(존치시설)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신설
-	소로3-A	신설	• 삼익아파트(존치시설) 상가 진출입 확보를 위한 신설

(나) 녹지 (변경)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31	녹지	연결녹지	장위동 72-2일대	2,113.0	감) 1,281.0	832.0	서고시111 (08.04.03)	
변경	32	녹지	연결녹지	장위동 105-9일대	2,633.0	감) 1,913.0	720.0	서고시111 (08.04.03)	
변경	37	녹지	연결녹지	장위동 100-2일대	754.0	증) 300.0	1,054.0	서고시111 (08.04.03)	
신설	c	녹지	경관녹지	장위동 62-42일대	-	증) 1,258.0	1,258.0	-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31	녹지	연결녹지	면적변경 (2,113.0㎡ → 832.0㎡) (감 1,281.0㎡)	• 장위로 선형변경으로 인한 면적감소
32	녹지	연결녹지	면적변경 (2,633.0㎡ → 720.0㎡) (감 1,913.0㎡)	• 장위로 선형변경으로 인한 면적감소
37	녹지	연결녹지	면적변경 (754.0㎡ → 1,054.0㎡) (증 300.0㎡)	• 도로(중1-524) 폭원 23m→20m축소에 따른 녹지면적 증가
c	녹지	경관녹지	경관녹지 신설 (증 1,258.0㎡)	• 장위로 선형변경으로 인한 연결녹지 31,32번의 면적 감소로 공원 · 녹지 확보 기준 충족을 위한 경관녹지 신설

(다) 공원(변경)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419	장석공원	어린이공원	장위동 110-53일대	5,021.0	증) 628.0	5,649.0	서고시111 (08.04.03)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419	장석공원	어린이공원	면적변경(5,021.0㎡ → 5,649.0㎡) (증 628.0㎡)	• 도로(중1-524) 폭원 23m→18m축소로 인한 면적 증가

(라) 공공공지 : 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80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68-18일대	1,083.0	-	1,083.0	서고시111 (08.04.03)	
기정	82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63-36일대	574.0	-	574.0	서고시111 (08.04.03)	
기정	84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63-75일대	48.0	-	48.0	서고시111 (08.04.03)	
기정	86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62-72일대	440.0	-	440.0	서고시231 (08.04.03)	
기정	87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63-59일대	106.0	-	106.0	서고시231 (08.04.03)	

(마) 공공청사 (변경)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52	장위3동 주민센터	공공청사	장위동 98-1일대	2,399.0	감) 349.0	2,050.0	서고시111 (08.04.03)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52	장위3동 주민센터	공공청사	면적변경 (2,399.0㎡ → 2,050.0㎡) (감 349.0㎡)	• 장위우체국 용지 확보를 위한 규모축소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치						비고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장위 4구역	153,501.0	장위동62-1일대	669	-	-	669	-	

(2)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구분	구역구분 명칭	구역구분 면적(㎡)	가구 또는 획지구분 명칭	가구 또는 획지구분 면적(㎡)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평균	높이 최고
기정	장위4구역	153,501	4-1	37,358	장위동 106-13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69% 이하	22층 이하	33층 이하 (117m 이하)
			4-2	30,994	장위동 71-6일대					
			4-3	17,786	장위동 39-10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4-4	19,859	장위동 63-139일대					
			4-8	579	장위동 55-11일대	종교시설	관련법령에 의함			
			4-9	505	장위동 272-36일대					
			4-10	754	장위동 110-28일대					
			4-12	773	장위동 272-102일대	근린생활시설				
			4-13	468	장위동 61-16일대					
			공공청사	2,399	장위동 98-1일대	공공청사				
변경		153,501	4-1	37,717	장위동 106-13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69% 이하	22층 이하	33층 이하 (117m 이하)
			4-2	31,066	장위동 71-6일대					
			4-3	17,786	장위동 39-10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4-4	19,859	장위동 63-139일대					
			4-8	579	장위동 55-11일대	종교시설	관련법령에 의함			
			4-9	505	장위동 272-36일대					
			4-10	639	장위동 110-28일대					
			4-12	309	장위동 272-102일대	근린생활시설				
			4-13	187	장위동 61-16일대					
			4-14	542	장위동 110-26일대	우체국				
			공공청사	2,050	장위동 97-1일대	공공청사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예정세대수 : 2,840대 (임대주택 : 484세대) – 전용면적 40㎡이하 : 194세대(6.83%) [임대 : 194세대] – 전용면적 40~50㎡ : 359세대(12.64%) [임대 : 200세대] – 전용면적 50~60㎡ : 756세대(26.62%) [임대 : 90세대] – 전용면적 60~85㎡ : 1,438세대 (50.63%) – 전용면적 85㎡이상 : 93세대 (3.28%)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한천로 : 8m, 화랑로 : 10m • 월계로, 장위로, 장월로, 순환도로, 국지도로변 : 6m									

(3)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변경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고
재개발	3단계 (2012년부터)	주택재개발조합	–	–	–

(4)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기정	장위 4구역	–	–	33,913.46	• 194세대(6.83%)	• 40㎡이하	
					• 200세대(7.04%)	• 40~50㎡이하	
					• 90세대(3.17%)	• 50~60㎡이하	
					• 전체:484세대(17.04%)	–	

주) 세대수 항목의 괄호는 전체 건립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주) 구역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혼재배치하여 별도의 부지 구획하지 않음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5) 장위5구역(변경)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구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장위5구역	성북구 장위동 173-114일대	88,763.5	-	88,763.5	

나) 정비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명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계		88,763.5	-	88,763.5	100.0	
정비기반시설 등	소계	31,069.5	-	31,069.5	35.0	
	도로	24,435.9	-	24,435.9	27.5	
	녹지	5,336.4	-	5,336.4	6.0	
	공공청사	1,297.2	-	1,297.2	1.5	
택지(획지)	소계	57,694.0	-	57,694.0	65.0	
	5-1	57,028.0	-	57,028.0	64.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2	666.0	-	666.0	0.8	근린생활시설 및 종교집회장

주) 획지(5-2)의 주용도 종교시설(종교집회장) → 근린생활시설 및 종교집회장으로 변경, 면적변경 없음

(2)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가) 도로 : 변경없음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40	25 ~31	간선 도로	11,530 (1,310)	군자동 (광로5호)	수유동	일반 도로	장위동	총고시722 (36.12.27)	한천로
기정	중로	1	510	20	집산 도로	489	장위동 153-9	장위동 237-90	일반 도로			장월로
기정	중로	1	512	20	집산 도로	55	장위동 158-43	장위동 157-22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1	517	20	집산 도로	570	장위동 165-3	장위동 291	일반 도로		건고시123 (73.04.04)	순환도로
기정	중로	1	522	20	집산 도로	289	장위동 180	장위동 201-5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나) 녹지(변경)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27	녹지	연결녹지	장위동 153-21일대	2,620.5	-	2,620.5	서고시111 (08.04.03)	
신설	d	녹지	경관녹지	장위동 156일대	-	증) 2,715.9	2,715.9		
폐지	28	녹지	연결녹지	장위동 156일대	2,715.9	감) 2,715.9	-	서고시111 (08.04.03)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d	녹지	경관녹지	경관녹지 신설 (증 2,715.9㎡)	• 연결녹지28 → 경관녹지d 변경 ※우이천변 경관향상을 위하여 연결녹지를 경관녹지로 변경
28	녹지	연결녹지	폐지 (감 2,715.9㎡)	• 연결녹지28 → 경관녹지d 변경 ※우이천변 경관향상을 위하여 연결녹지를 경관녹지로 변경

(다) 공공청사 : 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55	장위3동 커뮤니티센터	공공청사	장위동 158-15일대	1,297.2	-	1,297.2	서고시111 (08.04.03)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치						비고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장위5구역	88,763.5	장위동 173-114일대	521	-	-	521	-	

(2)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평균	최고
기정	장위 5구역	88,763.5	5-1	57,028.0	장위동 171-34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75.65 이하	22.4층 이하	32층이하 (99m 이하)
			5-2	666.0	장위동 176-23대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관련법령에 의함			
			공공 청사	1,297.2	장위동 158-15일대	공공청사				
변경		88,763.5	5-1	57,028.0	장위동 171-34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75.65 이하	22.4층 이하	32층이하 (99m 이하)
			5-2	666.0	장위동 176-23대	근린생활시설 및 종교집회장	관련법령에 의함			
			공공 청사	1,297.2	장위동 158-15일대	공공청사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예정세대수 : 1,562대 (임대주택 : 276세대) - 전용면적 40㎡이하 : 123세대(7.87%) [임대 : 123세대] - 전용면적 40~50㎡ : 117세대(7.48%) [임대 : 117세대] - 전용면적 50~60㎡ : 420세대(26.88%) [임대 : 36세대] - 전용면적 60~85㎡ : 756세대 (48.40%) - 전용면적 85㎡이상 : 146세대 (9.3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한천로 : 8m, 화랑로 : 10m • 월계로, 장위로, 장월로, 순환도로, 국지도로변 : 6m							

(3)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변경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고
재개발	3단계 (2012년부터)	주택재개발조합	–	–	–

(4)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건립 위치	부지면적 (㎡)	동수	연면적 (㎡)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기정	장위 5구역	–	–	17,832.65	• 123세대(7.88%)	• 40㎡이하	
					• 117세대(7.49%)	• 40~50㎡이하	
					• 36세대(2.30%)	• 50~60㎡이하	
					• 전체:276세대(17.67%)	–	

주) 세대수 항목의 괄호는 전체 건립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주) 구역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혼재배치하여 별도의 부지 구획하지 않음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6) 장위6구역(변경)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구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장위6구역	성북구 장위동 25-55일대	105,163.9	-	105,163.9	

나) 정비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명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계		105,163.9	-	105,163.9	100.0	
정비 기반 시설 등	소계	43,741.3	-	43,741.3	41.6	
	도로	16,611.7	증) 1,065.9	17,677.6	16.8	
	공원	22,782.0	감) 24.0	22,758.0	21.6	
	녹지	2,582.9	감) 1,041.9	1,541.0	1.5	
	공공청사	1,764.7	-	1,764.7	1.7	
택지 (획지)	소계	61,422.6	-	61,422.6	58.4	
	6-1	41,501.6	-	41,501.6	39.5	공동주택
	6-2	19,449.0	-	19,449.0	18.5	복합용지
	6-3	472.0	-	472.0	0.4	종교시설

주) 장위8구역해제에 따른 장위로·한천로 선형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2)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가) 도로(변경)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3	35 ~38	간선 도로	9,500 (623)	종암동	장지리	일반 도로	장위동	건고시267 (71.06.10)	화랑로
기정	대로	3	40	25 ~31	간선 도로	11,530 (1,310)	군자동 (광로5호)	수유동	일반 도로	장위동	총고시722 (36.12.27)	한천로 선형변경
변경	대로	3	40	25 ~31	간선 도로	11,530 (1,310)	군자동 (광로5호)	수유동	일반 도로	장위동	총고시722 (36.12.27)	
기정	중로	1	516	20	집산 도로	93	장위동 135-4	장위동 122-1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장위로 선형변경
변경	중로	1	516	20	집산 도로	93	장위동 135-4	장위동 122-1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3	520	12 ~15	국지 도로	269	장위동 43-3	월계동 492-11	일반 도로		서고시3 (69.01.18)	
기정	소로	1	S1	10	국지 도로	103	장위동 8-2	장위동 8-3	일반 도로		서고시212 (02.06.12)	석관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정	소로	1	524	10	국지 도로	85	장위동 270-346	장위동 120-14	일반 도로	-		선형변경
변경	소로	1	524	10	국지 도로	85	장위동 270-346	장위동 120-14	일반 도로	-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40	대로3-40	선형변경	• 장위8구역해제 따른 선형변경
중로1-516	중로1-516	선형변경	• 장위8,9,12,13,15구역해제에 따른 선형변경
소로1-524	소로1-524	선형변경	• 장위8구역해제 따른 선형변경

(나) 녹지(변경)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34	녹지	연결녹지	월계동 51-9일대	1,207.4	-	1,207.4	서고시111 (08.04.03)	
신설	b	녹지	경관녹지	장위동 135-1일대	-	증) 17.6	379.3 (17.6)		
신설	e	녹지	경관녹지	장위동 287일대	-	증) 316.0	316.0		
폐지	29	녹지	연결녹지	장위동 135-1일대	379.3 (17.6)	감) 17.6	-		
폐지	33	녹지	연결녹지	장위동 287일대	1,357.9	감) 1,357.9	-	서고시111 (08.04.03)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장위6구역 내 면적을 의미함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b	녹지	경관녹지	경관녹지 신설 (증 379.9㎡(17.6㎡))	• 연결녹지29 → 경관녹지b변경 ※우이천변 경관향상을 위하여 연결녹지를 경관녹지로 변경
e	녹지	경관녹지	경관녹지 신설 (증 316.0㎡)	• 연결녹지33 → 경관녹지e변경 ※우이천변 경관향상을 위하여 연결녹지를 경관녹지로 변경 • 중로1-516선형 변경에 따른 녹지 면적 축소
29	녹지	연결녹지	폐지 (감 379.9(17.6㎡))	• 연결녹지29 → 경관녹지b변경 ※우이천변 경관향상을 위하여 연결녹지를 경관녹지로 변경
33	녹지	연결녹지	폐지 (감 1,357.9㎡)	• 연결녹지33 → 경관녹지e변경 ※우이천변 경관향상을 위하여 연결녹지를 경관녹지로 변경 • 중로1-516선형 변경에 따른 녹지 면적 축소

(다) 공원(변경)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411	아랫말 공원	공원	월계동 479-4일대	22,782.0	감) 24.0	22,758.0	서고시111 (08.04.03)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411	아랫말공원	공원	면적변경 (22,782.0㎡→22,758.0㎡) (감 24.0㎡)	• 장위로(중로1-516)선형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라) 공공청사(변경)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53	소방치안센터	공공청사	장위동 270-172일대	1,009.9	-	1,009.9	서고시111 (08.04.03)	
변경	54	장위3동치안센터	공공청사	장위동 270-388일대	754.8	-	754.8	서고시111 (08.04.03)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53	소방치안센터	공공청사	위치 · 선형 ‘ 변경	• 장위8구역 해제에 따라 한천로 선형변경에 따른 위치이동 • 소방치안센터의 진출입 편의를 위하여 소방치안센터와 장위3동치안센터 위치 변경
54	장위3동치안센터	공공청사	위치 · 선형 ‘ 변경	• 장위8구역 해제에 따라 한천로 선형변경에 따른 위치이동 • 소방치안센터의 진출입 편의를 위하여 소방치안센터와 장위3동치안센터 위치 변경

다)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1)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 : 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치						비고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장위 6구역	105,163.9	장위동 25-55일대	588	-	-	588	-	

(2)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구분	구역구분 명칭	구역구분 면적(㎡)	가구 또는 획지구분 명칭	가구 또는 획지구분 면적(㎡)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평균	높이 최고
기정	장위 6구역	105,163.9	6-1	41,501.6	장위동 20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60.3 이하	25층 이하	33층이하 (100m이하)
			6-2	19,449.0	장위동 3-1일대	복합용지	30이하	280.3 이하	-/ 33층이하	
			6-3	472.0	장위동 120-13일대	종교시설	관련 법령에 의함			
			공공청사	1,764.7	장위동 115-18일대	공공청사	관련 법령에 의함			
변경	장위 6구역	105,163.9	6-1	41,501.6	장위동 20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60.3 이하	25층 이하	33층 이하 (100m 이하)
			6-2	19,449.0	장위동 3-1일대	복합용지	30이하	280.3 이하	-/ 33층이하	
			6-3	472.0	장위동 120-13일대	종교시설	관련 법령에 의함			
			소방치안센터	1,009.9	장위동 270-172일대	공공청사	관련 법령에 의함			
			장위3동치안센터	754.8	장위동 270-388일대	공공청사	관련 법령에 의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예정세대수 : 1,637대 (임대주택 : 285세대) - 전용면적 40㎡이하 : 129세대(7.88%) [임대 : 129세대] - 전용면적 40~50㎡ : 126세대(7.70%) [임대 : 126세대] - 전용면적 50~60㎡ : 503세대(30.72%) [임대 : 30세대] - 전용면적 60~85㎡ : 818세대 (49.97%) - 전용면적 85㎡이상 : 61세대 (3.7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한천로 : 8m, 화랑로 : 10m (단, 지하부는 6m완화적용) • 월계로, 장위로, 장월로, 순환도로, 국지도로변 : 6m							

(3)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변경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고
재개발	5단계 (2014년부터)	주택재개발조합	-	-	

(4)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건립 위치	부지면적(㎡)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기정	장위 6구역	60,990.0	-	19,424.24	• 129세대(7.88%)	• 40㎡이하	50~60㎡ 이하 소셜믹스
					• 126대(7.70%)	• 40~50㎡이하	
					• 30세대(1.83%)	• 50~60㎡이하	
					• 전체:285세대(17.41%)	-	

주) 세대수 항목의 괄호는 전체 건립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주) 구역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혼재배치하여 별도의 부지 구획하지 않음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7) 장위7구역(변경)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구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장위7구역	성북구 장위동 189-3일대	87,151.7	-	87,151.7	

나) 정비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명칭	면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계		87,151.7	-	87,151.7	100.0	
정비기반시설 등	소계	22,849.7	-	22,849.7	26.21	
	도로	13,375.7	증) 576.0	13,951.7	16.00	
	공원	4,916.0	-	4,916.0	5.64	
	녹지	3,222.0	감) 576.0	2,646.0	3.04	
	공공공지	1,336.0	-	1,336.0	1.53	
택지(획지)	소계	64,302.0	-	64,302.0	73.79	
	7-1	62,509.0	-	62,509.0	71.7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7-2	589.0	-	589.0	0.68	종교시설
	7-3	424.0	-	424.0	0.49	종교시설
	7-4	26.0	-	26.0	0.03	종교시설
	7-5	17.0	-	17.0	0.02	종교시설
	7-6	643.0	-	643.0	0.74	종교시설
	7-7	18.0	-	18.0	0.02	종교시설
	7-8	76.0	-	76.0	0.09	종교시설

주)장위8구역해제에 따른 장월로 미개설구간 확보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2)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가) 도로(변경)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40	30	보조 간선	1,348	장위동 64-95	장위동 311-22	일반 도로		총고시722 (36.12.26)	돌곶이길 폭원축소
변경	중로	1	A	20~25	보조 간선	1,348	장위동 64-95	장위동 311-22	일반 도로		총고시722 (36.12.26)	
기정	중로	1	510	20	집산 도로	489	장위동 153-9	장위동 237-90	일반 도로			장월로 선형변경
변경	중로	1	510	20	집산 도로	489	장위동 153-9	장위동 237-90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517	20	집산 도로	570	장위동 165-3	장위동 291	일반 도로		건고시123 (73.04.04)	
기정	중로	1	522	20	집산 도로	289	장위동 180	장위동 201-5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65	장위동 205-1	장위동 207-15	일반 도로		서고제 2014-406호 (14.11.27)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38	장위동 206-1	장위동 270-214	일반 도로		서고제 2014-406호 (14.11.27)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2-40	중로1-A	폭원축소	• 장위8,9,11,13구역해제에 따른 폭원축소
중로1-510	중로1-510	선형변경	• 장위8구역해제에 따른 미개설구간 3m확보

(나) 녹지(변경)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25	녹지	연결녹지	장위동 237-88일대	1,746.0	감) 364.0	1,382.0	서고시111 (08.04.03)	
변경	26	녹지	연결녹지	장위동 203-14일대	1,476.0	감) 212.0	1,264.0	서고시111 (08.04.03)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25	녹지	연결녹지	면적변경 (1,746.0㎡ → 1,382.0㎡) (감 364.0㎡)	• 장위8구역 해제에 따라 장월로폭원(20m)확보를 위한 면적 축소
26	녹지	연결녹지	면적변경 (1,476.0㎡ → 1,264.0㎡) (감 212.0㎡)	• 장위8구역 해제에 따라 장월로폭원(20m)확보를 위한 면적 축소

(다) 공원 :변경없음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418	간대공원	어린이 공원	장위동 207-48일대	4,916.0	-	4,916.0	서고시111 (08.04.03)	

(라) 공공공지 : 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74	공공공지	장위동 213-6일대	1,336.0	-	1,336.0	서고시111 (08.04.03)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변경없음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없음

결정구분	구역구분		위치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기정	장위 7구역	87,151.7	장위동 189-3일대	501	-	-	501	-	

(2) 건축시설계획 : 변경없음

결정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평균	최고
기정	장위 7구역	87,151.7	7-1	62,509.0	장위동 189-3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67 이하	22층이하	29층 이하 (88m이하)
			7-2	589.0	장위동 199-9일대	종교시설	관련 법령에 의함			
			7-3	424.0	장위동 207-12일대					
			7-4	26.0	장위동 212-112일대					
			7-5	17.0	장위동 270-207일대					
			7-6	643.0	장위동 270-193일대					
			7-7	18.0	장위동 270-214일대					
			7-8	76.0	장위동 206-1일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예정세대수 : 1,711세대 (임대주택 : 295세대) - 전용면적 40㎡이하 : 125세대(7.30%) [임대 : 125세대] - 전용면적 40~50㎡ : 137세대(8.01%) [임대 : 137세대] - 전용면적 50~60㎡ : 582세대(34.02%) [임대 : 33세대] - 전용면적 60~85㎡ : 825세대(48.22%) - 전용면적 85㎡이상 : 42세대(2.4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한천로 : 8m, 화랑로 : 10m • 월계로, 장위로, 장월로, 순환도로, 국지도로변 : 6m							

(3)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변경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고
재개발	2단계 (2011년부터)	주택재개발조합	-	-	-

(4)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기정	장위7구역	62,509.0	–	19,424.24	• 125세대(7.88%)	• 40㎡이하	50~60㎡ 이하 소셜믹스
					• 137대(7.70%)	• 40~50㎡이하	
					• 33세대(1.83%)	• 50~60㎡이하	
					• 전체:295세대(17.41%)	–	

주) 세대수 항목의 괄호는 전체 건립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주) 구역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혼재배치하여 별도의 부지 구획하지 않음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8) 장위8구역 : 해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2호)에 따라 지구에서 제척

9) 장위9구역 : 해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2호)에 따라 지구에서 제척

10) 장위10구역(변경)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장위10구역	성북구 장위동 68-37일대	94,245.0	감) 173.0	94,072.0	

주) 구역경계 조정에 인한 면적 변경

나) 정비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명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계		94,245.0	감) 173.0	94,072.0	100.0	
정비 기반 시설 등	소계	20,876.0	감) 3,357.0	17,519.0	18.6	
	도로	7,766.0	증) 1,683.0	9,449.0	10.0	
	공원	-	증) 6,156.0	6,156.0	6.5	공원하부 주차장 중복결정
	녹지	10,227.0	감) 10,227.0	-	-	
	학교	874.0	감) 368.0	506.0	0.6	
	공공공지	1,109.0	감) 1,109.0	-	-	
	공공청사	153.0	증) 1,255.0	1,408.0	1.5	
	복지시설	747.0	감) 747.0	-	-	
택지 (획지)	소계	73,369.0	증) 3,184.0	76,553.0	81.4	
	10-1	70,153.0	증) 3,184.0	73,337.0	78.0	공동주택
	10-2	2,591.0	-	2,591.0	2.8	종교시설
	10-3	625.0	-	625.0	0.6	종교시설

주) 장위8,9,11,12,13,15 재정비촉진구역해제에 따른 장위로 선형변경

주) 장위로 선형변경으로 인한 녹지 → 도로 변경, 공원·주차장 신설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

(2)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가) 도로(변경)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40	30	보조 간선	1,348 (250)	장위동 64-95	장위동 311-22	일반도로		서고시111 (03.04.03)	돌곶이길 폭원축소
변경	중로	1	A	20~25	보조 간선	1,348 (250)	장위동 64-95	장위동 311-22	일반도로		서고시111 (03.04.03)	
기정	중로	1	514	20	집산 도로	396	장위동 233-651	장위동 75-560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장위로 선형변경
변경	중로	1	514	20	집산 도로	396	장위동 238-238	장위동 74-54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1	520	20	집산 도로	519	장위동 68-668	장위동 69-49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순환도로 연장축소
변경	중로	3	A	13	집산 도로	140	장위동 68-77	장위동 69-49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신설	소로	1	B	10	국지 도로	270	장위동 68-63	장위동 68-1110	일반 도로			
환원	중로	3	-	12~15 (3)	집산 도로	378	장위동 237-268	장위동 238-510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장월로
폐지	중로	1	511	20	집산 도로	1,045	장위동 237-268	상월곡동 23-95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장월로
폐지	소로	3	500	6	국지 도로	30	장위동 238-332	장위동 68-8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장위10구역내 폭원 연장을 의미함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2-40	중로1-A	폭원축소	• 장위 8 · 9 · 11구역 해제에 따라 폭원 축소
-	중로 3-	환원	• 장위15구역 해제에 따라 장위10구역 내 장월로 환원 • 장월로 교차부 폭 3m 확폭
중로 1-514	중로 1-514	선형변경	• 장위9구역 해제에 따라 현황도로 경계로부터 20m 선형변경
중로 1-520	중로 3-A	선형변경	• 장위11구역 해제에 따라 10구역 내 폭원 및 선형 변경, 연장 축소
-	소로 1-B	신설	• 장위11구역 해제에 따라 해제구역 내 현황도로 연계 진출입동선 대체 확보
중로 1-511	-	폐지	• 9,11,13,15구역 해제에 따라 폐지
소로 3-500	-	폐지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폐지

(나)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설	A	주차장	주차장	장위동 238-229일대	-	증) 6,156.0	6,156.0	-	어린이공원A 중복결정 (하부조성)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A	주차장	주차장	신설 (증 6,156.0㎡)	• 지역 내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공원하부 지하주차장(건축연면적 5,000㎡) 신설

(다) 녹지(변경)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폐지	30	녹지	연결녹지	장위동 74-289일대	6,826.0 (6,502.0)	감) 6,826.0 (감 6,502.0)	-	서고시111 (08.04.03)	
폐지	35	녹지	연결녹지	장위동 68-600일대	3,725.0	감) 3,725.0	-	서고시111 (08.04.03)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장위10구역 내 면적을 의미함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30	녹지	연결녹지	폐지 (감 6,826.0㎡(6,502.0㎡))	• 장위11,15구역해제 및 장위10구역 토지이용계획변경에 따른 연결녹지 폐지
35	녹지	연결녹지	폐지 (감 3,725.0㎡)	• 장위9 · 11 · 15구역 해제에 따른 연결녹지 연속성 단절 및 필수기반시설(도로, 공공청사) 확보를 위해 연결녹지 폐지

(라) 공원(변경)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설	A	-	어린이 공원	장위동 238-229일대	-	증) 6,156.0	6,156.0	-	주차장A 중복결정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A	–	어린이 공원	신설 (증 6,156.0㎡)	• 연결녹지(30,35)폐지로 지역주민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장위초교와 연계 공원을 계획하여 환경 친화적 주거환경을 조성

(마)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폐지	79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69-34일대	1,109.0	감) 1,109.0	-	서고시111 (08.04.03)	-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79	공공공지	공공공지	폐지 (감 1,109.0㎡)	• 장위9 · 11구역 해제에 따른 공공공지 연속성 단절 및 필수기반시설(도로, 공공청사) 확보를 위해 공공공지 폐지

(바) 공공청사(변경)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설	A	장위2동 주민센터	공공청사	장위동 68-1335일대	-	증) 1,000.0	1,000.0	-	
신설	B	공공청사	공공청사	장위동 68-942일대	-	증) 408.0	408.0	-	
폐지	50	장위2동 주민센터	공공청사	장위동 603일대	2,454.0	감) 2,454.0	-	서고시111 (08.04.03)	
폐지	58	장위2동치안 서비스센터	공공청사	장위동 68-255일대	928.0 (153.0)	감) 928.0 (감153.0)	-	서고시111 (08.04.03)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장위10구역 내 면적을 의미함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A	장위2동 주민센터	공공청사	신설 (증 1,000.0㎡)	• 장위11구역 해제에 따른 장위2동 주민센터 대체 확보 • 사회복지시설22와 복합개발
B	공공청사	공공청사	신설 (증 408.0㎡)	• 해제구역주민들을 위한 공공청사 신설
50	장위2동 주민센터	공공청사	폐지 (감 2,454.0㎡)	• 장위10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폐지
58	장위2동치안 서비스센터	공공청사	폐지 (감 928.0㎡(153.0㎡))	• 장위10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장위11구역 해제에 따라 폐지

(사) 학교(변경)

■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	장위 초등학교	학교	장위동 68-8	16,760.0 (874.0)	감) 950.0 (감 368.0)	15,810.0 (506.0)	시교위고시5 (87.02.17)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장위10구역 내 면적을 의미함

주) 장위초등학교부지 정형화 및 장위10구역 내 일부 학교부지 제척(현황면적 : 15,798㎡)

■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	장위 초등학교	학교	면적변경 (16,760㎡(874㎡) → 15,810㎡(506㎡)) (감 950㎡(368㎡))	• 장위10구역 내 기존 장위초교 부지 제척하고, 부지 정형화

(아) 사회복지시설(변경)

■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폐지	22	장위 어린이집	사회복지 시설	장위동 238-249일대	747.0	감) 747.0	–	서고시111 (08.04.03)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22	장위 어린이 집	사회복지 시설	폐지 (감 747.0㎡)	• 장위11구역 해제에 따라 신설 공공청사A (장위2동주민센터)와 복합개발을 위해 폐지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결정구분	구 역 구 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기정	장위10구역	94,245.0	장위동 68-37일대	453	-	-	453	-	
변경		94,072.0							

(2)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평균	최고
기정	장위 10구역	94,245	10-1	70,153.0	장위동68-37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64.32 이하	22.3층 이하	32층이하 (97m이하)
			10-2	2,591.0	장위동68-65일대	종교시설	관련 법령에 의함			
			10-3	625.0	장위동238-241일대					
			공공청사	153.0	장위동68-63일대	공공청사				
			복지시설	747.0	장위동238-249일대	복지시설				
변경		94,072	10-1	73,337.0	장위동68-37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63.39 이하	22.3층 이하	32층이하 (97m이하)
			10-2	2,591.0	장위동74-32일대	종교시설	관련 법령에 의함			
			10-3	625.0	장위동238-401일대					
			공공청사	1,000.0	장위동68-1327일대	공공청사				
			공공청사	408.0	장위동68-942일대	공공청사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기정	• 건립예정세대수 : 1,968세대 (임대주택 : 336세대) - 전용면적 40㎡이하 : 152세대(7.72%) [임대 : 152세대] - 전용면적 40~50㎡ : 142세대(7.22%) [임대 : 142세대] - 전용면적 50~60㎡ : 588세대(29.87%) [임대 : 42세대] - 전용면적 60~85㎡ : 1,063세대(54.02%) - 전용면적 85㎡이상 : 23세대(1.17%)
	변경(안)	• 건립예정세대수 : 2,025세대 (임대주택 : 345대) - 전용면적 40㎡이하 : 167세대(8.24%) [임대 : 160세대] - 전용면적 40~50㎡ : 153세대(7.56%) [임대 : 149세대] - 전용면적 50~60㎡ : 623세대(30.77%) [임대 : 36세대] - 전용면적 60~85㎡ : 1,056세대(52.15%) - 전용면적 85㎡이상 : 26세대(1.28%)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한천로 : 8m, 화랑로 : 10m (단, 지하부는 6m로 완화적용) • 월계로, 장위로, 장월로, 순환도로, 국지도로변 : 6m • 보차혼용통로(장위동 38-217일대)변 : 3m
기 타		• 장위초교 우측변 보차혼용통로(폭10m)를 설정하여 현황도로를 연결 및 장위초교 통학로 확보 • 구분지상권 설정(토지소유권 : 민간, 유지관리 : 공공) • 보차혼용통로 : 입주자모집공고, 분양계획서 등을 통해 보차혼용통로 제한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고, 이를 근거로 구분지상권등기를 설정하며,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여 공공의 이용을 충분히 담보토록 함 • 공공보행통로 : 동·서방향 남·북방향 (폭10m) [도면참조]

(3)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변경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고
재개발	3단계 (2012년부터)	주택재개발조합	–	–	

(4)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건립 위치	부지면적(㎡)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기정	장위 10구역	70,153.0	-	20,908.26	• 152세대(7.97%)	• 40㎡이하	
					• 142대(7.19%)	• 40~50㎡이하	
					• 42세대(1.88%)	• 50~60㎡이하	
					• 전체:336세대(17.04%)	–	
변경 (안)		73,337.0	-	22,197.85	• 160세대(7.90%)	• 40㎡이하	건축계획에 의한 세대수, 연면적 변경
					• 149세대(7.36%)	• 40~50㎡이하	
					• 36세대(1.78%)	• 50~60㎡이하	
					• 전체 : 345세대(17.03%)	–	

주) 세대수 항목의 괄호는 전체 건립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주) 구역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혼재배치하여 별도의 부지 구획하지 않음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1) 장위11구역 : 해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2호)에 따라 지구에서 제척

12) 장위12구역 : 해제(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75호)에 따라 지구에서 제척

13) 장위13구역 : 해제(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75호)에 따라 지구에서 제척

14) 장위14구역(변경)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구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장위14구역	성북구 장위동 233-552대	144,201.0	-	144,201.0	

주) 장위14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중으로, 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나) 정비계획 : 변경없음

(1)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구분	명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계		144,201.0	-	144,201.0	100.0	
정비 기반 시설 등	소계	48,275.0	-	48,275.0	33.4	
	도로	18,344.0	-	18,344.0	12.7	
	공원	28,026.0	-	28,026.0	19.4	
	녹지	1,905.0	-	1,905.0	1.3	
택지 (획지)	소계	95,926.0	-	95,926.0	66.6	
	14-1	71,959.0	-	71,959.0	49.9	공동주택
	14-2	23,709.0	-	23,709.0	16.5	공동주택
	14-3	258.0	-	258.0	0.2	종교시설

주) 장위14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중으로, 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가) 도로(변경)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515	20	집산도로	840	장위동 231-614	장위동 233-438	일반도로		서고제 2008-111호 (08.04.03)	장위로 연장축소
변경	중로	1	515	20	집산도로	784	장위동 231-170	장위동 233-32	일반도로		서고제 2008-111호 (08.04.03)	
기정	중로	1	519	20	집산도로	578	장위동 233-253	장위동 612	일반도로		서고제 2008-111호 (08.04.03)	순환도로 연장축소
변경	중로	1	519	20	집산도로	255	장위동 233-253	장위동 233-542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520	10	국지도로	92	장위동 231-298	장위동 산3-110	일반도로	장위동	서고제 2008-111호 (08.04.03)	
기정	소로	1	521	10	국지도로	1,155 (793)	장위동 231-590	상월곡동 37-1	일반도로		서고제 2008-111호 (08.04.03)	
폐지	중로	1	511	20	집산도로	1,045	장위동 237-268	상월곡동 23-95				장월로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511	-	폐지	• 장위9,15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중로1-515	중로1-515	연장축소	• 장위12구역 해제에 따른 연장축소
중로1-519	중로1-519	연장축소	• 장위15구역 해제에 따른 연장축소

(나) 공원(변경)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140	오동 근린공원	근린 공원	미아, 장위, 번동, 상하월곡동	1,518,198.0 (16,929.0)	감) 55,034.0	1,463,164.0 (16,929.0)	건고시2181 (66.02.05)	
변경	413	푸석공원	근린 공원	장위동 246-371일대	31,400.0 (11,097.0)	감) 20,303.0	11,097.0 (11,097.0)	서고시111 (08.04.03)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장위14구역 내 면적을 의미함

주) 413번 공원 기정 면적 오류 정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01호)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사설명	사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140	오동근린 공원	근린 공원	면적변경 (1,518,198㎡(16,929㎡) → 1,463,164㎡(16,929㎡)) (감 55,034㎡)	• 장위11,15,존치관리구역 해제에 따른 면적 감소
413	푸석공원	근린 공원	면적변경 (31,400㎡(11,097㎡) → 11,097㎡(11,097㎡)) (감 20,303㎡)	• 장위15구역 해제에 따른 면적 감소

(다) 녹지(변경)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20	녹지	연결녹지	장위동 233-86일대	5,905.0 (1,905.0)	감) 4,000.0	1,905.0 (1,905.0)	서고제 2008-111호 (08.04.03)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장위14구역 내 면적을 의미함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사설명	사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20	녹지	연결 녹지	면적변경 (5,905㎡(1,905㎡) → 1,905㎡(1,905㎡)) (감 4,000㎡)	• 장위15구역 해제에 따른 면적 감소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변경없음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없음

결정구분	구 역 구 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기정	장위14구역	144,201.0	장위동 233-552일대	638	-	-	638	-	

(2) 건축시설계획 : 변경없음

결정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평균	최고
기정	장위 14구역	144,201.0	14-1	71,959.0	장위동 233-552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25 이하	19층 이하	2종 :26층(78m이하) 2종(7층) :22층(65m이하)
			14-2	23,709.0	장위동 233-245일대					
			14-3	258.0	장위동 231-46일대	종교시설	관련 법령에 의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예정세대수 : 2,294세대 (임대주택 : 396세대) - 전용면적 40㎡이하 : 168세대(7.32%) [임대 : 168세대] - 전용면적 40~50㎡ : 166세대(7.24%) [임대 : 166세대] - 전용면적 50~60㎡ : 967세대(42.15%) [임대 : 62세대] - 전용면적 60~85㎡ : 897세대(39.10%) - 전용면적 85㎡이상 : 96(72)세대(4.19%)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한천로 : 8m, 화랑로 : 10m (단, 지하부는 6m 완화적용) • 월계로, 장위로, 장월로, 순환도로, 국지도로변 : 6m									

주) 전용면적 85㎡이상 세대수 중 ( ) 안은 부분임대주택 세대수

(3)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변경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고
재개발	4단계 (2013년부터)	주택재개발조합	-	-	-

(4)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건립 위치	부지면적(㎡)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기정	장위 14구역	-	-	23,393.0	• 168세대(7.32%)	• 40㎡이하	
					• 166대(7.23%)	• 40~50㎡이하	
					• 62세대(2.70%)	• 50~60㎡이하	
					• 전체:396세대(17.26%)	-	

주) 세대수 항목의 괄호는 전체 건립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주) 구역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혼재배치하여 별도의 부지 구획하지 않음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5) 장위15구역 : 해제(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63호)에 따라 지구에서 제척

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 분		면 적(㎡)				비 율(%)
		기 정	증 감		변 경	
계		1,872,072.5	감)	953,171.0	918,901.5	100.0
일반주거지역	소계	1,861,063.3	감)	947,039.3	914,024.0	99.5
	제1종일반주거지역	213,250.9	감)	149,659.9	63,591.0	6.9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71,379.8	감)	7,599.0	63,780.8	6.9
	제2종일반주거지역	1,511,892.1	감)	766,574.1	745,318.0	81.2
	제3종일반주거지역	64,540.5	감)	23,206.3	41,334.2	4.5
자연녹지지역		11,009.2	감)	6,131.7	4,877.5	0.5

주) 장위8,9,11,12,13,15구역 해제에 따라 지구에서 제척 / 토지이용계획 재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장위 재정비 촉진지구	용도지역 면적변경 – 제1종일반주거지역 : 감) 149,659.9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감) 7,599.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감) 766,574.1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감) 23,206.3 – 자연녹지지역 : 감) 6,131.7	• 토지이용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장위8,9,11,12,13,15구역해제에 따른 제척으로 장위지구 면적 변경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교통시설

(1) 도 로(변경)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3	35 ~38	간선 도로	9,500 (623)	종암동	장지리	일반 도로	장위동	건고시267 (71.06.10)	회랑로
기정	대로	2	40	30	보조 간선	1,348	장위동 64-95	장위동 311-22	일반 도로		총고시722 (36.12.26)	돌곶이길 폭원축소
변경	중로	1	A	20 ~25	보조 간선	1,348	장위동 64-95	장위동 311-22	일반 도로		총고시722 (36.12.26)	
기정	대로	3	39	25 ~30	간선 도로	5,110 (1,120)	미아동 42-13	하계동 184-1	일반 도로			월계로
기정	대로	3	40	25 ~31	간선 도로	11,530 (1,310)	군자동 (광로5호)	수유동	일반 도로	장위동	총고시722 (36.12.27)	한천로 선형변경
변경	대로	3	40	25 ~31	간선 도로	11,530 (1,310)	군자동 (광로5호)	수유동	일반 도로	장위동	총고시722 (36.12.27)	
기정	중로	1	510	20	집산 도로	489	장위동 153-9	장위동 237-90	일반 도로			장월로 선형변경
변경	중로	1	510	20	집산 도로	489	장위동 153-9	장위동 237-90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512	20	집산 도로	55	장위동 158-43	장위동 157-22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1	513	20	집산 도로	356	장위동 74-140	장위동 119-1	일반 도로		서고시23 (71.03.02)	장위로 선형변경
변경	중로	1	513	20	집산 도로	356	장위동 74-140	장위동 119-1	일반 도로		서고시23 (71.03.02)	
기정	중로	1	514	20	집산 도로	396	장위동 233-651	장위동 75-560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장위로 선형변경
변경	중로	1	514	20	집산 도로	396	장위동 238-238	장위동 74-54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1	515	20	집산 도로	840	장위동 231-614	장위동 233-438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장위로 연장축소
변경	중로	1	515	20	집산 도로	784	장위동 231-170	장위동 233-32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1	516	20	집산 도로	93	장위동 135-4	장위동 122-1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장위로 선형변경
변경	중로	1	516	20	집산 도로	93	장위동 135-4	장위동 122-1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1	517	20	집산 도로	570	장위동 165-3	장위동 291	일반 도로		건고시123 (73.04.04)	순환도로
기정	중로	1	519	20	집산 도로	578	장위동 233-253	장위동 612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순환도로 연장축소
변경	중로	1	519	20	집산 도로	255	장위동 233-253	장위동 233-542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520	20	집산도로	519	장위동 68-668	장위동 69-49	일반도로		서고시111 (08.04.03)	순환도로 연장축소
변경	중로	3	A	13	집산도로	140	장위동 68-77	장위동 68-49	일반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1	521	20	집산도로	367	장위동 69-48	장위동 36-9	일반도로		서고시111 (08.04.03)	순환도로 폭원축소
변경	중로	1	521	18 ~20	집산도로	367	장위동 69-48	장위동 36-9	일반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1	522	20	집산도로	289	장위동 180	장위동 201-5	일반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1	523	20	집산도로	427	장위동 143-38	장위동 89-9	일반도로		서고시111 (08.04.03)	순환도로 연장축소
변경	중로	1	523	14 ~19	집산도로	145	장위동 143-38	장위동 270-46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24	20	집산도로	232	장위동 93-4	장위동 62-1	일반도로		서고시111 (08.04.03)	순환도로 폭원축소
변경	중로	1	524	18 ~23	집산도로	232	장위동 93-4	장위동 62-1	일반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2	510	15	집산도로	251	장위동 293-9	장위동 186-28	일반도로			샘터길
기정	중로	2	511	15	집산도로	371	장위동 307-106	장위동 296-19	일반도로		건고시123 (73.04.04)	
기정	중로	2	512	15	집산도로	167	장위동 60-2	장위동 50-27	일반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3	520	12 ~15	국지도로	269	장위동 43-3	월계동 492-11	일반도로		서고시3 (69.01.18)	
기정	중로	3	521	12	국지도로	365	장위동 63-75	장위동 43-6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524	12	집산도로	26	장위동 55-25	장위동 55-21	일반도로		서고시111 (08.04.03)	석관지구단위계획구역
기정	중로	3	526	13	집산도로	197	장위동 300	장위동 182-34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527	12	국지도로	43	장위동 110-28	장위동 110-21	일반도로		서고시231 (11.08.11)	
기정	소로	1	S1	10	국지도로	103	장위동 8-2	장위동 8-3	일반도로		서고시212 (02.06.12)	석관지구단위계획구역
기정	소로	1	520	10	국지도로	92	장위동 231-298	장위동 산3-110	일반도로	장위동	서고시111 (08.04.03)	
기정	소로	1	521	10	국지도로	1,155 (793)	장위동 231-590	상월곡동 37-1	일반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소로	1	523	10	국지도로	65	장위동 237-231	장위동 237-261	일반도로		서고시111 (08.04.03)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524	10	국지도로	85	장위동 270-346	장위동 120-14	일반도로	-		선형변경
변경	소로	1	524	10	국지도로	85	장위동 270-346	장위동 120-1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S6	10 ~11		227	장위동 50-17	장위동 63-61	일반도로		서고시212 (02.06.12)	석관지구단위계획구역
기정	소로	1	A	10		30	장위동 270-164	장위동 127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65	장위동 205-1	장위동 207-15	일반도로		서고제 2014-406호 (14.11.27)	
기정	소로	3	B	6		133	장위동 136-53	장위동 133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38	장위동 206-1	장위동 270-214	일반도로		서고제 2014-406호 (14.11.27)	
기정	소로	3	239	6		25	장위동 63-59	장위동 63-60	일반도로		서고시212 (02.06.12)	석관지구단위계획구역
기정	소로	3	501	8	국지도로	153	장위동 270-58	장위동 270-58	일반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소로	3	524	6	국지도로	142	장위동 37-31	장위동 56	일반도로		서고시231 (11.08.11)	
신설	소로	1	B	10	국지도로	270	장위동 68-63	장위동 68-1110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A	8	국지도로	50	장위동 272-122	장위동 272-122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A	4	국지도로	38	장위동 272-112	장위동 272-122	일반도로			
환원	중로	3	-	12		30	장위동 65-174	장위동 66-196				
환원	중로	3	-	12		30	장위동 230-127	장위동 230-214				
환원	중로	3	-	12 ~15(3)	집산도로	378	장위동 237-268	장위동 238-510	일반도로		서고시111 (08.04.03)	장월로
환원	소로	1	-	10		68	장위동 69-49	장위동 68-1320				
환원	소로	1	109	10		586	장위동 119	장위동 238-211	일반도로		서고시23 (74.03.02)	
환원	소로	2	-	8		90	상월곡동 7-135	상월곡동 7-107	일반도로		건(서)고시5 (72.05.22)	
환원	소로	2	-	8		50	장위동 222-15	장위동 284-1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환원	소로	2	161	6~8		150	장위동 77-50	장위동 89-2	일반 도로		성북고시61 (94.08.16)	
환원	소로	2	136	8		443	장위동 203	장위동 91	일반 도로		서고시3 (69.01.18)	
환원	소로	3	-	4		158	장위동 237-324	장위동 75-563				
환원	소로	3	-	4		69	장위동 75-563	장위동 238-478				
환원	소로	3	-	4		21	장위동 75-586	장위동 238-501				
환원	소로	3	-	4		28	장위동 75-582	장위동 75-583				
환원	소로	3	-	4		109	장위동 74-7	장위동 75-5				
환원	소로	3	-	4		51	장위동 232-125	장위동 232-13				
환원	소로	3	-	4		70	장위동 233-645	장위동 225-48				
환원	소로	3	-	5		20	장위동 75-588	장위동 238-504				
환원	소로	3	-	6		28	장위동 283-40	장위동 234-97				
환원	소로	3	-	6		62	상월곡동 7-149	상월곡동 24-19	일반 도로		서고시169 (82.04.27)	
환원	소로	3	-	6		114	장위동 144-53	장위동 270-90				
환원	소로	3	-	6		163	장위동 82-4	장위동 89-80				
환원	소로	3	28	6		510	장위동 225-53	장위동 234-46	일반 도로		서고시246 (76.09.24)	
환원	소로	3	108	6		36	장위동 135-5	장위동 135-3	일반 도로		서고시164 (92.05.26)	
환원	소로	3	217	6		280	장위동 222-2	장위동 237-122	일반 도로		서고시3 (69.01.18)	
환원	소로	3	218	6		256	장위동 215-2	장위동 234-4	일반 도로		서고시3 (69.01.18)	
환원	소로	3	219	6		105	장위동 214-3	장위동 235	일반 도로			
환원	소로	3	220	6		244	장위동 225-1	장위동 238-137	일반 도로		서고시3 (69.01.18)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환원	소로	3	221	6		300	장위동 234-5	장위동 238-205	일반 도로		서고시3 (69.01.18)	
환원	소로	3	222	6		110	장위동 236	장위동 75-1	일반 도로		서고시23 (74.03.02)	
환원	소로	3	223	6		108	장위동 75-588	장위동 75-566	일반 도로		서고시3 (69.01.18)	
환원	소로	3	224	6		286	장위동 131	장위동 142	일반 도로		서고시3 (69.01.18)	
환원	소로	3	225	6		428	장위동 134	장위동 5-2	일반 도로			
환원	소로	3	227	6		280	장위동 147	장위동 118	일반 도로		서고시3 (69.01.18)	
환원	소로	3	-	7		126	장위동 28-116	장위동 28-39				
환원	소로	3	403	6		185	장위동 231-592	장위동 231-322	일반 도로		서고시120 (93.04.16)	
폐지	중로	1	511	20	집산 도로	1,045	장위동 237-268	상월곡동 23-95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장월로
폐지	중로	1	518	20	집산 도로	515	장위동 215-1	장위동 225-83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폐지	중로	3	522	12	국지 도로	603	상월곡동 23-57	장위동 64-94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폐지	중로	3	523	12	국지 도로	248	상월곡동 29-31	상월곡동 27-7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폐지	중로	3	525	12	국지 도로	67	장위동 219-267	장위동 230-37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폐지	소로	1	522	10	국지 도로	92	장위동 65-27	장위동 66-44	일반 도로		서고시3 (69.01.18)	
폐지	소로	3	500	6	국지 도로	30	장위동 238-332	장위동 68-8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폐지	소로	3	A	6	국지 도로	82	장위동 246-365	장위동 246-291	일반 도로		서고시142 (10.04.22)	미담길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2-40	중로1-A	폭원축소	• 장위8,9,11,13구역 해제에 따른 폭원축소
대로3-40	대로3-40	선형변경	• 장위8구역 해제에 따른 선형변경
중로1-510	중로1-510	선형변경	• 장위8구역해제에 따른 미개설구간 3m확보
중로1-511	-	폐지	• 장위9,11,13,15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중로1-513	중로1-513	선형변경	• 장위8,9,12,13,15구역 해제에 따른 선형변경
중로1-514	중로1-514	선형변경	• 장위9구역 해제에 따라 현황도로 경계로부터 20m 선형 변경
중로1-515	중로1-515	연장축소	• 장위12구역해제에 따른 연장축소
중로1-516	중로1-516	선형변경	• 장위8,9,12,13,15구역 해제에 따른 선형변경
중로1-519	중로1-519	연장축소	• 장위15구역 해제에 따른 연장축소
중로1-520	중로3-A	선형변경	• 장위11구역 해제에 따른 장위10구역 내 폭원 및 선형변경, 연장축소
중로1-521	중로1-521	폭원축소	• 경관녹지 신설에 따른 폭원축소
중로1-523	중로1-523	연장축소	• 장위8구역해제에 따른 순환도로 연장축소
중로1-524	중로1-524	폭원축소	• 경관녹지 신설에 따른 폭원축소
소로1-524	소로1-524	선형변경	• 장위8구역 해제에 따른 선형변경
-	중로3-	환원	• 장위15구역 해제에 따른 장위10구역 내 장월로 환원 • 장월로 교차부 폭 3m확폭
-	소로1-B	신설	• 장위11구역 해제에 따라 해제구역내 현황도로 연계 진출입동선 대체확보
-	소로2-A	신설	• 삼익아파트(존치시설) 주차장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신설
-	소로3-A	신설	• 삼익아파트(존치시설) 상가 진출입 확보를 위한 신설
-	소로2-136	환원	• 장위8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소로2-161	환원	• 장위8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소로3-108	환원	• 장위8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소로3-224	환원	• 장위8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소로3-225	환원	• 장위8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소로3-227	환원	• 장위8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소로3-	환원	• 장위8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소로3-	환원	• 장위8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소로1-109	환원	• 장위9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소로3-222	환원	• 장위9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소로3-223	환원	• 장위9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소로3-	환원	• 장위9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소로3-	환원	• 장위9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3–	환원	• 장위9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소로3–	환원	• 장위9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소로3–	환원	• 장위9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소로3–	환원	• 장위9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소로3–500	–	폐지	• 장위10구역 토지이용 변경에 따른 폐지
중로3–522	–	폐지	• 장위11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소로1–522	–	폐지	• 장위11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	소로1–	환원	• 장위11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소로2–	환원	• 장위11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소로3–	환원	• 장위11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중로3–	환원	• 장위11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소로3–403	환원	• 장위12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중로3–	환원	• 장위12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소로3–221	환원	• 장위13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소로3–	환원	• 장위13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소로3–	환원	• 장위13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소로3–	환원	• 장위13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소로3–217	환원	• 장위13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소로3–218	환원	• 장위13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소로3–219	환원	• 장위13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소로3–220	환원	• 장위13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소로2–	환원	• 장위13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소로3–	환원	• 장위13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소로3–28	환원	• 장위13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중로3–523	–	폐지	• 장위15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중로3–525	–	폐지	• 장위13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중로1–518	–	폐지	• 장위13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	소로3–7	환원	• 장위15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소로3–A	–	폐지	• 장위15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나) 공간시설(변경)

(1) 공원(변경)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140	오동 근린공원	근린 공원	미아,장위,번동, 상하월곡동	1,518,198.0 (71,963.0)	감) 55,034.0	1,463,164.0 (16,929.0)	건고시2181 (66.02.05)	
변경	411	아랫말 공원	근린공원	월계동 479-4일대	22,782.0	감) 24.0	22,758.0	서고시111 (08.04.03)	
변경	413	푸석 공원	근린공원	장위동 246-371일대	31,400.0	감) 20,303.0	11,097.0	서고시111 (08.04.03)	
변경	415	상길례 공원	문화공원	장위동 289-29일대	4,077.0	증) 4.3	4,081.3	서고시111 (08.04.03)	
기정	417	석촌 공원	어린이 공원	장위동 180-1일대	8,321.0	-	8,321.0		
기정	418	간대 공원	어린이 공원	장위동 207-48일대	4,916.0	-	4,916.0	서고시111 (08.04.03)	
변경	419	장석 공원	어린이 공원	장위동 110-53일대	5,021.0	증) 628.0	5,649.0	서고시111 (08.04.03)	
신설	A	-	어린이 공원	장위동 238-229일대	-	증) 6,156.0	6,156.0		주차장A 중복 결정
환원	363	장위 아동공원	어린이 공원	장위동 219-223	-	증) 982.0	982.0		
폐지	410	남령 공원	역사공원	장위동 76-59일대	15,726.0	감) 15,726.0	-	서고시111 (08.04.03)	
폐지	412	장시 공원	문화공원	장위동 66-150일대	21,910.0	감) 21,910.0	-	서고시111 (08.04.03)	
폐지	414	명덕 공원	근린공원	장위동 219-223일대	18,041.0	감) 18,041.0	-	서고시111 (08.04.03)	
폐지	416	하길례 공원	문화공원	장위동 217일대	3,914.0	감) 3,914.0	-	서고시111 (08.04.03)	
폐지	420	마른 대미 공원	소공원	상월곡동 29-25일대	1,217.0	감) 1,217.0	-	서고시111 (08.04.03)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면적을 의미함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A	–	어린이공원	신설 (증 6,156.0㎡)	• 연결녹지(30,35)폐지로 지역주민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장위초와 연계공원을 계획하여 환경 친화적 주거환경을 조성
140	오동근린공원	근린공원	면적변경 (71,963.0㎡ → 16,929.0㎡) (감 55,034.0㎡)	• 장위11,15,존치관리구역 폐지에 따른 면적 감소
363	장위아동공원	어린이공원	환원 (982.0㎡)	• 장위13구역 해제에 따른 시설 환원
410	남령공원	역사공원	폐지 (감 15,726.0㎡)	• 장위8구역 해제에 따른 시설 폐지
411	아랫말공원	근린공원	면적변경 (22,782.0㎡→22,758.0㎡) (감 24.0㎡)	• 장위로(1-516)선형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412	장시공원	문화공원	폐지 (감 21,910.0㎡)	• 장위11구역 해제에 따른 시설 폐지
413	푸석공원	근린공원	면적변경 (31,400.0㎡→11,097.0㎡) (감 20,303.0㎡)	• 장위15구역 해제에 따른 면적 변경
414	명덕공원	근린공원	폐지 (감 18,041.0㎡)	• 장위13구역 해제에 따른 시설 폐지
415	상길례공원	문화공원	면적변경 (4,077.0㎡→4,081.3㎡) (증 4.3㎡)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416	하길례공원	문화공원	폐지 (감 3,914.0㎡)	• 장위13구역 해제에 따른 시설 폐지
419	장석공원	어린이공원	면적변경 (5,021.0㎡→5,649.0㎡) (증 628.0㎡)	• 도로(중1-524) 폭원23m → 18m 축소로 인한 면적 증가
420	마른대미공원	소공원	폐지 (감 1,217.0㎡)	• 장위15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2) 녹지(변경)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20	녹지	연결 녹지	장위동 233-86일대	5,905.0	감) 4,000.0	1,905.0	서고시111 (08.04.03)	
변경	22	녹지	연결 녹지	장위동 140-20일대	2,269.3	감) 824.0	1,445.3	서고시111 (08.04.03)	
변경	25	녹지	연결 녹지	장위동 237-88일대	1,746.0	감) 364.0	1,382.0	서고시111 (08.04.03)	
변경	26	녹지	연결 녹지	장위동 203-14일대	1,476.0	감) 212.0	1,264.0	서고시111 (08.04.03)	
기정	27	녹지	연결 녹지	장위동 153-21일대	2,620.5	-	2,620.5	서고시111 (08.04.03)	
변경	31	녹지	연결 녹지	장위동 72-2일대	2,113.0	감) 1,281.0	832.0	서고시111 (08.04.03)	
변경	32	녹지	연결 녹지	장위동 105-9일대	2,633.0	감) 1,913.0	720.0	서고시111 (08.04.03)	
기정	34	녹지	연결 녹지	월계동 51-9일대	1,207.4	-	1,207.4	서고시111 (08.04.03)	
변경	37	녹지	연결 녹지	장위동 100-2번지일대	754.0	증) 300.0	1,054.0	서고시111 (08.04.03)	
신설	a	녹지	경관 녹지	장위동 135-35일대	-	증) 2,232.5	2,232.5		
신설	b	녹지	경관 녹지	장위동 135-1일대	-	증) 379.3	379.3		
신설	c	녹지	경관 녹지	장위동 62-42일대	-	증) 1,258.0	1,258.0		
신설	d	녹지	경관 녹지	장위동 156일대	-	증) 2,715.9	2,715.9		
신설	e	녹지	경관 녹지	장위동 287일대	-	증) 316.0	316.0		
폐지	21	녹지	연결 녹지	장위동 238-62일대	7,781.0	감) 7,781.0	-	서고시111 (08.04.03)	
폐지	23	녹지	연결 녹지	장위동 134-35일대	2,232.5	감) 2,232.5	-	서고시111 (08.04.03)	
폐지	24	녹지	연결 녹지	장위동 238-161일대	6,254.0	감) 6,254.0	-	서고시111 (08.04.03)	
폐지	28	녹지	연결 녹지	장위동 156일대	2,715.9	감) 2,715.9	-	서고시111 (08.04.03)	
폐지	29	녹지	연결 녹지	장위동 135-1일대	379.3	감) 379.3	-	서고시111 (08.04.03)	
폐지	30	녹지	연결 녹지	장위동 74-289일대	6,826.0	감) 6,826.0	-	서고시111 (08.04.03)	
폐지	33	녹지	연결 녹지	장위동 287일대	1,357.9	감) 1,357.9	-	서고시111 (08.04.03)	
폐지	35	녹지	연결 녹지	장위동 68-600일대	3,725.0	감) 3,725.0	-	서고시111 (08.04.03)	
폐지	36	녹지	연결 녹지	장위동 65-145일대	1,448.0	감) 1,448.0	-	서고시 2011-231호 (11.08.11)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20	녹지	연결녹지	면적변경 (5,905.0㎡→1,905.0㎡) (감 4,000.0㎡)	• 장위15구역 해제에 따른 면적변경
21	녹지	연결녹지	폐지 (감 7,781.0㎡)	• 장위9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22	녹지	연결녹지	면적 변경 (2,269.3㎡→1,445.3㎡) (감 824.0㎡)	• 장위8구역 해제에 따른 면적변경
23	녹지	연결녹지	폐지 (감 2,232.5㎡)	• 연결녹지23 → 경관녹지a 변경 ※우이천변 경관향상을 위하여 연결녹지를 경관녹지로 변경
24	녹지	연결녹지	폐지 (감 6,254.0㎡)	• 장위13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25	녹지	연결녹지	면적변경 (1,746.0㎡ → 1,382.0㎡) (감 364.0㎡)	• 장위8구역 해제에 따라 장월로폭원(20m)확보를 위한 면적 축소
26	녹지	연결녹지	면적변경 (1,476.0㎡ → 1,264.0㎡) (감 212.0㎡)	• 장위8구역 해제에 따라 장월로폭원(20m)확보를 위한 면적 축소
28	녹지	연결녹지	폐지 (감 2,715.9㎡)	• 연결녹지28 → 경관녹지d 변경 ※우이천변 경관향상을 위하여 연결녹지를 경관녹지로 변경
29	녹지	연결녹지	폐지 (감 379.3㎡)	• 연결녹지29 → 경관녹지b 변경 ※우이천변 경관향상을 위하여 연결녹지를 경관녹지로 변경
30	녹지	연결녹지	폐지 (감 6,826.0㎡)	• 장위11,15구역해제 및 장위10구역 토지이용계획변경에 따른 연결녹지 폐지
31	녹지	연결녹지	면적변경 (2,113.0㎡→832.0㎡) (감 1,281.0㎡)	• 장위로 선형변경으로 인한 면적감소
32	녹지	연결녹지	면적변경 (2,633.0㎡→720.0㎡) (감 1,913.0㎡)	• 장위로 선형변경으로 인한 면적감소
33	녹지	연결녹지	폐지 (감 1,357.9㎡)	• 연결녹지33 → 경관녹지e변경 ※우이천변 경관향상을 위하여 연결녹지를 경관녹지로 변경 • 중로1-516선형 변경에 따른 녹지 면적 축소
35	녹지	연결녹지	폐지 (감 3,725㎡)	• 장위9,11,15구역 해제에 따른 연결녹지 연속성 단절 및 필수기반시설(도로, 공공청사) 확보를 위해 연결녹지 폐지
36	녹지	연결녹지	폐지 (감 1,448.0㎡)	• 장위11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37	녹지	연결녹지	면적변경 (754.0㎡→1,054.0㎡) (증 300.0㎡)	• 도로(중1-524) 폭원23m→20m축소에 따른 녹지면적 증가
a	녹지	경관녹지	경관녹지 신설 (증 2,232.5㎡)	• 연결녹지23 → 경관녹지a 변경 ※우이천변 경관향상을 위하여 연결녹지를 경관녹지로 변경
b	녹지	경관녹지	경관녹지 신설 (증 379.3㎡)	• 연결녹지29 → 경관녹지b 변경 ※우이천변 경관향상을 위하여 연결녹지를 경관녹지로 변경
c	녹지	경관녹지	경관녹지 신설 (증 1,258.0㎡)	• 장위로 선형변경으로 인한 연결녹지 31,32번의 면적 감소로 공원 · 녹지 확보기준 충족을 위한 경관녹지 신설
d	녹지	경관녹지	경관녹지 신설 (증 2,715.9㎡)	• 연결녹지28 → 경관녹지d 변경 ※우이천변 경관향상을 위하여 연결녹지를 경관녹지로 변경
e	녹지	경관녹지	경관녹지 신설 (증 316.0㎡)	• 연결녹지33 → 경관녹지e변경 ※우이천변 경관향상을 위하여 연결녹지를 경관녹지로 변경 • 중로1-516선형 변경에 따른 녹지 면적 축소

(3)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70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79-16	3,449.6	감) 62.0	3,387.6	서고시111 (08.04.03)	
변경	72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290-11일대	566.0	증) 6.4	572.4	서고시111 (08.04.03)	
기정	74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213-6일대	1,336.0	-	1,336.0	서고시111 (08.04.03)	
기정	80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68-18일대	1,083.0	-	1,083.0	서고시111 (08.04.03)	
기정	82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63-36일대	574.0	-	574.0	서고시111 (08.04.03)	
기정	84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63-75일대	48.0	-	48.0	서고시111 (08.04.03)	
기정	86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62-72일대	440.0	-	440.0	서고시231 (11.08.11)	
기정	87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63-59일대	106.0	-	106.0	서고시231 (11.08.11)	
환원	-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238-414	-	증) 172.0	172.0	성북고시38 (02.12.04)	
환원	18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223-7일대	-	증) 412.0	412.0	성북고시27 (00.09.25)	
폐지	71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218-42일대	604.0	감) 604.0	-	서고시111 (08.04.03)	
폐지	73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214-76일대	1,320.0	감) 1,320.0	-	서고시111 (08.04.03)	
폐지	75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237-219일대	1,523.0	감) 1,523.0	-	서고시111 (08.04.03)	
폐지	76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237-68일대	1,567.0	감) 1,567.0	-	서고시111 (08.04.03)	
폐지	77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75-398일대	1,659.0	감) 1,659.0	-	서고시111 (08.04.03)	
폐지	78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75-604일대	1,783.0	감) 1,783.0	-	서고시111 (08.04.03)	
폐지	79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69-34일대	1,109.0	감) 1,109.0	-	서고시111 (08.04.03)	
폐지	81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64-84일대	546.0	감) 546.0	-	서고시111 (08.04.03)	
폐지	83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64-95일대	40.0	감) 40.0	-	서고시111 (08.04.03)	
폐지	85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230-31일대	24,400.0	감) 24,400.0	-	서고시111 (08.04.03)	
폐지	88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156일대	1,090.1	감) 1,090.1	-	서고시10 (13.01.17)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공지	공공공지	환원 (172.0㎡)	• 장위9구역 해제에 따른 시설환원
18	공공공지	공공공지	환원 (412.0㎡)	• 장위13구역 해제에 따른 시설환원
70	공공공지	공공공지	면적변경 (3,449.6㎡→3,387.6㎡) (감 62.0㎡)	• 장위8구역 해제에 따른 면적 변경
71	공공공지	공공공지	폐지 (감 604.0㎡)	• 장위13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72	공공공지	공공공지	면적변경 (566.0㎡→572.4㎡) (증 6.4㎡)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73	공공공지	공공공지	폐지 (감 1,320.0㎡)	• 장위13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75	공공공지	공공공지	폐지 (감 1,523.0㎡)	• 장위9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76	공공공지	공공공지	폐지 (감 1,567.0㎡)	• 장위8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77	공공공지	공공공지	폐지 (감 1,659.0㎡)	• 장위9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78	공공공지	공공공지	폐지 (감 1,783.0㎡)	• 장위8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79	공공공지	공공공지	폐지 (감 1,109.0㎡)	• 장위9,11구역 해제에 따른 공공공지 연속성 단절 및 필수기반시설 (도로,공공청사) 확보를 위해 폐지
81	공공공지	공공공지	폐지 (감 546.0㎡)	• 장위11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83	공공공지	공공공지	폐지 (감 40.0㎡)	• 장위11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85	공공공지	공공공지	폐지 (감 24,400.0㎡)	• 장위13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88	공공공지	공공공지	폐지 (감 1,090.1㎡)	• 공공공지 → 획지(1-3) 변경 • 한천로 개설비용 분담

다) 유통공급설비(변경)

(1) 열공급설비(변경)

■ 열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폐지	1	열공급설비	열공급설비	장위동 66-150일대	16,000.0	감) 16,000.0	-		

■ 열공급설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열공급설비	열공급설비	폐지 (감 16,000.0㎡)	• 장위11구역 해제에 따른 시설 폐지

(2) 폐기물처리시설(변경)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폐지	1	폐기물처리시설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장위동 66-150일대	5,910.0	감) 5,910.0	-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폐기물처리시설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폐지 (감 5,910.0㎡)	• 장위11구역 해제에 따른 시설 폐지

(3) 하수도(변경)

■ 하수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k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종점	주요경유지				
환원	-	하수도	하수도	장위동 157-26	장위동 157-26	장위동 157-26	0.13			

■ 하수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	하수도	하수도	환원	• 장위13구역 해제에 따른 시설 환원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1) 공공청사(변경)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52	장위3동 주민센터	공공청사	장위동 98-1일대	2,399.0	감) 349.0	2,050.0	서고시111 (08.04.03)	
변경	53	소방 치안센터	공공청사	장위동 270-172일대	1,009.9	-	1,009.9	서고시111 (08.04.03)	
변경	54	장위3동치안 서비스센터	공공청사	장위동 270-388일대	754.8	-	754.8	서고시111 (08.04.03)	
기정	55	장위3동 커뮤니티센터	공공청사	장위동 158-15일대	1,297.2	-	1,297.2	서고시111 (08.04.03)	
기정	59	치안센터	공공청사	장위동 155-1일대	299.5	-	299.5	서고시 제2011-290호 (11.09.29)	
신설	A	장위2동 주민센터	공공청사	장위동 68-1335일대	-	증) 1,000.0	1000.0		
신설	B	공공청사	공공청사	장위동 63-942일대	-	증) 408.0	408.0		
폐지	50	장위2동 주민센터	공공청사	장위동 603일대	2,454.0	감) 2,454.0	-	서고시111 (08.04.03)	
폐지	51	장위 우체국	공공청사	장위동 65-159일대	2,100.0	감) 2,100.0	-	서고시111 (08.04.03)	
폐지	56	장위1동 주민센터	공공청사	장위동 219-315일대	2,019.0	감) 2,019.0		서고시111 (08.04.03)	
폐지	57	장위1동치안 서비스센터	공공청사	장위동 230-44일대	892.0	감) 892.0	-	서고시111 (08.04.03)	
폐지	58	장위2동치안 서비스센터	공공청사	장위동 68-255일대	928.0	감) 928.0	-	서고시111 (08.04.03)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A	장위2동주민센터	공공청사	신설 (증 1,000.0㎡)	• 장위11구역 해제에 따른 장위2동 주민센터 대체확보 • 사회복지시설22와 복합개발
B	공공청사	공공청사	신설 (증 408.0㎡)	• 해제구역주민들을 위한 공공청사 신설
50	장위2동주민센터	공공청사	폐지 (감 2,454.0㎡)	• 장위10구역 토지이용계획변경에 따른 폐지
51	장위우체국	공공청사	폐지 (감 2,100.0㎡)	• 장위11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52	장위3동주민센터	공공청사	면적변경 (2,399.0㎡→2,050.0㎡) (감 349.0㎡)	• 장위우체국용지 확보를 위한 규모축소
53	소방 치안센터	공공청사	위치변경	• 장위8구역 해제에 따라 한천로 선형변경에 따른 위치 · 선형변경
54	장위3동치안 서비스센터	공공청사	위치변경	• 장위8구역 해제에 따라 한천로 선형변경에 따른 위치 · 선형변경
56	장위1동주민센터	공공청사	폐지 (감 2,019.0㎡)	• 장위13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57	장위1동치안 서비스센터	공공청사	폐지 (감 892.0㎡)	• 장위13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58	장위2동치안 서비스센터	공공청사	폐지 (감 928.0㎡)	• 장위11구역 해제에 따라 폐지

(2) 학교(변경)

■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	장곡 초등학교	학교	장위동 235	8,734.0	감)1,552.0	7,182.0	시교위고시5 (87.02.17)	
변경	–	장위 초등학교	학교	장위동 68-8	16,760.0	감) 950.0	15,810.0	시교위고시5 (87.02.17)	
변경	–	광운 초등학교	학교	장위동 124	17,519.2	감) 156.0	17,363.2	시교위고시5 (87.02.17)	
		남대문 중학교	학교	장위동 124-1					
변경	–	월곡 중학교	학교	장위동 35-1	7,582.0	감) 989.0	6,593.0	서고시50 (82.02.03)	

■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	장곡 초등학교	학교	면적변경 (8,734.0㎡ → 7,182.0㎡) (감 1,552.0㎡)	• 장위13구역 해제에 따른 면적변경
–	장위 초등학교	학교	면적변경 (16,760.0㎡ → 15,810.0㎡) (감 950.0㎡)	• 장위10구역 내 기존 장위초교 부지 제척하고 부지 정형화
–	광운초등학교 남대문중학교	학교	면적변경 (17,519.2㎡ → 17,363.2㎡) (감 156.0㎡)	• 장위1구역과 광운학원과의 대토 협의에 따른 변경
–	월곡중학교	학교	면적변경 (7,582.0㎡ → 6,593.0㎡) (감 989.0㎡)	• 장위15구역 해제에 따른 면적 변경

(3) 문화시설(변경)

■ 문화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폐지	10	장위종합 문화복지센터	문화 시설	장위동 75-299일대	3,084.0	감) 3,084.0	–	서고시111 (08.04.03)	
폐지	2	문화시설	문화 시설	장위동 246-300일대	1,950.0	감) 1,950.0	–		

■ 문화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10	장위종합 문화복지센터	문화 시설	폐지 (감 3,084.0㎡)	• 장위9구역 해제에 따른 시설 폐지
2	문화시설	문화 시설	폐지 (감 1,950.0㎡)	• 장위15구역 해제에 따른 시설 폐지

(4) 사회복지시설(변경)

■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환원	20	장위3동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장위동 77-64외 10	1,114.0	감) 150.0	964.0	성북고시146 (03.10.25)	
기정	21	장위 실버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장위동 176-30일대	1,000.0	-	1,000.0	서고시111 (08.04.03)	
폐지	22	장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장위동 238-249일대	747.0	감) 747.0	-	서고시111 (08.04.03)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20	장위3동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면적변경 (1,114.0㎡ → 964.0㎡) (감 150.0㎡)	• 장위8구역 해제에 따른 시설 환원
22	장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폐지 (감 747.0㎡)	• 장위11구역 해제에 따라 신설 공공청사A(장위2동주민센터)와 복합개발을 위해 폐지

(5) 청소년수련시설 : 변경없음

■ 청소년수련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	성북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시설	장위동 135-2일대	2,780.4	-	2,780.4	서고시338 (97.10.28)	

(6) 주자장(변경)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설	A	주차장	주차장	장위동 238-229일대	-	증) 6,156.0	6,156.0		어린이공원A 중복결정 (하부조성)
환원	-	노외주차장	주차장	장위동 76-55	-	증) 684.0	684.0	성북고시13 (99.02.08)	
환원	-	노외주차장	주차장	장위동 65-154외 3필지	-	증) 1,825.0	1,825.0	성북고시39 (98.03.20)	
환원	-	노외주차장	주차장	장위동 68-201	-	증) 400.0	400.0		
환원	-	노외주차장	주차장	장위동 230-110외 1필지	-	증) 883.0	883.0	성북고시20 (97.03.27)	
환원	-	노외주차장	주차장	장위동 230-16	-	증) 301.0	301.0	성북고시2 (98.01.08)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A	주차장	주차장	신설 (증 6,156.0㎡)	• 지역 내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위해 공원하부 지하주차장 (건축연면적 5,000㎡)신설
-	노외주차장	주차장	환원	• 장위8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노외주차장	주차장	환원	• 장위11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노외주차장	주차장	환원	• 장위11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노외주차장	주차장	환원	• 장위13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	노외주차장	주차장	환원	• 장위13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도서」 에 명시 : 게재생략

6. 지형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및 성북구 주거정비과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 첨부된 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7.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 개최결과(2019.06.13.) 심의의견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 장위 전통시장은 기존 선형을 유지하되 상권활성화(공실예방 등)을 위해 상가 편측 배치를 검토하고 기존 상가세입자와 협의하여 우선 입점권 등 전통시장을 보존·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 공원조성계획은 광장형 공원으로 공공청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공공조경가 지정 또는 현상설계 공모를 검토할 것 ※ 대상지 남서측 건축물(105동) 상부 필로티 계획은 경관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지양할 것 ※ 보차혼용통로에 대하여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장위전통시장 연접화단은 보도로 조성을 검토할 것

8.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결과(2019.06.18.) 심의의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 기반시설(도로) 변경계획에서 도로⑧ 폐지 및 도로⑨ 현황도로 유지에 대하여는 향후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9. 열람 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13) 및 성북구청 주거정비과(☎02-2241-2833)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첨부도면

1)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사업)

가)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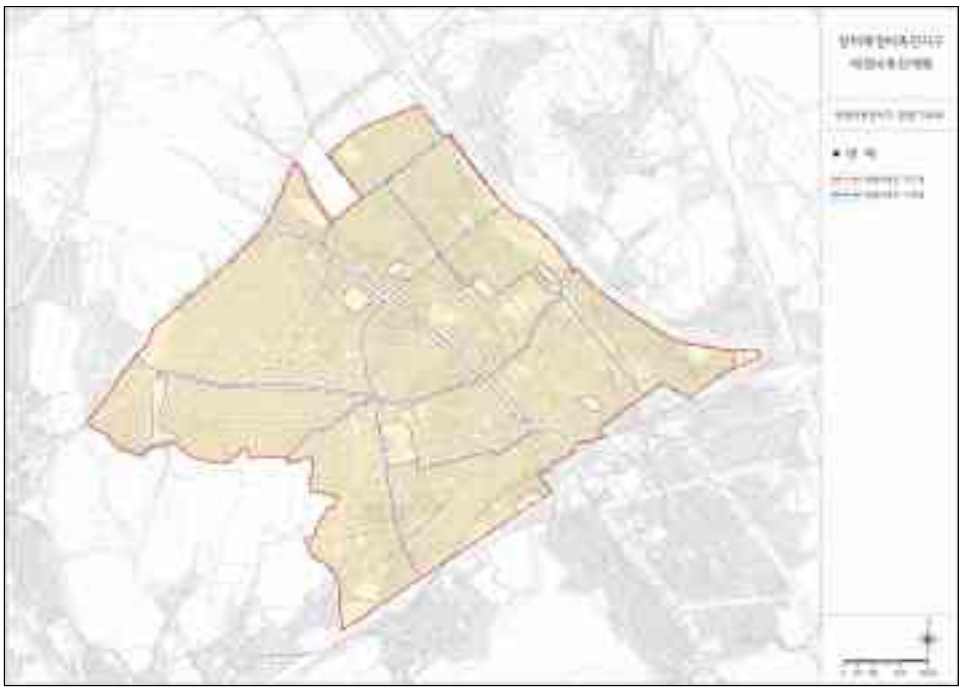

나)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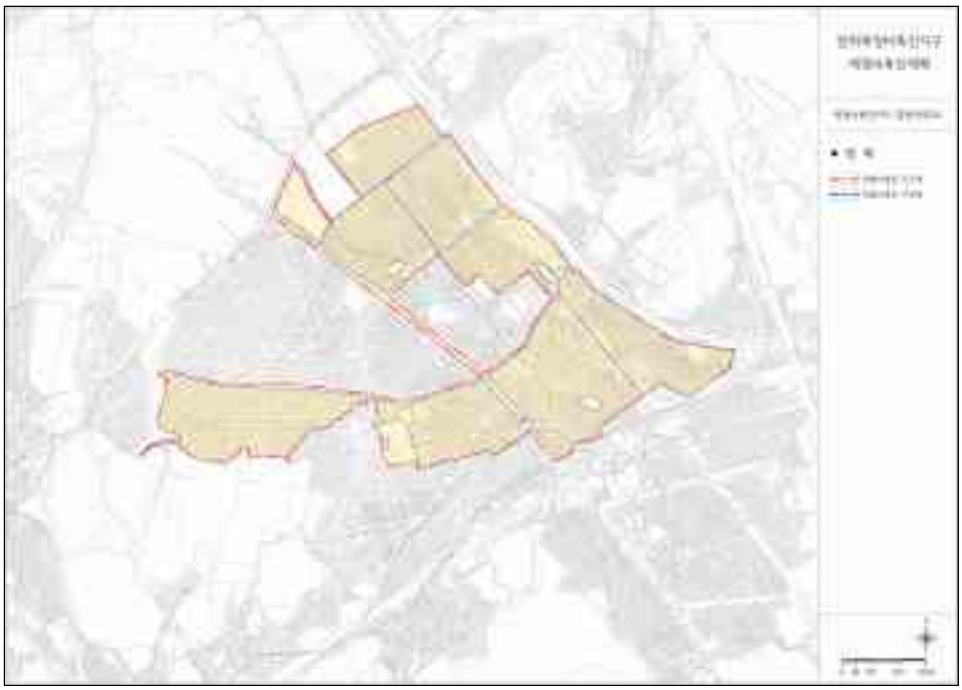

다)용도지역 결정도 (기정)

라)용도지역 결정도 (변경)

마)토지이용계획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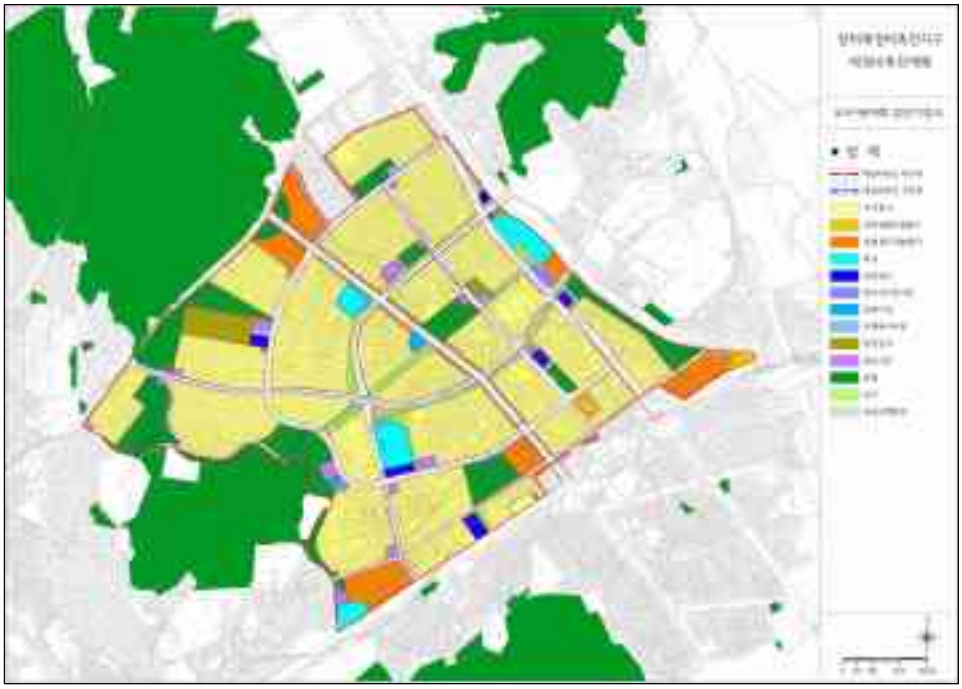

바)토지이용계획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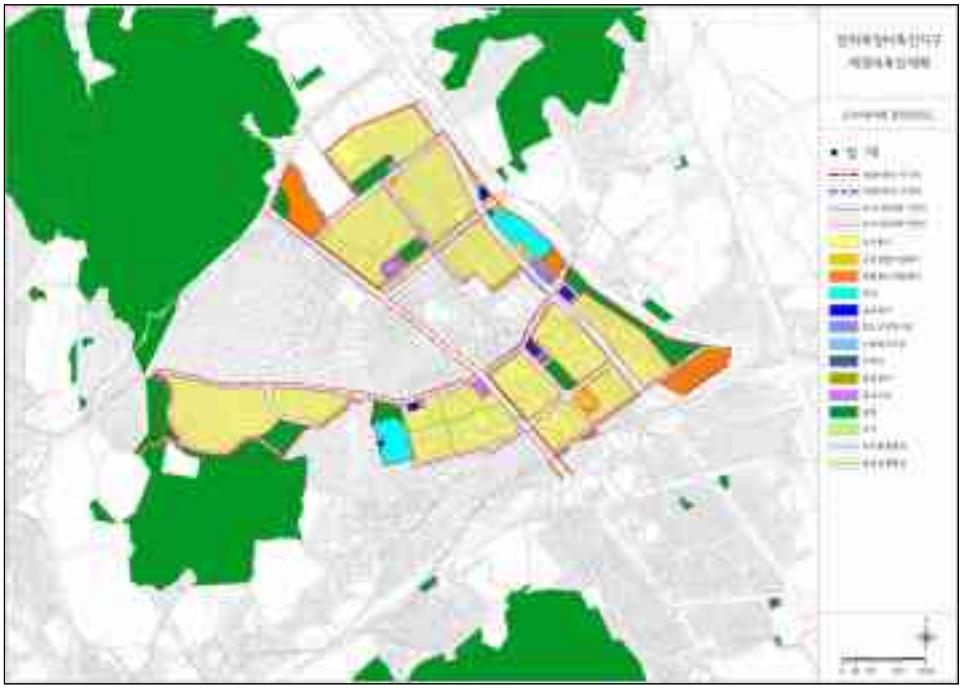

사)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기정)

아)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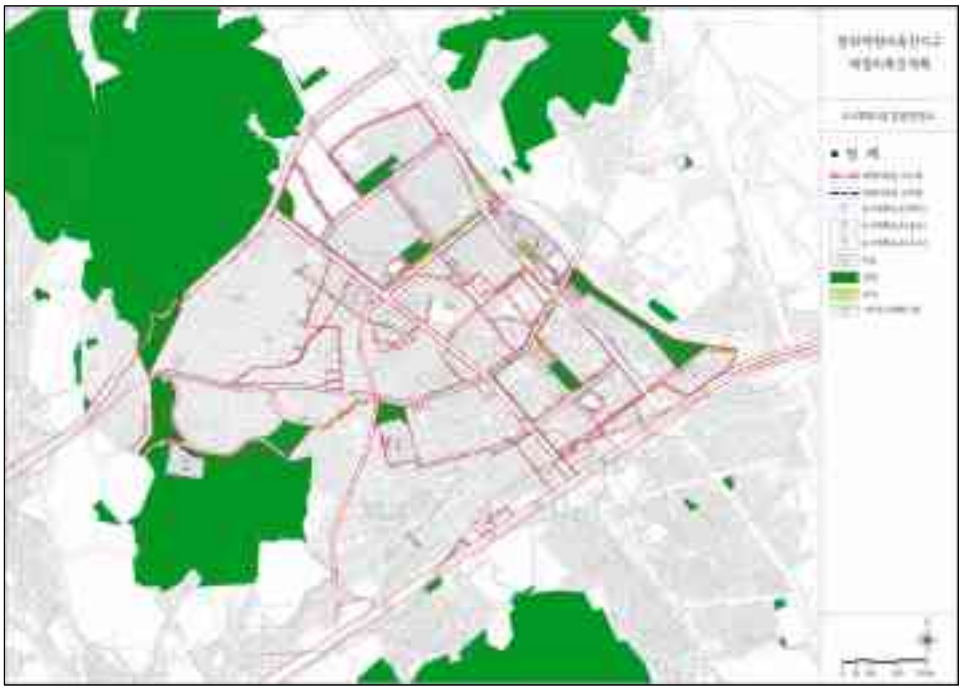

자)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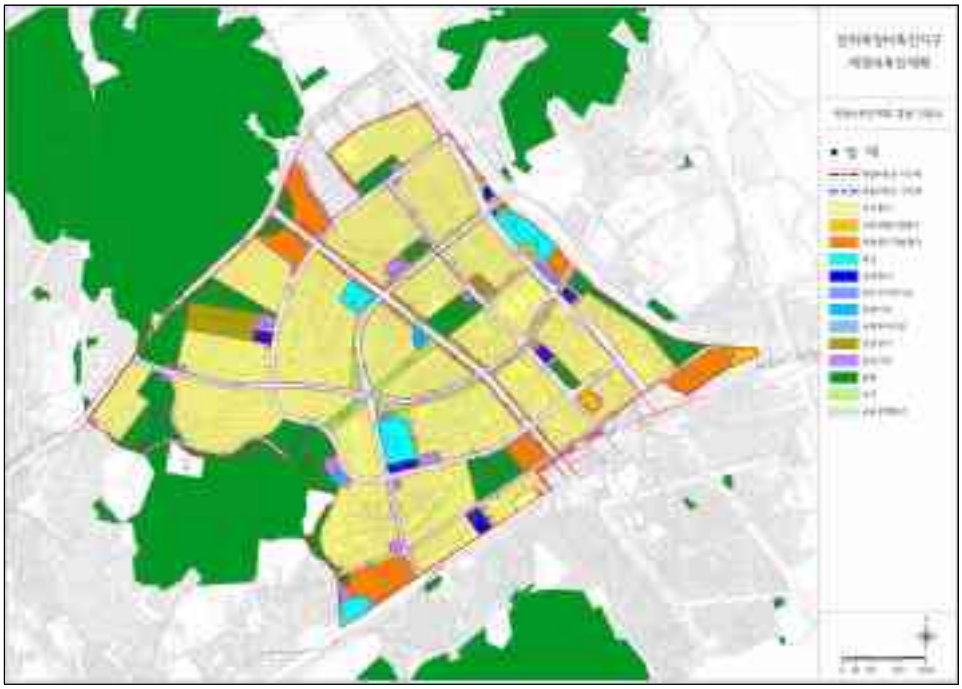

차)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변경)

카)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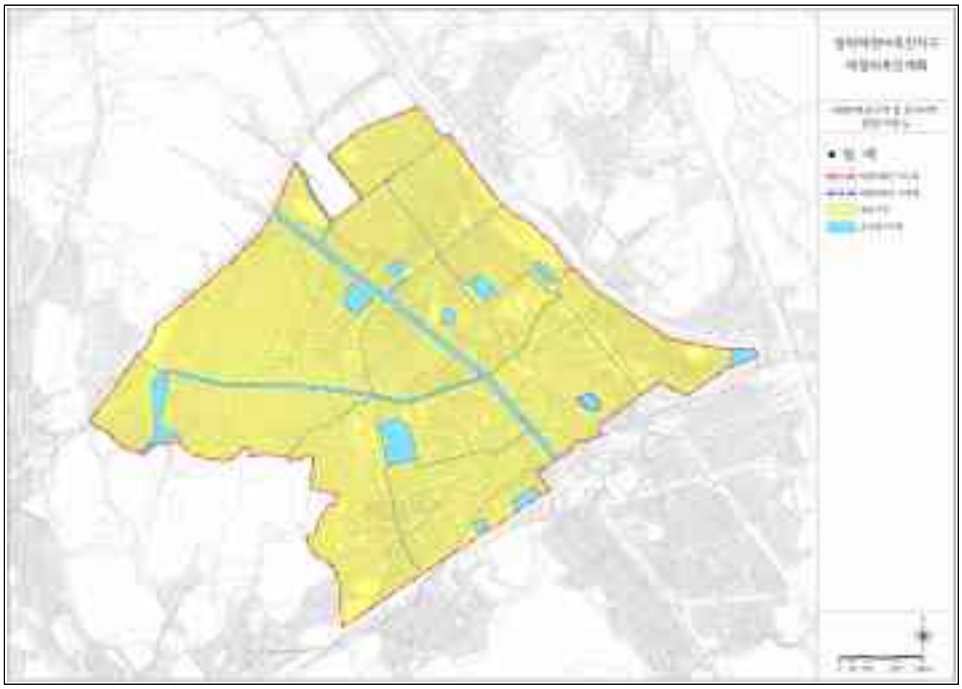

타)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결정도 (변경)

2) 장위1구역

가)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 변경없음

나)용도지역 결정도 (기정)

다)용도지역 결정도 (변경)

라)토지이용계획 결정도 (기정)

마)토지이용계획 결정도 (변경)

바)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기정)

사)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

아)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기정)

자)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변경)

3) 장위2구역

가)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 변경없음

나)용도지역 결정도 : 변경없음

다)토지이용계획 결정도 : 변경없음

라)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기정)

마)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

바)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기정)

사)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변경)

4) 장위3구역

가)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 변경없음

나)용도지역 결정도 : 변경없음

다)토지이용계획 결정도 : 변경없음

라)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변경없음

마)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 변경없음

5) 장위4구역

가)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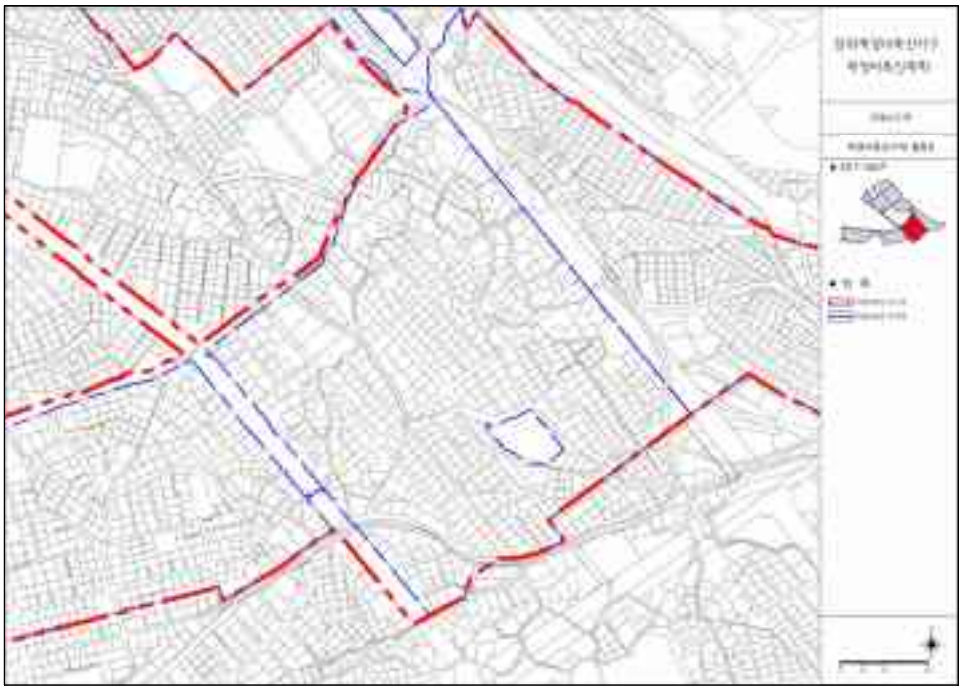

나)용도지역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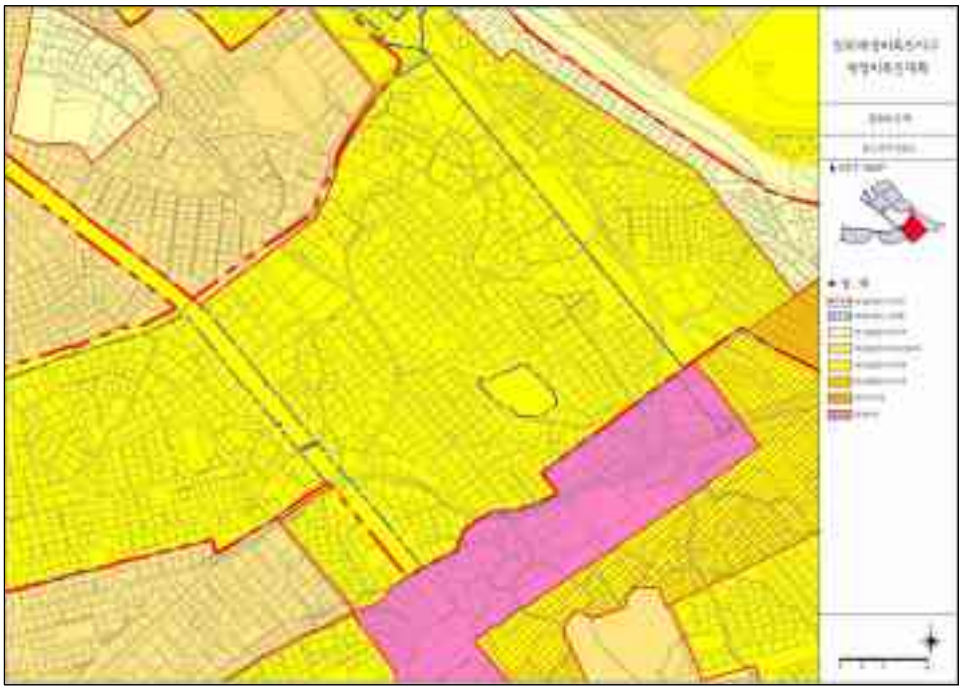

다)토지이용계획 결정도 (기정)

라)토지이용계획 결정도 (변경)

마)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기정)

바)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

사)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기정)

아)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변경)

6) 장위5구역

가)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 변경없음

나)용도구역 결정도 : 변경없음

다)토지이용계획 결정도 (기정)

라)토지이용계획 결정도 (변경)

마)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기정)

바)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

사)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기정)

아)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변경)

7) 장위6구역

가)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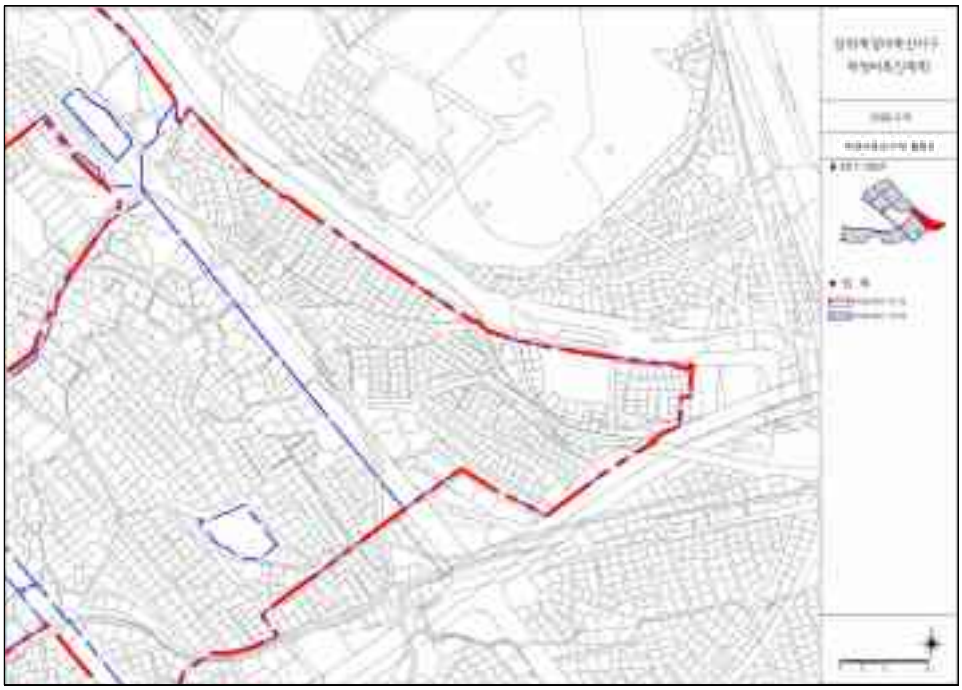

나)용도지역 결정도 (기정)

다)용도지역 결정도 (변경)

라)토지이용계획 결정도 (기정)

마)토지이용계획 결정도 (변경)

바)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기정)

사)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

아)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기정)

자)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변경)

8) 장위7구역

가)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 변경없음

나)용도지역 결정도 : 변경없음

다)토지이용계획 결정도 (기정)

라)토지이용계획 결정도 (변경)

마)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기정)

바)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

사)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기정)

아)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변경)

9) 장위10구역

가)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기정)

나)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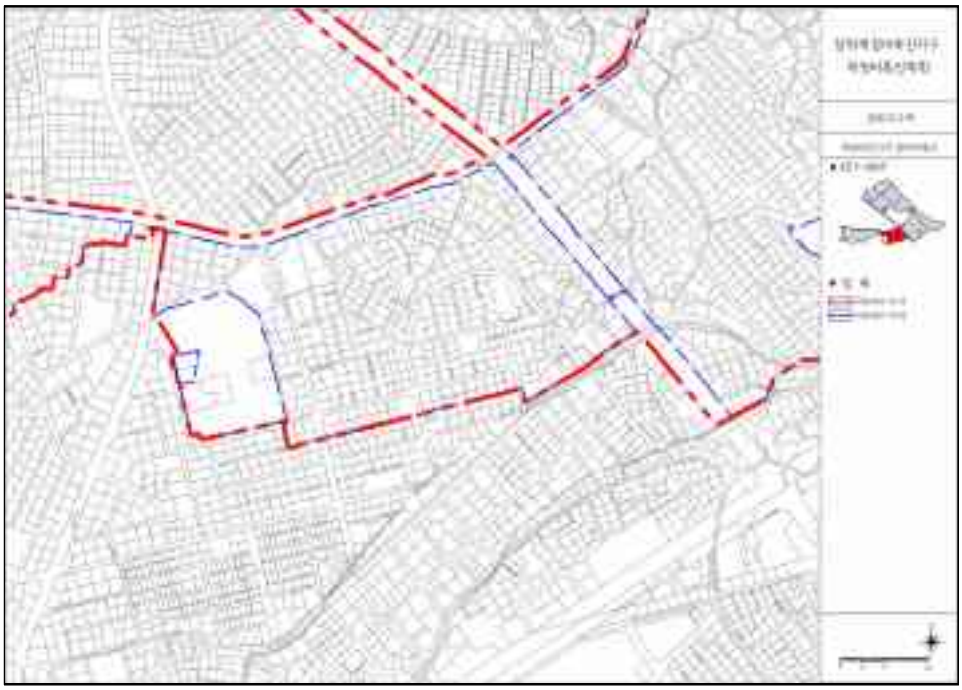

다)용도지역 결정도 : 변경없음

라)토지이용계획 결정도 (기정)

마)토지이용계획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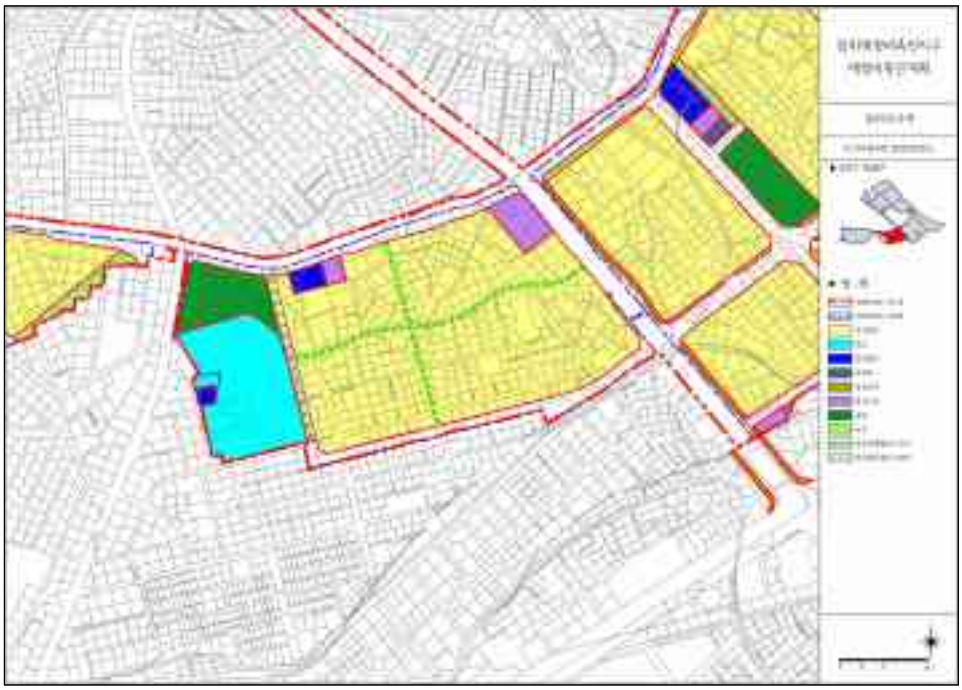

바)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기정)

사)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

아)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기정)

자)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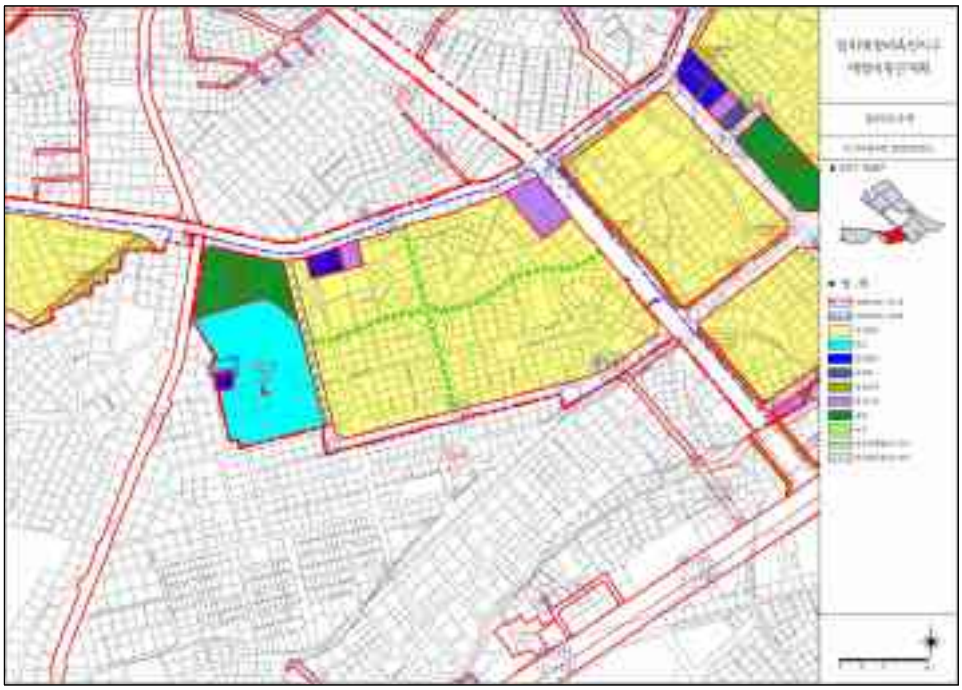

10) 장위14구역

가)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 변경없음

나)용도지역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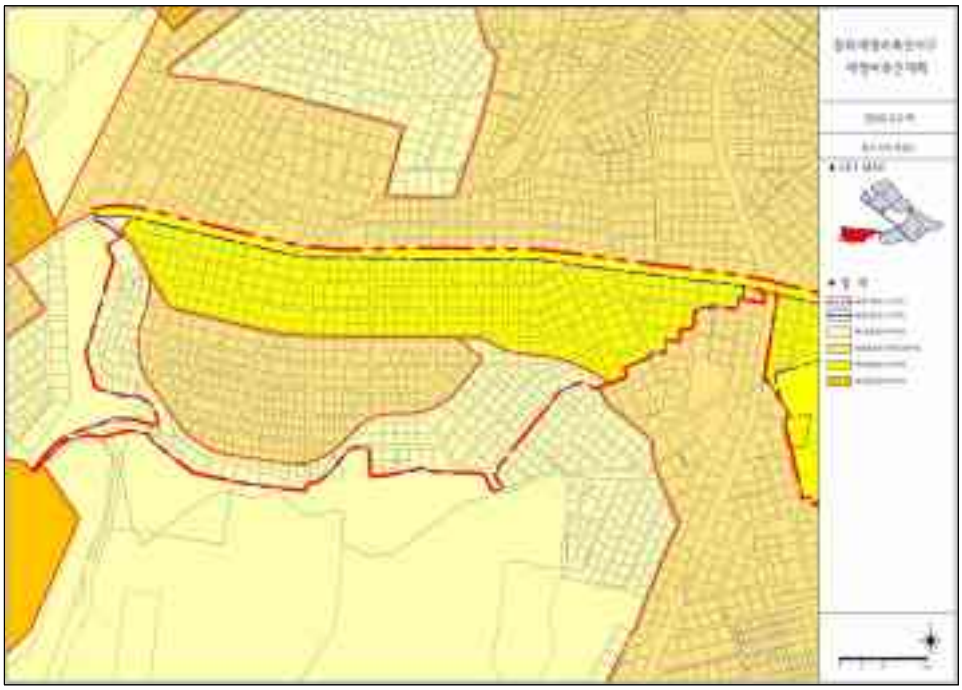

다)토지이용계획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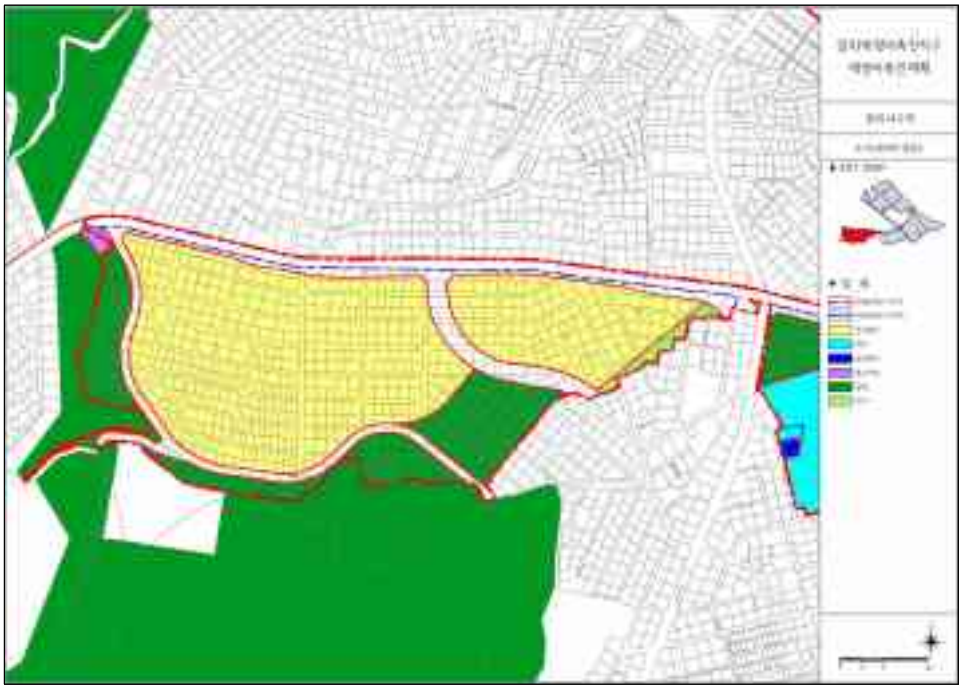

라)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기정)

마)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

바)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기정)

사)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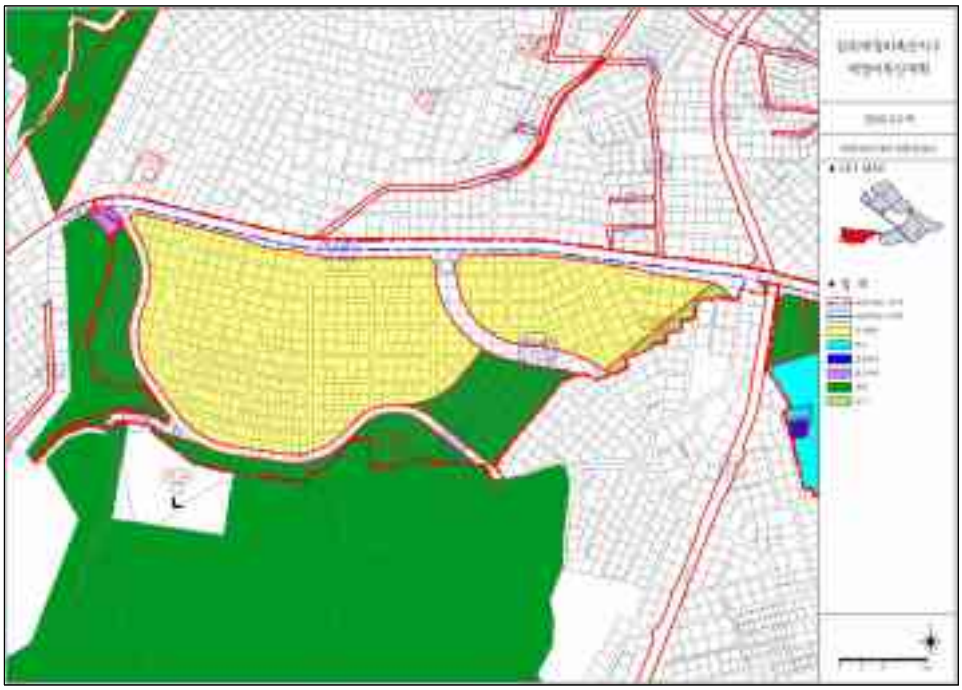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41호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6호(2008.1.7) 및 제2009-93호(2009.03.12), 제2009-529호(2009.12.24), 제2010-365호(2010.10.21), 제2011-198호(2011.07.14), 제2011-210호(2011.7.21.), 제2011-397호(2011.11.29.), 제2012-78호(2012.4.5), 제2012-162호(2012.06.28.), 제2012-359호(2012.12.27.), 제2013-263호(2013.08.08.), 제2014-89호(2014.03.13.), 제2014-290호(2014.08.21.), 제2014-373호(2014.10.30.), 제2015-20호(2015.01.22.), 제2015-206호(2015.7.16.), 제2015-325호(2015.10.22.), 제2016-122호(2016.04.21.), 제2016-148호(2016.05.26.), 제2016-233호(2016.8.4.), 제2016-285호(2016.9.8.), 제2016-360호(2016.11.10.), 제2016-379호(2016.11.17.), 제2017-13호(2017.1.12.), 제2017-189호(2017.6.1.). 제2018-93호(2018.3.29.), 제2018-124호(2018.4.26.), 제2018-218호(2018.7.19.), 제2019-19호(2019.1.17.), 제2019-103호(2019.3.21.), 제2019-163호(2019.5.23.)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이문지구단위계획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경미한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이문 · 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동대문구 이문 · 휘경동 일원	830,453.0	-	830,453.0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2022년 (변경 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 없음, 생략)

4. 결정 또는 변경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			비율(%)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총 계		830,453.0	–	830,453.0	100.0	–
주거용지	소 계	458,690.3	–	458,690.3	55.4	–
	공동주택	440,108.8	–	440,108.8	53.2	중앙 · 삼익 · 금호(사업완료) 포함
	주상복합	11,621.5	–	11,621.5	1.4	KCC 웰츠타워 등
	종교시설	6,960.0	–	6,960.0	0.8	6개
근생용지	소계	105,733.0	증) 16	105,749.0	13.0	–
	상업업무	105,733.0	증) 16	105,749.0	13.0	신이문 · 이문 · 회기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시설용지	소 계	266,029.7	감) 16	266,013.7	31.5	–
	도 로	134,331.2	–	134,331.2	16.6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철 도	44,159.5	–	44,159.5	5.3	–
	공 원	33,552.0	–	33,552.0	4.1	–
	녹 지	29,611.0	–	29,611.0	2.5	연결녹지, 철도변 완충녹지
	학 교	8,000.0	–	8,000.0	1.0	초등학교 1개교
	복합커뮤니티센터	7,780.0	–	7,780.0	0.9	4개소
	공공청사 등	5,206.0	–	5,206.0	0.8	공공청사, 광장, 공공공지, 방수설비
	주 차 장	3,390.0	감) 16	3,374.0	0.4	지하주차장2개소(3,175㎡) 중 1개소 중복결정면적(2,000㎡) 제외

※ 변경사유 : 1. 이문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2 지적경계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면적변경)
2. 이문 · 휘경재정비촉진지구(서고시 제2019-163호) 내용 오기 수정 고시(파란색)

2) 인구 · 주택수용계획 : (변경없음, 생략)
3) 기반시설 설치계획(문화·복지시설 등) : (변경없음, 생략)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생략)
5) 교통계획 : (변경없음, 생략)
6) 경관계획 : (변경없음, 생략)
7)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변경없음, 생략)

8)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비 고
촉진지구			830,453.0	-	830,453.0	100.0	
촉진구역			571,708.0	-	571,708.0	68.8	
이문1구역			144,964.0	-	144,964.0	17.5	
이문3구역			154,618.0	-	154,618.0	18.6	결합개발 구역
이문3-1구역			133,505.0	-	133,505.0	16.1	구역지정 요건완화, 역세권
이문3-2구역			21,241.0	-	21,241.0	2.6	구릉지
이문4구역			151,388.0	-	151,388.0	18.2	
휘경1구역			12,915.0	-	12,915.0	1.6	정비구역 기 지정
휘경2구역			43,329.0	-	43,329.0	5.2	
휘경3구역			64,366.0	-	64,366.0	7.8	
존치지역			258,745.0	-	258,745.0	31.2	
지구단위 계획구역	소 계		185,567.0	-	185,567.0	22.3	
	①		29,567.0	-	29,567.0	3.6	신이문지구단위계획 (촉진지구 내)
	②		67,135.0	-	67,135.0	8.1	이문지구단위계획
	③		88,865.0	-	88,865.0	10.7	회기지구단위계획 (촉진지구 내)
존치시설 및 건축물	소 계		73,178.0	-	73,178.0	8.8	
	④		0.0	-	0.0	0.0	이문초등학교
	⑤		4,877.0	-	4,877.0	0.6	웰츠타워(주상복합) 등
	⑥		12,993.0	-	12,993.0	1.6	이문로
	⑦		11,776.0	-	11,776.0	1.4	중앙하이츠 아파트
	⑧		17,038.0	-	17,038.0	2.1	경원선
	⑨		8,446.0	-	8,446.0	1.0	삼익아파트
	⑩		1,319.0	-	1,319.0	0.2	빗물펌프장(방수설비)
	⑪		7,249.0	-	7,249.0	0.9	중앙선
	⑫		6,284.0	-	6,284.0	0.8	기타 존치건축물
	⑬		3,196.0	-	3,196.0	0.4	이문동 교회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변경없음, 생략)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변경없음, 생략)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변경없음, 생략)

12) 임대주택 건설 등의 주거대책 : (변경없음, 생략)

13)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생략)

14) 기타계획(에너지순환, 방재, 특성화계획) : (변경없음, 생략)

15)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생략)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생략)

17) 구역별 재정비촉진계획 : (변경없음, 생략)

18)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조서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생략)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생략)

다)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생략)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생략)

마)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① 도로 : (변경 없음, 생략)

②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②	주차장	이문동306-14일원	1,276	-	1,276	1995.2.24 (동고-8)	
변경	③	주차장	휘경동165-15일원	692	감) 16	676	2016.09.08 (서고 2016-285)	

■ 주차장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③	주차장	• 면적감소(감 16) : 692㎡ → 676㎡	• 지적경계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면적변경)

③ 철도 : (변경없음, 생략)

(2) 공간시설 : (변경없음, 생략)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생략)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생략)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생략)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①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특별계획구역 2	휘경동 161-37번지 일대	5,299.6	감) 16	5,283.6	•지적분할측량 결과반영

■ 특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특별계획구역 2	• 면적감소(감 16) : 5,299.6㎡ → 5,283.6㎡	• 지적경계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면적변경)

②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 특별계획구역2 (기정)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동대문구 휘경동 161-37번지 일대	
면 적			• 5,299.6㎡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용도지구			-	
공공시설계획			• 구역면적의 15%이상 설치(기반시설 순부담비율 기준) • 공공시설 조성 후 기부채납(지침도 참조)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 도	불허용도	• 불허용도 분류표상의 1	
		권장용도	• 권장용도 분류표상의 A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기준 용적률(%)	• 300% 이하	
		허용 용적률(%)	• 360% 이하	
		상한 용적률(%)	• 400% 이하 • 기부채납 시 완화 • 산정방식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 α란 공공시설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건축물 높이	최고높이	• 70m 이하	
		최고높이 완화	• 기부채납시 완화 • 산정방식 : 최고높이×[1+(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하기 전의 대지면적)] - 단, 완화된 최고높이는 대지별로 지정된 최고높이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배치	건축한계선		• 외대역동로변 : 2m • 휘경로변 : 3m • 이면부 : 2m	
건축물 형태			• 고층부 탑상형 권장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에서 차량출입불허	
기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공공공지		• 간선변 및 이면부의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	
	쌈지형 공지		• 지정된 위치에 우선 조성(서울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지정대상일 경우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 적용)	
	소공원/도로		• 지침도에서 지정한 위치에 조성	

■ 특별계획구역2 (변경)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동대문구 휘경동 161-37번지 일대	
면 적			• 5,283.6㎡ (감 16)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용도지구			-	
공공시설계획			• 구역면적의 15%이상 설치(기반시설 순부담비율 기준) • 공공시설 조성 후 기부채납(지침도 참조)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 도	불허용도	• 불허용도 분류표상의 1	
		권장용도	• 권장용도 분류표상의 A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기준 용적률(%)	• 300% 이하	
		허용 용적률(%)	• 360% 이하	
		상한 용적률(%)	• 400% 이하 • 기부채납 시 완화 • 산정방식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 α란 공공시설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건축물 높이	최고높이	• 70m 이하	
		최고높이 완화	• 기부채납시 완화 • 산정방식 : 최고높이×[1+(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하기 전의 대지면적)] - 단, 완화된 최고높이는 대지별로 지정된 최고높이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배치	건축한계선		• 외대역동로변 : 2m • 휘경로변 : 3m • 이면부 : 2m	
건축물 형태			• 고층부 탑상형 권장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에서 차량출입불허	
기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공공공지		• 간선변 및 이면부의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	
	쌈지형 공지		• 지정된 위치에 우선 조성(서울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지정대상일 경우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 적용)	
	소공원/도로		• 지침도에서 지정한 위치에 조성	

마)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권한 : 구청장) : 변경 없음

21)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없음, 생략)

5. 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사항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계획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	이문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동대문구 휘경동 161-37번지 일대	5,299.6	서고 2016-285 (2016.09.08.)
변경	-	이문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동대문구 휘경동 161-37번지 일대	5,283.6	감 16

■ 특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특별계획구역 2	• 면적감소(감 16) : 5,299.6㎡ → 5,283.6㎡	• 지적경계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면적변경)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① 용도지역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5,299.6	감 16	5,283.6	100.0	-
주거지역	소 계	5,299.6	감 16	5,283.6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38	-	238	4.5	-
	준주거지역	5,061.6	감 16	5,045.6	95.5	-

※ 이문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면적 변경 없음(근생용지, 증 16)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① 도로 : (변경 없음, 생략)

②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②	주차장	이문동306-14일원	1,276	-	1,276	1995.2.24 (동고-8)	
변경	③	주차장	휘경동165-15일원	692	감) 16	676	2016.09.08 (서고 2016-285)	

■ 주차장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③	주차장	• 면적감소(감 16) : 692㎡ → 676㎡	• 지적경계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면적변경)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①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획 지					구성비 (%)	비고
	위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299.6	감) 16	5,283.6	100.0	
특별 계획 구역 2	A	동대문구 휘경동 161-37외 45필지	4,056.6	-	4,056.6	76.8	대지
	1	휘경동165-15외 10필지	692.0	감) 16	676.0	12.8	주차장
	2	휘경동 161-11외 5필지	466.0	-	466.0	8.8	도로
	3	휘경동146-67외 2필지	78.0	-	78.0	1.5	도로
	4	휘경동161-29외 2필지	7.0		7.0	0.1	도로

※ 면적은 전체편입 및 부분편입(cad구적)면적을 합산한 면적임

※ 변경사유 : 지적경계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면적변경)

② 획지 세부내역

■ 기정

도면 번호	획지 번호	위치	공부상면적 (㎡)	편입 면적(㎡)			비고 (소유권)
				소계	획지	공공시설	
특별계획 구역2		휘경동 154-20 대지	373	373	321	52	
		휘경동 154-22 대지	147	147	118.3	28.7	
		휘경동 154-23 대지	128	128	92.7	35.3	
		휘경동 154-52 도로	53	53	8.2	44.8	
		휘경동 161-1 도로	179	3	-	3	동대문구
		휘경동 161-2 도로	155	155	155	-	
		휘경동 161-3 대지	106	106	106	-	
		휘경동 161-6 대지	112	112	112	-	
		휘경동 161-7 대지	79	79	79	-	
		휘경동 161-8 대지	129	129	129	-	
		휘경동 161-10 대지	1,080	56.6	56.6	-	
		휘경동 161-11 도로	281	281	-	281	
		휘경동 161-28 대지	93	93	93	-	
		휘경동 161-31 대지	86	86	86	-	
		휘경동 161-37 대지	194	194	194	-	
		휘경동 161-38 대지	112	112	112	-	
		휘경동 161-39 대지	56	56	56	-	
		휘경동 161-40 대지	83	83	82.5	0.5	
		휘경동 161-42 대지	86	86	80	6	
		휘경동 161-43 대지	83	83	79.3	3.7	
		휘경동 161-44 대지	76	76	76	-	
		휘경동 161-45 대지	86	86	86	-	
		휘경동 161-46 대지	93	93	93	-	
		휘경동 161-47 대지	96	96	96	-	
		휘경동 161-48 대지	46	46	46	-	
		휘경동 161-49 대지	60	60	60	-	
		휘경동 161-50 대지	83	83	83	-	
		휘경동 161-51 대지	69	69	69	-	
		휘경동 161-52 대지	83	83	83	-	
		휘경동 161-53 대지	89	89	89	-	
		휘경동 161-54 대지	89	89	89	-	
		휘경동 161-55 대지	83	83	83	-	
		휘경동 161-56 대지	89	89	89	-	
		휘경동 161-57 대지	112	112	112	-	
		휘경동 161-58 대지	83	83	83	-	
		휘경동 161-59 대지	33	33	33	-	
		휘경동 161-61 대지	26	26	26	-	
		소계	4,911.0	3,711.6	3,256.6	455.0	

도면 번호	획지 번호	위치	공부상면적 (㎡)	편입 면적(㎡)			비고 (소유권)
				소계	획지	공공시설	
특별계획 구역2		휘경동 161-62 대지	83	83	83	-	
		휘경동 162-1 대지	109	109	109		
		휘경동 162-2 대지	112	112	112	-	
		휘경동 163-12 대지	79	79	79	-	
		휘경동 163-13 대지	103	103	103	-	
		휘경동 163-23 대지	3	3	3	-	
		휘경동 165-9 대지	26	25	-	25	
		휘경동 165-12 대지	82	82	-	82	
		휘경동 165-13 대지	79	79	-	79	
		휘경동 165-14 대지	83	83	-	83	
		휘경동 165-15 대지	82	82	-	82	
		휘경동 165-18 대지	40	40	-	40	
		휘경동 165-19 대지	96	96	-	96	
		휘경동 166-4 도로	26	26	-	26	
		휘경동 166-6 대지	50	50	-	50	
		휘경동 166-7 대지	60	60	-	60	
		휘경동 166-8 대지	69	69	-	69	
		휘경동 146-67 도로	435	336	248.5	87.5	서울특별시
		휘경동 154-57 대지	5	5	-	5	동대문구
		휘경동 161-29 도로	76	57	55	2	서울특별시
		휘경동 161-67 도로	78	9	7.5	1.5	동대문구
		소 계	1,776.0	1,588.0	800.0	788.0	
총 계			6,687.0	5,299.6	4,056.6	1,243.0	

※ cad구적 면적으로, 획지면적은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확정

■ 변경

도면 번호	획지 번호	위치	공부상면적 (㎡)	편입 면적(㎡)			비고 (소유권)
				소계	획지	공공시설	
특별계획 구역2		휘경동 154-20 대지	373	373	321	52	
		휘경동 154-22 대지	147	147	118.3	28.7	
		휘경동 154-23 대지	128	128	92.7	35.3	
		휘경동 154-52 도로	53	53	8.2	44.8	
		휘경동 161-1 도로	179	3	-	3	동대문구
		휘경동 161-2 도로	155	155	155	-	
		휘경동 161-3 대지	106	106	106	-	
		휘경동 161-6 대지	112	112	112	-	
		휘경동 161-7 대지	79	79	79	-	
		휘경동 161-8 대지	129	129	129	-	
		휘경동 161-10 대지	1,080	56.6	56.6	-	
		휘경동 161-11 도로	281	281	-	281	
		휘경동 161-28 대지	93	93	93	-	
		휘경동 161-31 대지	86	86	86	-	
		휘경동 161-37 대지	194	194	194	-	
		휘경동 161-38 대지	112	112	112	-	
		휘경동 161-39 대지	56	56	56	-	
		휘경동 161-40 대지	83	83	82.5	0.5	
		휘경동 161-42 대지	86	86	80	6	
		휘경동 161-43 대지	83	83	79.3	3.7	
		휘경동 161-44 대지	76	76	76	-	
		휘경동 161-45 대지	86	86	86	-	
		휘경동 161-46 대지	93	93	93	-	
		휘경동 161-47 대지	96	96	96	-	
		휘경동 161-48 대지	46	46	46	-	
		휘경동 161-49 대지	60	60	60	-	
		휘경동 161-50 대지	83	83	83	-	
		휘경동 161-51 대지	69	69	69	-	
		휘경동 161-52 대지	83	83	83	-	
		휘경동 161-53 대지	89	89	89	-	
		휘경동 161-54 대지	89	89	89	-	
		휘경동 161-55 대지	83	83	83	-	
		휘경동 161-56 대지	89	89	89	-	
		휘경동 161-57 대지	112	112	112	-	
		휘경동 161-58 대지	83	83	83	-	
		휘경동 161-59 대지	33	33	33	-	
		휘경동 161-61 대지	26	26	26	-	
		소 계	4,911.0	3,711.6	3,256.6	455.0	

도면 번호	획지 번호	위치	공부상면적 (㎡)	편입 면적(㎡) 소계	획지	공공시설	비고 (소유권)
특별계획 구역2		휘경동 161-62 대지	83	83	83	-	
		휘경동 162-1 대지	109	109	109	-	
		휘경동 162-2 대지	112	112	112	-	
		휘경동 163-12 대지	79	79	79	-	
		휘경동 163-13 대지	103	103	103	-	
		휘경동 163-23 대지	3	3	3	-	
		휘경동 165-9 대지	26	9	-	9	구적오차 정정
		휘경동 165-12 대지	82	82	-	82	
		휘경동 165-13 대지	79	79	-	79	
		휘경동 165-14 대지	83	83	-	83	
		휘경동 165-15 대지	82	82	-	82	
		휘경동 165-18 대지	40	40	-	40	
		휘경동 165-19 대지	96	96	-	96	
		휘경동 166-4 도로	26	26	-	26	
		휘경동 166-6 대지	50	50	-	50	
		휘경동 166-7 대지	60	60	-	60	
		휘경동 166-8 대지	69	69	-	69	
		휘경동 146-67 도로	435	336	248.5	87.5	서울특별시
		휘경동 154-57 대지	5	5	-	5	동대문구
		휘경동 161-29 도로	76	57	55	2	서울특별시
		휘경동 161-67 도로	78	9	7.5	1.5	동대문구
		소 계	1,776.0	1,572.0	800.0	772.0	
총 계			6,687.0	5,283.6	4,056.6	1,227.0	

※ cad구적 면적으로, 획지면적은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확정

※ 변경사유 : 지적경계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면적변경)

(2)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생략)

(3) 공공시설 부지제공(기부채납)에 관한 계획

①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 기정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공공시설 조 성 및 제 공	• 조성후 기부채납 • 순부담 15%이상	• 공공시설(도로 및 주차장)면적 : 1,243㎡ 조성 후 기부채납 (구역면적 대비 23.5%) • 순부담비율은 구역 내 국·공유지(서울시, 동대문구) 406㎡를 제외한 837㎡로 산정(구역면적 대비 15.8%)	

■ 변경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공공시설 조 성 및 제 공	• 조성후 기부채납 • 순부담 15%이상	• 공공시설(도로 및 주차장)면적 : 1,227㎡ 조성 후 기부채납 (구역면적 대비 23.2%) • 순부담비율은 구역 내 국·공유지(서울시, 동대문구) 406㎡를 제외한 821㎡로 산정(구역면적 대비 15.5%)	

※ 변경사유 : 지적경계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면적변경)

라)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기정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위 치			• 동대문구 휘경동 161-37번지 일대	• 동대문구 휘경동 161-37번지 일대	
면 적			• 5,299.6㎡	• 5,299.6㎡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용도지구			-	-	
공공시설계획			• 구역면적의 15%이상 설치(기반시설 순부담 비율 기준) • 공공시설 조성 후 기부채납(지침도 참조)	• 기반시설 총 비율 : 23.5% • 순부담 : 15.8%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 도	불허용도	• 불허용도 분류표상의 1	• 불허용도 분류표상의 1	
		권장용도	• 권장용도 분류표상의 A	• 권장용도 분류표상의 A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기준 용적률(%)	• 300% 이하	• 300%	
		허용 용적률(%)	• 360% 이하	• 326.41%	
		상한 용적률(%)	• 400% 이하 • 기부채납 시 완화 • 산정방식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 α란 공공시설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399.87% (도로 및 주차장 기부채납)	
	건축물 높이	최고높이	• 70m 이하	• 70m 이하 (65.3m)	
		최고높이 완화	• 기부채납 시 완화 • 산정방식 최고높이×[1+(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하기 전의 대지면적)] - 단, 완화된 최고높이는 대지별로 지정된 최고높이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	
배치	건축한계선		• 외대역동로변 : 2m • 휘경로변 : 3m • 이면부 : 2m	• 외대역동로변 : 2m • 휘경로변 : 3m • 이면부 : 2m	
건축물 형태			• 고층부 탑상형 권장	• 고층부 탑상형, 판상형 혼합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에서 차량출입불허	• 간선변에서 차량출입불허(이면부 출입)	
기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공공공지		• 간선변 및 이면부의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	• 간선변 및 이면부의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보도형, 차도형 혼합)	
	쌈지형 공지		• 지정된 위치에 우선 조성(서울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지정대상일 경우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 적용)	-	
	주차장/도로		• 지침도에서 지정한 위치에 조성	• 지침도에서 지정한 위치에 조성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시 계획지침에 따른 상한용적률 400%이하, 최고높이 70m이하를 기준으로 조정가능

■ 변경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위 치			• 동대문구 휘경동 161-37번지 일대	• 동대문구 휘경동 161-37번지 일대	
면 적			• 5,299.6㎡	• 5,283.6㎡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용도지구			-	-	
공공시설계획			• 구역면적의 15%이상 설치(기반시설 순부담 비율 기준) • 공공시설 조성 후 기부채납(지침도 참조)	• 기반시설 총 비율 : 23.2% • 순부담 : 15.5%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 도	불허용도	• 불허용도 분류표상의 1	• 불허용도 분류표상의 1	
		권장용도	• 권장용도 분류표상의 A	• 권장용도 분류표상의 A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기준 용적률(%)	• 300% 이하	• 300%	
		허용 용적률(%)	• 360% 이하	• 326.41%	
		상한 용적률(%)	• 400% 이하 • 기부채납시 완화 • 산정방식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 α란 공공시설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399.87% (도로 및 주차장 기부채납)	
	건축물 높이	최고높이	• 70m 이하	• 70m 이하 (65.3m)	
		최고높이 완화	• 기부채납 시 완화 • 산정방식 최고높이×[1+(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하기 전의 대지면적)] - 단, 완화된 최고높이는 대지별로 지정된 최고높이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	
배치	건축한계선		• 외대역동로변 : 2m • 휘경로변 : 3m • 이면부 : 2m	• 외대역동로변 : 2m • 휘경로변 : 3m • 이면부 : 2m	
건축물 형태			• 고층부 탑상형 권장	• 고층부 탑상형, 판상형 혼합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에서 차량출입불허	• 간선변에서 차량출입불허(이면부 출입)	
기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공공공지		• 간선변 및 이면부의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	• 간선변 및 이면부의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보도형, 차도형 혼합)	
	쌈지형 공지		• 지정된 위치에 우선 조성(서울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지정대상일 경우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 적용)	-	
	주차장/도로		• 지침도에서 지정한 위치에 조성	• 지침도에서 지정한 위치에 조성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시 계획지침에 따른 상한용적률 400%이하, 최고높이 70m이하를 기준으로 조정가능

※ 변경사유 : 지적경계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면적변경)

6. 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2 외 기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없음

7.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29) 및 동대문구 건축과(☎ 02-2127-4965)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 (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도면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 용도지역 · 용도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42호

서울특별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 금연문화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취지
신설 도시공원(서울식물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정대상 및 범위
- 서울식물원 전체(504,012㎡, 양천교 하부 포함)
  ※ 강서구 마곡동로 161 일대
- 금연구역 경계[적색 실선 및 점선(양천교 하부)]와 주요 시설

공간명	연번	시설
열린숲 (175,537㎡)	1	진입광장
	2	방문자센터
	3	초지원
	4	둘레숲, 숲문화원
	5	LG아트센터
호수원 (126,000㎡)	6	물놀이터
	7	수변가로
	8	호수보행교
	9	물가가로수길
	10	가드닝문화체험원
습지원 (122,475㎡)	11	저류지
주제원 (80,000㎡)	12	주제정원
	13	온실

3. 지 정 일 : 2019년 7월 25일
 - 계도기간 : 지정일로부터 7월 31일까지
 - 단속시행 : 2019년 8월 1일

4. 과태료 금액 : 10만원

5. 금연구역 단속 등 관리 : 서울식물원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02-2133-7566) 및 서울식물원(☎02-2104-97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43호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372호(2003.11.18.)에 의거 천호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1호(2014.07.31.)에 의거 천호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의제처리)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68호(2014.10.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76호(2014.11.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59호(2015.03.0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321호(2015.10.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79호(2016.09.0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45호(2017.04.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36호(2017.07.0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8호(2018.1.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94호(2018.3.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72호(2018.8.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91호(2018.12.0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천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에 의거 천호재정비촉진지구(천호1재정비촉진구역·천호12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없음

명 칭	유형	위 치	면 적(㎡)			지정목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강동구 천호동 362-60번지 일대	409,096.3	-	409,096.3	강동구 천호동일대 기성시가지 재정비 및 활성화, 집창촌과 노후 재래시장 정비 등을 통해 신 주거문화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함

2.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09,096.3	-	409,096.3	100.0
획지	소 계	282,957.0	-	282,957.0	69.2
	공동주택용지	45,662.3	-	45,662.3	11.2
	근린생활시설용지	33,468.8	-	33,468.8	8.2
	주상복합용지	27,510.0	-	27,510.0	6.7
	종교용지	453	-	453	0.1
	존 치	175,862.9	-	175,862.9	43.0
정비기반시설	소 계	126,139.3	-	126,139.3	30.8
	유 수 지	10,626.6	-	10,626.6	2.6
	녹 지	2,306.0	-	2,306.0	0.6
	공공청사	1,406.2	-	1,406.2	0.3
	공 원	33,101.7	-	33,101.7	8.1
	도 로	78,698.8	-	78,698.8	19.2

나. 인구·주택수용계획 : 변경없음 (20,105인 / 8,488세대)

구 분		주 택 수(호)			인 구 수(인)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488	-	8,488	20,105	-	20,105	-
촉진구역	소 계	1,722	-	1,722	4,306	-	4,306	세대당 약2.5인
	40㎡ 이하	0	-	0	-	-	-	
	40㎡~60㎡	767	-	767	1,918	-	1,918	
	60㎡~85㎡	795	-	795	1,988	-	1,988	
	85㎡ 초과	160	-	160	400	-	400	
존치관리구역		6,766	-	6,766	15,799	-	15,799	현황인구 및 세대

다.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	공공청사	-	천호동422-1	1,406.2	-	1,406.2	09.11.26	천호1구역
기정	1	유수지	천호유수지	천호동329	10,626.6	-	10,626.6	75.10.07	-

라.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	기정	14	천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천호동360	26,696.8	-	26,696.8	97.1.15	도로중복결정
	기정	21	천사공원	소공원	천호동363-5	1,617.2	-	1,617.2	72.4.22 09.11.26	천호5구역
	기정	47-1	-	소공원	천호동422-1	3,115.0	-	3,115.0	-	천호1구역
	기정	-	광진공원	어린이공원	천호동338-19	1,672.7	-	1,672.7	-	천호7구역
녹지	기정	4	녹지	연결녹지	천호동423-96	2,306.0	-	2,306.0	13.12.12	천호3구역

마. 교통계획 :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10	25~33	주간선도로	3,000 (456)	풍납동 광로5	암사동 강변	일반도로	올림픽로	2009.11.30. (서고 2009-472)	-
기정	중로	1	406	20~23	보조간선도로	235	천호동 217-134	천호동 550-6	일반도로	구천면로	2001.6.2. (서고 158) 2006.7.27. (서고 2006-264)	구천면로 (천호1구역)
기정	소로	2	16	8	집산도로	549	천호동 367-1	천호동 393-20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399	천호동 357-1	천호동 397-16	일반도로	-	2006.2.8. (서고 2006-49)	천호1 · 2구역
기정	소로	2	44	8	국지도로	150	천호동 337-98	천호동 337-17	일반도로	-	-	천호7구역
기정	중로	2	20	15	집산도로	65	천호동 357-12	천호동 357-1	일반도로	-	2005.10.13. (강고 2005-59)	존치시설
기정	소로	2	17	8	국지도로	237	천호동 392-1	천호동 386-19	일반도로	-	-	천호5구역
기정	중로	3	7	12~15	집산도로	134	천호동 417-57	천호동 423-158	일반도로	-	1969.1.18	천호1구역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45	천호동 373-2	천호동 373-2	일반도로	-	-	천호13구역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71	천호동 377	천호동 377	일반도로	-	-	천호13구역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108	천호동 358-9	천호동 358-3	일반도로	-	-	천호3구역
기정	소로	2	9	8~10	국지도로	119	천호동 373-2	천호동 563-1	일반도로	-	2006.2.8. (서고 2006-49)	천호2구역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214	천호동 361	천호동 362-3	일반도로	-	-	천호11구역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66	천호동 357-1	천호동 373-2	일반도로	-	2006.2.8. (서고 2006-49)	천호2구역
기정	소로	2	18	8	국지도로	200	천호동 391-1	천호동 382-13	일반도로	-	1978.6.1	천호5구역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20	천호동 398-5	천호동 399-50	일반도로	-	-	천호4구역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100	천호동 282-25	천호동 280-15	일반도로	-	1990.11.12	천호6구역

바. 경관계획 : 변경없음

사. 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09,096.3	-	409,096.3	-
재정비 촉진구역		천호1구역	38,508.2	증)1	38,509.2	지적 오류 정정에 따른 면적 정정
		천호2구역	9,986.3	-	9,986.3	-
		천호3구역	23,083.7	-	23,083.7	-
존치 지역	존치 관리 구역	천호4구역	15,503.7	-	15,503.7	-
		천호5구역	50,796.2	-	50,796.2	-
		천호6구역	40,201.3	-	40,201.3	-
		천호7구역	117,313.2	-	117,313.2	-
		천호11구역	10,840.9	-	10,840.9	-
		천호12구역	6,402.2	감)1	6,401.2	지적 오류 정정에 따른 면적 정정
		천호13구역	24,802.7	-	24,802.7	-
		천호14구역	13,980.4	-	13,980.4	-
	존치시설 등		57,677.5	-	57,677.5	올림픽로, 천호공원 등

아.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 변경없음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도서참조

2) 건축물에 관한 계획 : 도서참조

3) 존치관리구역 운영지침 : 도서참조

자. 용도지역·지구계획

1) 용도지역계획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409,096.3	-	409,096.3	-
주거 지역	소 계	395,965.3	-	395,965.3	-
	제1종일반주거지역	49,403.9	-	49,403.9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38,205.4	감)1	138,204.4	지적 오류 정정에 따른 면적 정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106,072.1	-	106,072.1	-
	제3종일반주거지역	74,879.9	-	74,879.9	-
	준주거지역	27,404.0	증)1	27,405.0	지적 오류 정정에 따른 면적 정정
상업 지역	소 계	13,131.0	-	13,131.0	-
	일반상업지역	13,131.0	-	13,131.0	-

2) 촉진구역별 용도지역계획

가) 천호1 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38,508.2	증)1	38,509.2	100.0
주거지역	소 계	31,925.2	-	31,925.2	82.9
	제3종일반주거지역	4,521.2	-	4,521.2	11.7
	준주거지역	27,404.0	증)	27,405.0	71.2
상업지역	소 계	6,583.0	-	6,583.0	17.1
	일반상업지역	6,583.0	-	6,583.0	17.1

※ 변경사유 : 천호동 397-16 지적 오류 정정으로 면적 정정 (171㎡→172㎡)

나) 천호2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사업)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9,986.3	-	9,986.3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9,986.3	-	9,986.3	100.0

다) 천호3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사업)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23,083.7	-	23,083.7	100.0
주거지역	소 계	23,0883.7	-	23,083.7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914.8	-	1,914.8	8.3
	제2종일반주거지역	21,168.9	-	21,168.9	91.7

3) 용도지구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9호(2019.4.18.)로 미관지구 폐지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 고
폐지	-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천호동355~ 332-2	10,934	456	양측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2호 (2009.11)	-

차. 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구 분	구역명		주 된 용 도	건 폐 율	용적률(%)		높이계획	
					기준	최대 (법적상한)	평균층수 /최고층수	최고높이 (m)
재정비 촉진구역	천호1	기정	공동주택, 판매 · 업무	50%이하	350	518	- / 40	135
		변경	공동주택, 판매 · 업무	50%이하	350	519	- / 40	135
	천호2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30%이하	190	300	- / 23	70
	천호3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30%이하	192	250	- / 25	78

카.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 촉진사업별 비용분담계획

구 분		재정비 촉진구역 ①	계획 기반시설 ②	계획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③	기존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④	유상매입 시설 ⑤	순부담면적 (㎡) (②-③-④-⑤)	비 고
총 계	기정	71,128.2	22,562.1	1,296.5	6,704.0	-	14,550.3 (20.32%)	-
	변경	71,129.2	22,563.1	1,296.5	6,704.0	-	14,551.3 (20.46%)	-
천호1재정비촉진구역	기정	38,058.2	15,186.5	-	4,969.2	-	10,217.3 (26.50%)	-
	변경	38,059.2	15,187.5	-	4,969.2	-	10,218.3 (26.50%)	
천호2재정비촉진구역		9,986.3	3,398.7	1,225.1	182.6	-	1,991.0 (19.93%)	-
천호3재정비촉진구역		23,083.7	3,976.9	71.4	1,552.2	-	2,353.3 (10.19%)	-

※ 계획기반시설내 공공시설 설치 환산면적 포함(천호1, 천호3)

2) 기반시설별 재원조달계획

구 분				면 적(㎡)	사업비(백만원)			설치주체 및 비용분담		비 고
					소 계	보상비	공사비	공공(시,구)	민간	
도로	촉진구역	천호1구역	기정	6,477.0	43,139	40,689	2,450	-	●	부지는 해당구역 사업시행자가 부담
			변경	6,478.0						
		천호2구역		3,389.7	27,313	26,263	1,050	-	●	
		천호3구역		423.2	7,339	7,062	277	-	●	
	소로2-16호선			4,195.4	8,809	8,514	295	-	●	천호3구역 부담
	소 계		기정	14,494.3	86,600	82,528	4,072	-	-	-
			변경	14,495.3						
공원녹지	촉진구역	천호1구역		3,115.0	19,136	18,690	446	-	●	부지는 해당구역 사업시행자가 부담
		천호3구역		2,306.0	20,359	19,931	428	-	●	
	소 계			5,421.0	39,495	38,621	874	-	-	-
공공청사	천호1재정비촉진구역			19,100.23	42,727	7,379	35,348	-	●	부지는 해당구역 사업시행자가 부담 (공영주차장 포함)

※ 소로2-16호선은 공공(강동구)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계획 승인전 해당조합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하도록 할 것

※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사업계획 승인전 세부계획 수립에 따라 조정가능

타.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변경없음

구 분	합 계	분 양				임 대				
		소계	60㎡ 이하	60~85㎡	85㎡ 초과	소계	40㎡ 이하	40~50㎡	50~60㎡	60~85㎡
총계	1,722	1,528	573	795	160	194	-	144	50	-
천호1촉진구역	999	882	352	384	146	117	-	99	18	-
천호2촉진구역	188	156	22	124	10	32	-	-	32	-
천호3촉진구역	535	490	199	287	4	45	-	45	-	-

파.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구 분	사업시기	대상지역	비 고
1단계	2005~2022	천호1구역, 천호2구역, 천호3구역	구역별 촉진사업 시행 소로2-16호선 조성
2단계	2009~2022	천호4구역, 천호5구역, 천호6구역, 천호7구역	존치구역 개별사업 추진
기타	2005~2022	기타 존치구역(천호11~14구역)	존치구역 개별사업 추진

※ 단계별 추진계획은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 가능
※ 대규모 철거 및 이주로 인한 전세난이 우려 될 경우 구청장은 전 단계 사업의 입주 시기를 맞추어 다음 단계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기를 조정 할 수 있음

하.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거. 폐기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너. 방재계획 : 변경없음
더. 정보화계획 : 변경없음
러. 에너지순환계획 : 변경없음
머. 특성화계획 : 변경없음
버. 기타계획 : 변경없음

서.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1) 구역별 정비계획 개요

구역명			구역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평균			최고높이	
				기준	계획	법적상한	완화	계획	기준	완화	계획	기준	계획
재정비촉진구역	천호1	기정	38,508.2	50이하	50이하	518이하	518.98	514.98	-	-	-	-	40층(135m)이하
		변경	38,509.2	50이하	50이하	519이하	519.00	516.05	-	-	-	-	40층(135m)이하
	천호2		9,986.3	30이하	30이하	300이하	264.65	299.72	-	-	-	-	23층(70m)이하
	천호3		23,083.7	30이하	30이하	250이하	221.51	248.45	-	-	-	-	25층(78m)이하

2) 구역별 주택규모별 배분계획 : 변경없음

구 분	합 계	분 양				임 대				
		소계	60㎡ 이하	60~85㎡	85㎡ 초과	소계	40㎡ 이하	40~50㎡	50~60㎡	60~85㎡
총계	1,722	1,528	573	795	160	194	-	144	50	-
천호1촉진구역	999	882	352	384	146	117	-	99	18	-
천호2촉진구역	188	156	22	124	10	32	-	-	32	-
천호3촉진구역	535	490	199	287	4	45	-	45	-	-

3) 정비계획

가) 천호1 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촉진사업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천호1구역	천호동 423-200번지 일원	38,508.2	증)1	38,509.2	-

※ 변경사유 : 천호동 397-16 지적 오류 정정으로 면적 정정 (171㎡→172㎡)

(2) 정비계획

①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38,508.2	증) 1	38,509.2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0,998.2	증) 1	10,999.2	28.6	-
	공공청사	1,406.2	-	1,406.2	3.7	-
	도 로	6,477.0	증) 1	6,478.0	16.8	지적 오류 정정에 따른 면적 정정
	공 원	3,115.0	-	3,115.0	8.0	-
택지 (획지)	소 계	27,510.0	-	27,510.0	71.4	-
	획 지 1	27,510.0	-	27,510.0	71.4	-

②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1	406	20	보조간선도로	618 (235)	천호동 217-134	천호동 550-6	일반도로	-	2001. 6. 2.	-
기정	중로	3	7	12~15	집산도로	134 (134)	천호동 417-57	천호동 423-158	일반도로	-	1969. 1.18.	-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399 (285)	천호동 357-1	천호동 397-16	일반도로	-	1969. 1.18.	-

③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변경									
변경	천호1재정비 촉진구역	38,508.2	38,509.2	획지1	27,510.0	천호동 423-200번지일원	126	-	22	104	-	-

㉯ 건축시설계획

결정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연면적(㎡)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층) 높이(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계	38,508.2	-	27,510.0	-	230,515.89	-	50 이하	518 이하	40층이하 135m
	천호1 재정비 촉진구역		획지 1	27,510.0	천호동 423-200번지일원	230,515.89	공동주택, 판매 및 업무시설	50 이하	518 이하	지하5층~지상40층 135m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임대주택의 건설규모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상 - 임대주택 건립 : (당해구역에 건설하는 주택전체 세대수의 17%)x(당해구역에 건설하는 전체 건축물연면적에 대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 비율)로 산정된 비율 이상 · 60㎡ 이하 : 469세대(임대주택 117세대) · 60㎡ 초과 ~ 85㎡이하 : 384세대 · 85㎡ 초과 : 146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획지1(공동주택, 판매 및 업무시설 등)선변 : 3m							
	기타사항		- 획지1과 주차장(공영주차장)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 조성							
변경	계	38,509.2	-	27,510.0	-	229,188.05	-	50 이하	519 이하	40층이하 135m
	천호1 재정비 촉진구역		획지 1	27,510.0	천호동 423-200번지일원	229,188.05	공동주택, 판매 및 업무시설	50 이하	519 이하	지하5층~지상40층 135m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임대주택의 건설규모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상 - 임대주택 건립 : (당해구역에 건설하는 주택전체 세대수의 17%)x(당해구역에 건설하는 전체 건축물연면적에 대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 비율)로 산정된 비율 이상 · 60㎡ 이하 : 469세대(임대주택 117세대) · 60㎡ 초과 ~ 85㎡이하 : 384세대 · 85㎡ 초과 : 146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획지1(공동주택, 판매 및 업무시설 등)선변 : 3m							
	기타사항		- 획지1과 주차장(공영주차장)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 조성							

주 1)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시 확정되는 관련법규상의 세부건축계획(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주 2) 획지1은 성인전용시설(성인PC방 사행성게임장, 전화방, 성인용품점 등)을 불허함.

주 3) 보행로와 접한 판매시설 저층부는 3m이상 폭원의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공공보행로를 확보함.

주 4) 필로티부분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의 도입을 권장함.

※ 건축선 후퇴부 전면공지는 보도형으로 조성(단, 소로3-8호선변 공지 중 폭1~2m는 차도로 조성 후 도로관리청(강동구)이 지상권 설정)

④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⑤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⑥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구분	가구		획지			비고
	명칭	면적(㎡)	구분	위치	면적(㎡)	
기정	천호1 재정비촉진구역	27,510.0	획지	천호동 423-200번지 일원	27,510.0	주택용지

⑦ 임대주택의 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연면적(㎡)	세대규모(전용)				비고
					계	60㎡ 이하	60~85㎡	85㎡ 초과	
기정	1구역 (획지1)	별도의 획지로 구분하지 않음	별도의 동으로 구분하지 않음	계획 : 7,911.72㎡ (부대복리시설 면적제외)	117	117	-	-	법정 : 114세대
변경	1구역 (획지1)	별도의 획지로 구분하지 않음	별도의 동으로 구분하지 않음	계획 : 7,934.87㎡ (부대복리시설 면적제외)	117	117	-	-	법정 : 114세대

나) 천호2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건축사업) : 변경없음

다) 천호3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사업) : 변경없음

어.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409,096.3	-	409,096.3	-
주거지역	소 계	395,965.3	-	395,965.3	-
	제1종일반주거지역	49,403.9	-	49,403.9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38,205.4	감)1	138,204.4	지적 오류 정정에 따른 면적 정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106,072.1	-	106,072.1	-
	제3종일반주거지역	74,879.9	-	74,879.9	-
	준주거지역	27,404.0	증)1	27,405.0	지적 오류 정정에 따른 면적 정정
상업지역	소 계	13,131.0	-	13,131.0	-
	일반상업지역	13,131.0	-	13,131.0	-

2) 용도지구 결정조서(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9호(2019.4.18.)로 미관지구 폐지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 고
폐지	-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천호동355~332-2	10,934	456	양측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2호 (2009.11)	-

3)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① 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10	25~33	주간선도로	3,000 (456)	풍납동 광로5	암사동 강변	일반도로	올림픽로	2009.11.30. (서고 2009-472)	-
기정	중로	1	406	20~23	보조간선도로	235	천호동 217-134	천호동 550-6	일반도로	구천면로	2001.6.2. (서고 158) 2006.7.27. (서고 2006-264)	구천면로 (천호1구역)
기정	소로	2	16	8	집산도로	549	천호동 367-1	천호동 393-20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399	천호동 357-1	천호동 397-16	일반도로	-	2006.2.8. (서고 2006-49)	천호1 · 2구역
기정	소로	2	44	8	국지도로	150	천호동 337-98	천호동 337-17	일반도로	-	-	천호7구역
기정	중로	2	20	15	집산도로	65	천호동 357-12	천호동 357-1	일반도로	-	2005.10.13. (강고 2005-59)	존치시설
기정	소로	2	17	8	국지도로	237	천호동 392-1	천호동 386-19	일반도로	-	-	천호5구역
기정	중로	3	7	12~15	집산도로	134	천호동 417-57	천호동 423-158	일반도로	-	1969.1.18	천호1구역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45	천호동 373-2	천호동 373-2	일반도로	-	-	천호13구역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71	천호동 377	천호동 377	일반도로	-	-	천호13구역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108	천호동 358-9	천호동 358-3	일반도로	-	-	천호3구역
기정	소로	2	9	8~10	국지도로	119	천호동 373-2	천호동 563-1	일반도로	-	2006.2.8. (서고 2006-49)	천호2구역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214	천호동 361	천호동 362-3	일반도로	-	-	천호11구역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66	천호동 357-1	천호동 373-2	일반도로	-	2006.2.8. (서고 2006-49)	천호2구역
기정	소로	2	18	8	국지도로	200	천호동 391-1	천호동 382-13	일반도로	-	1978.6.1	천호5구역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20	천호동 398-5	천호동 399-50	일반도로	-	-	천호4구역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100	천호동 282-25	천호동 280-15	일반도로	-	1990.11.12	천호6구역

② 주차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천호동329	7,004.0	-	7,004.0	-	천호7구역
기정	2	주차장	천호동422-1	4,521.2	-	4,521.2	-	천호1구역

나) 공간시설

① 공원·녹지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	기정	14	천호근린공원	근린공원	천호동360	26,696.8	-	26,696.8	97.1.15	도로중복결정
	기정	21	천사공원	소공원	천호동363-5	1,617.2	-	1,617.2	72.4.22 09.11.26	천호5구역
	기정	47-1	-	소공원	천호동422-1	3,115.0	-	3,115.0	-	천호1구역
	기정	-	광진공원	어린이공원	천호동338-19	1,672.7	-	1,672.7	16.09.08	천호7구역
녹지	기정	4	녹지	연결녹지	천호동423-96	2,306.0	-	2,306.0	13.12.12	천호3구역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① 공공청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	공공청사	-	천호동422-1	1,406.2	-	1,406.2	09.11.26	천호1구역

라) 방재시설

① 유수지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유수지	천호유수지	천호동329	10,626.6	-	10,626.6	75.10.7	일부 주차장 중복결정

3. 관계도서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22) 및 강동구 도시계획과(☎02)3425-6053)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붙임] 천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

[천호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토지이용계획도] (변경없음)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기정)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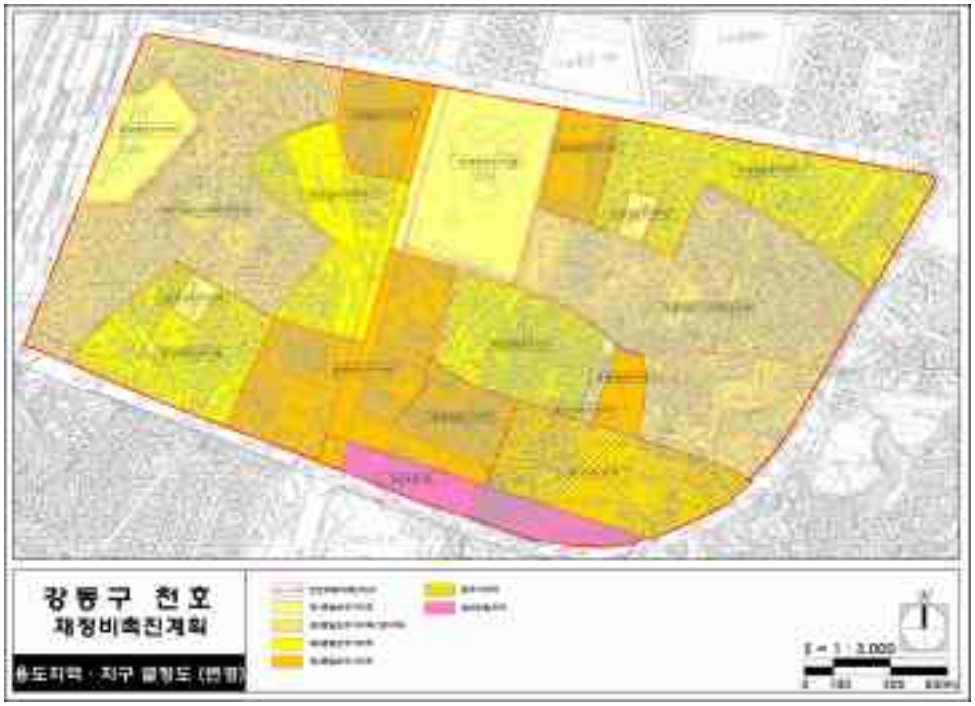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없음)

[천호1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44호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 본 대상지는 역사문화환경보전 사유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3호)되어 구역 내 풍부한 역사문화자원 보전과 더불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생으로 전환하여 지역여건 및 주변지역 현황을 고려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019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나.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 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규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	증) 30,276.3	30,276.3	-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0,276.3	-	30,276.3	100.0	
정비 기반 시설 등	소 계		4,463.8	증)872.5	5,336.3	17.6	
	도로	도시계획시설	-	증)1,496.1	1,496.1	4.9	공원(525㎡)중복결정
		현황도로	2,512.2	감)623.6	1,888.6	6.2	지목상 도로부지
	공원		1,951.6	-	1,951.6	6.5	도시자연공원
주택용지 (개별건축)			25,812.5	감)872.5	24,940.0	82.4	임야 164.4㎡ 포함

※ 주차장, 공지, 공동이용시설 등은 추후 부지매입에 따라 추가 설치 가능
※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은 변경될 수 있음
※ 도로 조성시 일부 선형 및 폭원 변경 가능

2)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0,276.3	-	30,276.3	100.0	
주거지역	소계	29,400.1	-	29,400.1	97.1	
	제1종일반주거지역	28,602.4	-	28,602.4	94.5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797.7	-	797.7	2.6	
녹지지역	소계	876.2	-	876.2	2.9	
	자연녹지지역	876.2	-	876.2	2.9	

※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은 변경될 수 있음

(2)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경관지구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경관지구 (인왕지구)	자연경관지구	종로구, 삼청동, 세종로동, 옥인동, 누상동, 사직동, 청운동 일대	751,233.7 (27,822.5)	건설부고시 제235호 (1977.12.3.)	-

※ ( )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사항임

나) 고도지구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청운동, 신교동, 궁정동, 옥인동, 통인동, 누상동, 누하동, 체부동, 필운동 일대	20m이하	415,800.0 (494.1)	서고77-139 (1977.5.9.)	-

※ ( )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사항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334	12	보조간선 도로	580	신교동	옥인동	일반 도로	총고722 (`36.12.26)	-
신설	소로	3	(1)	4	국지 도로	279	옥인동 47-357	옥인동 47-512	일반 도로	-	공원(120㎡) 중복결정
신설	소로	3	(2)	4	국지 도로	112	신교동 2-139	옥인동 47-509	일반 도로	-	공원(405㎡) 중복결정

※ ( )는 노선번호 미부여에 따라 구분편의를 위해 임시번호를 부여
※ 도로의 폭원 및 연장은 추후 측량 성과에 따름
※ 도로 조성시 일부 선형 및 폭원 변경 가능

(2) 공원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원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종로구 옥인동 47-512번지 일원	1,757,377 (1,951.6)	-	1,757,377 (1,951.6)	-	도로(525㎡) 중복결정

※ ( )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사항임
※ 도시계획도로 신설에 따른 공원부지내 일부(525㎡) 도로 중복 결정

(3)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규 모 (㎡)		비 고
			부지면적	연면적	
신설	공동이용시설	-	-	-	-

※ 공동이용시설 부지는 협의를 통해 매수 예정
※ 설치계획(규모, 용도, 시행방법 등)은 부지확보 이후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결정 예정

5)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30,276.3	-	-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155	토지소유자가 자율적으로 개량하는 사항으로 개량방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주택개량 지원계획 (※ 서울시 관련부서의 지원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구분	지원방법	대상건축물	계획내용	비고
신설	주택개량 융자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모든 건축물	주택 개량, 신축비용 융자지원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융자지원제도 적용)	특정무허가 건축물 포함
신설	주택개량 직접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모든 건축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량 직접지원 (건축물 가이드라인 연계,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직접지원제도 적용)	특정무허가 건축물 포함

(3)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구 분	구역명	위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규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	증)30,276.3	30,276.3	☒☒건축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결정시 적용가능 ☒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및 운영' 참조

※ 결정사유 : 구역내 불리한 건축여건으로 개량되지 못하고 노후화된 건축물이 다수 분포,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해, 개량이 필요하나 건축행위가 어려운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유도하고,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6)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계획

(1)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가) 불허용도

구분	적용구역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 고
불허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전체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전층에 대해 적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맹사업'을 통해 개설된 업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의 경우 입지 불허
		☒제1종근린생활시설	☒대피소, 양수장, 정수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물놀이형 시설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위락시설		

(2) 건축물 배치, 형태 및 색채 등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의무	권장
건축물의 방향성	구역 전체	· 건축물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도로에 건축물의 주된 벽면 및 출입구가 접하여 전면도로와 건축물의 방향이 일치하는 것을 권장 · 도로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에서는 벽면의 방향이 접한 모든 도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 · 2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는 건축물 전면을 도로폭이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		○
저층부 벽면한계선	도면 참조	· 대지경계선에서 각 대지로 저층부 벽면한계선 1m이내 후퇴(건축물높이 3m까지 적용)하고, 후퇴한 공간은 전면공지로 조성 (보행공간 확보)	○	
지붕	구역 전체	· 인왕산과의 조화로운 경관형성 및 저층 단독주택지 경관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주택지의 경관요소로서 경사지붕 조성 권장하며, 지붕의 경사도는 최소구배 3/10에서 최대구배 6/10의 범위내에서 계획 · 지붕의 경사방향은 주변 건축물과 일치되도록 계획하여, 시각적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 평지붕 계획시 옥상녹화 또는 텃밭, 정원 등으로 조성하며, 이용자의 휴게공간 또는 도심지내 생물서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
		· 건축 시 지붕 위에 물탱크, 실외기 등 이와 유사항 건축물의 설비시설을 설치한 경우 외벽의 재료와 어울리는 재료로 차폐시설(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단, 지붕에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태양열 등)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태양광 설치시 지붕 구배와 동일하게 설치) · 과도한 반사성 재료 및 원색도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권장색채 사용 범위를 참고하여 사용하거나 재료 고유의 색채를 유지	○	
외벽	구역 전체	· 건축물의 외장재는 인왕산과의 조화를 위해 도심속 전원마을로서 가능한 벽돌, 목재, 석재 등 조화로운 자연재료의 사용을 권장		○
		· 건축물의 외벽 주재료로 다음 재료의 사용을 제한 – 금속, 타일, 반사유리 등의 번쩍거리거나 반사성 재료 – 원색계열의 마감재료 및 도료 – 지나친 토속주의적 재료(통나무, 전면황토벽, 초가 등) 및 국적불명의 이국적 경향 재료	○	
색채	구역 전체	· 건축물의 주요 색채로 형광색 및 원색계열 사용을 금하고 다음 각 호의 권장색채사용 범위를 참고하여 무채색계열 색상과 브라운계열의 색상을 사용 – 원색계열은 한국표준산업규격(KS)에서 채용되고 있는 먼셀표색계에서 분류한 10원색을 기준으로 설정 – 건축물의 면적 중 가장 적은(일반적으로 10% 이내)면적을 차지하는 강조색의 경우, 자극적인 원색의 성격이 강하므로 사용면적을 10% 이내로 제한하며 포인트로 느껴지게 적용 – 권장색채 사용범위를 참고하여 동일조화, 유사조화, 무채색조화를 통해서 역사적 건축물 및 주변 건축물과 어울리는 색채계획을 적용	○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의무	권장
담장	구역 전체	· 가급적 전면담장은 설치않도록 한다. 단, 부득이하게 담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최대높이는 1.3m이하(상부투시형 1.5m)로 설치하며 친화적인 가로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 옹벽은 가급적 자연석 쌓기로 조성하여 덩굴성 식물, 지피식물, 조화류 등의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성 · 높이 2m이상 옹벽은 다단식재기법을 적용하여 계획하고 1단 높이는 1m이하, 식재 폭은 0.5m이상 확보 계획하여 가로경관을 개선 및 보행자의 위압감을 해소		○
		· 지형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가로변에 면하여 옹벽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높이를 최소화하여 설치하며, 그 외부를 콘크리트로 마감하는 것을 금한다	○	
건축물의 부착시설물	구역 전체	· 가스배관, 전기계량기, 에어컨실외기 등 외부 부착물은 가로변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가급적 담장 내부에 설치한다. 부득이하게 건축물 외부에 노출될 경우, 외벽 재료와 색채를 고려하여 적절한 차폐시설(가림막 등)을 설치하여 경관을 유지 · 부착시설물의 색채는 고명도 고채도의 원색, 형광색 계열의 사용을 금지	○	
		· 문패, 주소판, 우편함 등 정면에 노출되는 부착 시설의 경우 주변과 어울리는 재료와 색채를 사용		○

(3) 대지안의 공지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의무	권장
대지안의 공지	구역 전체	·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은 건축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 및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안의 공지), 서울시 건축조례 제30조(대지안의 공지)의 기준을 따른다.	○	
		· 저층부 벽면한계선 후퇴부분에 연접한 구간은 전면공지와 함께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형성하고, 가급적 대지안의 조경 설치를 제한하는 것을 권장한다.		○
		· 기존건축물 리모델링 시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제6호(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제2항제2호 나목(증축의 규모),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4(적용의 완화)에 따라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건축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민법 제242조에 따른 최소 거리(0.5m)는 유지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	구역 전체	· 전면공지에는 주차장 및 보행장애시설 설치 금지 · 보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선(저층부 벽면한계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되어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 전면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조성한다. · 조성지침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또는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한다.(전면공지 내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등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을 설치할 수 없다) – 포장패턴은 인접지역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포장한다.	○	

(4)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가) 차량출입불허구간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 고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	구역 내 대지	· 차량출입불가 대지 내 차량출입 및 주차출입구 설치 불허	· 구릉지 주거지 경관과 골목길 보호 · 저층 단독(다가구)주택 유도

※ 차량출입불가대지라 함은 정비계획에서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한 대지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으로 인하여 차량출입이 제한된 대지를 말함

※ 제한적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대지는 개발 시 종로구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차량출입을 대지 내 불허하는 경우에 한하여 차량출입불가대지로 인정함

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및 완화계획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 고
주차장설치기준 완화구역	구역 내 대지	·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차량출입불가대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

※ 차량출입불가대지는 종로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

※ 완화내용 :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5) 대지에 관한 계획

가) 자율적 공동개발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 고
자율적 공동개발	구역 전체	· 자율적 공동개발 허용	-

※ 자율적 공동개발은 허용하되, 공동개발의 적정성은 종로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6) 대지와 도로의 관계 완화

구분	완화근거	완화내용	비 고
구역 전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의한 대지는 2m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규정 완화	-

7)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층수	비고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설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주거환경 개선구역	30,276.3	획지계획 없음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계법령에 따름 (불허용도 제외)	60% 이하	관계 법령에 따름	12m이하 3층이하주1)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그 외 용도지역은 관계법령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민 스스로의 건축물 개량계획임							
심의완화 사항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법 적용의 완화 - 건축선 후퇴의무 완화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 완화】 · 관계법령 : 건축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①항제4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조제①항제1호 · 완화내용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의무완화 - 한양도성 역사도심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역사 · 문화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건축선 후퇴 의무 완화							
			【저층부 벽면한계선】 · 대지경계선에서 각 대지로 저층부 벽면한계선 1m이내 후퇴(건축물높이 3m까지 적용)하고, 후퇴한 공간은 전면공지로 조성(보행공간 확보) ※ 해당부분 도면표기 : 결정도의 벽면한계선은 현황을 고려하여 계획된 사항으로 향후 대지경계선이 변동되는 경우(국유지 불하 등)에 따라 적정성을 고려하여 조정됨							

주1) 완화조건 : 저층부 벽면한계선 준수 시,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16m 이하, 4층 이하 가능(필로티구조 층수에 포함)

8)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 해당사항 없음

9)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생활환경)	· 구릉지형의 특성 보전을 위해 원칙적으로 원지형 보존(절 · 성토 지양) · 기존 수목 보전 및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주택태양광시설 설치, 우수활용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권장	
재난방지 (풍수해)	·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 최대한 억제(도로포장 등) · 급경사구간 미끄럼방지포장 등 가로환경 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 · 공중선 정비를 통해 단선, 전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 방지 · 구역 내 붕괴위험 옹벽 정비 및 하수관 정비를 통한 풍수해 대비	

10)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 정비구역 북동측 반경 500m 내에 서울맹학교, 서울농학교 총 2개소 위치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상대보호구역에 일부 속함 (해당면적 : 21,851.9㎡, ※캐드구적 기준)	· 주민 스스로 주택을 정비·개량·보존하는 사업 방식으로 세대수 및 인구증가가 없으며,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 본 정비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에 의거함	

11) 정비구역의 분할·통합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련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1)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3) 세입자 주거대책 : 해당사항 없음

14)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CPTED)

구분	계획내용
자연감시	· 생울타리투시형 담장 또는 담장허물기 등 투시형 구조로 계획(주변시선의 연결확대) · 보행을 통한 자연감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신주통신주 정비 및 노후된 보안등 교체, 철거 등 보안등 개선계획 수립
접근 통제	· 공폐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인접 벽면(담장)과 동일한 면으로 정비
영역성 강화	· 공폐가, 막다른 골목, 계단 등 우범지역에 벽면을 활용한 골목 가림막, 투시형 출입문, 골목·계단 폭을 활용한 간이 편의시설 설치 · 경사로 계단 철판 부분 또는 기둥 손잡이에 야간에도 확인 가능한 조명이나 형광띠 등을 부착하여 야간이용 편의성 담보
활동의 활성화	· 공폐가 출입구를 인접 벽면과 동일한 면으로 정비하고 도색, 형광물질 등을 이용한 방향 및 위치 안내사인, 플랜트 박스(조경), 하향식 조명 설치
유지관리	· 도로, 쌈지공원, 마을입구 등 정비되는 기반시설 및 쓰레기 분리수거, 주차 등 환경관리는 주민공동체운영회(주민협정운영회)에서 주민협정으로 정하여 관리
방범용 CCTV와 비상벨의 설치	·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CCTV 설치 등을 알리는 표지판 디자인(크기, 색상, 문구)의 정비와 위치조정 및 신규 설치 · CCTV, 비상벨, 안전거울 등의 설치 위치가 부적절하거나 쉽게 인식되지 않아 위치 조정 및 시인성과 함께 사용법을 쉽게 인식시키는 디자인 계획
커뮤니티시설 조성	· 공동체 활동 및 방범거점의 역할을 위한 복합거점으로 조성

※ 가로등 및 보안등, CCTV 등은 주민워크샵 등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정비 및 추가 설치 방안 검토, 시행

15)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6)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7)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향후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해 자생적 재생기반 마련

18)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19)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20)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구 분	계 획 내 용
주민공동체 운영회 구성	· 관련법령에 의거 구청장 승인 받아 구성(예정)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 마을규약 작성을 통한 공동체 유지 · 운영 ·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답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계획 수립 (서울시 : 지역재생활동가 파견 등)

21) 구역 내 옛길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구분	보전 및 활용대상	계 획 내 용	비고
옛길 및 기존골목길	필운대로9가길 일부구간	· 마을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 생활가로로 가로유지 및 보전형 환경정비 시행(공공사업 연계)	
역사문화 자원	공통	· 역사유적지를 포함한 대지는 '서울특별시 역사문화경관 계획'에 따른 표석설치 등의 계획 수립	
	역사문화자원	· 전문가 자문을 통해, 토지 매입을 통한 발굴 · 복원 또는 표석 설치 검토 ※ 송석원 각자, 가재우물, 청휘각터, 윤씨가옥 등	
	근대건축물	· 구역내 한옥, 일식주택, 문화주택 등 '서울특별시 역사도심관리지침'에 따른 근대건축물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가치를 판단하고 보전이 필요한 주택에 대하여 필요시 활용계획 수립	

22)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확대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종로구청장	-	-
주택의 보전 · 정비 · 개량	계획수립 이후	토지등소유자	-	-

2.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고시 관련된 자세한 세부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시행지침 포함) 참고

4.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시청 주거환경개선과(☎2133-7259)와 종로구청 주거재생과(☎2148-2613)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

■ 정비구역 결정도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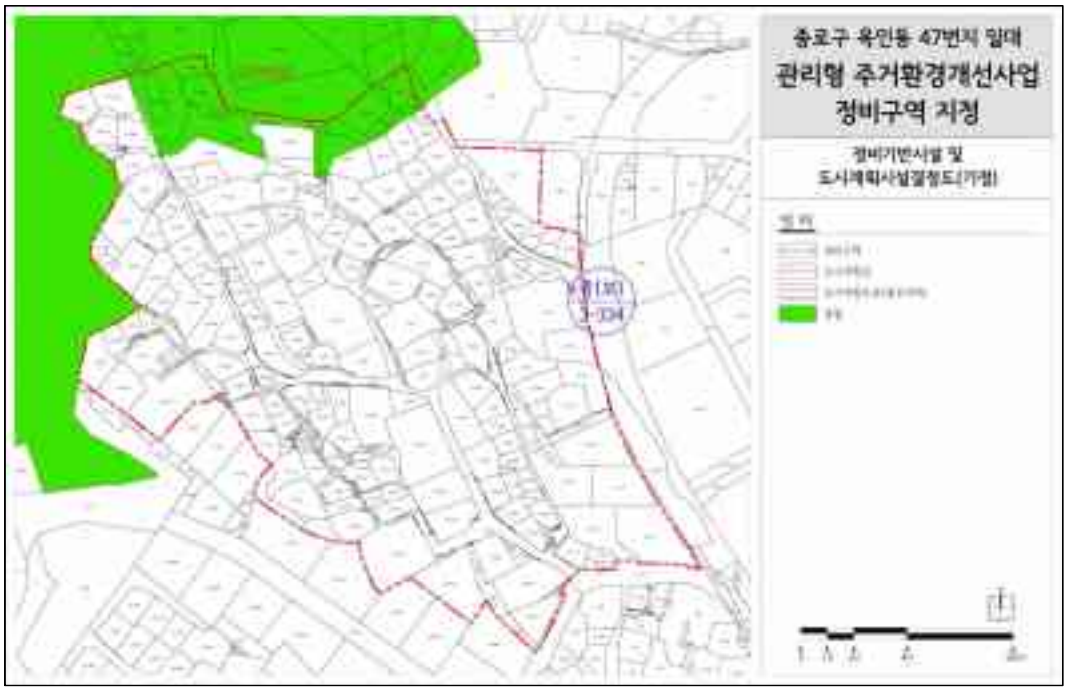

- 변경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결정도

■ 건축물의 건축선 결정도

■ 정비계획 종합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45호

낙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총독부고시 제1940-208호(1940.3.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90호(2019. 6. 13)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종로구 창신동 615-279번지 일원 낙산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낙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한양도성이 위치한 낙산근린공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역사적 장소성을 부각시키고, 지역주민과 다양한 방문객이 체험·휴식할 수 있는 여가공간으로 변경 조성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15-279번지 일대
3. 면　　적 : 199,001.53㎡
4.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 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2133-207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3783-5966~7)

낙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 (종로구 창신동 615-279번지(낙산성곽서길 184)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201,983.0	56,700.60	7.0	1,023.34	1,394.80	117	199,001.53	56,093.80	7.0	1,023.34	1,394.80	164	감 606.8
기반시설	소계	41,522.90	41,522.90					41,110.10	41,110.10					
	도로	29,804.90	29,804.90					29,849.10	29,849.10					증 44.2
	광장	11,718.00	11,718.00					11,261.00	11,261.00					감 457
조 경 시 설		557.00	557.00				32	835.00	835.00				36	증 278
휴 양 시 설		1,236.00	1,236.00	2.00	303.00	303.00	45	1,932.00	1,932.00	2.00	303.00	303.00	88	증 696
운 동 시 설		5,255.00	5,255.00				4	4,087.00	4,087.00				4	감 1,168
교 양 시 설		5,953.60	5,953.60	2.00	182.24	404.85		5,953.60	5,953.60	2.00	182.24	404.85		
편 익 시 설		1,915.10	1,915.10	2.00	284.10	432.95	6	1,915.10	1,915.10	2.00	284.10	432.95	6	
관 리 시 설		261.00	261.00	1.00	254.00	254.00	30	261.00	261.00	1.00	254.00	254.00	30	
녹지 및 기타		145,282.4						142,907.73						감 2,374.67
시설율(법정 40%)		(56,700.6 / 201,983.0) x 100 =28.07%						(56,093.8 / 199,001.53) x 100 =28.19%						
건폐율(법정 10%)		(1023.34 / 201,983.0) x 100 =0.51%						(1023.34 / 199,001.53) x 100 =0.51%						

※ 1)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서고2019-98)에 따른 공원면적 변경사항 반영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합계				201,983	56,700.6			1,023.3	1,394.8	117			199,001.53	56,093.8			1,023.3	1,394.8	165	
기반시설	소계			41,522.9	41,522.9								41,110.1	41,110.1						
	도로		전지역	29,804.9	29,804.9							전지역	29,849.1	29,849.1						증 44.2
	광장	가	19개소	11,718	11,718						가	18개소	11,261	11,261						감 457
		가-1	동숭 산32임 일원	(1,550)	(1,550)						가-1	동숭 산32임 일원	(1,550)	(1,550)						
		가-2	장신 627-151대	(229)	(229)						가-2	장신 627-151대	(229)	(229)						
		가-3	동숭 50-111도 일원	(4,084)	(4,084)						가-3	동숭 50-111도 일원	(4,084)	(4,084)						
		가-4	창신 611-46대 일원	(1,063)	(1,063)						가-4	창신 611-46대 일원	(1,063)	(1,063)						
		가-5	이화 산1-1임	(721)	(721)						가-5	이화 산1-1임	(683)	(683)						감 38
		가-6	동숭 50-113대 일원	(271)	(271)															감 271
		가-7	산1-11임 일원	(82)	(82)						가-6	산1-11임 일원	(82)	(82)						
		가-8	275-5대 일원	(182)	(182)						가-7	275-5대 일원	(182)	(182)						
		가-9	동숭 산2-10임	(692)	(692)						가-8	동숭 산2-10임	(692)	(692)						
		가-10	동숭 산2-10임	(543)	(543)						가-9	동숭 산2-10임	(543)	(543)						
		가-11	동숭 산32임 일원	(322)	(322)						가-10	동숭 산32임 일원	(322)	(322)						
		가-12	동숭 산2-32임	(97)	(97)						가-11	동숭 산2-32임	(97)	(97)						
		가-13	동숭 산2-40임 일원	(148)	(148)															감 148
		가-14	395-2임 일원	(588)	(588)						가-12	395-2임 일원	(588)	(588)						
		가-15	395-2임 일원	(48)	(48)						가-13	395-2임 일원	(48)	(48)						
		가-16	395-2임 일원	(981)	(981)						가-14	395-2임 일원	(981)	(981)						
		가-17	306-31대 일원	(34)	(34)						가-15	306-31대 일원	(34)	(34)						
		가-18	306-18대 일원	(53)	(53)						가-16	306-18대 일원	(53)	(53)						
		가-19	305-41대 일원	(30)	(30)						가-17	305-41대 일원	(30)	(30)						

구분	시설명	변경전 부호	변경전 위치	변경전 부지면적(㎡)	변경전 시설면적(㎡)	변경전 구조	변경전 규모	변경전 건축물(㎡) 바닥면적	변경전 건축물(㎡) 연면적	변경전 공작물(기)	변경후 부호	변경후 위치	변경후 부지면적(㎡)	변경후 시설면적(㎡)	변경후 구조	변경후 규모	변경후 건축물(㎡) 바닥면적	변경후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비고
조경시설	소계			557	557					32			835	835					36	증 278
	그늘시렁	①	11개소							15	①	11개소							11	
		①-1	이화 134							(1)	①-1	이화 134								감 1기
		①-2	동숭 50-113대 일원							(1)	①-2	동숭 50-113대 일원								감 1기
		①-3	창신 627-15일원							(1)	①-3	창신 627-15일원							(1)	
		①-4	이화 산1-1임							(1)	①-4	이화 산1-1임								감 1기
		①-5	이화 산1-1임							(1)	①-5	이화 산1-1임							(1)	
		①-6	이화 50-153대							(1)	①-6	이화 50-153대								감 1기
		①-7	동숭 산2-10임							(2)	①-7	동숭 산2-10임							(2)	
		①-8	동숭 산2-32임							(1)	①-8	동숭 산2-32임							(1)	
		①-9	이화 9-314대 일원							(2)	①-9	이화 9-314대 일원							(2)	
		①-10	창신 611-46대							(2)	①-10	창신 611-46대							(2)	
		①-11	창신 23-328대							(2)	①-11	창신 23-328대							(2)	
	정자	②	2개소							2	②	2개소							2	
		②-1	395-2임 일원							(1)	②-1	395-2임 일원							(1)	
		②-2	11-200대 일원							(1)	②-2	11-200대 일원							(1)	
	화계	③	전지역							15	③	전지역							15	
	전망대										④	창신 615-279 일원							8	
	장식벽										⑤	2개소							(1)	증 1기
											⑤-1	창신 615-279 일원							(7)	증 7기
				45	45						⑤-2	이화 9-438 일원	45	45						
	화단	나	창신 701-4대 일원	396	396						나	창신 701-4대 일원	396	396						
	연못	다	3개소	(118)	(118)						다	3개소	(118)	(118)						
		다-1	동숭 50-123대 일원	(50)	(50)						다-1	동숭 50-123대 일원	(50)	(50)						
		다-2	308-5임 일원	(228)	(228)						다-2	308-5임 일원	(228)	(228)						
		다-3	305-18대 일원	116	116						다-3	305-18대 일원	116	116						
	벽천	라	동숭50-125대 일원								라	동숭50-125대 일원	278	278						증 278
	전망쉼터										마	창신 615-279 일원								
	잔디밭										바	이화 9-438 일원								

구분	시설명	변경전 부호	변경전 위치	변경전 부지면적(㎡)	변경전 시설면적(㎡)	변경전 구조	변경전 규모	변경전 건축물(㎡) 바닥면적	변경전 건축물(㎡) 연면적	변경전 공작물(기)	변경후 부호	변경후 위치	변경후 부지면적(㎡)	변경후 시설면적(㎡)	변경후 구조	변경후 규모	변경후 건축물(㎡) 바닥면적	변경후 건축물(㎡) 연면적	변경후 공작물(기)	비고
휴양시설	소계			1,236	1,236			303	303	45			1,932	1,932			303	303	88	증 696
	노인정	1	2개소	386	386						1	2개소	386	386						
		1-1	308-12임 일원	(210)	(210)	조적근	1층	(210)	(210)		1-1	308-12임 일원	(210)	(210)	조적근	1층	(210)	(210)		
		1-2	이화 9-410대 일원	(176)	(176)	철근 CONC	1층	(93)	(93)		1-2	이화 9-410대 일원	(176)	(176)	철근 CONC	1층	(93)	(93)		
	목재 데크	④	동숭 5-145대 일원	134	134					1	⑥	2개소	144	144					2	증 1기
											⑥-1	동숭 5-145대 일원	(134)	(134)					(1)	
											⑥-2	동숭 50-113대 일원	(10)	(10)					(1)	증 10
	벤치	⑤	전지역			목재				14	⑦	전지역			목재				16	증 2기
	데크형벤치										⑧	전망쉼터 마 일원			목재				5	증 5기
	원형벤치										⑨	잔디밭 바 일원			CONC				35	증 35기
	테이블	⑥	전지역			목재				30	⑩	전지역			목재				30	
	쉼터	마	7개소	716	716						사	9개소	1,139	1,139						
		마-1	395-2임 일원	(206)	(206)						사-1	395-2임 일원	(206)	(206)						
		마-2	395-2임 일원	(108)	(108)						사-2	395-2임 일원	(108)	(108)						
		마-3	305-21대 일원	(48)	(48)						사-3	305-21대 일원	(48)	(48)						
		마-4	305-7대 일원	(45)	(45)						사-4	305-7대 일원	(45)	(45)						
		마-5	305-4대 일원	(27)	(27)						사-5	305-4대 일원	(27)	(27)						
		마-6	산1-11임 일원	(25)	(25)						사-6	산1-11임 일원	(25)	(25)						
		마-7	11-200대 일원	(257)	(257)						사-7	11-200대 일원	(257)	(257)						
											사-8	이화 9-436 일대	(385)	(385)						증 385
											사-9	이화 134	(38)	(38)						증 38
운동시설	소계												263	263						증 263
	체력단련시설	⑦	9개소	5,255	5,255					4	⑪	7개소	4,087	4,087					4	감 1,168
		⑦-1	이화 134	2,158	2,158					4			990	990					4	
		⑦-2	동숭 50-113대 일원	(115)	(115)															감 115
		⑦-3	동숭 산 2-32임	(1,053)	(1,053)						⑪-1	동숭 산 2-32임								감 1,053
		⑦-4	동숭 50-141대 일원	(155)	(155)						⑪-2	동숭 50-141대 일원	(155)	(155)						
		⑦-5	이화 9-312대 일원	(434)	(434)						⑪-3	이화 9-312대 일원	(434)	(434)						
		⑦-6	395-2임 일원	(401)	(401)						⑪-4	395-2임 일원	(401)	(401)						
		⑦-7	395-2임 일원							(1)	⑪-5	395-2임 일원							(1)	
		⑦-8	395-2임 일원							(1)	⑪-6	395-2임 일원							(1)	
		⑦-9	395-2임 일원							(1)	⑪-7	395-2임 일원							(1)	
	베드민턴장	바								(1)	아								(1)	
		바-1	창신 611-48대 일원	2,443	2,443						아-1	창신 611-48대 일원	2,443	2,443						
		바-2	동숭 50-117대 일원	(1,411)	(1,411)						아-2	동숭 50-117대 일원	(1,411)	(1,411)						
		바-3	이화 9-341대 일원	(490)	(490)						아-3	이화 9-341대 일원	(490)	(490)						
	농구장	사	창신 611-47대 일원	(542)	(542)						자	창신 611-47대 일원	(542)	(542)						

구분	시설명	변경전 부호	변경전 위치	변경전 부지면적(㎡)	변경전 시설면적(㎡)	변경전 구조	변경전 규모	변경전 건축물(㎡) 바닥면적	변경전 건축물(㎡) 연면적	변경전 공작물(기)	변경후 부호	변경후 위치	변경후 부지면적(㎡)	변경후 시설면적(㎡)	변경후 구조	변경후 규모	변경후 건축물(㎡) 바닥면적	변경후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비고
편익시설	소계			1,915.1	1,915.1			284.1	432.95	6			1,915.1	1,915.1			284.1	432.95	6	
	고정식 화장실	2	동숭 산 2-32임	90	90	조적도	1층	46	46		2	동숭 산 2-32임	90.0	90.0	조적도	1층	46.0	46.0		
	음수전		전지역							5		전지역							5	
	휴지통		전지역							1		전지역							1	
	주차장	아	3개소	1,315	1,315						차	3개소	1,315.0	1,315.0						
		아-1	동숭 50-129대 일원	(1,046)	(1,046)						차-1	동숭 50-129대 일원	(1,046.0)	(1,046.0)						
		아-2	창신 611-47대 일원	(269)	(269)						차-2	창신 611-47대 일원	(269.0)	(269.0)						
	카페	5	창신동 7-26	510.1	510.1	철근 CONC	지상1층, 지하2층	238.1	386.95		5	창신동 7-26	510.1	510.1	철근 CONC	지상1층, 지하2층	238.1	386.95		
관리시설	소계									30									30	
	안내판		전지역	261	261			254	254	30		전지역	261.0	261.0			254.0	254.0	30	
	관리 사무소		동숭 50-111도	261	261	철근 CONC	1층	254	254		3	동숭 50-111도	261.0	261.0	철근 CONC	1층	254.0	254.0		
교양시설	소계			5,953.6	5,953.6			182.2	404.85				5,953.6	5,953.6			182.2	404.85		
	성곽	⑧	전지역	3,762	3,762						⑫	전지역	3,762.0	3,762.0						
	비우당	4	창신 9-471 일원	1,552	1,552	초가	1층	28.8	28.8		4	창신 9-471 일원	1,552.0	1,552.0	초가	1층	28.8	28.8		
	도서관	6	창신동 7-26	639.6	639.6	철근 CONC	지상1층, 지하1층	153.4	376.05		6	창신동 7-26	639.6	639.6	철근 CONC	지상1층, 지하1층	153.4	376.05		
녹지 및 기타	소계			145,282.4									142,907.73							
	-		전지역	145,282.4								전지역	142,907.73							

다. 도로조서(변경결정)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시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6,234.6)	(29,804.9)				
변경					6,318.6	29,849.1				증 44.2
당초	중로	소 계			616.0	8,634				
당초		2류	1	15	352	5,555	지구내도로	삼선2가 395-5임	광장 가-1	
당초		3류	1	12	264	3,079	지구내도로	삼선1가 308도	삼선2가 산1-1임	
당초	소 계				5,618.6	21,170.9				
변경					5,702.6	21,215.1				증 44.2
당초	소로	3류	1	6	114	784	지구내도로	창신 701-4	창신 668-24	
당초			2	4	55	220	진입로	창신 668-17	창신 660-21	
당초			3	1.5	42	64	산책로	395-4임	소로3-22	
당초			4	3	311	944	산책로	창신 668-62	창신 627-210	
당초			5	1.2	4	4.4	산책로	395-4임	소로3-3	
당초			6	5	56	280	지구내도로	충신 18-91	충신 1-149	
당초			7	6	75	450	진입로	창신 627-87	창신 627-206	
당초			8	6	384	2,304	지구내도로	광장 가-1	이화 9-724	
당초			9	6	442	2,652	지구내도로	창신 627-208	창신 615-209	
당초			10	3	21	63	진입로	창신 626-37	창신 622-78	
당초			11	4	6	24	지구내도로	창신 615-199임	이화 9-728	
당초			12	5	59	295	진입로	창신 615-72	창신 615-50	
당초			13	6	52	312	진입로	창신 611-60	창신 615-55	
당초			14	3	71	213	진입로	창신 611-19	창신 611-45	
당초			15	4	91	354	지구내도로	창신 23-313	창신 611-52	
당초			16	2.5	61.9	149	진입로	광장 가-15	중로 3-1	
당초			17	1.2	10.6	12.8	산책로	395-4임	소로3-22	
당초			18	1.2	10.0	12	산책로	395-3임	소로3-23	
당초			19	1.5	14.0	36.7	산책로	소로3-72	쉼터 사-5	
당초			20	3	96	275	진입로	이화 산1-7임	이화 9-411	
당초			21	6	245	1,681	지구내도로	이화 9-413도	동숭 50-129	
당초			22	1.2	10.0	12	산책로	소로3-3	소로3-23	
당초			23	1.5	26.3	37.5	산책로	소로3-17	광장 가-12	
당초			24	1.5	9.8	17.3	산책로	광장 가-13	소로 3-23	
당초			25	1.5	8.4	18.7	산책로	광장 가-13	광장 가-12	
당초			26	1.2	13.5	17.3	산책로	광장 가-12	소로3-27	
당초			27	1.2	32.6	43.2	산책로	광장 가-12	395-3임	
당초			28	3.0	47.0	157.3	산책로	광장 가-12	395-3임	
당초			29	1.0	10.0	10.2	산책로	광장 가-12	쉼터 마-2	
당초			30	1.2	19.5	23.5	산책로	광장 가-14	395-2임	
당초			31	1.2	3.0	6.0	진입로	291-16도	소로3-77	
당초			32	3	133	418	지구내도로	동숭 산1-1임	동숭 50-111	
당초			33	1.5	108	162	산책로	광장 가-9	광장 가-7	
당초			34	2	14	32	진입로	창신 94-19도	창신 94-19	
당초			35	4	21	100	산책로	창신 688-13	창신 668-44	
당초			36	3	14	46	진입로	창신 660-222	창신 660-256	
당초			37	6	19	120	산책로	창신 660-4	창신 615-199임	
당초			38	3	163	488	산책로	창신 615-199임	창신 615-199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시 점	종 점	비고
당초			39	4.5	102	457	지구내도로	창신 23-327	창신 611-49	
당초			40	2.0	143.0	298.0	산책로	소로3-72	소로3-79	
당초			41	-	-	-	-	-	-	
폐지			41	2	147	302	산책로	이화 9-409도	이화 산1-9임	공원 제외
당초			42	5	26	147	산책로	이화 9-308도	이화 9-308도	
당초			43	8	20	214	지구내도로	동숭 50-132	주차장 차-1	
당초			44	2.5	69	180	산책로	동숭 50-111도	광장 가-6	
당초			45	4	136	531	지구내도로	이화 9-408도	광장 가-6	
당초			46	3	63	198	산책로	동숭 산 2-32임	동숭 산 2-39임	
당초			47	2	62	124	산책로	목재데크 ⑥-1	체육시설 ⑨-1	
당초			48	3	108	322	산책로	목재데크 ⑥-1	광장 가-5	
당초			49	2	84	171	산책로	동숭 50-114	동숭 50-111	
당초			50	4	227	925	지구내도로	광장 가-6	광장 가-4	
당초			51	2	179	363	산책로	동숭 산2-30임	동숭 50-148	
당초			52	6.5	37	222	산책로	광장 가-6	동숭 산2-30임	
당초			53	8	62	672	지구내도로	동숭 129-213	동숭 50-128	
당초			54	4	70	328	지구내도로	광장 가-5	동숭 50-113	
당초			55	1.2	23.0	28.0	산책로	소로3-72	광장 가-7	
당초			56	1.2	48.5	55.0	산책로	광장 가-7	소로3-77	
당초			57	6.5	9	65	진입로	삼선1가 292-5	광장 가-3	
당초			58	2	70	145	진입로	동숭 산2-10임	광장 가-3	
당초			59	3	141	427	진입로	동숭 산1-1임	창신 290-78	
당초			60	2.5	11.0	34.0	산책로	291-16도	소로3-77	
당초			61	3.0	64.0	230.0	산책로	소로3-77	279-8대	
당초			62	2.0	215.0	402.0	산책로	279-1대	쉼터 마-7	
당초			63	2.5	12.0	31.5	산책로	11-152대	소로3-83	
당초			64	2.0	10.0	24.0	산책로	11-152대	소로3-83	
당초			65	2.5	81.0	186.0	진입로	광장 가-16	종로3-2임	
당초			66	1.2	62.0	86.0	산책로	광장 가-12	395-2임	
당초			67	3.5	105.0	351.0	산책로	광장 가-12	광장 가-14	
당초			68	1.2	36.0	49.5	산책로	광장 가-12	광장 가-15	
당초			69	1.5	20.0	30.0	산책로	쉼터 사-3	쉼터 사-4	
당초			70	1.5	12.5	25.0	산책로	쉼터 사-4	302-14도	
당초			71	2.0	49.0	98.0	산책로	쉼터 사-7	소로3-84	
당초			72	2.0	217.0	558.0	진입로	중로2-1	소로3-77	
당초			73	2.0	25.0	53.0	진입로	소로3-72	301대	
당초			41	-	-	-	-	-	-	
신설			41	1.5	18.0	27.0	산책로	소로3-8	전망쉼터 마	
당초			74	-	-	-	-	-	-	
신설			74	1.5	105.0	157.5	산책로	전망쉼터 마	소로3-8	
당초			75	-	-	-	-	-	-	
신설			75	1.5	108.0	161.7	산책로	충신 1-510	이화 9-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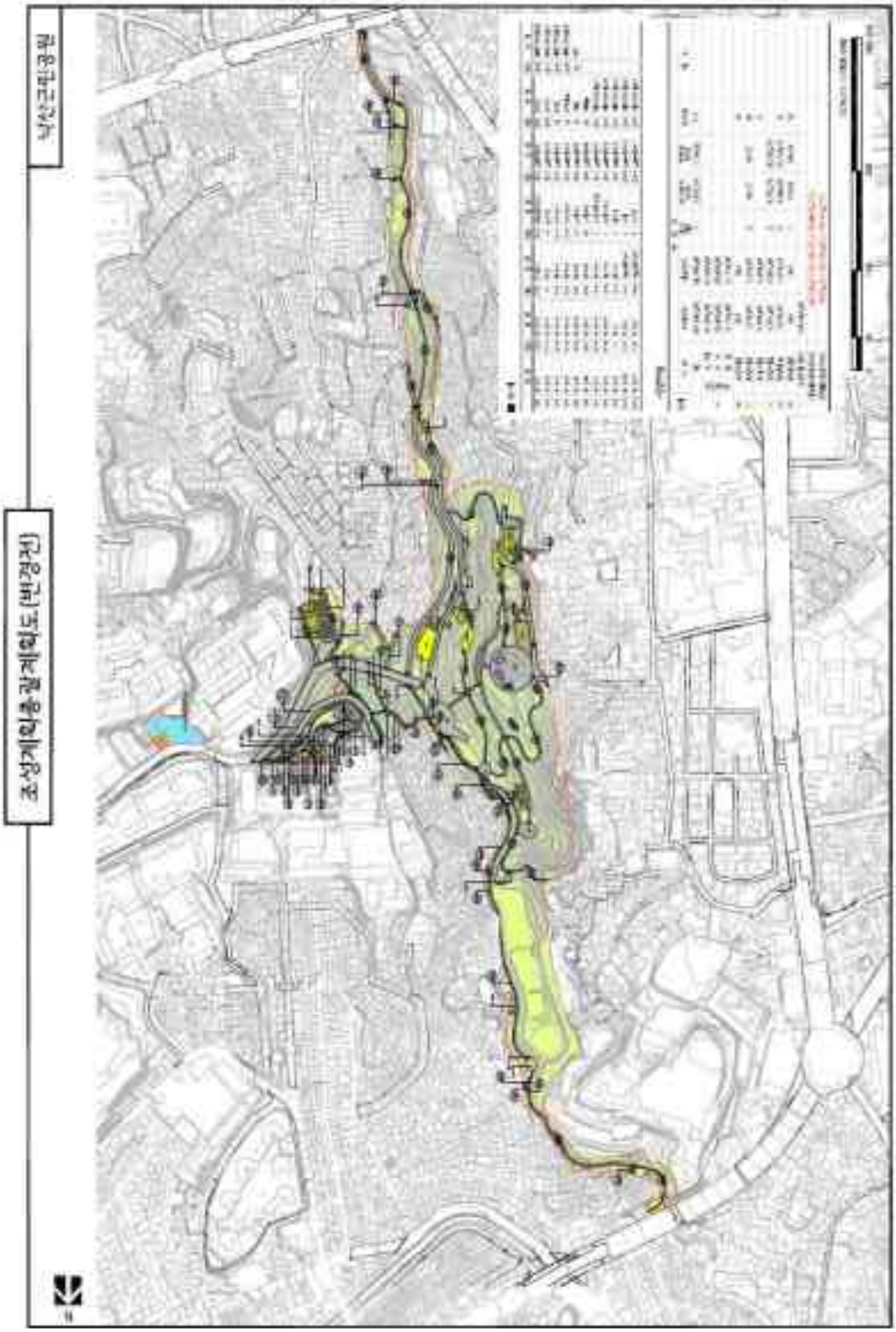
조성계획 및 관계법령 위반건축물 현황도
남산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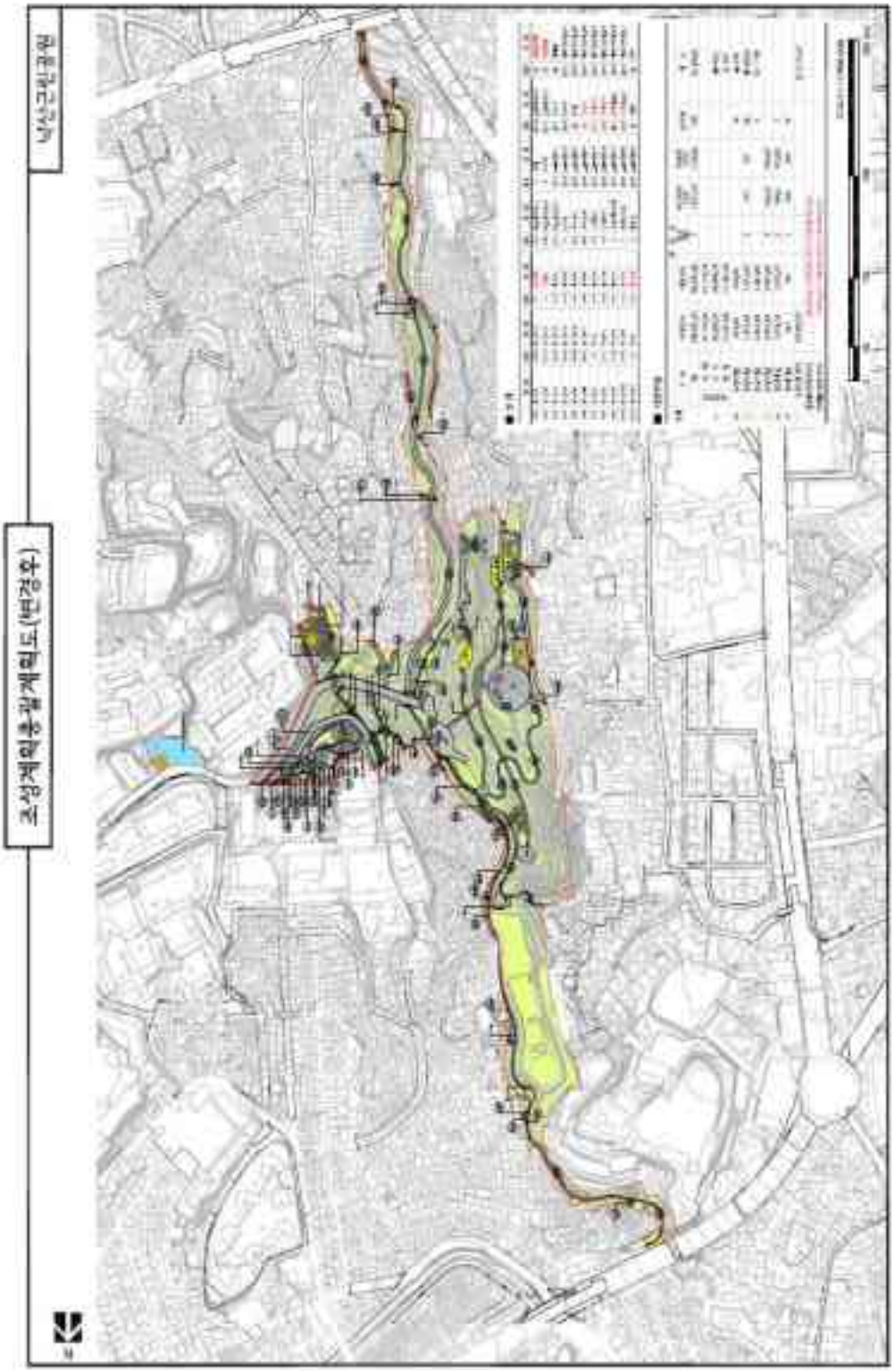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녹지)결정(변경)조서
도시계획시설(녹지)결정(변경)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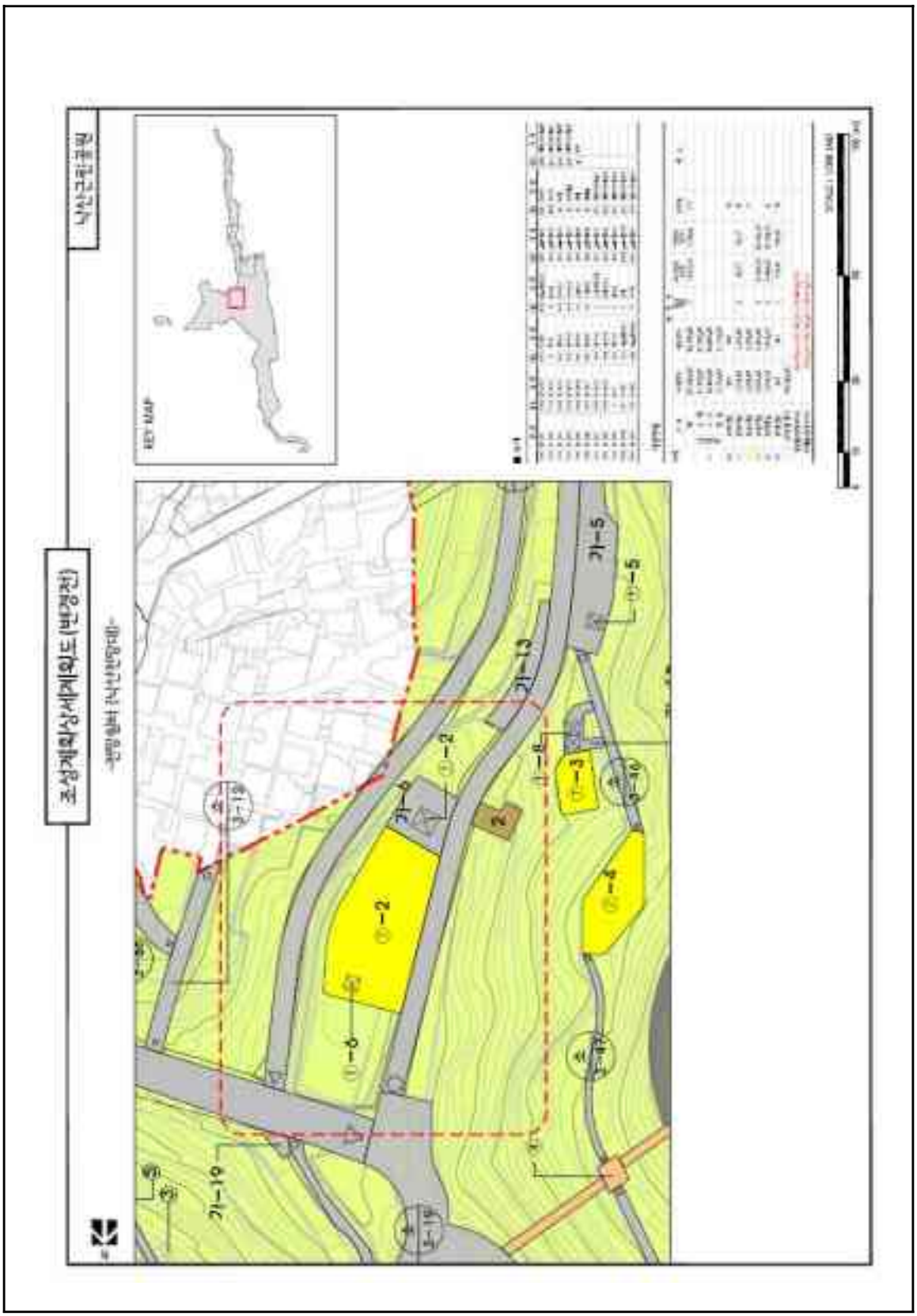
조성계획상세계획도(변경전)
-관악구 일대 지식산업단지-
낙산근린공원
KEY MAP
가-19
가-2
가-6
가-13
가-5
가-3
가-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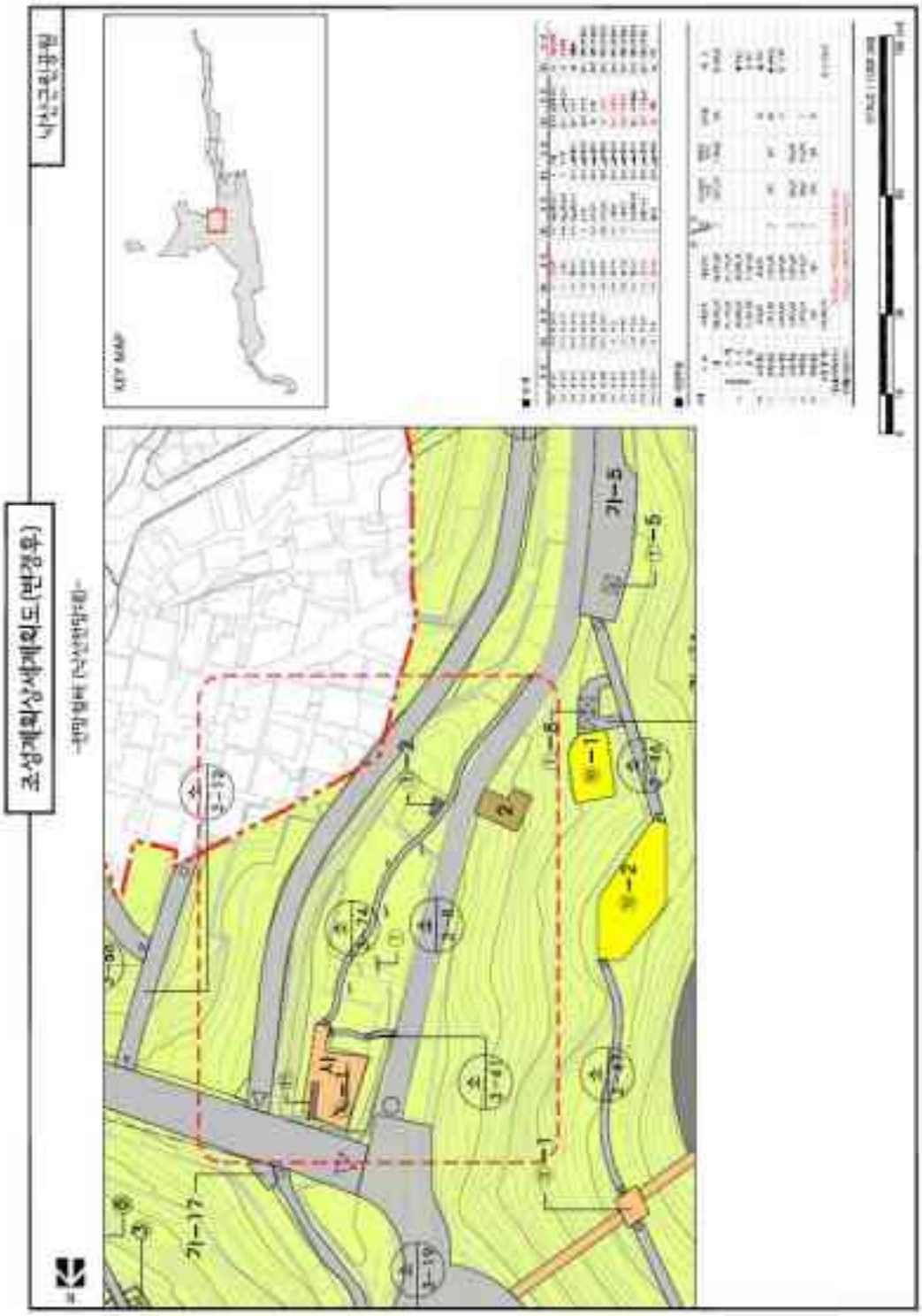
조성계획상세계획도 (변경후)
나전근린공원
KEY MAP
가-17
가-5
가-6
가-1
가-2
가-19
가-74
가-41
가-18
가-16
가-30
가-6
가-1
가-5
가-6
가-1
가-2
가-19
가-74
가-41
가-18
가-16
가-30
가-17
가-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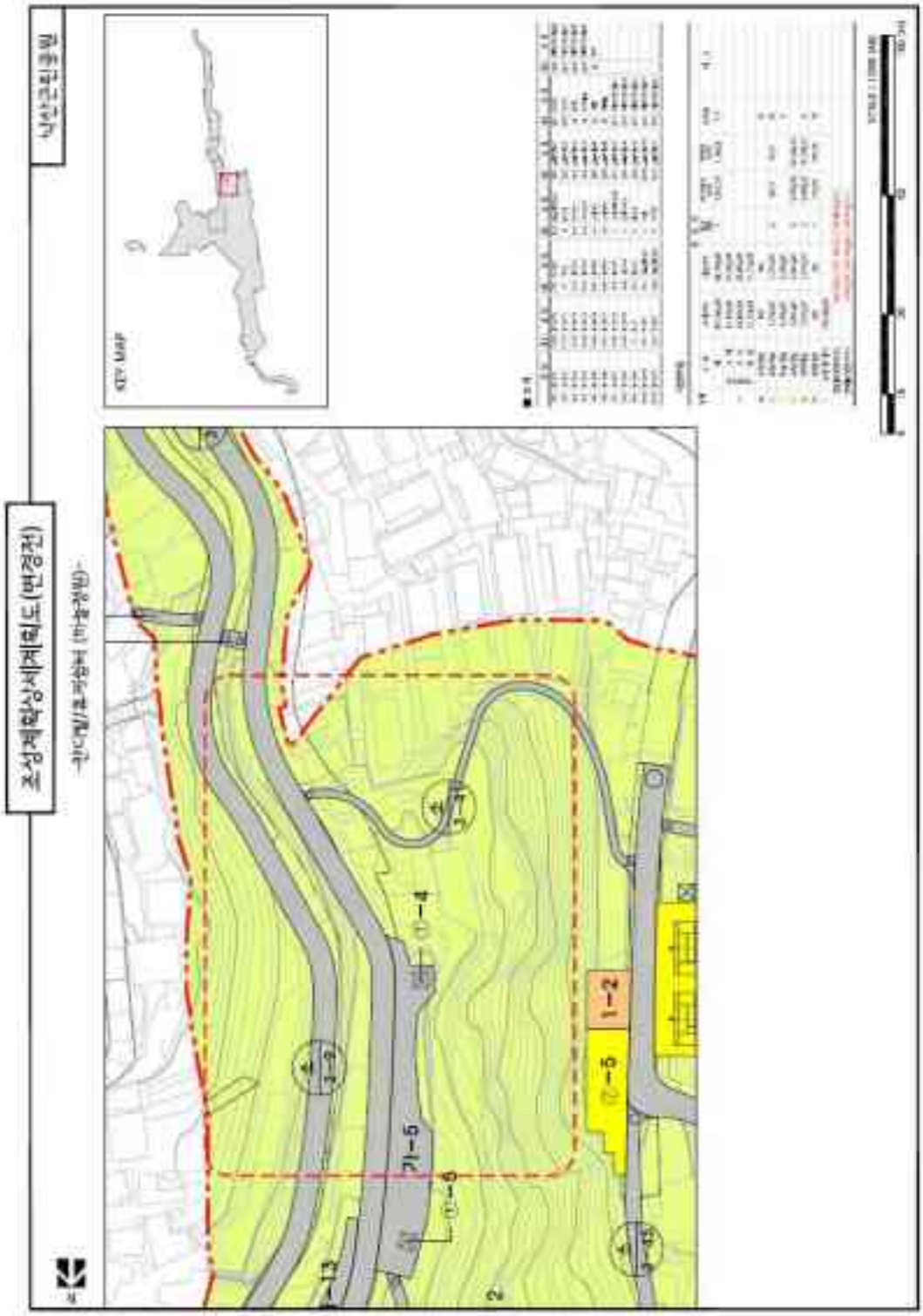
조성계획상세계획도(변경전)
낙산근린공원
KEY MAP
1-2
2-6
71-5
71-4
71-6
71-3
71-7
71-8
71-13
71-11
7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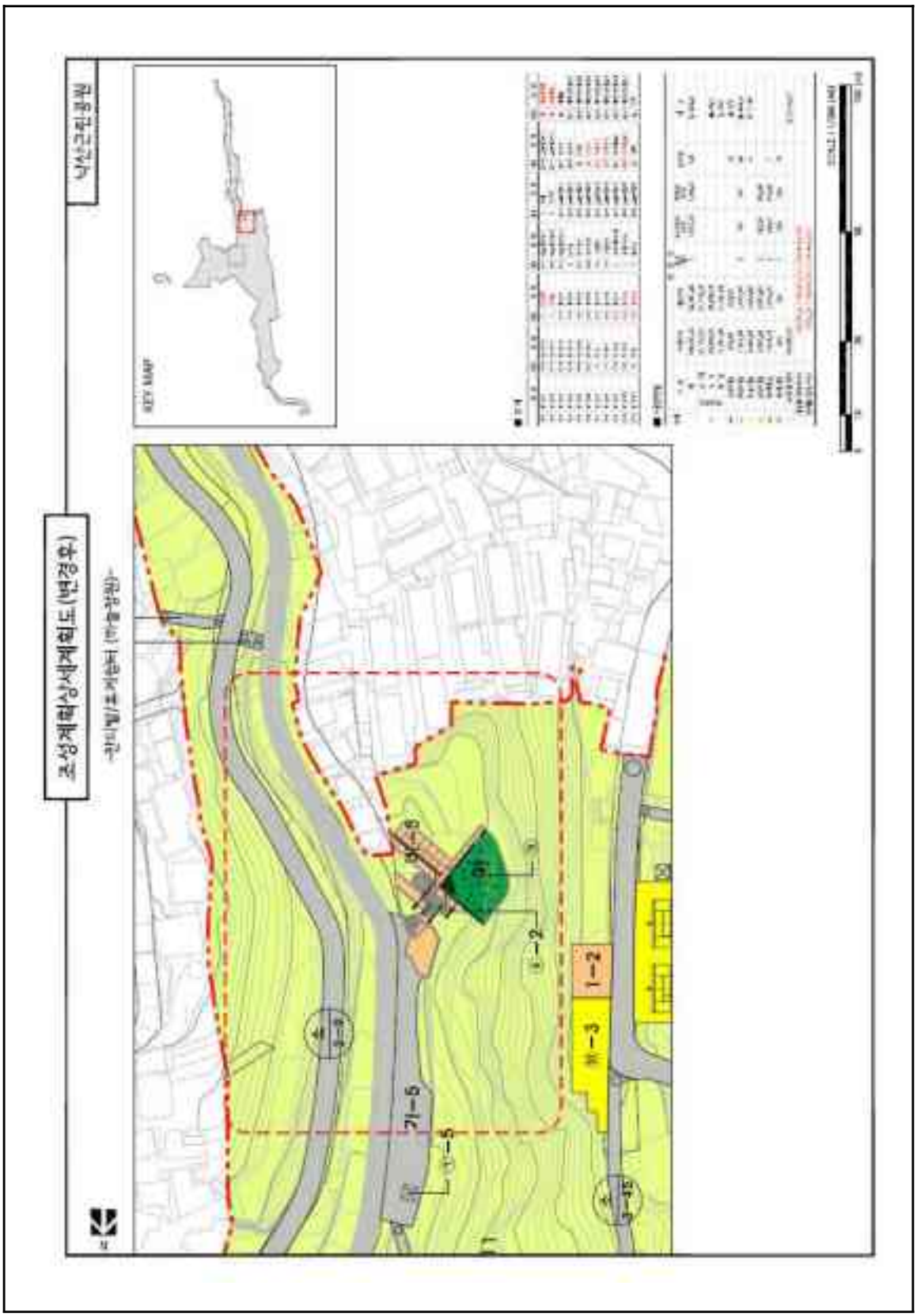
조성계획상세계획도(변경후)
남산근린공원
KEY MAP
71-5
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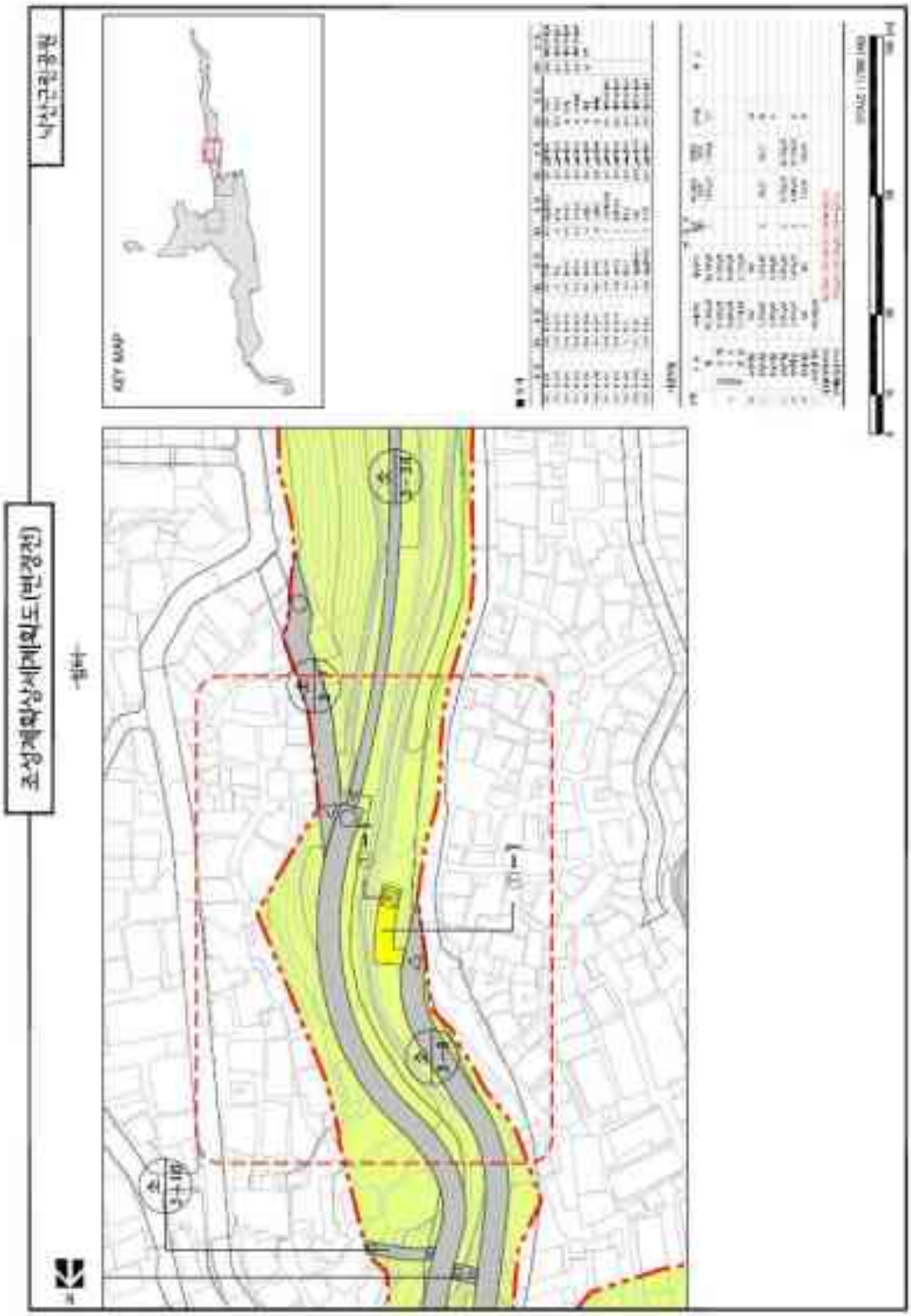
조성계획상세계획도(변경전)
낙산근린공원
KE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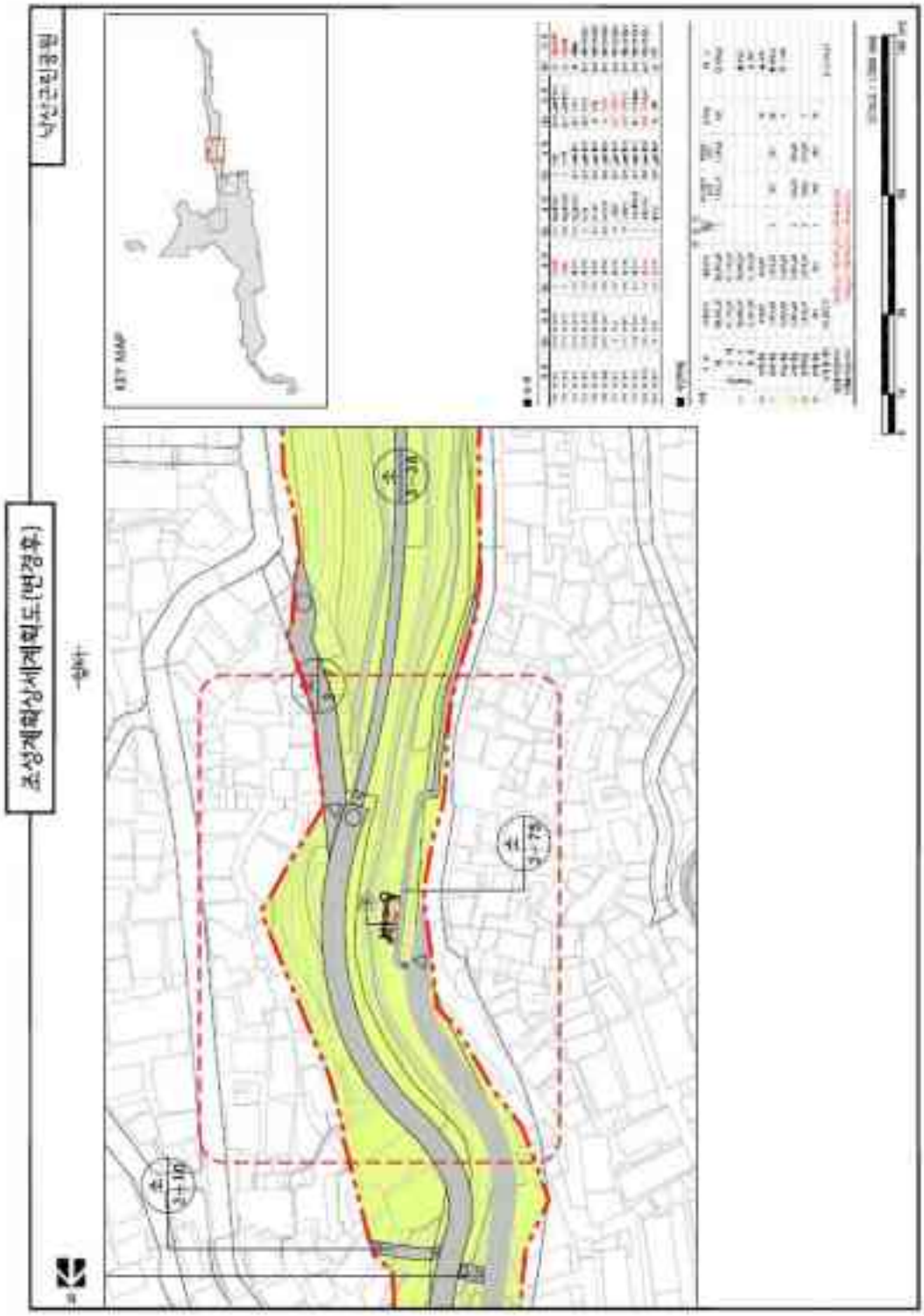
조성계획상세계획도(변경후)
낙산근린공원
CITY MAP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915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기부금품 모집등록 내역

등록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백만원)	모집지역	모집기간 / 사용기간
2019-88	(재)궁중음식문화재단 (대표:한복려)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5길 14(원서동)	o. 국가무형문화재 제38호 조선왕조 궁중음식의 보존과 계승	73 (현금)	전국	2019.7.15. ~ 2020.7.14 / 2019.7.15. ~ 2021.7.14
2019-89	(사)코인트리 (대표:한영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55,3층(서초동, 법화빌딩)	o. 국제적 구제사업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 지원사업	99 (현금및물품)	전국	2019.7.15. ~ 2020.7.14 / 2019.7.15. ~ 2021.7.14
2018-135-2 (변경: 모집금액 증액)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대표:김진호)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115(성수동 1가,에스콰이어 빌딩)	o. 한국전쟁 미군참전용사추모의 벽 건립기금 지원	600 → 700 (현금)	전국	2018.12.25. ~ 2019.12.24. / 2018.12.25. ~ 2020.12.24.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919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29조 제3항에 따라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1	아모레퍼시픽 서초지사	서울 후-제27호	이 성 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85, 402호(봉천동,기광빌딩) (☎ 02-3473-5114)	소재지 '19.6.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85, 5층 502호(봉천동,기광빌딩)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85, 402호(봉천동,기광빌딩)
2	시너지월드와이드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제153호	데니얼 노먼	서울특별시 강남구 천호대로 1077, 2층, 3층, 4층, 지하1층(천호동, 이스트센트럴타워) (☎ 02-564-7600)	소재지 '19.6.6.	서울특별시 강남구 천호대로 1077, 2층, 3층, 4층, 지하1층(천호동, 이스트센트럴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07, 5,6,7층 (대치동,코니빌딩)
3	원에이블(주)	서울 제791호	용 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6길 31, 4층 409호 (대치동, 롯데골드로즈2차) (☎ 02-521-9328)	상호변경 '19.6.10	㈜탄탄코리아	원에이블(주)
4	뉴키(주)	서울 제753호	허 영 진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1, 신도림1차푸르지오 503호 (신도림동) (☎ 02-2167-1700)	소재지 '19.6.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3길 7, 1층 (당산동3가, 성화빌딩)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1, 신도림1차푸르지오 503호 (신도림동)
5	㈜에스디플랫폼	서울 제860호	조정현, 박설웅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6, 9층(대치동, 연봉빌딩) (☎ 02-549-9560)	소재지 '19.6.21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206, 2층(논현동, 동화빌딩)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6, 9층(대치동, 연봉빌딩)
					상호 '19.6.24	㈜쏠렉	㈜에스디플랫폼
6	(주)유니코즈	서울 제871호	최 한 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03, 3층 (봉천동) (☎ 02-517-0855)	소재지 '19.6.2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3길 34 (역삼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03, 3층 (봉천동)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7	알즈너보라대리점	서울 후-제727호	정 보 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10가길 41-10, 1층 (성북동)	소재지 '19.7.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62, 1층 (성북동, 외1필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10가길 41-10, 1층 (성북동)
8	알즈너예찬대리점	서울 후-제427호	김명숙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44길 28, 115호 (면목동, 아람플러스리빙상가) (☎ 02-439-7152)	상호 '19.6.28	예찬상사	알즈너예찬대리점
9	㈜바라글로벌	서울 제782호	김 흥 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9, 3층 (역삼동, 신중앙빌딩) (☎ 02-1661-3265)	상호 19.7.8	㈜엠에스엠글로벌	㈜바라글로벌
10	㈜오휘구로디지털점	서울 후-제617호	손 영 숙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 11, 2층(상승빌딩) (☎ 02-824-5253)	상호 19.6.27	㈜오휘동작점	㈜오휘구로디지털점
					소재지 19.6.2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22, 2층 (상도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 11, 2층(상승빌딩)
11	오휘동서울지사	서울 후-제397호	이영진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8, 502호(천호동, 민호빌딩) (☎ 02-6365-5233)	폐업신고 '19.6.11		
12	마임길음지사	서울 후-제62호	김혜숙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양로 18, 2층(길음동) (☎ 02-987-6054)	폐업신고 '19.6.26		
13	오휘서부지사	서울 후-제655호	김용운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9길 3, 2층 (응암동, 소명빌딩) (☎ 070-7873-0551)	폐업신고 '19.6.27		
14	나르지오워킹화 사당방배점	서울 후-제720호	오명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40, (방배동, 경복빌딩) (☎ 02-584-0337)	폐업신고 '19.6.28		
15	오휘관악중앙지사	서울 후-제380호	허 정 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03, 3층(봉천동) (☎ 02-887-7768)	폐업신고 '19.7.8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16	㈜성북	서울 후-제706 호	김미화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0가길 56, 302호(동선동1가, 명가빌딩) (☎02-2292-7300)	폐업신고 '19.7.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17) 또는 공정경제담당관(☎ 02-2133-5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932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4, 8, 14단지 아파트 미술작품 제작, 설치 공모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4, 8, 14단지 아파트'**에 품격과 예술성을 갖춘 우수한 미술작품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공 모 명: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4, 8, 14단지 아파트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 공모기간: 2019. 7. 18.(목) ~ 2019. 8. 18.(일)
○ 건축물 개요: 신축[✓], 증축[ ]
- 건 물 명: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4, 8, 14단지 아파트
-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4, 8, 14단지 아파트
- 공사완료 예정일: 2020.6월(4단지) / 2020.11월(8단지, 14단지)
- 미술작품 설치 예정일 및 미술작품 설치비용 총 가액(법정금액)

구 분	작품 설치 예정일	작품 설치비용	작품 설치 면적
4단지 아파트	2020년 5월	109,950,000원	가로 2m x 세로 3.5m
8단지 아파트	2020년 10월	88,960,000원	가로 2m x 세로 3m
14단지 아파트	2020년 10월	74,930,000원	가로 3m x 세로 4m

○ 작품접수: 2019. 8. 19.(월) 10:00 ~ 17:30, **방문 제출(우편, 택배 등 불가)**
(공모대행기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별관 1동 5층 디자인정책과)
○ 제출서류: 공모지침서 내 제출서류 1식 각1부(출력본), CD 또는 USB 메모리**(반환불가)**

※ CD 또는 USB메모리 - ① 공모지침서 내 [서식 2~4](PDF, 한글파일 각 1부, 20MB이내)
- 응모작품설명서, 미술작품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작가경력서
② 작품 대표이미지(JPG 1컷, 500KB이내)

○ 응모자격: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으로 미술작품을 제작·설치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공동응모 시 대표자 명기)

- 작가 1인당 1개 단지에 1작품만 제출하여야 하며, 3개 단지 모두 응모할 수 있음 (동일 작품 중복응모 불가, 공동 응모자를 포함하여 1인으로 봄)

○ 계약방법: 건축주 또는 건축주의 위임을 받은 자와 작가간의 계약

○ 계약시기: 최종당선작 공고 후 건축주와 협의

○ 작품선정 결과 발표 : 2019년 9월(예정),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당선작 없을 경우 재공고 가능

○ 공모대행기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공공미술관리팀(☎ 02-2133-2716, 2719)

※ 공모대행 신청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토목조경설계부(☎ 02-3410-7979)

○ 기타 유의사항

- 응모자는 공모지침서를 충분히 숙지 후 응모 요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93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을 추진하고자 하나, 사업장 부존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제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07.25. ~ 2019.08.08.(15일간)
3. 공고대상

상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역	행정처분	비고
㈜다우 페트로	전*인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350길 38, 5층	- 석유판매업 무단폐업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 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취소	

4. 법적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4항제4호 및 제6호

5. 안내사항

처분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상기 처분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02-2133-3711, FAX 02-2133-10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935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3073	2019.6.4.	주식회사 제이더블유씨네트웍스 이동원 1.1.0.1.1.1.-4.9.3.9.4.5.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14, 한국전자협동(주)공장 비동 비401호 (가산동)
2	203074	2019.6.4.	다원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추정미 1.1.0.1.1.1.-4.2.2.7.6.2.8.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28길 8, 동림빌딩 3층 (문정동)
3	203075	2019.6.4.	모토로라솔루션코리아 주식회사 박찬웅 1.1.0.1.1.1.-6.9.1.5.9.8.2.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16, 하이브랜드리빙관 9층 (양재동)
4	203076	2019.6.4.	주식회사 미라클산업 김영철 1.1.0.1.1.1.-1.9.7.8.1.3.3.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17, 가양테크노타운 701호 (가양동)
5	203077	2019.6.4.	주식회사 이라스원 유선정 1.1.0.1.1.1.-5.6.5.3.2.0.2.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2, 한신아이티타워 3층 314호 (구로동)
6	203078	2019.6.17.	엠빅 주식회사 최두성 1.1.0.1.1.1.-2.0.4.5.7.9.1.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치비지니스파크 에이동 311호,312호 (문정동)
7	203079	2019.6.17.	프라이빗테크놀로지 주식회사 김영랑 1.1.0.1.1.1.-6.6.8.6.5.3.3.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98, 대륭포스트타워6차 1303호 (가산동)
8	203080	2019.6.17.	주식회사 피엘시스템즈 김세원 1.1.0.1.1.1.-5.0.7.1.3.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116, 트리플렉스 503호 (문래동3가)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9	203081	2019.6.17.	주식회사 성동아이앤티 홍성원 1.1.0.1.1.1.-7.0.7.9.4.3.0.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19, 2층 (구로동)
10	203082	2019.6.17.	주식회사 엘토브 김지성 1.1.0.1.1.1.-3.9.9.5.0.0.2.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2, 한신아이티타워 404호 (구로동)
11	203083	2019.6.17.	주식회사 아이티룩스 조민희 1.1.0.1.1.1.-1.8.1.4.4.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17길 51, 미드타운센터역삼 (역삼동)
12	203084	2019.6.17.	주식회사 유진에스엔티 박영애 1.1.0.1.1.1.-5.7.3.2.1.0.5.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24길 26, 에이스하이엔드타워클래식 7층 711호 (가산동)
13	203085	2019.06.21.	주식회사 필라넷 김상규 1.1.0.1.1.1.-2.5.1.9.5.6.4.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5, 서울숲에스케이브이1타워 에이동 2층 (성수동2가)
14	203086	2019.06.21.	주식회사 알엔알(RNR Inc.) 석민철 1.1.0.1.1.1.-5.4.9.8.9.0.5.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7가길 56 (성수동2가)
15	203087	2019.06.21.	주식회사 피지피넷 손동욱 1.1.0.1.1.1.-2.0.0.7.9.8.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씨동 10층 1011호 (가산동)
16	203088	2019.06.21.	케이디아이앤씨 주식회사 박원서 1.1.0.1.1.1.-1.2.0.7.9.2.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4, 숭문동문회관 5층 (대흥동)
17	203089	2019.06.21.	주식회사 21세기정보기술 송채현 1.1.0.1.1.1.-4.1.1.0.0.8.9.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194-1, 2층 (마천동)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 - 289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936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비고
1	201297	2019.6.4.	승림이앤씨 주식회사 서영식 1.1.0.1.1.1.-3.4.8.5.8.8.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11길 7, 201호 (삼전동, 광진빌딩)	양도 양수
2	310303	2019.6.17.	세종텔레콤 주식회사 (SejongTelecom,Inc.) 김형진 1.3.4.1.1.1.-0.0.3.6.9.9.2.	서울 강동구 상일로10길 36(상일동)	법인 합병
3	200739	2019.6.21.	주식회사 세종(Sejong Corp.) 이기동 1.1.0.1.1.1.-1.3.0.2.2.7.5.	서울 강동구 상일로10길 36(상일동)	법인 합병
4	350188	2019.6.21.	주식회사 플러스전력 이하일 2.3.4.1.1.1.-0.0.7.0.0.8.0.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7마길 28, 1층(개봉동)	양도 양수
5	111912	2019.6.21.	주식회사 에스비넷 전막동 1.1.0.1.1.1.-7.0.7.1.2.2.0.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9, 벽산디지털밸리6차 708호 (가산동)	양도 양수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공사업 양도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 - 289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944호**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1호) 운영자 선정 입찰 재공고

충신권 성곽마을 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연극공유센터와 두레주택과의 연계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기 운영자와 함께할 지역맞춤형 운영주체를 추가로 선정하고자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 운영자 선정 입찰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9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1호)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나. 대상현황

구분	지 번	규 모(㎡)		재산평가액 (19년 감정평가액)	대상	연간사용료(천원) ※ 부가세 별도		
		토지	연면적			일반시설 (5.0%)	문화시설 (2.5%)	감면(1%)[1]
충신동	합 계	72	117.84	448,399천원		22,420	11,209	4,483
	1-165	72	1층 68.31	259,863천원	1호	6,497	3,248	1,299
					2호	6,497	3,248	1,299
			2층 49.56	188,536천원		9,426	4,713	1,885

○ 예정가격 : 3,248천원 ※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임

- 예정가격은 1년간 사용료 총액 금액이며, 입찰자는 가격입찰서 작성시 문화시설 예정가격 이상 작성·제출하여야 유효함.
- 첫해 사용료는 낙찰가액과 부가가치세(낙찰가액의 10%)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하되, 낙찰자가 감면대상인 경우 '낙찰가액 × (감면대상 예정가격/문화시설 예정가격)'을 낙찰가액으로 본다.
- 사용료 감면대상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제5항)
  - 운영자가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인 경우
  - 문화예술 창작 스튜디오로 운영하는 경우

2. 사용 용도

위 시설은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역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을 위한 행정재산으로서 다음 용도를 주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등 문화시설

- 지역문화복지시설 : 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등
-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 문화예술 기관·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 어린이집·경로당·공동육아방 등 노유자시설
-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 마을관리센터, 북카페, 작은 마을박물관, 전시관, 마을공방 등

3. 신청 대상

○ 충신마을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공동 입찰 불가)

※ '문화예술' 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운영 기간 : 2년 (1회에 한하여 3년내 갱신 가능)

○ 최초 2년 운영 후 갱신 신청시 운영실적 평가 등을 감안하여 재협약 추진

5. 입주 예정일 : 우리시와 협의 후 결정

6. 입찰 방법

○ 본 입찰은 '사업제안서'를 심사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70점이상, 최대 3명) 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2단계 경쟁입찰」임.

○ '가격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시스템(http://onbid.co.kr, 이하 '온비드'라 한다)에서 시행하고, '사업계획서' 의 심사, 낙찰자 결정 등 기타 입찰과정은 서울특별시 주거환경 개선과에서 시행함.

7. 사업제안서 입찰일정

가. 현장 설명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허가조건 및 관련자료 등으로 갈음하며, 입찰참가자 희망시 현장 확인 가능

나. 사업제안서 접수

1) 공고기간 : 2019. 7. 25(목) ~ 8. 5(월), 10일간

2) 접수기간 : 2019. 8. 5(월) 10:00~17:00, 1일간

3) 접수장소 : 서울시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정책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 2133-7257 담당 이수연)
※ 현장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4) 제출서류

1. 운영자선정 참가 신청서 1부 (붙임 1)
2. 사업제안서 10부 (증빙서류 및 CD 등 이동형 저장장치와 함께 제출) (붙임2 참조)
3.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인감증명서 1부 (개인, 법인 1개월이내 발행분)
5. 서약서 1부 (붙임 3)
6.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개인에 한함) 1부. (붙임 4)

5)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 사업제안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제시한 '사업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심사기준의 항목 순으로 작성
- 사업제안서는 A4용지로 20쪽 내외로 제출하되, 심사·평가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해야 하며, 서술내용이 부족하거나 불명확하여 발생하는 심사상의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제출된 사업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8. 사업제안서 심사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나. 선정위원 구성 : 총 7명

- 선정위원 : 해당분야 전문가, 교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 선정위원장 :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다. 선정위원회 운영방법

- 제안서 제출 역순에 따라 신청자가 10분 이내 발표 및 질의응답
- 개인은 반드시 본인 발표, 법인은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발표 허용
- 운영계획서 발표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단체)가 1인일 경우에도 적격성 여부 심사, 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선정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상인 유효한 입찰인 경우에 한함)

라.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지역활성화 사업 참여

- 지역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추진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체험)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지역 내 공공사업시 기획, 디자인 등 자문 및 협업 추진
  - 중심거리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공사업
  - 지역 내 다른 앵커시설 운영 지원 (공공 임대주택 포함)
    - ▲ 활용방안, 입주자 선정기준, 내부 규약 마련
    - ▲ 입주자 교육 및 연계한 마을활동 기획 등

※ 구체적 참여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은 협약 체결 전 '앵커시설 세부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서울시/종로구 협의 후 진행

마. 선정(심사) 기준 : 사업효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선정위원회' 에서 협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

① 사업 이해도 (20점)

-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익목적 구현이라는 사업의 이해도
- 성곽마을에 적합한 현실적인 사업계획 수립
- 충신마을의 장기발전 모델 및 비전 등

② 사업수행계획 (60점)

-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적합성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연계 프로그램 (주민 커뮤니티 구축 등)
- 중장기발전 모델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도시재생과 연계한 지역명소화 방안,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등)

③ 홍보 및 활성화 방안 (20점) : 타겟별 홍보전략,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성(교류)방안 등

바. 적격자 결정방법

-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를 심사하며, 70점 이상 중 상위 고득점자 순으로 3인(업체) 이내를 적격자로 선정

※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적격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사. 심사결과 및 적격자 통보 : 심사위원회 개최 후 5일 이내

- 적격 대상자 개별 전화 및 메일로 통보

9. 가격입찰 일정

가. 접수기간 : 추후 통보

나. 입찰방법 : 온비드 홈페이지 (http://www.onbid.co.kr)

다. 참가방법 및 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 자격은 사업제안서 심사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입찰자에 한함
- 입찰참가자는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 화면에서 입찰서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다만, 공인 인증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함. 다만, 온비드의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마감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후 입찰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함
-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동일한 입찰자가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음
- 2인 이상의 공동명의 입찰은 불가함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일 시 : 접수일 다음날 10:00
- 장 소 : 주거환경개선과 입찰집행관 PC

※ 온비드에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

- 낙찰자 통보 : 개찰일 14:00 이후

마.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에서 지정하는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

○ 입찰보증금 납부는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분할 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

※ 입찰보증금을 입금 창구은행 이외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 보증금액 미만이거나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

○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수익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서울시로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바.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사.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홈페이지 및 서울특별시 전산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 홈페이지 (입찰공고 → 연기공고 → 취소공고)에 게재함

10. 세부운영계획서 작성 및 사용·수익허가 신청

○ 절 차

- 낙찰자 선정 발표 후 「세부운영계획서」 협의일 개별 통지 및 협상
- 서울시와 최종 선정된 자와 「세부운영계획서」 최종 확정
- 「세부운영계획서」가 확정된 이후 10일 이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허가신청 완료하여야 함

○ 신청장소 : 서울시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 구비서류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 사본(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 1부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1부

11. 사용료 납부

가. 1차년도 사용료는 낙찰가액과 부가가치세(낙찰가액의 10%)를 합한 금액으로 함
낙찰자가 감면대상인 경우 '낙찰가액 × (감면대상 예정가격/문화시설 예정가격)'을 낙찰가액으로 봄

나. 낙찰자는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에서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의거 납부

다. 낙찰자가 1차년도 사용료를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수익허가는 취소됨

12.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함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사용・수익허가조건, 운영계획서 작성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사업제안서 작성 및 입찰절차상의 모든 소요비용은 입찰자 본인의 부담으로 하며, 운영자 선정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상기내용 외 구체적인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온비드 이용에 관한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5321)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02-2133- 7257)로 연락주시기 바람

붙 임 1.~4. 각종 제출서류 서식 1부.
5. 위치도 및 대상지 현황 1부.
6. 사용·수익허가 조건 1부. 끝.

붙임 1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1호) 운영자선정 참가 신청서

접수번호(신청인 작성 불필요)				
신청인	성명(법인명칭)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E-mail			
	대표자(법인)		법인등록번호	

위와 같이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1호) 운영자 모집' 에 신청서 작성기준 및 모집공고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제안서(A4 20쪽 내외) 10부
2. 사업제안서와 별도로 사업제안서 내용을 이동형 저장장치(USB메모리, CD등)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
3. 주민등록등본(개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4.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법인) 1부
5.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2019. 8.

신 청 인(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접 수 증

1. 공 고 명 :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1호)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2. 접수번호 :
3. 제 출 자 :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1호) 운영자 모집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 8.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인)

붙임 2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1호)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작성 항목	세부 작성 내용	비 고
1. 기본구상	① 신청자(단체) 소개서 ② 충신마을에 대한 이해 ③ 운영 목표, 기본방향 및 운영프로그램 ④ 충신마을의 장기발전 모델 및 비전 등	
2. 세부사업별 운영계획	① 세부 운영프로그램별 추진계획 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연계프로그램 운영계획 (체험, 관람, 교육 등) ③ 시설운영계획 – 월 15일, 일 6시간 이상 – 관리 인력 – 방문객 편의제공 등 서비스 방안 등 ④ 충신마을의 장기발전을 위한 제안사업 등 – 지역명소화방안, 일자리창출 등	
3. 홍보 및 활성화방안	① 주민/방문객 타겟별 홍보전략 (리플릿, 홈페이지 등) ②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성(교류) 방안 등	

※ 상기 작성요령 중 '세부 작성내용'은 참고자료로 신청자가 운영계획서 작성방향에 따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음

붙임 3

서 약 서

귀 시에서 모집 공고한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1호) 운영자 모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운영자 선정평가를 위해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8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성 명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제공·활용 목적 : 사업과 관련 선정평가 및 사업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 제공·활용 내용

- 개인 식별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소속, E-mail, 휴대전화 등)

■ 제공·활용 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주민번호 외 개인식별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9. 8.

위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5

위치도 및 대상지현황

□ 위 치 도

□ 건물 현황

충신동 1-165

내부

□ 도 면

충신동 1-165 지상1층

붙임 6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

제1조(사용수익목적) ① 서울특별시는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재산을 충신동 내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역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다음 용도를 주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등 문화시설
   가. 지역문화복지시설 : 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등
   나.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 문화예술 기관·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가.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나. 어린이집·경로당·공동육아방 등 노유자시설
   다.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라. 마을관리센터, 북카페, 작은 마을박물관, 전시관, 마을공방 등

②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목적 및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 허가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가대상 재산을 사용·수익하여야 한다.

③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공익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9년 월 일로부터 2021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액 금 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하며, 다음 연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매년 새로이 결정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일시 납부의 경우"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 한꺼번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서울특별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 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회차	분납금	이자	납부기한	회차	분납금	이자	납부기한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허가일로부터 취소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납부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①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허가 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후 지체 없이 본인의 비용으로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위치에 소유자,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단, 표찰 부착이 불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찰을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비용부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의 행위제한)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제10호, 제11호는 제1조에서 정한 사용·수익의 목적에 시민을 위한 이용편의 제공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등 공공의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가 직접 공용 이나 공공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 허가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때
5. 허가받은 재산을 법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허가한 때
6.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기일까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7. 거짓 진술, 부실한 증명서류 제시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때
8.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때
9.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8조제1항에 의한 서울특별시의 지시 또는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10.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8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서비스 수준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사용·수익행위를 개시하지 않거나 사용·수익기간 중 30일 이상 사용·수익 행위를 하지 않아 허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 사용·수익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는 이에 따른다)
12. 업무과 관련된 민·형사소송이 확정되거나 업무관련자가 기소되는 등 사용·수익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청문) 서울특별시는 제1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시의 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로 서울특별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철회요청)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의 취소·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철회의 의사와 사유를 표시한 서면을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철회로 인하여 사용 재상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직원의 입회 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재산이 원상태로 반환되었다는 서울특별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

회복이 불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가 인정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현재의 상태대로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변상금 등의 징수) ①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철회 후 계속해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의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 하여 서울특별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등) ① 서울특별시는 허가대상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행에 필요한 지시·감독을 할 수 있고,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와 서울특별시는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지표를 포함한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사용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협약에서 정한 서비스 수준을 사용·수익허가기간 동안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는 제2항의 협약에서 정한 서비스 수준을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의 협약 준수의무 이행 여부를 연 2회 이상 평가한다.
⑤ 제2항에서 제4항은 제1조에서 정한 사용·수익 목적에 시민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입찰시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사용허가 전 서울시와 협상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활성화 사업 참여
   가. 지역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추진
   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체험)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다. 지역 내 공공사업시 기획, 디자인 등 자문 및 협업 추진
   라. 지역 내 다른 앵커시설 운영 지원 (공공 임대주택 포함)
      - 활용방안, 입주자 선정기준, 내부 규약 마련
      - 입주자 교육 및 연계한 마을활동 기획 등

2. 공간사용 원칙 준수
   나. 월 15회 이상, 일 6시간 이상 공간 실제 사용 ※ 특수 사유 사전 협의

② 서울시는 운영자가 작성한 「세부운영계획서」에 따른 분기별 운영실적 등을 포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나 시설 등을 수시 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관계법령의 적용 등) ① 본 허가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② 제18조제2항에 따라 체결된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와 제19조제1항에 따른 '세부운영계획서' 는 본 허가조건의 일부로 본다.

제21조(송달의 책임) 서울시는 사용허가 재산의 소재지로 운영에 관계되는 모든 통지를 하며, 사용허가 재산의 소재지로 송달된 문서 등 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책임을 진다.

제22조(효력발생) 이 허가서의 효력은 사용허가일로부터 발생하며, 제2조(사용기간)에서 명시한 기간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사용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계속된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945호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2호) 운영자 선정 입찰 재공고

충신권 성곽마을 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연극공유센터와 두레주택과의 연계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기 운영자와 함께할 지역맞춤형 운영주체를 추가로 선정하고자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 운영자 선정 입찰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9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2호)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나. 대상현황

구분	지 번	규 모(㎡)		재산평가액 (19년 감정평가액)	대상	연간사용료(천원) ※ 부가세 별도		
		토지	연면적			일반시설 (5.0%)	문화시설 (2.5%)	감면(1%)[1]
충신동	합 계	72	117.84	448,399천원		22,420	11,209	4,483
	1-165	72	1층 68.31	259,863천원	1호	6,497	3,248	1,299
					2호	6,497	3,248	1,299
			2층 49.56	188,536천원		9,426	4,713	1,885

○ 예정가격 : 3,248천원 ※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임
- 예정가격은 1년간 사용료 총액 금액이며, 입찰자는 가격입찰서 작성시 문화시설 예정가격 이상 작성·제출하여야 유효함.
- 첫해 사용료는 낙찰가액과 부가가치세(낙찰가액의 10%)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하되, 낙찰자가 감면대상인 경우 '낙찰가액 × (감면대상 예정가격/문화시설 예정가격)'을 낙찰가액으로 본다.
- 사용료 감면대상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제5항)
  - 운영자가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인 경우
  - 문화예술 창작 스튜디오로 운영하는 경우

2. 사용 용도

위 시설은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역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을 위한 행정재산으로서 다음 용도를 주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등 문화시설
- 지역문화복지시설 : 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등
-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 문화예술 기관·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 어린이집·경로당·공동육아방 등 노유자시설
-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 마을관리센터, 북카페, 작은 마을박물관, 전시관, 마을공방 등

3. 신청 대상

○ 충신마을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공동 입찰 불가)

※ '문화예술' 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운영 기간 : 2년 (1회에 한하여 3년내 갱신 가능)

○ 최초 2년 운영 후 갱신 신청시 운영실적 평가 등을 감안하여 재협약 추진

5. 입주 예정일 : 우리시와 협의 후 결정

6. 입찰 방법

○ 본 입찰은 '사업제안서'를 심사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70점이상, 최대 3명) 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2단계 경쟁입찰」 임.

○ '가격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시스템(http://onbid.co.kr, 이하 '온비드'라 한다)에서 시행하고, '사업계획서' 의 심사, 낙찰자 결정 등 기타 입찰과정은 서울특별시 주거환경 개선과에서 시행함.

7. 사업제안서 입찰일정

가. 현장 설명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허가조건 및 관련자료 등으로 갈음하며, 입찰참가자 희망시 현장 확인 가능

나. 사업제안서 접수

1) 공고기간 : 2019. 7. 25(목) ~ 8. 5(월), 10일간

2) 접수기간 : 2019. 8. 5(월) 10:00~17:00, 1일간

3) 접수장소 : 서울시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정책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 2133-7257 담당 이수연)
※ 현장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4) 제출서류

1. 운영자선정 참가 신청서 1부 (붙임 1)
2. 사업제안서 10부 (증빙서류 및 CD 등 이동형 저장장치와 함께 제출) (붙임2 참조)
3.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인감증명서 1부 (개인, 법인 1개월이내 발행분)
5. 서약서 1부 (붙임 3)
6.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개인에 한함) 1부. (붙임 4)

5)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 사업제안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제시한 '사업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심사 기준의 항목 순으로 작성
- 사업제안서는 A4용지로 20쪽 내외로 제출하되, 심사·평가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해야 하며, 서술내용이 부족하거나 불명확하여 발생하는 심사상의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제출된 사업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8. 사업제안서 심사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나. 선정위원 구성 : 총 7명

- 선정위원 : 해당분야 전문가, 교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 선정위원장 :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다. 선정위원회 운영방법
- 제안서 제출 역순에 따라 신청자가 10분 이내 발표 및 질의응답
- 개인은 반드시 본인 발표, 법인은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발표 허용
- 운영계획서 발표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단체)가 1인일 경우에도 적격성 여부 심사, 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선정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상인 유효한 입찰인 경우에 한함)

라.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지역활성화 사업 참여
- 지역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추진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체험)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지역 내 공공사업시 기획, 디자인 등 자문 및 협업 추진
  - 중심거리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공사업
  - 지역 내 다른 앵커시설 운영 지원 (공공 임대주택 포함)
    - 활용방안, 입주자 선정기준, 내부 규약 마련
    - 입주자 교육 및 연계한 마을활동 기획 등

※ 구체적 참여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은 협약 체결 전 '앵커시설 세부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서울시/종로구 협의 후 진행

마. 선정(심사) 기준 : 사업효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선정위원회' 에서 협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

① 사업 이해도 (20점)
-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익목적 구현이라는 사업의 이해도
- 성곽마을에 적합한 현실적인 사업계획 수립
- 충신마을의 장기발전 모델 및 비전 등

② 사업수행계획 (60점)
-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적합성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연계 프로그램 (주민 커뮤니티 구축 등)
- 중장기발전 모델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도시재생과 연계한 지역명소화 방안,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등)

③ 홍보 및 활성화 방안 (20점) : 타겟별 홍보전략,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성(교류)방안 등

바. 적격자 결정방법
-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를 심사하며, 70점 이상 중 상위 고득점자 순으로 3인(업체) 이내를 적격자로 선정

※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적격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사. 심사결과 및 적격자 통보 : 심사위원회 개최 후 5일 이내
- 적격 대상자 개별 전화 및 메일로 통보

9. 가격입찰 일정

가. 접수기간 : 추후 통보

나. 입찰방법 : 온비드 홈페이지 (http://www.onbid.co.kr)

다. 참가방법 및 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 자격은 사업제안서 심사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입찰자에 한함

- 입찰참가자는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 화면에서 입찰서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다만, 공인 인증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함. 다만, 온비드의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마감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후 입찰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함
-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동일한 입찰자가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음
- 2인 이상의 공동명의 입찰은 불가함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일 시 : 접수일 다음날 10:00
- 장 소 : 주거환경개선과 입찰집행관 PC

※ 온비드에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

- 낙찰자 통보 : 개찰일 14:00 이후

라.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에서 지정하는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

○ 입찰보증금 납부는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

※ 입찰보증금을 입금 창구은행 이외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 보증금액 미만이거나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

○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수익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서울시로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마.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바.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홈페이지 및 서울특별시 전산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 홈페이지 (입찰공고 → 연기공고 → 취소공고)에 게재함

10. 세부운영계획서 작성 및 사용·수익허가 신청

○ 절 차

- 낙찰자 선정 발표 후「세부운영계획서」협의일 개별 통지 및 협상
- 서울시와 최종 선정된 자와「세부운영계획서」최종 확정
-「세부운영계획서」가 확정된 이후 10일 이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허가신청 완료하여야 함

○ 신청장소 : 서울시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 구비서류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 사본(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 1부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1부

11. 사용료 납부

가. 1차년도 사용료는 낙찰가액과 부가가치세(낙찰가액의 10%)를 합한 금액으로 함
낙찰자가 감면대상인 경우 '낙찰가액 × (감면대상 예정가격/문화시설 예정가격)'을 낙찰가액으로 봄

나. 낙찰자는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에서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의거 납부

다. 낙찰자가 1차년도 사용료를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수익허가는 취소됨

12.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함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사용・수익허가조건, 운영계획서 작성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사업제안서 작성 및 입찰절차상의 모든 소요비용은 입찰자 본인의 부담으로 하며, 운영자 선정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상기내용 외 구체적인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온비드 이용에 관한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5321)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02-2133- 7257)로 연락주시기 바람

붙 임 1.~4. 각종 제출서류 서식 1부.
5. 위치도 및 대상지 현황 1부.
6. 사용·수익허가 조건 1부. 끝.

붙임 1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2호) 운영자선정 참가 신청서

접수번호(신청인 작성 불필요)				
신청인	성명(법인명칭)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E-mail			
	대표자(법인)		법인등록번호	

위와 같이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2호) 운영자 모집' 에 신청서 작성기준 및 모집공고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제안서(A4 20쪽 내외) 10부
2. 사업제안서와 별도로 사업제안서 내용을 이동형 저장장치(USB메모리, CD등)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
3. 주민등록등본(개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4.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법인) 1부
5.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2019. 8.

신 청 인(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접 수 증

1. 공 고 명 :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2호)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2. 접수번호 :
3. 제 출 자 :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2호) 운영자 모집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 8.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인)

붙임 2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2호)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작성 항목	세부 작성 내용	비 고
1. 기본구상	① 신청자(단체) 소개서 ② 충신마을에 대한 이해 ③ 운영 목표, 기본방향 및 운영프로그램 ④ 충신마을의 장기발전 모델 및 비전 등	
2. 세부사업별 운영계획	① 세부 운영프로그램별 추진계획 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연계프로그램 운영계획 (체험, 관람, 교육 등) ③ 시설운영계획 – 월 15일, 일 6시간 이상 – 관리 인력 – 방문객 편의제공 등 서비스 방안 등 ④ 충신마을의 장기발전을 위한 제안사업 등 – 지역명소화방안, 일자리창출 등	
3. 홍보 및 활성화방안	① 주민/방문객 타겟별 홍보전략 (리플릿, 홈페이지 등) ②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성(교류) 방안 등	

※ 상기 작성요령 중 '세부 작성내용'은 참고자료로 신청자가 운영계획서 작성방향에 따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음

붙임 3

서 약 서

귀 시에서 모집 공고한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2호) 운영자 모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운영자 선정평가를 위해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8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성 명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제공·활용 목적 : 사업과 관련 선정평가 및 사업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 제공·활용 내용

- 개인 식별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소속, E-mail, 휴대전화 등)

■ 제공·활용 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주민번호 외 개인식별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9. 8.

위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5

위치도 및 대상지현황

□ 위 치 도

□ 건물 현황

충신동 1-165

내부

□ 도 면

충신동 1-165 지상1층

붙임 6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

제1조(사용수익목적) ① 서울특별시는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재산을 충신동 내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역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다음 용도를 주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등 문화시설
   가. 지역문화복지시설 : 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등
   나.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 문화예술 기관·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가.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나. 어린이집·경로당·공동육아방 등 노유자시설
   다.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라. 마을관리센터, 북카페, 작은 마을박물관, 전시관, 마을공방 등

②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목적 및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 허가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가대상 재산을 사용·수익하여야 한다.

③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공익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9년 월 일로부터 2021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액 금 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하며, 다음 연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매년 새로이 결정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일시 납부의 경우"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 한꺼번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서울특별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 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회차	분납금	이자	납부기한	회차	분납금	이자	납부기한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허가일로부터 취소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납부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①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허가 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후 지체 없이 본인의 비용으로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위치에 소유자,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단, 표찰 부착이 불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찰을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비용부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의 행위제한)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제10호, 제11호는 제1조에서 정한 사용·수익의 목적에 시민을 위한 이용편의 제공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등 공공의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가 직접 공용 이나 공공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 허가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때
5. 허가받은 재산을 법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허가한 때
6.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기일까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7. 거짓 진술, 부실한 증명서류 제시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때
8.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때
9.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8조제1항에 의한 서울특별시의 지시 또는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10.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8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서비스 수준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사용·수익행위를 개시하지 않거나 사용·수익기간 중 30일 이상 사용·수익 행위를 하지 않아 허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 사용·수익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는 이에 따른다)
12. 업무과 관련된 민·형사소송이 확정되거나 업무관련자가 기소되는 등 사용·수익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청문) 서울특별시는 제1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시의 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로 서울특별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철회요청)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의 취소·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철회의 의사와 사유를 표시한 서면을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철회로 인하여 사용 재상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직원의 입회 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재산이 원상태로 반환되었다는 서울특별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가 인정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현재의 상태대로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변상금 등의 징수) ①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철회 후 계속해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의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 하여 서울특별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등) ① 서울특별시는 허가대상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행에 필요한 지시·감독을 할 수 있고,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와 서울특별시는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지표를 포함한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사용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협약에서 정한 서비스 수준을 사용·수익허가기간 동안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는 제2항의 협약에서 정한 서비스 수준을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의 협약 준수의무 이행 여부를 연 2회 이상 평가한다.
⑤ 제2항에서 제4항은 제1조에서 정한 사용·수익 목적에 시민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입찰시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사용허가 전 서울시와 협상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활성화 사업 참여
   가. 지역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추진
   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체험)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다. 지역 내 공공사업시 기획, 디자인 등 자문 및 협업 추진
   라. 지역 내 다른 앵커시설 운영 지원 (공공 임대주택 포함)
      - 활용방안, 입주자 선정기준, 내부 규약 마련
      - 입주자 교육 및 연계한 마을활동 기획 등

2. 공간사용 원칙 준수
나. 월 15회 이상, 일 6시간 이상 공간 실제 사용 ※ 특수 사유 사전 협의

② 서울시는 운영자가 작성한「세부운영계획서」에 따른 분기별 운영실적 등을 포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나 시설 등을 수시 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관계법령의 적용 등) ① 본 허가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② 제18조제2항에 따라 체결된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와 제19조제1항에 따른 '세부운영계획서' 는 본 허가조건의 일부로 본다.

제21조(송달의 책임) 서울시는 사용허가 재산의 소재지로 운영에 관계되는 모든 통지를 하며, 사용허가 재산의 소재지로 송달된 문서 등 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책임을 진다.

제22조(효력발생) 이 허가서의 효력은 사용허가일로부터 발생하며, 제2조(사용기간)에서 명시한 기간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사용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계속된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949호

2019년 보행환경개선 사업계획 수립(안) 열람 공고
(마 포 구)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74(2019.2.21.)호로 보행환경개선지구 신규 및 변경 지정 고시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안)을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마포구 DMC역 9번 출입구 주변 일대 보행환경개선 사업
가.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현황

자치구	위 치	지구면적	유 형	지정연도
마포구	DMC역 9번 출입구 주변 일대	55,000㎡	보행유발지구	2019

나. 마포구 DMC역 9번 출입구 주변 일대 보행환경개선 사업계획 수립(안)

1)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 성암로 횡단보도 2개소 설치
2) 해당 구역의 전통 및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보행자길의 조성
   - 변경 없음
3) 차도와 보도의 분리,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 고원식교차로 10개소 설치하여 30km/h 이하 속도 조정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 변경 없음
5)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
   - 변경 없음
6) 차량 통행량과 속도의 저감 방안
   - 월드컵북로48길(성암로 207~ 월드컵북로 344):속도제한 30km 지정
   - 월드컵북로44길(월드컵북로44길 81 ~ 월드컵북로48길 15):속도제한 30km 지정
   - 매봉산로(매봉산로 72~ 상암동주민센터):속도제한 30km 지정
   - 매봉산로2길(매보산로2길 1~ 월드컵북로48길 41):속도제한 30km 지정
   - 고원식 교차로 10개소 설치 및 과속방지턱 정비
   - 속도제한노면표시 15개소 설치
   - 교통안전표지판 7개소 설치
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통합 설치 방안
   - 변경 없음
8)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주차 개선 방안
   - 매봉산로 72앞 노상주차장 노면 개선 및 U형 볼라드 설치(7개소)
9)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량 변화 등 주변 지역의 교통에 미치는 영향
   - 변경 없음

다. 열람기간 : 열람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마. 열람장소 : 마포구청 교통행정과(☎3153-9643)
서울시청 보행정책과(☎2133-2418)

바. 기 타 : 보행환경개선 사업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95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67호(2019.6.7.) 및 78호(2019.6.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 "정동지역 한양도성 순성길 연결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계획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정동지역 한양도성 순성길 연결공사
2) 사업시행위치 : 중구 충정로1가 75-10 ~ 정동 27-3
3) 사업의 규모 : 보행로 신설 및 정비(폭원 2~3m, 길이 138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19.12.31.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지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중구 정동 27-44	학	64.1	64.1	서울특별시 (교육감)					

나. 열람기간 : 시보게재일 다음날부터 14일간(열람시간 09:00~18:00)
다.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역사도심재생과(☎02-2133-849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952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육충근	경기도 광명시 가림로219번길 *-*(철산동)	일시: 2019-05-13 13:43 장소: 목동교동측IC 내용: 제한 총중량 4.55톤 초과	처분일: 2019. 6.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9. 8. 31.
김형진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향나무길22번길 23, *동 ***호(강화읍)	일시: 2019-05-14 10:05 장소: 성산대교남단램프 내용: 제한 총중량 4.45톤 초과	처분일: 2019. 6.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9. 8. 31.
한남수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36-10, ***동 ****호 (군내면)	일시: 2019-05-21 05:40 장소: 가양역사거리 내용: 제한 폭 0.27미터 초과	처분일: 2019. 6. 27.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9. 8. 31.
권혁이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253번길 58, ***동 ***호 (가정동)	일시: 2019-05-21 05:40 장소: 목동교동측IC 내용: 제한 총중량 3.4톤 초과	처분일: 2019. 6. 27.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9. 8. 31.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이호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12번길 87, *동 ***호 (청학동)	일시: 2019-03-07 16:15 장소: 발산동 내용: 제한 축하중 1.65톤 초과	처분일: 2019. 4. 25.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9. 6. 30.
송석두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19번길 ***, ***호 (선화동)	일시: 2019-03-18 05:57 장소: 가양대교북단 사거리 내용: 제한 폭 0.28미터 초과	처분일: 2019. 4. 25.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9. 6. 30.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5. 납부기한: 2019. 8.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3%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960호

설계·감리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설계·감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설계·감리업 등록 신고사항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소재지	등록일자
㈜씨엔아이엔지니어링 (1.1.0.1.1.1.-3.8.3.2.7.6.7.)	박광태	전문설계업1종 (서울E-2-551) 전문감리업 (서울S-2-548)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14-1, 2층 (삼성동, 나라빌딩)	2019. 7. 1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14) 또는 녹색에너지과(☎ 02-2133-3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963호

2019년도 제9차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제9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심의일시: 2019. 7. 11.(목) 14:00 ~ 18:00
나. 심의장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다. 심의작품: 총 16건 23작품(조각 23작품)
라. 심의결과: 승인 12작품, 부결 11작품
마. 작품별 심의결과: 별첨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02-2133-27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제9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부결사유는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Gud/Committee_guide_list.jsp#list/1) 홈페이지 내 '2019년 제9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결과'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비 고
				승인	부결	
1	강서구 마곡도시개발구역 C11-3 블록 업무시설	조각	Forma-m7	O		
2	동대문구 답십리동 530-17 한성 아펠시티 오피스텔	조각	소중한 가치 - 역사와 신화로부터	O		
3-1	강동구 상일동 121번지 일대 고덕 아르테온	조각	항상 즐거운 연인		O	
3-2		조각	The complementary system 192		O	
3-3		조각	생명의 씨앗 움:트다		O	
3-4		조각	바람이 머무는 공간		O	
4	마포구 상암동 DMC 2-2블록 중앙미디어 네트워크 신사옥	조각	Station	O		
5	서대문구 남가좌동 175번지 일대 가재울 뉴타운 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각	숲의 사계절	O		

2019년 제9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부결사유는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Gud/Committee_guide_list.jsp#list/1) 홈페이지 내 '2019년 제9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결과'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	송파구 거여동 605-2번지 북위례 휴먼빌시티	조각	바벨(Babel)	O		
7	노원구 상계동 85-33번지 상계역 센트럴 푸르지오	조각	바람이 준 선물		O	
8	강서구 마곡지구 C13-7,8,15,16 블록 마곡 파인스퀘어	조각	새싹의 정기 • The vitality of the earth	O		작품의 설치효과를 높이고, 환경의 개선을 위해 식재, 식수를 가급적 지양할 것을 권고함
9-1	강동구 상일동 187번지 일대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조각	자라나는 보석의 정원-Growing gemstone garden		O	
9-2		조각	illumination Bulb	O		
9-3		조각	Reading art	O		
10	성동구 성수동 1가 656-335번지 서울숲 문화복합시설	조각	원심림	O		정기적 유지 · 보수 비용을 전체 예산안에 포함시킬 것
11-1	강동구 상일동 131번지 일대 고덕 센트럴 IPARK	조각	Vitality		O	
11-2		조각	삶은 사랑, 삶은 미소		O	

2019년 제9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부결사유는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Gud/Committee_guide_list.jsp#list/1) 홈페이지 내 '2019년 제9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결과'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	강서구 마곡지구 C2-6 블록 메이플레이스 마곡	조각	Colonna Infinita II		O	
13	노원구 월계동 633-31번지 인덕 I'PARK	조각	Iron space square	O		
14-1	마포구 대흥동 12번지 일대 신촌그랑자이	조각	Darkmatter 2010		O	
14-2		조각	시간을 가로지르는 나무	O		작품의 비례를 유지하여 3m 이내의 주물 제작을 하되, 평소 작가의 작품과 같이 질감을 유지하여 제작할 것을 권고함
15	서대문구 홍은동 19-19번지 일대 홍은 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각	화합의 물결		O	
16	송파구 풍납동 388-7, 389 2필지 잠실 올림픽 I'PARK	조각	Moving dream	O		

※ 승인된 작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민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969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중랑구상봉동 109-34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109-34외 7필지(109-35, 109-36, 109-37, 109-38, 109-40, 109-41)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 기간 : 2019. 7. 26. ~ 2019. 8. 8.

Ⅱ.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시청 주택공급과 역세권사업팀(☏02-2133-6297)

Ⅲ.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중랑구 상봉동 109-34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랑구 상봉동 109-34, -35, -36, -37, -38, -39, -40, -41	-	증) 907.0	907.0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유서

구 분	구 역 명	면 적(㎡)	결정사유	비 고
신 설	중랑구 상봉동 109-34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907.0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신설)하고자 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합 계	907.0	-	907.0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907.0	감) 907.0	-	-	
	준주거지역	-	증) 907.0	907.0	100.0	

나.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중랑구 상봉동 109-34일원	제3종 일반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907.0	• 용도지역 변경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획내용	비 고
A	-	중랑구 상봉동 109-34일원	907.0	공동개발 지정	

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계획내용	결정사유
-	• 공동개발 지정 - 중랑구 상봉동 109-34, -35, -36, -37, -38, -39, -40, -41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공동개발 지정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지정용도(1)	• 공동주택(주거복합) 주1)	• 중랑구 상봉동 109-34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불허용도(가)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위락시설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제외) • 장례식장 • 자동차 관련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주1)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사유서

구 분	계획내용	결정사유
-	• 지정용도 및 불허용도 신설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지정용도 및 불허용도를 결정(신설)하고자 함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 60% 이하	• 중랑구 상봉동 109-34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용적률	• 기본용적률 : 400% 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적용적률 이하 주1)	
최고높이	• 30m 이하	

주1) 상한용적률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적용함

■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사유서

구 분	계획내용		결정사유
-	용적률	• 기본용적률 : 400% 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적용적률 이하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적용함
	최고높이	• 30m 이하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코자 함

다. 용적률 적용(의무사항)

사업조건 항목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 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 기본공공기여율 – 대지면적의 10%이상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 54.21㎡ • 공공청사 부속토지 면적 – 환산부지면적 : 22.72㎡ – 토지지분면적 : 29.97㎡ – 합계 : 52.69㎡ • 공공기여율 : 106.90㎡(12.17%) – 54.21㎡ + 52.69㎡ = 106.90㎡(12.17%)	기본 용적률 4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 (중랑구 상봉동 109-34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건축물 용도구분	비주거 비율	• 15%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의무)	• 비주거비율 : 11.32%(394.86㎡) – 용적률 기준		
주택 건설 비중	주택 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 주거 : 비주거 = 3,093.22㎡(88.68%) : 394.86㎡(11.32%) – 비주거비율 15% 미만(용적률 기준) • 공공임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 7.04% : 92.96% (6세대) (77세대) • 공공임대주택 : 전용 17.51㎡, 31.59㎡ 계획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17.51㎡, 17.10㎡, 31.59㎡, 38.54㎡ 계획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이상 목적으로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		
주민공동 이용시설	커뮤니티 시설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의 주민커뮤니티 시설 설치	• 지상 2층에 109.55㎡ 계획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3-2-1 준용

※ 비주거 비율은 용적률기준으로 하되, 비주거시설은 지하2층~지상2층에서만 설치하여야 함

라. 공공기여계획

구 분	기본 용적률	공공기여율	계획내용	비 고
제3종일반 주거지역 → 준주거 지역	400% 이하	• 기본공공기여율 : 대지면적의 10% 이상 주1) – 87.86㎡ (10.00%)	• 공공기여율 : 106.90㎡(12.17%) – 공공임대부속토지면적 + 공공청사부속토지면적 = 54.21㎡ + 52.69㎡ = 106.90㎡(12.17%)	중랑구 상봉동 109-34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주1)「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적용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함

마.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대상	건축한계선	비 고
-	상봉동 109-34, 35, 36번지 동측 도로변	구역경계선으로부터 3.0m	차도형 전면공지
	상봉동 109-34번지 접한 봉우재로변	구역경계선으로부터 3.0m	보도형 전면공지
	상봉동 109-34, 40, 41번지 서측도로변	구역경계선으로부터 1.5m	보도형 전면공지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차량진출입불허구간	• 사업대상지내 남측 봉우재로(25m) 차량출입불허구간	

Ⅳ.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973호**

2020년도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접수 공고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거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서울광장 사용일을 미리 확정하고자 하오니, 2020년도에 서울광장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용신고서 제출 대상
   2020년도에 서울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 또는 '사용일'에 연례적인 기념 행사나 충분한 사전준비 및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를 하고자 하는 자

2. 사용신고 대상일
   2020.1.1~12.31 기간 중 사용기간이 6일 이내이며, 다음 표에서 안내한 사용제한 기간 및 장소가 아닌 경우

○ '20년도 사용제한 기간 및 장소(안)

제 한 내 용			사용 가능 장소
기 간	사 유	장 소	
' 20.01.01~02.28	스케이트장 설치·운영	잔디·동편	남측(1,200㎡)
' 20.03.20~04.30	잔디 식재 예정기간	잔디 광장	동편(2,000㎡),서편(1,200㎡)
' 20.11.15~12.31	스케이트장 설치·운영	잔디·동편	남측(1,200㎡)

3. 신고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8.5.(월) ~ 8.19(월) 09:00~18:00(공휴일제외)

나.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총무과(서울시청 본관 7층)

다. 제출서류 :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행사계획서, 사용위치도, 시설물설치 내역 및 원상복구 계획서

※ 공고문에 첨부된 신고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하고, 기타 연례적인 기념행사, 충분한 사전준비 및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임을 입증할 서류 제출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1) 방문접수 : 서울특별시 총무과(본청사 7층)

2) 우 편 : 2019.8.19. 18:00까지 서울시 우편 접수분에 한함

- 주 소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총무과

3) 모사전송 : 02-2133-0771

4) 전자우편 : euom@seoul.go.kr

※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한 접수는 반드시 접수사실 확인

4. 우선수리 대상 및 신고수리 제한 대상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참조)

가. 우선수리 대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경우

2) 연례적으로 광장을 사용한 행사로서 행사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행사

3) 그 밖에 공익적 행사로서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나. 신고수리 제한 대상

1)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2) 시민의 신체·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수리결과 공개

'서울특별시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도 신고수리 대상 행사를 선정하여 광장운영 홈페이지(http://plaza.seoul.go.kr/) 등에 2019년 10월중 공개 및 개별 통보

※ 수리되는 모든 행사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

6. 기타(유의)사항

가. 사용제한 기간 및 장소를 확인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용신고 수리에 따른 사용료는 추후별도 지정되는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용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신고서상에 기재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총무과 담당 엄삼용(☎ 2133-5665)
담당 박정수(☎ 2133-5627)

첨 부: 서울광장 사용신고서식 1부.

첨 부 2

서울광장 이용 준수사항 동의서

1. 시설물 설치

가. 시설물은 신고된 장소에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통행로 확보)

▹ 설치 금지 : 잔디광장, 서울도서관 앞, 지하철 1호선 5번 출구, 분수대 및 횡단보도 주변

나. 시설물 설치 · 철거 시에는 안전펜스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작업장 등의 안전기준을 준용

▹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서울시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음

다. 잔디광장 내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시설물(의자 등)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잔디보호대를 깔고 사용해야 하며, 당일 설치 및 철거를 원칙으로 함

▹ 우천 시에는 잔디보호를 위해 잔디광장에서의 행사는 금지됨(우천시 행사를 강행하여 잔디를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라. 광장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으며 광장 내 시설물 파괴 등 훼손된 경우 행사 주최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함

2. 소음기준 : ‘소음·진동 관리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된 기준 준수

<소음·진동 관리법상의 확성기 소음 기준>

시 간 대 별	아침, 저녁(05:00~07:00,18:00~22:00)	주간(07:00~18:00)	야간(22:00~05:00)
옥 외 설 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소음 기준>

대상 지역 \ 시간	주간(해뜬 후~해지기 전)	야간(해진 후~해뜨기 전)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5 이하	65 이하

3. 행사장 관리

가. 행사시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나. 1,000명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행사는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재해대처계획을 사용일 7일전까지 해당 구청에 제출하고 응급실 및 화장실을 설치

다. 폭죽, 불꽃놀이, 풍선 날리기, 종이 꽃가루 등 효과 연출용 물품사용 금지

라. 서울광장은 금연구역으로 행사장에 질서요원을 배치하여 금연 계도에 노력하여야 함

마. 광장 및 주변 도로에는 차량을 주차 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 별도의 장소를 확보 조치 (서울광장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견인조치 될 수 있음)

바. 행사시 이동상인 단속과 청소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광장 질서와 청결 유지

4. 기타 제한사항

가. 서울광장 사용신고 수리 후 제3자에게 서울광장 사용을 양도 · 양수(전대)할 수 없음

나. 광장 내에서 일체의 협력업체 등 기업광고, 각종 모금행위, 판매행위는 할 수 없음

다. 광장 내에서 음식물 취사 및 동물 반입이 예상되는 행사는 할 수 없음

라. 서울광장 내에서는 잔디보호를 위해 운동경기를 할 수 없으며, 참가비 또는 회비모금 등 광장 사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징수행위를 금지

마. 행사장 내에는 행사 안내소 및 행사안내 표지판 등 행사 관련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사용신고 순위)의 사용신고 순위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인 09시부터 18시까지만 적용하며, 같은 날 09시부터 18시까지 접수한 경우는 동일한 신고순위로 인정함

□ 위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 . . . 주 최 자 ○○○ (인) 신 고 자 ○○○ (인)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행 사 명 칭				
사 용 목 적				
사 용 일 시		년 월 일( ) 시 분 ~ 시 분 (시간 분)		
주 최 자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F A X	( )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직 업	
주최단체의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직 업	
연락책임자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직 업	
사 용 인 원			사용면적	㎡
행 사 내 용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서울광장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3.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
4. 안전관리계획서(시설물 설치 및 이용, 광장사용자, 기타 행사참여자 등 대상)

[별지 2-1호 서식]

행 사 계 획 서

☐ 행사개요

○ 일　　시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장　　소 :　　㎡(서울광장　　편)

○ 참석 인원 :　　명

○ 주최 · 주관 :

○ 내　　용 :

☐ 행사내용

일　　시	행　사　명	내　　용	비　고
	시 설 물 설 치		
	사 전　행 사		
	본　행　사		
	시 설 물 철 거		

☐ 추진대책

○ 참가자 안전 대책

○ 행사 후 청소대책

○ 광장주변 주정차 금지 및 대중교통이용 대책(안)

'서울광장 주변 도로는 주차 금지구역으로 불법 주차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될 수 있습니다.

주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광장 인근 주자창 등 별도의 장소를 확보하시기 바라며, 안내요원 등을 배치하여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상인 단속 대책

○ 설치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대책

☐ 기　　타

○ 무대설치 등 시안(상세 평면도, 입면도 등 ※ 별도첨부 가능)

※ 행사계획서는 자유로이 작성하되 파워포인트 등 제출 가능

〔별지 2-2호 서식〕

서울광장 사용 위치도

(행사장소, 시설물 배치 등 표기)

■ 사용장소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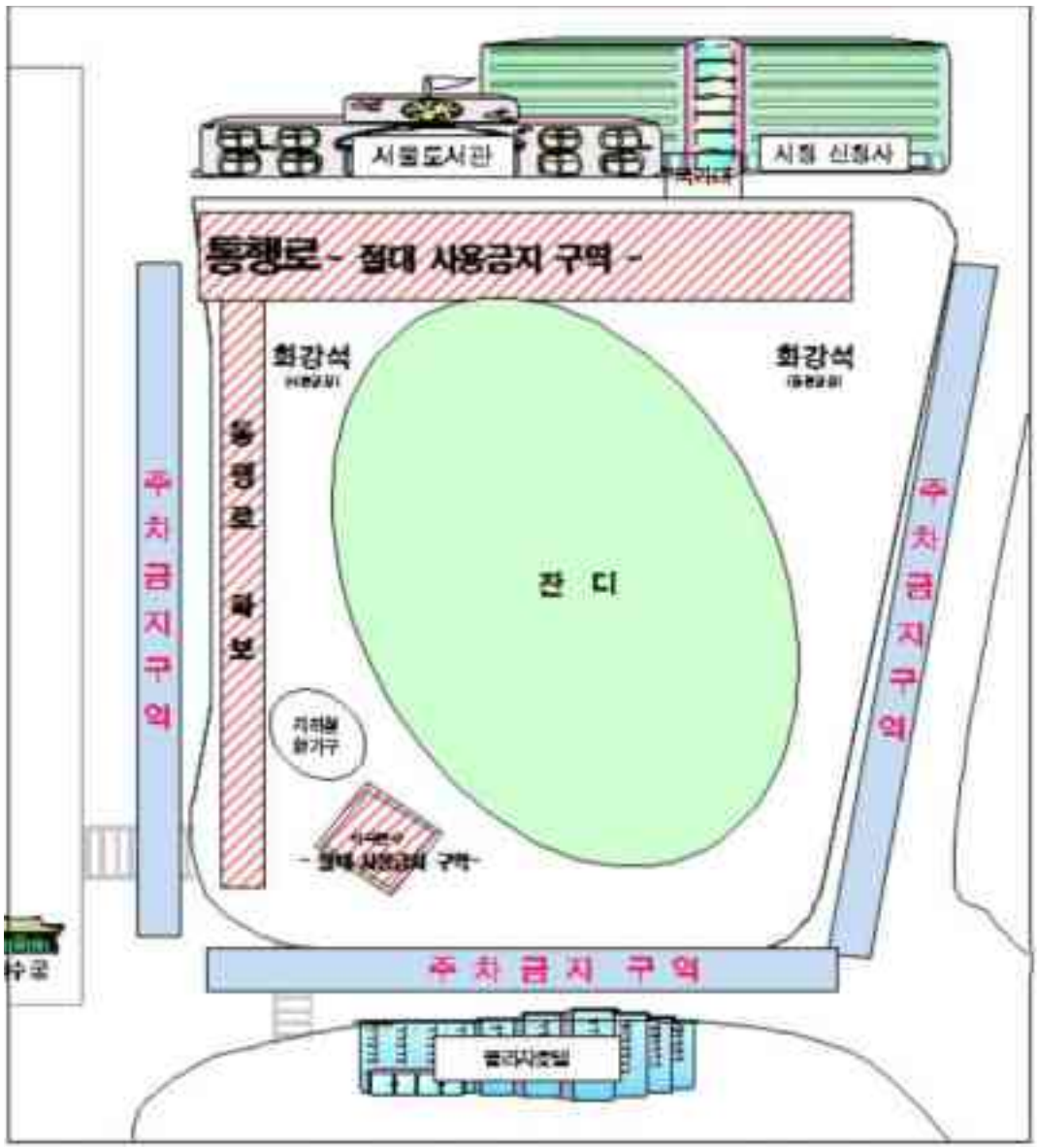

▷ 사용 위치도는 서울광장을 사용하시는 분의 편의를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음

▷ 광장전체면적 : 13,207㎡(잔디부분 6,449㎡, 잔디외곽 화강석 부분 6,758㎡)

▷ 서울광장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 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 될 수 있음

〔별지 2-2호 서식 참고자료〕

서울광장 실측 도면

▷ 서울광장 실측도면은 서울광장 내에 행사용 천막이나 무대 설치 등을 위한 위치 안내 등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며, 실제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별지 2-3호 서식〕

시설물 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 시설물 설치 내역

시 설 명	규 격(m) (가로×세로×높이)	사 용 용 도	개 수

※ 행사를 위해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 기재 (동원장비, 무대, 테이블, 의자, 현수막, 음향 등)

- 현수막 등에 새겨진 문구를 “사용용도”란에 기재, 음향 : 스피커 출력용량 반드시 기재

☐ 원상복구 계획 : 시설물 철거, 쓰레기 수거방법 등

○ 시설물 철거

–

–

–

○ 쓰레기 수거방법(청소용역 계약 등)

–

–

[별지 2-4호 서식]

안전관리계획서

☐ 행사 개최개요

○ 참여 예상 인원 : 명

○ 주요내용·시설물 :

예시) 문화공연 - 행사용 무대 1동, 천막 20 동, 홍보 조형물 1개 등

☐ 안전 관리요원

○ 총괄책임자 : 성명 전화번호

○ 위치별배치

위 치 별	인 원	책임자(전화번호)	안전관리요원
광장 동편			
분수대·환풍구			
서편·5번출구			
잔디광장			
광장주변 도로			

☐ 주요시설물보호

시설물별	조 치 사 항	책 임
무대	안전펜스 설치	
분수대·환풍구	안전펜스 설치, 안전요원 배치	
서편·5번출구	안전요원 배치	
잔디광장	안전요원 배치	
광장주변 도로	주정차금지, 안전요원 배치	

☐ 비상시 조치사항

발생유형별	조 치 사 항	책 임
신고	경찰서·소방서 전화	
응급의료	구급차 전화( )	
차량통제	남대문경찰서 교통과(2096-8345)	

□ 시간별 안전대책

시간	세 부 내 용	안 전 조 치 방 안

□ 기타 안전대책

○ 보험가입 여부 : 가입, 미가입 ※ 해당 부분 O로 표시

○ 응급의료 조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문화 공연·행사·축제 등은 119 구급요원 등을 현장에 배치

▹ 민간단체의 공연·행사·축제·집회(시위) 등은 사전에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민간 이송업체 또는 병원구급차 이용 조치

○ 기타, 야간 행사의 경우 참여 시민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안전선(safety line) 등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증가 배치

※ 위 사항을 포함하여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행사 특성에 맞게 별도의 안전관리계획 제출 가능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998호

측량업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측량업 등록 신고사항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등록일자
일반측량업 (04-004469)	나우이엔씨(주) (220-86-05995)	김종율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319, 402호 (역삼동, 조우빌딩)	2019. 7. 2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14) 또는 토지관리과(☎ 02-2133-46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19-5호

2019년 수시 재산등록사항 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사항공개목록

소속	서울시설공단		직위	(전)이사장		성명	이지윤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증가액 (실거래가격)	변동액 감소액 (실거래가격)	현재가액	변동사유
▶ 토지(소계)			1,875	1,941	0	3,816	
본인	임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842번지 790.00㎡	1,875	1,941 (3,816)	0	3,816	
▶ 건물(소계)			708,000	80,000	300,000	488,000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건물 114.92㎡	408,000	80,000	0	488,000	
배우자	아파트 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궁전아파트 건물 0.00㎡ (건물 128.67㎡ 감소)	300,000	0	0	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소계)			37,765	0	0	37,765	
본인	자동차	2004년식 트라제XG 배기량(1,991cc)	2,765	-	-	2,765	
본인	자동차	2018년식 그랜저 배기량(2,400cc)	17,500	-	-	17,500	
배우자	자동차	2018년식 그랜저 IG 배기량(2,400cc)	17,500	-	-	17,500	

▶ 예금(소계)			437,386	6,247	128,618	315,015	
본인		교보생명보험 23,000, 국민은행 4, 미래에셋대우(주) 74, 삼성생명보험 27,000, 우리은행 200,525(21,422 감소), 푸르덴셜생명보험 1,657(1,105 증가), 한국투자증권 305(3 증가), 한화투자증권 0(4 감소)	272,883	1,108	21,426	252,565	장남 장교 급여 및 저축, 생활비 등 기타 지출, 집 리모델링 비용 등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36,205(77,328 감소), 국민은행 4, 삼성증권 5, 스탠다드차타드은행 11, 씨티은행 10, 우리은행 49, 중소기업은행 2, 키움닷컴증권 13(29,765 감소), 한화투자증권 0(12 감소)	143,404	0	107,105	36,299	
차남		국민은행 75(87 감소), 스탠다드차타드은행 1(1 증가), 한국카카오은행(주) 73(73 증가)	162	74	87	149	
장남		(주)KEB하나은행 31, 국민은행 12,342(1,193 증가), 군인공제회 1,290(212 증가), 신한은행 12,336(3,660 증가), 우리은행 3	20,937	5,065	0	26,002	
▶ 유가증권(소계)			0	27,800	0	27,800	
배우자	상장주식	한국항공우주산 800주(800주 증가)	0	27,800	0	27,800	
▶ 채무(소계)			513,950	0	402,263	111,687	
본인	금융기관채무	국민은행 11,887(2,263 감소), 삼성생명보험 9,000, 우리은행 90,800	113,950	0	2,263	111,687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임대 보증금 감소	400,000	0	400,000	0	
총 계			671,076	115,988	26,355	760,709	증감액: 89,633천원 (가액변동: 81,941천원)

구 고 시

◈ 용산구고시 제2019-9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20호』와 『용산구고시 제2016-123호』로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정류장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용산구 한강로3가 65-9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을 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도로과(☎2199-785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7월 25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 : 용산구 한강로3가 65-9일원(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변경없음)
다. 사업의 명칭 : 한강로3가 65-9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조성사업(변경없음)
라.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1) 중(국) 3-10호선 : 폭 12~13m, 연장 63m
  2) 중(국) 3-15호선 : 폭 11~12m, 연장 123m
마. 사업 시행자 : 엘에스케이플러스(주) 대표 강지훈(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20길 83)(변경없음)
바.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19.12.31.(변경)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물건조서 : 별첨(변경없음)

※ 별첨

토 지 조 서

■ 총괄집계표 (전체)

단위 : 필지 / 면적 (㎡)

구분	사유지(필지 / 면적))	계 (필지 / 면적)	비 고
계	3 / 656.4	3 / 656.4	
대	2 / 482.2	2 / 482.2	
철	1 / 174.2	1 / 174.2	

■ 편입토지조서 (사유지)

번호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주		관 계 인		
			지적 면적	편 입 면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소 계	중로 3-10	중로 3-15					
1	65-325	대	3,404.6	371.1	106.35	264.75	강경식	경기도 과천시 뒷골로 80-26 (과천동)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수탁자
2	65-474	철	174.2	174.2	9.8	164.4	강경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9-69 (한강로3가)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수탁자
3	65-519	대	111.1	111.1	-	111.1	강경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267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수탁자
계			**3,689.9**	**656.4**	**116.15**	**540.25**					

◈ 용산구고시 제2019-10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14호(2018.10.4.)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동빙고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변경) 사업을 시행하고자 용산구공고 제2018-1010호(2018.11.29.)로 열람공고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7월 25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6가 69-162, 69-163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변경) 사업
○ 명칭 : 동빙고근린공원
다. 사업의 규모 및 내용
○ 면적 : 55,740.7㎡(사업부지 : 26,849㎡)
○ 내용 : 근린공원 재조성(청소년수련시설 및 국공립어린이집 등 포함)
라. 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 성명(명칭) : 남유산업(주) 대표 김영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6가 69-162, 69-163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1단계(공원부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 2020. 6. 30일까지
○ 2단계(건축부분) : 1단계 착수일로부터 6개월 후 ~ 2020. 6. 30일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따로붙임
사. 관계서류 비치 : 용산구청 공원녹지과(☎02-2199-7593)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1부.

토 지 조 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사업시행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	용산동 6가	69-162	대	13,048.0	13,048.0	남유산업(주)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6가 69-162	(주)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서빙고동 지점)	근저당권	
2	용산동 6가	69-163	대	13,801.0	13,801.0	남유산업(주)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6가 69-162	(주)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서빙고동 지점)	근저당권	
합계				26,849	26,849						

◈ 용산구고시 제2019-101호

도시계획시설(새꿈어린이공원 조성사업)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폐지 고시

1. 용산구 고시 제2019-48호(2019. 4. 18.)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새꿈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폐지를 위해 용산구 공고 제2019-614호(2019. 7. 4.)로 14일 이상 공람공고(시보게재) 실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 폐지를 고시합니다.

3. 실시계획 인가 폐지에 대한 관계서류는 서울시보 및 용산구청(공원녹지과 ☎ 02-2199-7603)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사업 폐지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용산구청(공원녹지과)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25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폐지**) :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8-1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폐지**)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2) 사업의 명칭 : 새꿈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내용·면적(**폐지**) : 토지보상(106.5㎡)
라. 사업의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폐지**)
  1) 시행자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용산구청 7층 공원녹지과)
마.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폐지**) : 실시계획인가 고시 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소유권 및 그외의 권리의 명세(폐지) : 별 첨
사. 실시계획 폐지사유 : 실시계획 사업계획(내용) 변경으로 인한 폐지
아. 고시방법 : **서울시보(공보)에 게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폐지)

연번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계										
1	용산구 동자동 8-1	대지	106.5	106.5	○○○○○ ○○○○○	서울시 ○○○구 ○○○동 ○○-○				새꿈 어린이 공원

◈ 용산구고시 제2019-102호

도시계획시설(꿈나무소공원 조성사업)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폐지 고시

1. 용산구 고시 제2019-49호(2019. 4. 18.)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꿈나무소공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폐지를 위해 용산구 공고 제2019-615호(2019. 7. 4.)로 14일 이상 공람공고(시보게재) 실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 폐지를 고시합니다.

3. 실시계획 인가 폐지에 대한 관계서류는 서울시보 및 용산구청(공원녹지과 ☎ 02-2199-7603)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사업 폐지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용산구청(공원녹지과)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25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폐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1-86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폐지)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2) 사업의 명칭 : 꿈나무소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내용·면적(폐지) : 토지보상(1,412.6㎡), 건물보상(1동/137.47㎡)
라. 사업의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폐지)
  1) 시행자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용산구청 7층 공원녹지과)
마.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폐지): 실시계획인가 고시 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의 명세(폐지) : 별첨
사. 실시계획 폐지사유 : 실시계획 사업계획(내용) 변경으로 인한 폐지
아. 고시방법 : **서울시보(공보)에 게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폐지)

연번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계										
1	용산구 이촌동 301-86	대지	1,412.6	1,412.6	○○○○○ ○회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빌딩 ***호				꿈나무 소공원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폐지)

연번	지번	물건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주) 또는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계										
1	용산구 이촌동 301-86	건물	철근콘크리트 시멘트벽돌 슬래브지붕2층 파출소	137.47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경찰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관리청	이촌 파출소

◈ 용산구고시 제2019-103호

도시계획시설(이촌소공원 조성사업)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폐지 고시

1. 용산구 고시 제2019-70호(2019. 5. 30.)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이촌소공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폐지를 위해 용산구 공고 제2019-616호(2019. 7. 4.)로 14일 이상 공람 공고(시보게재) 실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 폐지를 고시합니다.

3. 실시계획 인가 폐지에 대한 관계서류는 서울시보 및 용산구청(공원녹지과 ☎ 02-2199-7603)

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사업 폐지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용산구청(공원녹지과 ☎ 02-2199-76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25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폐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1-60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폐지**)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2) 사업의 명칭 : 이촌소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내용·면적(**폐지**) : 토지보상(1,736.9㎡)
라. 사업의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폐지**)
 1) 시행자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용산구청 7층 공원녹지과)
마.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폐지**): 실시계획인가 고시 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소유권 및 그외의 권리의 명세(**폐지**) : 별 첨
사. 실시계획 폐지사유 : 실시계획 사업계획(내용) 변경으로 인한 폐지
아. 고시방법 : 서울시보(공보)에 게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폐지)

연번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계										
1	용산구 이촌동 301-60	공원	1,736.9	1,736.9	○○○○○ ○회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빌딩 ***호				이촌 소공원

◈ 양천구고시 제2019-5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 제2001-15호(2001.03.26.)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 제2019-51호(2019.07.11.)로 변경 결정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양 천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도로 교차부분의 확폭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경미한 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61	8	국지 도로	525	신정동 1157-1	신정동 653-6	일반 도로	-	양천구 고시 제2001-15호 ('01.03.26.)	근린공원 중복결정 (2,163㎡)
변경	소로	2	161	8~10	국지 도로	525	신정동 1157-1	신정동 653-6	일반 도로	-		근린공원 중복결정 (2,163㎡)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161	소로2-161	· 일부구간(L=52m) 도로폭원 변경 W = 8m → 8~10m	· 도로 교차부분의 종단경사 완화를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붙임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양천구청 도시계획과(☎02-2620-350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붙임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 강남구고시 제2019-104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주차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10호(2015.12.24.)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17-73(2017.5.26.)호로 도시관리계획(주차장)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역삼동 635-1번지 일대 역삼문화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주차장) 사업을 시행하고자,
2. 서울특별시 강남구공고 제2019-1208호(2019.6.20.)로 열람공고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5일
강 남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1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사업
사업의 명칭 :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다. 사업면적 : 4,534.32 ㎡
라. 사업의 내용
- 규 모 : 지하4층/지상1층
- 내 용 : 지하주차장, 지상역삼문화공원 조성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삼성동)
바. 사업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별첨
아. 고시방법 : 서울시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교통행정과(☎02-3423-63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지하))사업

● 사 업 명 :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상 면적 (㎡)	수용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성 명	주 소	종 류	성 명	주 소
1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1	공원	20,091	4,534.32	서울 특별시 강남구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삼성동)			

◈ 송파구고시 제2019-95호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96호(2015.09.24.)로 결정(변경)된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9년 제3차 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9. 5.22.)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송 파 구 청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내 방이동 36-2번지에 건축물 신축을 위해 주민제안(도로확폭, 건축한계선 및 전면공지 축소 등)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천동, 방이동 올림픽로 주변	858,791 (165.60)	-	858,791 (165.60)	서공 제397호 ('84.7.4)	-

* 면적의 ( )는 사업대상지 내 사항 임.

Ⅲ.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

■ 도로 변경(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63	6	국지 도로	253	방이동 28-3	방이동 34-9	일반 도로	-	건고244호 ('71.5.5)	
변경	소로	3	63	6~7 (7)	국지 도로	253 (8.95)	방이동 28-3	방이동 34-9	일반 도로	-	건고244호 ('71.5.5)	

* 폭원, 연장의 ( )는 금회 확폭구간 임.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구번호	위 치	면적(㎡)		계획내용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C7-7	방이동 36-2	165.60	156.60	단독개발	단독개발	도로 기부채납 (감 9.0㎡)

■ 건축물의 배치 및 대지내 공지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배치	건축 한계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한계선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벽면과 부속 시설이 설치될 수 없음 -방이지역 : 1~4m (대상지: 2m)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한계선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벽면과 부속 시설이 설치될 수 없음 -방이지역 : 1~4m (대상지: 1m)	결정도 참조
대지내 공지	전면 공지	• 보도형 및 차도형 전면공지를 구분하여 지정 -방이지역 : 1~4m (대상지: 2m/ 차도형)	• 보도형 및 차도형 전면공지를 구분하여 지정 -방이지역 : 1~4m (대상지: 1m/ 차도형)	결정도 참조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도로, 건축선, 전면공지	◦ 사업부지 서측 연접도로 1m 확폭 ◦ 사업부지 서측 건축선 및 전면공지 폭원 1m 축소	◦ 지구단위계획(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 개발기준)에 의한 연접도로 확폭 및 이에 따른 건축선/전면공지 폭원축소	

3 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Ⅳ.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2147-3002)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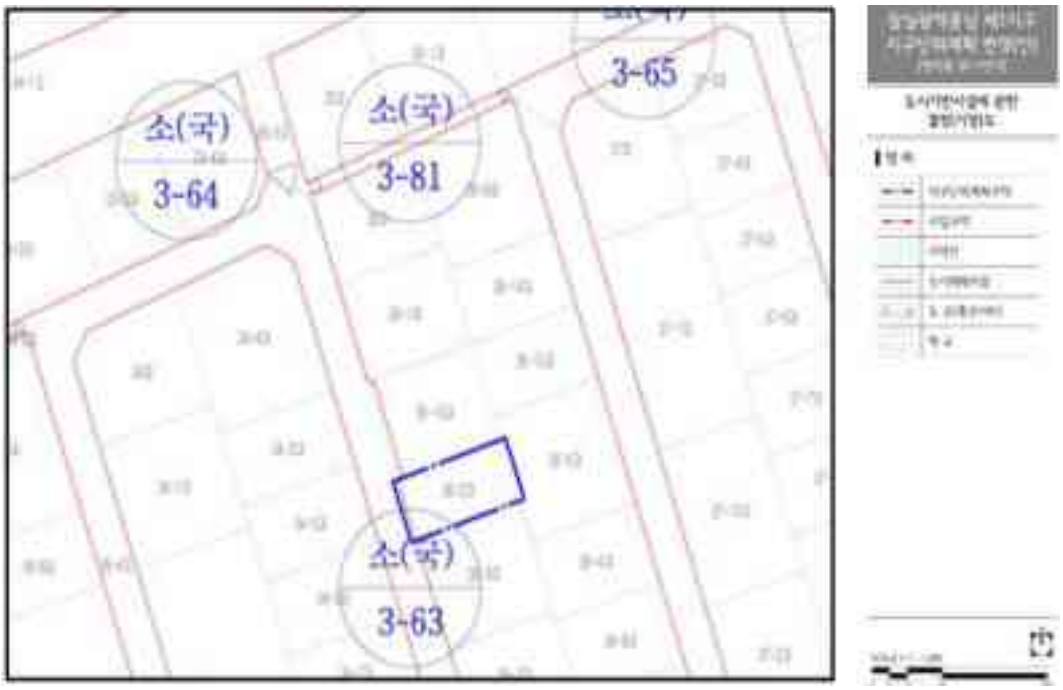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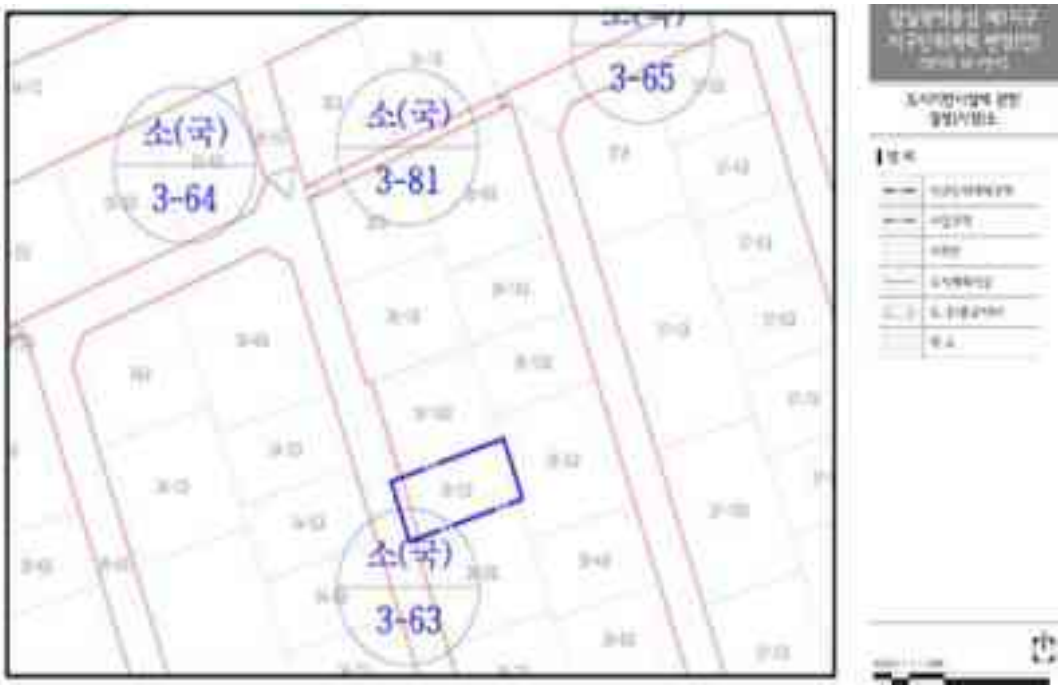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송파구고시 제2019-96호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96호(2015.09.24.)로 결정(변경)된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9년 제4차 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9. 6.28.)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송 파 구 청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내 방이동 43-6,7번지에 건축물 신축을 위해 주민제안(도로확폭, 건축한계선 및 전면공지 축소 등)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천동, 방이동 올림픽로 주변	858,791 (497.3)	-	858,791 (497.3)	서공 제397호 ('84.7.4)	-

* 면적의 ( )는 사업대상지 내 사항 임.

Ⅲ.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

■ 도로 변경(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7	10	국지 도로	707	방이동 22-5	방이동 51-5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변경	소로	1	7	10~11 (11)	국지 도로	707 (33.5)	방이동 22-5	방이동 51-5	일반 도로	-	건고244호 (' 71.5.5)	

* 폭원, 연장의 ( )는 금회 확폭구간 임.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구번호	위 치	면적(㎡)		계획내용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D1-6	방이동 43-6	234.6	463.8	단독개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감 33.5㎡)
	방이동 43-7	262.7		단독개발		

■ 건축물의 배치 및 대지내 공지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배치	건축 한계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한계선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벽면과 부속시설이 설치될 수 없음 -방이지역 : 1~4m (대상지: 2m)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한계선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벽면과 부속시설이 설치될 수 없음 -방이지역 : 1~4m (대상지 남측: 1m)	결정도 참조
대지내 공지	전면 공지	• 보도형 및 차도형 전면공지를 구분하여 지정 -방이지역 : 1~4m (대상지: 2m/ 보도형)	• 보도형 및 차도형 전면공지를 구분하여 지정 -방이지역 : 1~4m (대상지 남측: 1m/ 보도형)	결정도 참조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도로, 건축선, 전면공지	◦ 사업부지 남측 연접도로 1m 확폭 ◦ 사업부지 남측 건축선 및 전면공지 폭원 1m 축소	◦ 지구단위계획(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 개발기준)에 의한 연접도로 확폭 및 이에 따른 건축선/전면공지 폭원축소	

3 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 가결)

■ 조건사항

- 도로 1m 기부채납에 따른 50m 높이완화를 수용하되, 차량진입부에서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출차주의등, 볼라드, 험프식 진입로 등 안전대책 고려할 것.
- 사업대상지내 부설주차장 설치대수를 54대(0.62대/실) 이상 유지할 것.

Ⅳ.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2147-3002)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강동구고시 제2019-98호

도시계획시설(일자산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44호(2018.08.02.)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되었으며, 강동구 공고 제2019-330호(2019.2.21.)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된 일자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푸른도시과(☎02-3425-6444)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9년 7월 25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산97번지외 2필지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2)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성내동)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시설(일자산도시자연공원)사업
라. 사업의내용: 공원조성(토지보상)
마. 규모(변경없음): 토지보상 4,667㎡
바. 사업기간(변경없음):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1. 12. 31.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따로붙임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푸른도시과(☎02-3425-64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연번	변경사항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변경(추가)사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3필지		37,274	4,667							
1	당초	산97	임야	6,108	843	강대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32, 203동 2303호(구의동,현대아파트)	414/6108				
						박종락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7길 17(수유동)	469/6108				
						최병기	광주광역시 북구 대천로157번길 104-6(문흥동)	437/6108				
						서근배	경기도 의왕시 내손중앙로 11, 1104동 702호 (의왕내손이편한세상아파트)	534/6108				
						김용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64길 22(천호동)	207/6108				
						한천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42, 21동 603호(잠실동, 우성아파트)	283/6108				
						이상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21동 603호(잠실동, 우성아파트)	283/6108				
						이근영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아산만로 1336	247/6108				
						최경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45가길 89, 302동 205호(월계동, 청백아파트)	263.5/6108				
						최기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12길 11-8(사근동)	263.5/6108				
						최기영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길 18(사근동)	365/6108	김경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8길 16-14, 301호	근저당권	
						유명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48, 102동 202호(잠실한솔아파트)	247/6108				
						조상현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계로 114-31, 103동 902호(하왕십리동, 금호베스트빌)	207/6108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근저당권	
						안영순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계로 114-31, 103동 902호(하왕십리동, 금호베스트빌)	207/6108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근저당권	
						정재홍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67, 502동 210호(잠실동,아파트)	274.5/6108				
						김영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67, 502동 210호(잠실동,아파트)	274.5/6108				
						윤소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55, 303동 503호(평촌동,초원아파트)0	190/6108				
						김영풍	전라남도 목포시 송림로 30(용당동)	241/6108				
						송인영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44나길 1,304호(가락동)	207/6108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근저당권	
						백용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30길 57, 에프동 2509호(도곡동,타워팰리스)	494/6108				

연번	변경사항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변경(추가)사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변경	산97-2	임야	780	780	강대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32, 203동 2303호(구의동,현대아파트)	414/6108				
						박종락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7길 17(수유동)	469/6108				
						최병기	광주광역시 북구 대천로157번길 104-6(문흥동)	437/6108				
						서근배	경기도 의왕시 내손중앙로 11, 1104동 702호 (의왕내손이편한세상아파트)	534/6108				
						김용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64길 22(천호동)	207/6108				
						한천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42, 21동 603호(잠실동, 우성아파트)	283/6108				
						이상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21동 603호(잠실동, 우성아파트)	283/6108				
						이근영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아산만로 1336	247/6108				
						최경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45가길 89, 302동 205호(월계동, 청백아파트)	263.5/6108				
						최기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12길 11-8(사근동)	263.5/6108				
						최기영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길 18(사근동)	365/6108	김경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8길 16-14, 301호	근저당권	
									국(성동세무서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97	압류	추가
						유명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48, 102동 202호(잠실한솔아파트)	247/6108				
						조상현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계로 114-31, 103동 902호(하왕십리동, 금호베스트빌)	207/6108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근저당권	
						안영순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계로 114-31, 103동 902호(하왕십리동, 금호베스트빌)	207/6108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근저당권	
									조상현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계로 114-31, 103동 902호(하왕십리동, 금호베스트빌)	근저당채무자	추가
						정재홍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67, 502동 210호(잠실동,아파트)	274.5/6108				
						김영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67, 502동 210호(잠실동,아파트)	274.5/6108				
						윤소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55, 303동 503호(평촌동,초원아파트)	190/6108				
						김영풍	전라남도 목포시 송림로 30(용당동)	241/6108				
						송인영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44나길 1,304호(가락동)	207/6108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근저당권	
						백용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30길 57, 에프동 2509호(도곡동,타워팰리스)	247/3054				등기부상의 지분을 표시와 일치

연번	변경 사항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변경(추가) 사유
						성명	주 소	지분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	당초	산120	임야	26,499	2,436	직산조씨이조참판진상지직계손종친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05-3		한국전력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87	철탑및송전선의건설과소유	
2	변경	산120-1	임야	2,436	2,436	직산조씨이조참판진상지직계손종친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05-3		한국전력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87	지상권	권리의 종류를 등기부상 표시로 정정
3	변경 없음	산133	임야	1,451	1,451	직산조씨이조참판진상지징계손종친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05-3					

구 공 고

◈ 중구공고 제2019-55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47호(2019. 5. 2.)로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서울역 고가도로)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본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 기간 내에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25일
중 구 청 장

가. 실시계획(안)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37번지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도시계획시설(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개설 사업
3) 사업시행규모 및 면적
- 규 모: L=20m, B=4~5m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
- 면 적: 90.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주식회사 안다자산운용 대표자 박형순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18, 9층(논현동, SB타워)
5) 사업의 착수, 준공 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4개월 內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참조
나.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간
다. 열람장소: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5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번 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외의 권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관 계 인	
									성 명	주 소
1	중구 남대문로5가	537	대	3,778.5	28.5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	-	-
2	중구 남대문로5가	520	도	3,769.7	61.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3	중구 남대문로5가	84-15	도	15,607.4	0.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계		-	-	23,155.6	90.4	-	-	-	-	-

◈ 노원구공고 제2019-712호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56호(2016.8.25.)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노원구공고 제2019-588호(2019.6.13.)로 실시계획 인가(변경) 공고된 노원구 상계동 138-235번지 일대 수락산도시자연공원 조성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고,

2. 편입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련서류는 노원구 푸른도시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오니 이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공고 기한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25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38-235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2) 명　　칭 : 수락산도시자연공원 조성
  3) 사업내용 : 토지보상
다. 사업면적 : 17,390㎡
라.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마.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
바.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간
사. 공고방법 : 시보게재
아.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자. 열람장소 : 노원구청 푸른도시과(☎02-2116-3966)
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 등 권리명세 : 붙임

토 지 조 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도시자연공원)

변경 전											변경 후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이용 상황	지적 (㎡)	편입 면적 (공유지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이용 상황	지적 (㎡)	편입 면적 (공유지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상계동 138-235	도로	도로	109	109 (36/5238)	김건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11길 29, 102동 302호 (논현동)				1							좌 동			
2	상계동 138-172	잡종지	잡종지	149	149	김건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11길 29, 102동 302호 (논현동)	노원구		압류	2							좌 동			
3	상계동 138-173	잡종지	잡종지	149	149	김건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11길 29, 102동 302호 (논현동)				3							좌 동			
4	상계동 138-174	잡종지	잡종지	149	149	김건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11길 29, 102동 302호 (논현동)				4							좌 동			
5	상계동 산150-1	임야	임야	27,798	1,756 (1/3)	윤옥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37, 51동 1302호(광장동, 워커힐아파트)				5	상계동 산150-1	임야	임야	27,798	1,843 (1/3)	윤옥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37, 51동 1302호(광장동, 워커힐아파트)			
					1,756 (1/3)	밋셀 원희윤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62 워커힐아파트 51동 1302호									1,843 (1/3)	밋셀 원희윤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62 워커힐아파트 51동 1302호			
					1,756 (1/3)	쉴라 경희윤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62 워커힐아파트 51동 1302호									1,843 (1/3)	쉴라 경희윤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62 워커힐아파트 51동 1302호			
6	상계동 산150-5	임야	임야	2,583	2,583 (1/2)	배윤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75, 102동 1403호 (구월동, 구월유승한내들퍼스티지)				6							좌 동			
					2,583 (1/2)	지경숙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13, B동 1301호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좌 동			
7	상계동 산149-7	임야	임야	5,124	5,124 (1/4)	김동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201, 83동 1002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							좌 동			
					5,124 (1/4)	김동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64길15,109동 1203호 (이촌동, 엘지한강자이아파트)											좌 동			
					5,124 (1/4)	김동욱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11길 23,B동 201호 (논현동, 롯데빌리지)											좌 동			
					5,124 (1/4)	김동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47, 3동 1006호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좌 동			
8	상계동 산145-14	임야	임야	7,258	7,258 (65/100)	김영우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중부대로947번길 34-1 (유산리)				8							좌 동			
					7,258 (35/100)	김영심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254-6, 101동 105호 (교동, 강남아파트)											좌 동			
9	상계동 112-89	임야	임야	142	26	강석규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경춘북로613번길 15, 105동 1704호(퇴계원리, 퇴계원쌍용예가)				9							좌 동			

◈ 구로구공고 제2019-1161호

도시관리계획[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7호(2014. 1. 16.)로 결정된 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이적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관련 도서를 열람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 25일
구 로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2019.7.26. ~ 2019.8.14.
나. 열람장소: 구로구청 도시계획과(김우호 ☎860-2279, E-mail : durifoever@guro.go.kr)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원	가로공원	구로구 고척동 100번지 일대	3,458	-	3,458	서고시 제2014-17호 (2014. 1. 16.)	
변경	①	공원	가로공원	구로구 고척동 100번지 일대	3,458	-	3,458	서고시 제2014-17호 (2014. 1. 16.)	중 복 결 정 • 지상: 공원 • 지하: 주차장
		주차장	노외주차장			증)3,458	3,458	-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청사	공공업무 시설 (세무서)	구로구 고척동 100번지 일대	-	증)3,300	3,300	-	-

■ 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이적지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타 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라. 관계도서: 생략(열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 금천구공고 제2019-995호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15일대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4번 출입구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일부사유지 편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등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금천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본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25일
금 천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금천구청 도시계획과(☎02-2627-1553, fax 02-2251-1715)
다.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취지
o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4번 출입구에 교통약자 및 지하철 이용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철도)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조서
o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철도	도시철도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 정거장)	금천구 가산동 371 일대	6,992	증)82.3	7,074.3	1993.3.24. (서울특별시 제1993-77호)	일부 도로 중복결정 입체적 결정

o 도시계획시설(철도) 입체적 결정(경미한 사항)

구분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 고
신설	철도	금천구 가산동 60-15일대	길이	-	29.9m	29.9m	-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 정거장 4번 출입구 (외부E/S 신설)
			폭	-	0.3~1.2m	0.3~1.2m		
			높이 (해수면기준)	-	지상 0.8m ~ 지하12.6m	지상 0.8m ~ 지하12.6m		
			면적	-	28.8㎡	28.8㎡		

마. 관련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9-17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서울시계 내 한강 (성산대교)	선박 2척	보수공사	’19.07.18.~ ’20.07.31.	’19. 07.16.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209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마포구 마포동, 서초구 잠원동, 강남구 압구정동, 광진구 자양동 일원
   - 면 적: 4,66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한강공원 나들목 설치
   - 내 역: 나들목 6개소

5. 점용기간: (당초) 2014.08.12.~2019.08.11.
   (변경) 2019.08.12.~2024.08.11.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I • SEOUL • U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시민소통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41 문의 : ☎120